研究資料
開發 '92-6-54

韓國開發援助政策과 比較開發調査論

池 鎔 基

韓國國際協力團

序　文

本書는 第一部와 第二部로 나누어져 있다. 第一部에서는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現況과 問題點을 分析해보고 우리에게 適正한 韓國型開發援助 模型의 定立方向을 提示하였다.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그동안 여러部處로 業務가 分散되어 綜合的이고 一貫된 政策이 不在하였으나 韓國國際協力團의 新設發足으로 開發援助에 對한 綜合的인 政策의 樹立과 이의 推進이 可能케 되었다. 本書는 지난 1年동안 韓國國際協力團에서 開發援助의 基本戰略과 政策의 樹立을 爲해 各 部署別로 提起되었던 事項과 몇차례의 諮問會議, 세미나를 開催하여 斯界專門家들로부터 收斂된 意見 및 外國制度의 視察과 各種 報告書의 發刊等에서 獲得한 資料를 土臺로 著述되었다. 그동안 各界各層으로부터 우리나라의 開發援助政策의 樹立에 對한 意見提示나 著書가 있었으나 아직도 다른 分野에 比해 著書나 研究論文等의 關聯資料가 貧弱한 實情이므로 앞으로 이에 對한 活潑한 研究와 理論的, 實證的 著書가 더욱 出刊되어야 할 것이다.

第二部에서 다룬 開發調査는 現在 開發援助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微微하나 援助規模의 擴大에 따른 開發援助의 戰略的推進을 爲해 가장 重要한 援助形態의 하나로 論議되어야 할 事業이며 우리나라 開發援助政策의 轉換이 要求되는 現時點에서 開發援助의 目的中의 하나인 經濟的 觀点과 關聯되어지는 分野라는 點에서 이에 對한 徹底한 研究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現在까지 開發援助全般을 紹介하는 著書는 몇卷이 있었으나 政策立案者나 實務 擔當者들이 業務遂行에 있어 參考할만한 開發調査만을 다룬 書籍이나 論文은 매우 貧弱한 實情이다. 따라서 第二部에서는 開發調査에 對한 各國의 制度－實施體制, 事業의 發掘 및 形成, 컨설턴트의 活用, 事業實績, 問題點과 政策方向等－를 比較分析하여 紹介함으로써 向後 이 分野의 業務를 擔當하거나

研究하는 분에게 參考가 되게 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開發援助의 統計가 部分的으로 公開가 制約되거나 作成이 不實하여 이의 研究에 有用한 統計資料의 供給이 未洽하였으므로 이러한 部分은 補完整理하여 可及的 이를 詳細하게 收錄함으로써 基礎資料로 提供코저 하였다.

著者는 本書를 發刊함에있어 職場內外의 先輩, 同僚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다. 本書 內容에는 지난 1年間 ODA의 各 分野에 對한 政策立案이나 實行計劃의 樹立, 制度改善 및 外國制度分析等으로 紹介된 內容들을 補筆하여 收錄한 部分이 많다. 著者는 韓國國際協力團의 玉二鎬, 金相泰, 金光暎等 세분 課長과 開發協力部職員 모두에게 感謝하고있으며 本書의 未洽한 內容에 對한 叱正을 바라고 未洽한 部分과 開發援助의 理論的 側面은 後日 補完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

本書가 우리나라의 開發援助에 對한 政策方向을 提示하고 主要先進國들의 開發調査制度를 分析, 比較함으로써 이 分野에 關心있는 여러분에게 參考資料로 活用되고 政策實務者들의 業務遂行에 좋은 도움이 되기를 期待한다.

끝으로 이 著書에 收錄된 모든 內容은 著者의 個人意見이며 協力團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2年 12月

韓國國際協力團

總裁 李 樹 基

目 次

序 文

第一部 韓國開發援助政策

－韓國型 開發援助模型의 定立－

Ⅰ. 開發援助의 歷史 …… 3

Ⅱ. 開發援助의 槪念, 分類 및 實施體制 …… 6

Ⅲ. 開發援助의 現況 …… 12

1. 槪 要 …… 12

2. 機資材等 供與 …… 13

가. 槪 念 …… 13

나. 背景 및 目的 …… 14

다. 支援規模 …… 15

라. 地域 및 所得그룹別 配分 …… 20

마. 支援分野 …… 22

바. 支援形態 …… 24

3. 開發調査 …… 25

가. 沿革 및 法的根據 …… 25

나. 槪 念 …… 26

다. 種 類 …… 33

라. 支援分野 …… 33

마. 妥當性調査의 段階別 區分 …… 34

바. 目的과 效果 …… 35

사. 實施節次 …… 36

아. 實 績 …… 38

4. 프로젝트型事業 ····· 41
가. 槪　　要 ····· 41
나. 實　　績 ····· 41
5. 技術協力 ····· 41
가. 槪　　要 ····· 41
나. 硏修生招請 ····· 43
다. 專門家派遣 ····· 45
라. 醫療團等派遣 ····· 47
마. 靑年海外奉仕團派遣 ····· 47
6. 對外經濟協力基金 ····· 49
가. 法的根據 및 目的 ····· 49
나. 支援節次 ····· 49
다. 基金의 種類와 條件 ····· 50
라. 財源造成 및 運用實績 ····· 52
7. 多國間協力 ····· 55

Ⅳ. 開發援助의 政策方向 ····· 58
1. 事業의 戰略的 推進 ····· 58
가. 現況 및 問題點 ····· 58
나. 政策方向 ····· 58
(1) 理念의 定立 ····· 58
(2) 目的의 設定 ····· 63
(3) 適正 ODA規模와 中長期비전의 提示 ····· 66
(4) 支援對象國 ····· 68
(5) 支援分野 ····· 87
2. 開發援助配分의 構造調整과 協力形態別 推進戰略 ····· 90
가. 現況 및 問題點 ····· 90

나. 政策方向 ····· 94
3. 國別援助計劃의 樹立 ····· 102
가. 現況 및 問題點 ····· 102
나. 政策方向 ····· 103
4. 最適協力模型의 開發 ····· 107
가. 現況 및 問題點 ····· 107
나. 政策方向 ····· 109
5. 優秀事業의 發掘과 選定 ····· 113
가. 現況 및 問題點 ····· 113
나. 政策方向 ····· 115
6. 事後管理의 強化와 評價制度의 導入 ····· 121
가. 現況 및 問題點 ····· 121
나. 政策方向 ····· 128
7. 共同協力事業의 積極推進 ····· 130
가. 現況 및 問題點 ····· 130
나. 政策方向 ····· 131
8. 執行業務體制의 確立 ····· 132
가. 現況 및 問題點 ····· 132
나. 政策方向 ····· 134
9. 專門人力의 確保 ····· 135
가. 現況 및 問題點 ····· 135
나. 政策方向 ····· 135
10. 援助業務領域의 擴大 ····· 141
가. 現況 및 問題点 ····· 141
나. 政策方向 ····· 141
(1) 環境과 人口 ····· 141
(2) 女性開發 ····· 143

(3) NGO ····· 144
(4) 構造調整 ····· 145
(5) 政治的 狀況認識 ····· 145
11. 下部構造의 擴充 ····· 146
가. 現況 및 問題點 ····· 146
나. 政策方向 ····· 146
(1) 關聯法規와 組織의 整備 ····· 146
(2) 開發援助統計의 確立 ····· 147
(3) 調査硏究와 綜合情報體制의 構築 ····· 147
(4) 敎育訓鍊의 強化 ····· 148
(5) 調達業務體制의 確立 ····· 148
(6) 有關機關과의 協調體制構築 ····· 150
(7) 弘報活動의 強化 ····· 150

第二部 比較開發調査論

Ⅰ. 外國의 開發援助現況 ····· 153
1. 開發援助의 歷史 ····· 153
2. 開發援助의 實績 ····· 157
가. 開發援助의 規模 ····· 158
나. 開發援助의 地域別, 所得그룹別 配分 ····· 158
다. 開發援助의 分野別 配分 ····· 159
라. 開發援助의 條件 ····· 159

Ⅱ. 開發調査의 國際比較(要約) ····· 177
1. 開發援助의 實施體制 ····· 177
2. 開發프로젝트의 發掘 및 形成 ····· 181

3. 開發調査의 實態 …… 182
4. 컨설턴트의 活用 …… 183

Ⅲ. 開發援助의 實施體制 …… 200
1. 美 國 …… 200
가. 支援體制의 特徵 …… 200
나. 組 織 …… 203
2. 카나다 …… 206
가. 支援體制의 特徵 …… 206
나. 組 織 …… 206
3. 프랑스 …… 208
가. 援助體制의 特徵 …… 208
나. 組 織 …… 209
4. 스웨덴 …… 211
가. 援助體制의 特徵 …… 211
나. 組 織 …… 212
5. 네덜란드 …… 214
가. 援助體制의 特徵 …… 214
나. 組 織 …… 215
6. 西 獨 …… 216
가. 援助體制의 特徵 …… 216
나. 組 織 …… 218
7. 英 國 …… 221
가. 援助體制의 特徵 …… 221
나. 組 織 …… 223
8. 日 本 …… 224
가. 援助體制의 特徵 …… 224

나. 組　　織 ····· 227

Ⅳ. 開發調査 프로젝트의 發掘 및 形成 ····· 232
1. 開發調査프로젝트 사이클 ····· 232
가. 世界銀行 ····· 232
나. 日　　本 ····· 233
다. 歐美諸國 ····· 237
라. 프로젝트發掘, 形成의 特徵 ····· 239
2. 開發프로젝트의 計劃, 案件의 立案 및 豫算策定 ····· 242
가. 世界銀行 ····· 242
나. 各國의 援助프로그램 ····· 244
(1) 美　　國 ····· 244
(2) 카 나 다 ····· 245
(3) 프 랑 스 ····· 246
(4) 스 웨 덴 ····· 246
(5) 네덜란드 ····· 247
(6) 西　　獨 ····· 247
(7) 英　　國 ····· 247
(8) 日　　本 ····· 248
다. 各國의 國別援助計劃 ····· 250
(1) 美　　國 ····· 250
(2) 카 나 다 ····· 250
(3) 스 웨 덴 ····· 251
(4) 네덜란드 ····· 251
(5) 西　　獨 ····· 251
(6) 英　　國 ····· 252
(7) 日　　本 ····· 253

라. 年次協議 ····· 257
(1) 프 랑 스 ····· 257
(2) 스 웨 덴 ····· 257
(3) 네덜란드 ····· 258
(4) 西 獨 ····· 258
(5) 英 國 ····· 259
(6) 日 本 ····· 259
마. 發掘메모 ····· 259
(1) 프로젝트發掘 ····· 260
(2) 發掘메모 記載事項 ····· 261
(3) 技術專門要員의 活用 ····· 263

V. 開發調査의 컨설턴트活用 ····· 264
1. 컨설팅 業務의 內容 ····· 264
가. 프로젝트 發掘調査(事前調査) ····· 264
나. 豫備妥當性調査, 妥當性調査 ····· 264
다. 프로젝트 準備調査(實施設計調査) ····· 265
라. 入札의 分析, 勸告 및 契約締結業務 ····· 265
마. 施工監理業務 ····· 265
바. 프로젝트의 運營, 管理 및 事後評價 ····· 265
2. 컨설팅企業, 個人컨설턴트 및 로칼컨설턴트의 業務分擔 ····· 266
가. 컨설팅企業 ····· 266
나. 個人컨설턴트 ····· 267
다. 로칼컨설턴트 ····· 267
3. 登 錄 ····· 268
가. DACON시스템에 依한 登錄 ····· 268
나. JICA의 登錄 ····· 270

4. 컨설팅의 契約方法 ····· 270
가. 隨意契約 ····· 270
나. 프로포잘 方式에 依한 競爭契約 ····· 271
5. 開發 프로젝트에 關한 情報 ····· 271
6. 事業施行條件(TOR) ····· 272
7. 컨설팅의 代價 ····· 273
8. 컨설턴트企業의 Short List ····· 274
9. 컨설턴트企業間의 合作形成 ····· 276
10. 컨설턴트 選定委員會 ····· 277
가. 選定節次 ····· 277
나. 選定委員會 構成 ····· 277
11. 入札招請狀 ····· 279
12. 技術提案書의 評價 ····· 281
가. 評價基準 ····· 281
나. 基準適用 加重値 ····· 281
다. 核心要員의 評價基準 ····· 281
라. 各國의 特徵 ····· 282
13. 價格考慮를 隨伴하는 技術提案書의 評價 ····· 283
14. 國別 프로포잘의 評價 및 컨설턴트 選定의 特色 ····· 285
15. 契約의 協商 및 締結 ····· 288
16. 컨설팅業務의 監督, 評價 ····· 291
가. 스웨덴 ····· 291
나. 世界銀行과 ADB ····· 292
다. JICA ····· 293
17. 世界銀行의 契約方式과 價格決定 ····· 295
가. Man－Month契約 ····· 295
나. 總額契約 ····· 296

다. 比率契約 ····· 296
라. 定額契約 ····· 297
마. 價格調査 ····· 298
바. 豫 備 費 ····· 298
18. 調査段階別 컨설팅報告書 ····· 299

Ⅵ. 日本의 開發調査 ····· 301
1. 開發調査의 內容 ····· 301
가. 開發調査의 定義 ····· 301
나. 開發調査의 業務分擔 ····· 302
다. 開發調査의 豫算 ····· 303
라. 開發調査의 段階 ····· 303
2. 開發調査의 實績 ····· 315
가. 豫算配分 ····· 315
나. 事業實施現況 ····· 318
3. 課 題 ····· 326
가. 開發調査의 効果的 效率的 實施를 爲한 勸告 ····· 326
나. 開發調査의 適正한 監理를 爲한 勸告 ····· 329

〈附 錄〉
1. 開發援助의 形態別 國家別 實績(1992) ····· 333
2. 開發調査의 年度別 國家別 實績(1984~1992) ····· 341
3. 機資材供與의 年度別 地域別 實績(1977~1991) ····· 346
4. 機資材供與의 年度別 品目別 實績(1989~1991) ····· 348
5. 우리나라 機資材受援國의 主要指標 ····· 354

〈參 考 文 獻〉 ····· 371

第一部 韓國開發援助政策

— 韓國型 開發援助模型의 定立 —

Ⅰ. 開發援助의 歷史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는 1963年 USAID援助資金에 依한 開途國 硏修生 受託訓鍊의 實施로 始作되었다. 우리政府 資金에 依하여 1965年 부터는 開途國訓鍊生 招請事業이 1967年부터는 專門家 派遣等의 協力事業이 段階的으로 始作되기는 하였으나 그 實績은 매우 微微한 水準에 머물렀고 1970年代 中盤까지는 主로 UN機構等의 資金을 支援받아 開發援助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그後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功的인 推進과 工業化 政策으로 우리의 經濟成長과 科學技術이 發展되어 開途國으로부터 需要가 每年 增加됨에따라 우리 資金爲主로 開發援助事業이 本格的으로 推進되었다.

1977年 外務部의 主管下에 110萬$ 規模의 우리나라 機資材를 開途國에 供與함으로써 對外無償援助가 始作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 ODA規模의 增加에 따라 事業規模가 每年 꾸준히 增加되어 왔다.

政府次元의 對開途國 協力事業은 1980年代初 以後 아시아, 아프리카地域의 大統領巡訪時 提起된 對開途國 協力事業을 契機로 本格的으로 推進되기 始作하였는데 KDI가 開途國 政府의 主要職責을 擔當하고 있는 人士를 招請하여 우리나라의 開發經驗에 對한 敎育을 實施하는 國際開發 硏鑽事業을 1982年부터 始作하였고, 1984年에는 建設部에서 無償建設技術 用役事業을, 勞動部에서 職業訓練院設立 支援事業을 始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受惠國에서 援助供與國으로서 本格的인 모습을 갖추기 始作한 것은 1987年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을 創設하여 開途國의 産業發展과 經濟安定을 支援하기 爲한 借款提供事業을 始作하면서부터이다. 이는 우리나라 經濟의 持續的인 高度成長과 國際收支의 黑字基調示顯, 1986 아시아게임의 成功

的인 開催等으로 國際社會에서의 우리나라에 對한 認識의 轉換과 함께 主要 先進國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NICs에 對한 責任分擔論이 擡頭한 時期와 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1989年에 UNESCO 韓國委員會 主管下에 韓國青年海外奉仕團 派遣事業이 始作되어 1990年에 4個國에 44名의 奉仕團員이 最初로 派遣되었으며 1991年에는 7個國에 37名, 1992年에는 8個國에는 52名이 派遣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따른 開途國으로부터의 開發援助에 對한 要請의 增加와 함께 그동안 政府의 各 所管部處別로 實施되어 오던 開發援助業務를 統廢合하여 보다 有機的이고 體系的으로 遂行함으로써 援助效果의 極大化를 圖謀하고 多樣化되어 가는 開途國의 需要에 一層 能動的으로 對應하기 爲하여 韓國國際協力團法에 依해 1991.4月 韓國國際協力團이 設立되었다.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아직 開拓段階에 지나지 않으므로 韓國國際協力團의 發足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經濟規模와 國際的 地位向上에 걸맞게 協力規模를 漸次的으로 擴大하고, 새로운 協力手段의 發掘과 함께 協力事業에 對한 效率性 增進 方案을 積極的으로 模索하는 等 보다 創意的인 硏究와 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圖 Ⅰ-1〉 開發援助의 歷史

區分	年度	內 容	主管部署
60年代	1963	• 美國 AID援助計劃 및 資金에 依據 開途國 研修生 訓練 最初實施	外務部,科技處
	1965	• 政府資金에 依한 研究生 招請事業 始作	外務部,科技處
	1967	• 政府資金에 依한 專門家 派遣事業 始作	外務部,科技處
		• UN 및 其他 國際機構와의 協力事業으로 外國人招請訓練 實施	外務部,科技處
	1968	• 政府資金에 依한 프로젝트 技術供與 始作	科技處
70年代	1975	• 技能工 招請訓練 始作	
		• • 75~82年까지는 科技處 委託事業으로 始作	勞動部
		• • 83年 以後 勞動部 自體 實施	
	1977	• 無償援助事業 始作	外務部
80年代	1981	• 公共研究事業 始作	KAIST
	1982	• 國際開發 研鑽事業 始作	KDI
	1983	• 建設技術者 招請訓練 始作	建設部
	1984	• 無償建設 技術用役事業 始作	建設部
	1987	• 對外經濟協力基金 創設	財務部
		• 科學財團에 對外技術供與事業 業務委託	科技處,外務部
	1988	• 對開途國 通信技術支援 無償用役事業 始作	遞信部
	1989	• 韓國 青年海外奉仕團 派遣事業 始作	UNESCO
		• 無償技術用役事業 始作	經濟企劃院
90年代	1991	• 韓國國際協力團 設立	外務部 傘下

資料：外務部, 我國의 對開途國 經濟協力(1990.6)

Ⅱ. 開發援助의 槪念, 分類 및 實施體制

本書는 우리나라의 政府 또는 公的開發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또는 略해서 開發援助 : ODA)와 이의 形態中의 하나인 開發調査制度(Development Study)를 主로 紹介한 것이다.

開發援助와 開發調査라는 用語는 또다른 類似用語의 使用과 國家間에 意味하는 바가 相異하므로 이에對한 說明이 必要할 것이다.(開發調査는 後述함)

開發援助(Development Assistance)는 最近에 가장 普遍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經濟協力(Economic Cooperation)이라는 用語와 同意語로 쓰여지기도하며[1]아울러 開發協力(Development Cooperation), 援助(Aid, Assistance), 對外援助(Foreign Aid, Foreign Assistance)等의 用語와 關聯하여 各 用語에 完全하게 定立된 槪念範圍가 存在하지 않는다.

本書에서는 開發援助, 開發協力 더나아가 經濟協力이라는 用語의 使用에 별다른 意味를 賦與하지 않으려하며 매우 폭넓은 意味를 가지고 있는 이들 用語를 OECD의 DAC에서 말하는 『開發途上國에 對한 資金의 흐름(Flow of Financial Resources)』이라는 觀点에서 把握코저한다.

---

1) 開發援助의 分類 및 用語의 使用이 經濟協力 또는 다른 用語와 同義語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經濟協力의 類型은 그 形態 乃至 方式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 經濟協力의 類型
  - 主體別類型
    - 二國間協力과 多國間協力
    - 政府間協力과 民間協力
  - 形態別類型
    - 資本協力과 技術協力
    - 無償協力과 有償協力
    - 計劃事業協力과 非計劃事業協力
  - DAC의 分類

開發援助委員會(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는 파리에 있는 經濟協力開發機構(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의 下部組織이며 開發途上國에 對한 經濟協力을 先進諸國의 主導로 硏究·檢討하고, 더 나아가 先進諸國이 積極的으로 南北問題 解決을 爲하여 內部的으로 相互審査를 되풀이 함으로써 援助의 增加와 質的改善等을 爲해 努力하고 있다.

DAC加盟國은 日本, 濠洲,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獨逸, 이탈리아,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英國, 美國, 아일랜드等 先進 18個國과 歐洲共同體(EC)等이다.

DAC에서는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이나 福祉增進을 圖謀하기 爲하여 援助供與國이 自體의 財政資金을 使用하여 供與하는 純粹한 援助를 『公的開發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ODA는 다음과 같은 基本要件을 充足시켜야 한다.

① 中央 및 地方政府를 包含한 公共機關 또는 그 實施機關에 依하여 開發途上國 및 國際機關에 對하여 供與될 것

②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 및 福祉向上에 寄與하는 것을 그 主目的으로 할 것

③ 供與條件이 緩和된 援助로서 10%의 割引率을 使用한 贈與率(Grant Element)이 25% 以上일 것

DAC는 開途國에 對한 資金의 흐름에 ODA라고 認定되는것 외에 이것을 훨씬 웃도는 量의 資金의 흐름을 主體別 및 形態別로 〈圖 Ⅱ-1〉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其他公的資金(Other Official Flow : OOF)이란 政府開發援助에 依한 세가지 要件을 모두 채울 수 없는 政府部門의 資金供與를 意味하며 輸出促進을 爲하여 供與되는 政府輸出信用과 政府部門에 依한 開途國의 企業의 株式取得等이 包含된다.

民間資金(Private Flow : PF)은 民間部門의 市場條件에 依한 去來를 말하는데 이것은 營利를 目的으로한 去來이지만 間接的으로 開途國의 開發에 貢獻하는 것이다. 民間輸出信用, 民間直接投資, 證券投資等이 있다.

非政府機關(民間援助團體)(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NGO)에 依한 贈與는 非政府·民間團體에 依한 自願奉仕活動과 關聯된 資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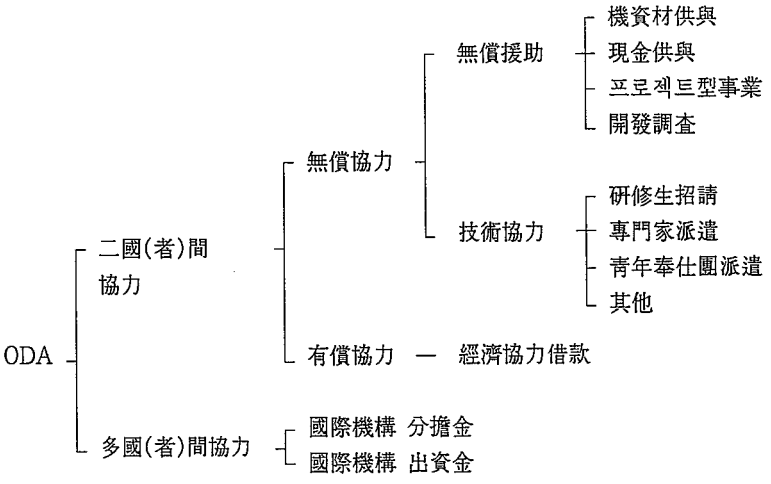
〈圖 Ⅱ－1〉 DAC의 經濟協力 分類

形 態	內 容
公的開發援助 (ODA)	(1) 二國(者)間 1. 贈與(無償) : 技術援助, 食糧援助, 行政費, 其他贈與(無償) 2. 開發資金貸付 및 資金投資 : 新規開發貸付, 食糧援助 借款, 州 및 其他 2國間 資產投資 (2) 多國(者)間 1. 贈與(無償) : UN機構, EEC等 2. 出資 : IBRD, IFC, IDA地域開發銀行等 3. 讓許性 貸付
其他公的資金 (OOF)	(1) 二國間 1. 公的 輸出信用 2. 株式 및 其他 2國間 資產投資 (2) 多國間 － 國際機構
非政府機關 贈與 (NGO)	非營利, 自願團體
民間資金 (PF)	(1) 直接投資 (2) 間接(證券)投資 (二國, 多國間) (3) 民間輸出信用

우리나라의 開發援助(ODA)는 受援國에 直接的으로 援助를 供與하는 二國間協力과 國際機構에의 出資, 分擔金 等을 通하여 受援國에 間接的으로 援助가 提供되는 多國間 協力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二國間協力은 다시 償還義務與否에 따라 無償協力과 有償協力으로 區分된다.

우리나라는 無償協力을 無償援助와 技術協力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無償援助(Grant Aid 또는 Grant Assistance)는 嚴格한 意味에서 技術協力(Technical Assistance)과 對稱하여 (無償)資本協力(Capital Assistance)이라는 名稱이 보다 正確한 表現이나 그동안 無償援助(韓國國際協力團 事業施行指針 第3條 4項)로 通用되어 왔는 바 同指針의 槪念定義에 依하면 償還義務를 賦課하지 않고 特定地域에 物資 또는 現金을 供與하는 것을 말한다.

〈圖 Ⅱ-2〉 우리나라의 ODA 分類



이는 日本의 無償資金協力(Capital Grant Assistance)과 같은 槪念으로서 日本은 經濟社會發展에 必要한 機資材, 設備 및 서비스를 調達하는데 必要한 資金(Capital)等을 支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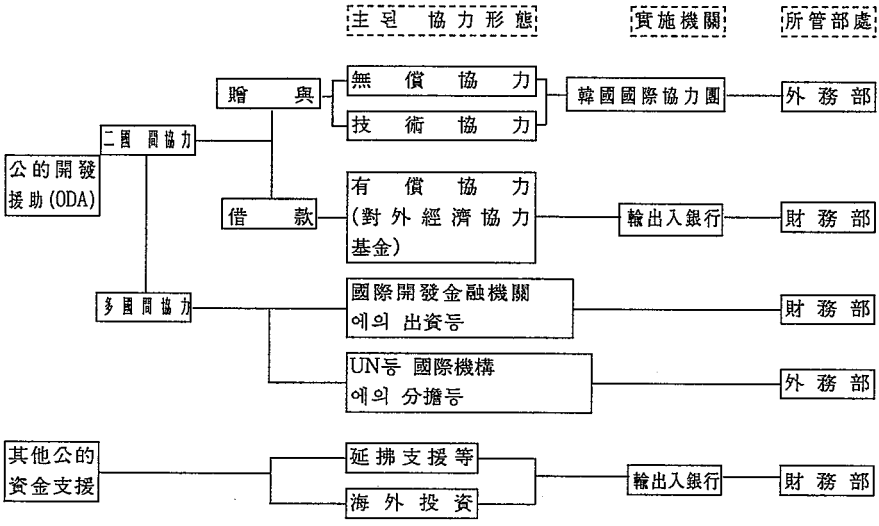
技術協力은 目的에 따라 2가지로 區分할 수 있는데(Browne) 첫째는 投資關聯技術協力(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 ITC)으로 資本協力事業을 爲한 專門技術이나 訓鍊을 實施하여 프로젝트計劃이나 實施에 必要한 妥當性 調査等을 遂行케 해 주는것을 말하며(우리나라의 開發調査,프로젝트型事業等) 둘째는 單獨技術協力(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 FTC)으로 特別한 資本協力事業과는 關聯없이 專門知識이나 技術을 供與해주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의 專門家派遣, 研修生招請等). 本書에서는 韓國國際協力團의 職制와 業務分掌에 따라 前者의 形態를 無償援助에 包含시키고저 한다.

韓國國際協力團은 開發援助中 無償協力만을 擔當하고 있으며 無償援助中 機資材供與, 現金供與, 프로젝트型事業 및 開發調査等 事業을 開發協力事業으로, 技術協力中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및 青年奉仕團 派遣等 事業을 技術協力事業으로 區分하여 施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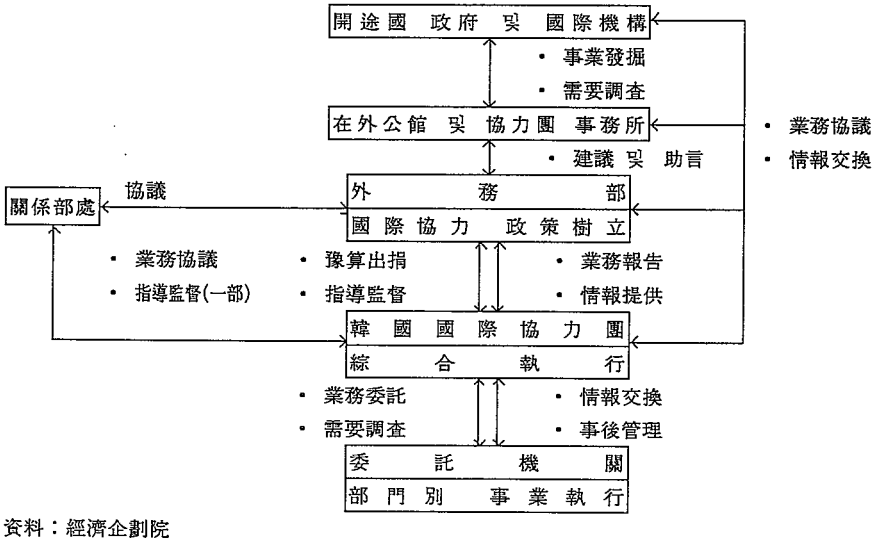
有償協力에 該當되는 對外經濟協力基金은 財務部, 多國間協力은 外務部와 財務部等에서 擔當하고 있다.

〈圖 Ⅱ-3〉 業務實施體制

○ 總括體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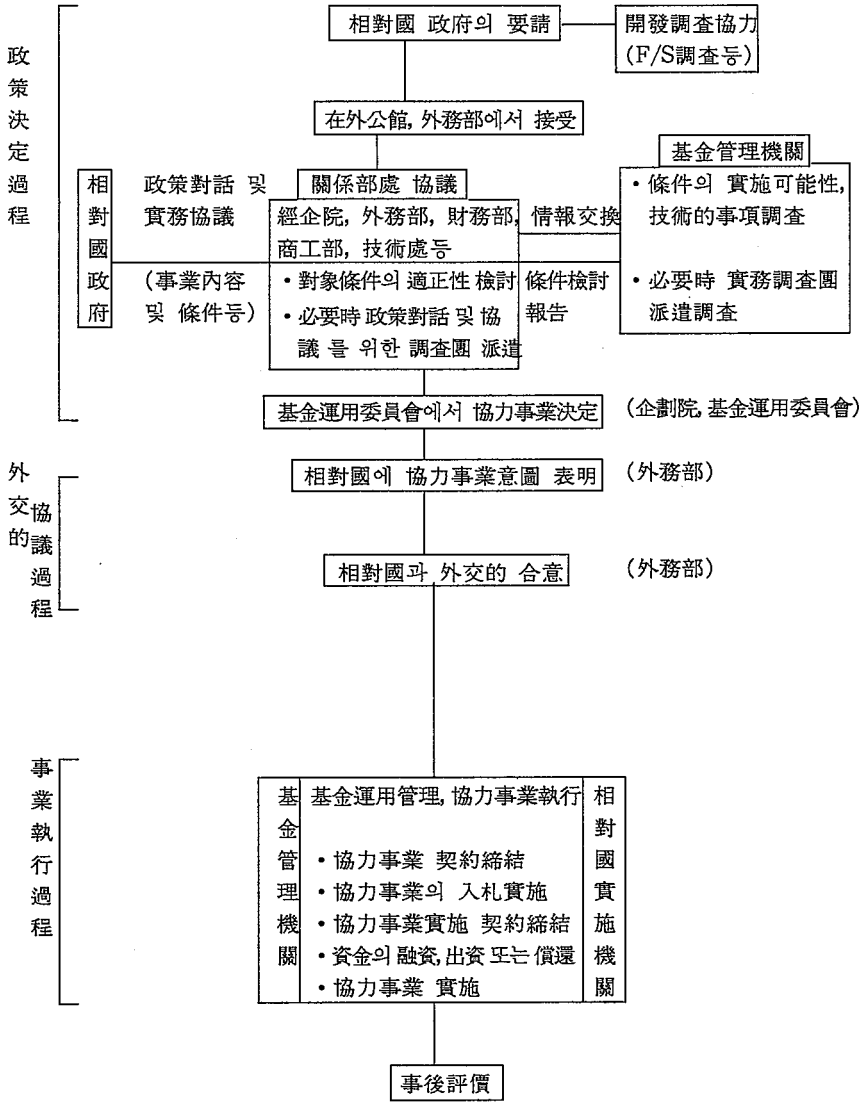


○ 韓國國際協力團 業務實施 體系



資料：經濟企劃院

○ 對外經濟協力基金 業務實施體系



資料：經濟企劃院

Ⅲ. 開發援助의 現況

1. 概　　要

1985～1991年間의 우리나라 開發援助는 年間 1億$ 內外로서 量的規模에는 커다란 變化가 없었다. 二國間協力은 해마다 꾸준한 增加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多國間協力이 75%로 大部分을 이루고 있다.

1991年 ODA의 GNP比率은 0.04%로서 OECD勸告基準인 0.7%나 DAC會員國의 平均比率인 0.35%에 比해 顯著히 낮은 水準이지만 우리나라의 經濟力向上과 國際的 地位의 向上에 相應하여 꾸준히 ODA規模를 擴大하려는 政策方向으로 볼 때 長期的으로 ODA規模는 繼續 擴大될 것이다.

〈表 Ⅲ－1〉　　開發援助의 趨移

(單位：百萬弗)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A. 政府開發援助(ODA)	48.3	111.5	74.7	62.3	98.5	89.2	99.9
〈二國間 協力〉	14.9	15.0	17.3	19.9	22.9	32.4	39.1
無償援助	8.5	8.5	9.1	11.4	12.6	11.6	12.4
技術協力	6.4	6.5	8.2	8.5	8.5	9.1	10.9
經濟協力借款(EDCF)	—	—	—	—	1.8	9.9	6.8
行政費用						1.9	9.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多國間 協力〉	33.4	96.5	57.4	42.4	75.6	56.8	60.8
國際機構分擔金	4.9	4.9	5.8	6.7	8.7	10.3	12.2
國際機構出資金	28.5	91.6	51.6	35.7	66.9	46.5	48.6
B. 其他公的資金(OOF)	368.0	275.6	346.5	433.0	304.8	426.7	696.6
輸出信用	350.1	261.4	333.1	463.9	155.7	212.9	568.7
海外投資支援	17.9	14.2	13.4	29.1	149.1	213.8	127.9
C. 民間資金(PF)							
G N P (億 弗)	897	1,027	1,284	1,692	2,040	2,422	2,808
ODA / GNP(%)	0.05	0.11	0.06	0.04	0.05	0.04	0.04
A + B / GNP(%)	0.46	0.38	0.33	0.29	0.20	0.21	0.28

資料：經濟企劃院, 1991開途國經濟協力統計

2. 機資材等 供與

가. 槪 念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開發援助方式의 하나로서 受惠國에 償還義務를 賦課하지 않고 贈與의 形態로 資金 또는 物資를 供與하는 것을 말한다.

特히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開途國의 要求에 보다 迅速하고 機動性있게 應할 수 있는 積極的인 協力方式으로서 經濟的側面에 對한 協力은 勿論 受惠國과 友好關係 維持等에 必要한 政治·外交的인 効果가 크므로 大部分 先進供與國의 協力手段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에도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二國間 無償援助의 主要協力手段이 되고 있으며 機資材(物品) 供與事業, 프로젝트型 事業 및

現金支援으로 區分되고 있다. 機資材(物品) 供與事業은 各種 機資材, 救護物資等을 現物의 形態로 供與하는 것을 말하며 國產品 提供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型事業은 프로젝트에 關聯된 하드웨어 部門(建物 및 施設의 建設, 機資材供與等)과 소프트웨어 部門(技術移轉 關聯支援)의 各種 協力手段을 單獨 또는 相互 連繫하여 支援하는 事業이며, 現金支援은 災難의 救護等 人道主義目的,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現地 또는 第3國의 物品을 使用하여야 할 境遇에 現金의 形態로 供與하는 것을 말한다.

나. 背景 및 目的

1977年 約 110萬$의 規模로 始作한 우리나라의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冷戰時代의 與件을 反影하여 經濟的인 實利側面 보다는 非同盟國家와의 關係增進, 對北韓 優位確保等 政治·外交的 側面에 重點을 두어온 것이 事實이며, 또한 急變하는 國際政勢와 天災地變等에 依한 救護要請에 迅速히 對處하기 爲한 緊急資金의 機能도 遂行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對象國家, 配分規模 및 事業形態上의 特徵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支援背景 및 目的의 特殊性에 依하여 決定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2)]

---

2) 無償援助(Grant Aid 또는 Grant Assistance)의 一環으로 實施하고있는 우리나라의 機資資供與(Provision of Equipment)는 主要先進國에서 技術協力이나 經濟開發等을 爲한 供與와는 달리 乘用車等 消費財의 單純供與가 大部分이다.
이는 日本 JICA에서 技術協力과 連繫하여 小規模로 供與하는 機資材供與(Provision of Equipment for Technical Cooperation)나 또는 프로젝트型事業과 關聯하여 比較的 多額으로 供與하는 形態와는 다르며, 日本 外務省에서 無償資金協力(Capital Grant Assistance)의 6가지 形態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있는 一般無償援助(General Grant Aid)의 境遇, 開途國의 經濟社會開發, 民生安定, 福祉向上等의 計劃을 實現하는데 必要한 建設施設이나 機資材供與等의 形態를 取하는 것과도 相異하다. 우리나라 機資材供與의 目的과 形態는 歐美先進國이 經濟開發과 關聯시켜 商品을 直接供與하거나 또는 商品의 購入을 爲한 現金形態로 提供하는 것(Commodity Aid : 商品援助)과도 多少 相異한 것이다.

다. 支援規模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支援規模는 事業最初年度인 1977年 110萬$에서 14年이 지난 1991年에는 1,240萬$로 增加하여 約 11.3倍의 增加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ODA規模의 擴大에 따라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規模도 平均的으로 꾸준히 增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5~1991사이의 實績을 보면 우리나라 全體 ODA對比 占有率은 年平均 13.3%이며 二國間協力의 45.9%로 開發援助에서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 Ⅲ-2〉 開發援助 對比 機資材供與實績

(單位 : 百萬$,%)

區 分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 ('85~'91)
開發援助合計	48.3	111.5	74.7	62.3	98.5	89.2	99.9	585.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二國間協力〉	14.9	15.0	17.3	19.9	22.9	32.4	39.1	161.5
	(30.8)	(13.5)	(23.2)	(31.9)	(23.2)	(36.3)	(39.1)	(27.6)
機資材等	8.5	8.5	9.1	11.4	12.6	11.6	12.4	74.1
供與事業	(17.6)	(6.6)	(12.2)	(18.3)	(12.8)	(13.0)	(12.4)	(12.7)
其 他	6.4	6.5	8.2	8.5	10.3	20.9	26.7	87.5
〈多國間協力〉	33.4	96.5	57.4	42.4	76.6	56.8	60.8	423.9

한편 豫算의 增加에 따라 支援對象國도 〈表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年의 14個國에서 1991年에는 89個國, 2個 國際機構, 2個 基金으로 늘어나 約 6.6倍의 增加를 보인 反面, 1個國當 平均支援規模는 10餘萬$ 水準으로 制限된 豫算을 多數國家에 少額으로 分散하여 供與하고(Thinly Distributing) 있음을 알 수 있다.

投資材供與의 1國當 支援規模를 보면 5萬$~10萬$ 規模의 支援이 全體國家의 34%~39%로 大部分을 占有하고 있으며, 5萬$ 未滿은 機資材供與 初期

〈表 Ⅲ－3〉 年度別·地域別 機資材 供與 現況

(單位：萬$, %)

地域別 \ 年度別		1977		1978~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77~'91)	
			%		%		%		%		%		%		%		%
아 시 아	金 額	41	37.3	798	17.5	162	17.8	200	17.5	227	18.1	262	22.6	392	31.6	2,082	20.0
	國家數	4	28.6	75	19.6	15	20.6	19	22.6	19	21.3	19	20.4	23	24.7	174	21.0
中 南 美	金 額	13	11.8	1,358	29.8	293	32.2	356	31.1	353	28.1	307	26.5	337	27.2	3,017	29.0
	國家數	3	21.4	118	30.8	26	35.6	27	32.1	28	31.5	28	30.1	26	28.0	256	30.9
아 프 리 카	金 額	56	50.9	2,077	45.5	335	36.8	409	35.7	440	35.0	364	31.4	347	28.0	4,028	38.8
	國家數	7	50	158	41.3	23	31.5	26	31.0	27	30.3	29	31.2	30	32.2	300	36.2
中 東	金 額	—	—	271	5.9	89	9.8	88	7.7	110	8.8	115	9.9	62	5.0	735	7.1
	國家數	—	—	26	6.8	7	9.6	7	8.3	7	7.9	8	8.6	5	5.4	60	7.2
東 歐	金 額	—	—	5	0.1	—	—	—	—	11	0.8	61	5.2	54	4.3	131	1.3
	國家數	—	—	1	0.2	—	—	—	—	1	1.1	5	5.4	5	5.4	12	1.4
其他(國際機	金 額	—	—	55	1.2	31	3.4	91	8.0	115	9.2	51	4.4	48	3.9	391	3.8
構,基金,團體)	國家數	—	—	5	1.3	2	2.7	5	6.0	7	7.9	4	4.3	4	4.3	27	3.3
計	金 額	110	100.0	4,564	100.0	910	100.0	1,144	100.0	1,256	100.0	1,160	100.0	1,240	100.0	10,384	100.0
	國家數	14	100.0	383	100.0	73	100.0	84	100.0	89	100.0	93	100.0	93	100.0	829	100.0

〈表 Ⅲ－4〉 機資材供與의 1國當 支援規模

① 總括表 (單位：個國)

年度別 / 規模別	1977		1980		1985		1990		1991		1992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2萬弗 未滿	1	7.1	5	16.1	8	13.6	2	2.1	2	2.1	5	4.6
2－5萬弗	4	28.6	2	6.5	10	16.9	14	15.1	10	10.8	26	23.9
5－10萬弗	5	35.8	17	54.8	8	13.6	32	34.4	36	38.7	37	33.9
10－15萬弗	2	14.3	2	6.5	7	11.9	19	20.4	20	21.5	18	16.5
15－20萬弗	1	7.1	2	6.5	11	18.6	13	14.0	14	15.1	15	13.8
20－50萬弗	1	7.1	3	9.6	13	22.0	13	14.0	10	10.7	8	7.3
50萬弗 以上	－	－	－	－	2	3.4	－	－	1	1.1	－	－
計[1)]	14	100.0	31	100.0	59	100.0	93	100.0	93	100.0	109	100.0

註：國家數가 ②機資材 및 現金支援과 ③프로젝트型事業 支援의 合計와 相異한 것은 一部國家의 重複 때문임.

② 機資材 및 現金支援

(單位：個國)

年度別 / 規模別	1977		1980		1985		1990		1991		1992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2萬弗 未滿	1	7.1	5	16.1	8	13.6	2	2.3	2	2.3	4	3.8
2－5萬弗	4	28.6	2	6.7	10	17.2	13	14.8	10	11.5	26	24.8
5－10萬弗	5	35.8	16	53.3	8	13.8	31	35.2	34	39.0	37	35.2
10－15萬弗	2	14.3	2	6.7	6	10.3	17	19.3	18	20.7	18	17.1
15－20萬弗	1	7.1	2	6.7	11	19.0	12	13.6	12	14.0	14	13.3
20－50萬弗	1	7.1	3	9.9	13	22.4	13	14.8	10	11.4	6	5.8
50萬弗 以上	－	－	－	－	2	3.5	－	－	1	1.1	－	－
計	14	100.0	30	100.0	58	100.0	88	100.0	87	100.0	105	100.0

③ 프로젝트型事業 支援

(單位：個國)

年度別 / 規模別	1977		1980		1985		1990		1991		1992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國家數	%
2萬弗 未滿	—	—	—	—	—	—	1	11.1	1	14.3	1	11.1
2—5萬弗	—	—	—	—	—	—	2	22.2	1	14.3	1	11.1
5—10萬弗	—	—	1	100.0	—	—	1	11.1	3	42.8	3	33.4
10—15萬弗	—	—	—	—	1	100.0	2	22.2	1	14.3	1	11.1
15—20萬弗	—	—	—	—	—	—	2	22.3	1	14.3	1	11.1
20—50萬弗	—	—	—	—	—	—	1	11.1	—	—	2	22.2
50萬弗 以上	—	—	—	—	—	—	—	—	—	—	—	—
計	—	—	1	100.0	1	100.0	9	100.0	7	100.0	9	100.0

年度인 1977年의 36%에서 最近에는 13%~28%로 減少된 反面, 同 期間中 10萬$ 以上의 供與는 28%에서 37%~48%로 增大되어 1國當 支援規模가 多少 增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地域 및 所得그룹別 配分

1977年~1991年까지의 總 支援金額 10,384萬$의 地域別 配分構造를 보면 아프리카 地域이 全體의 38.8%로 가장 많고 中南美 地域이 29%, 아시아·太平洋地域이 20%, 中東 및 其他地域이 各各 7.1%, 5.1%의 順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主要 先進國이 國別援助計劃(Country Programming)에 依據 特定地域 및 國家에 重點的으로 支援하는 方式을 採擇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政治·外交的인 配慮에 依해 小規模 多國家 支援政策을 推進해 왔으며 이에따라 國家數가 많은 아프리카 및 中南美 地域에 對한 支援이 全體의 68%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歷史, 文化 및 地理的으로 가까운 아시아 地域에 對하여서는 20%에 不過하여(特히 1991年에는 아세아地域構成比가 31.6%로 急增하였는데 이는 몽골에 148萬$이 特別支援된 때문임) 아시아地域에 全體規模의 50%를 支援(1990)한 日本의 境遇와는 對照를 이루고 있다.

〈表 Ⅲ-5〉 地域別 配分現況('77~'91)

(單位 : 萬$, %)

計	아프리카	中南美	아시아	中 東	其 他
10,384	4,028	3,017	2,082	735	522
(100)	(38.8)	(29.0)	(20.0)	(7.1)	(5.1)

〈表 Ⅲ-6〉 日本의 地域別 配分現況(1990)

(單位 : 百萬$,%)

計	아시아	아프리카	中南美	中 東	其 他
1,374.05	700.56	423.23	117.17	113.24	19.85
(100.0)	(50.0)	(30.8)	(8.5)	(8.3)	(1.4)

資料 : 日本外務省, 日本의 政府開發援助(1991)
註 : 支出額基準

〈表 Ⅲ－7〉 日本의 10大 重點供與國 支援現況(無償資金協力)

(單位：億엔)

區 分	1985	1990
對象國	방글라데시, 泰國, 파키스탄, 스리랑카, 버마(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中國, 수단 (아시아：9個國,아프리카：1個國)	방글라데시, 泰國,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中國, 수단, 잠비아, 페루 (아시아：7個國, 中東：1個國, 아프리카：1個國, 中南美：1個國)
支援規模(A)	905.79	844.2
全體支援規模(B)	1,744	1,998
A/B(%)	51.9	42.3

資料：日本外務省, 前揭書

1991年度 支援對象國을 所得階層別로 보면 LLDCs(最貧國)에서 우리나라가 속하여 이는 UMICs(高中所得國)에 이르기까지 모든 所得그룹에 對하여 支援하고 있다. 이중 LLDCs에 對한 支援이 全體의 38.2%로 가장 높으며, LMICs(低中所得國)에 22.9%, LICs(其他 低所得國)에 18.2%, UMICs에 14.4%로 所得이 낮은 그룹順으로 支援比率이 높으며, 其他 國際機構等에 對한 支援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表 Ⅲ－8〉 所得그룹別 配分現況(1991)

(單位：萬$)

區 分	計	LLDCs	其他LICs	LMICs	UMICs	其他
支援規模	1,240	473	226	284	179	78
(%)	(100)	(38.2)	(18.2)	(22.9)	(14.4)	(6.3)

마. 支援分野

最近 3年間(1989~1991)의 分野別 支援實績을 보면(資料未備로 1977~1988間의 實績은 精確한 把握이 不可함) 總 供與額 3,657萬$中 消費財가 2,827萬$로서 全體의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中에서도 乘用車類가 大部分인 輸送用機械가 主流를 이루고 있어(1991年경우 受援國의 61%인 57個國에 支援) 耐久消費財偏重이라는 批判이 提起되고 있다. 反面, 工作·產業機械와 農機械等 資本財部門은 486萬$로 11.3%에 不過하고 現金支援은 344萬$로 9.4%를 占有하였다.

이를 BHN目的으로 區分하기는 統計上 어려움이 있으나 機資材供與만을 基準時, 災難救護等을 目的으로 供與된 現金支援, 農機械等 農業部門支援, 醫療部門, 公共行政 및 生必品等의 BHN支援은 50%로서 DAC의 二國間 水準보다 다소 높으나 先進國의 경우 BHN比率은 無償協力이 有償協力보다 높으므로(日本의 경우 無償協力 60.6%, 有償協力 23.6%) 우리나라의 二國間 BHN比率은 先進國에 比해 더욱 낮을 것으로 評價된다.

이러한 援助支援分野等과 關聯하여 提起되는 批判은 우리나라의 援助目標가 어떤 原則이나 哲學이 不在하여 國家的 또는 世界的 觀點보다도 個別部處들에 의한 援助가 되풀이 되어온 側面이 없지않으며 援助目標만 하더라도 우리國家가 南北對峙狀況이라는 特殊性으로 第3世界等 보다 많은 國家와 善隣關係를 維持하려는 外交的 利害關係를 中心으로 展開되어옴으로써 援助의 配分에 있어 質的低下(Quality Deterioration)가 豫見된다는 點이다.

따라서 援助의 形態나 分野가 受援國의 參與的開發을 通한 生產能力의 提高라는 側面에서 受援國의 上部 特定部類들에게 所要로 하는 乘用車類等의 供與보다는 國民들의 實需要에 바탕을 둔 아래로부터의 開發戰略(Bottom-up Approach)을 通하여 實際로 最終需要者의 必要性에 相應토록 調整되어야 하고, 受援國의 農業, 製造業, SOC, 에너지, 科學技術等 主要部門에 있어 廣範圍한 成長基盤造成에 寄與케 함으로써 大多數 國民이 그 開發利益을 共有토록 持續的

〈表 Ⅲ－9〉 品目別 支援實績

(單位：萬$,%)

年度 / 區分	1989		1990		1991		計	
		%		%		%	('89~'91)	%
〈資本財또는生産財〉	229	17.5	142	12.3	125	10.0	486	11.3
工作·産業機械	139	11.1	73	6.3	80	6.4	292	6
農機械 및 裝備	80	6.4	69	6	45	3.6	194	5.3
〈消費財〉	877	69.8	959	82.6	991	79.9	2,827	77.3
輸送用 機械	473	37.6	461	39.7	498	40.1	1,432	39.1
컴퓨터 및 事務機器	198	15.8	218	18.8	234	18.9	650	17.8
醫療機器·醫藥品	124	9.9	156	13.4	101	8.1	381	10.4
生 必 品	—	—	36	3.1	105	8.5	141	3.9
其 他	82	6.5	88	7.6	53	4.3	223	6.1
〈現 金〉	160	12.7	59	5.1	125	10.1	344	9.4
計	1,256	100	1,160	100	1,241	100	3,657	100

註：1). 韓國國際協力團에서 그동안 使用한 1977~1988間의 品目別 統計는 推定値로 明確한 統計整理가 不可하므로 引用하지 않음.

2). 輸送用機械는 生産에 直接寄與하지 않는 乘用車類가 大部分임.

〈表 Ⅲ－10〉 主要國의 BHN配分(1989)

(單位：%)

	日本	카나다	핀란드	프랑스	獨逸	노르웨이	스웨덴	英國	DAC計
社會인프라및서비스	19.7	22.2	30.7	39.0	27.0	20.4	15.6	27.2	25.3
農 業 分 野	11.9	11.1	13.4	6.9	6.5	19.1	9.1	8.8	10.1
食 糧 援 助	0.4	7.0	0.1	0.9	2.7	0.5	0.2	1.5	4.1
緊 急 援 助	2.3	1.6	5.6	—	0.7	11.8	16.7	1.8	2.1
BHN 計	34.3	41.9	49.8	46.8	36.9	51.8	41.6	39.3	41.6
其 他	65.7	58.1	50.2	53.2	63.1	48.2	58.4	60.7	58.4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日本通産省, 經濟協力의 現狀과 問題点(1992)

이고 公正한 開發(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努力을 傾注해야 될 것이다.

바. 支援形態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支援形態는 一般的으로 프로젝트型事業, 프로그램型援助, 非프로젝트援助(財政支援, 構造調整援助, 商品援助等), 災難救護, 食糧援助等으로 區分되고 있으며 主要 先進國의 境遇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型援助를 爲主로 支援하고 있다.

〈表 Ⅲ－11〉 日本 無償援助 支援形態(1990)

(單位：百萬$)

計	프로젝트	非프로젝트	災難救護	食糧援助	其 他
1,358.43	1,037.06	146.78	46.40	37.09	91.1
(100)	(76.3)	(10.8)	(3.4)	(2.7)	(6.7)

資料：日本外務省, 前揭書

註：約束額 基準

우리나라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1977～1991期間中 支援形態別 實績을 보면 機資材 供與가 8,560萬$로 全體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主로 災難救護等을 目的으로 供與된 現金支援은 956萬$로 9.2%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協力形態가 連繫되어 援助効果가 큰 事業으로 評價되고 있는 프로젝트型事業은 868萬$로 8.4$에 不過하다.

〈表 Ⅲ－12〉 支援形態別 實績('77～'91)

(單位：萬$)

計	機資材供與	現金支援	프로젝트型事業
10,384	8,560	956	868
(100%)	(82.4)	(9.2)	(8.4)

3. 開發調査

가. 沿革 및 法的根據

우리나라 開發調査의 法的根據는 1980年 制定된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 第4項 1號의 『海外建設市場의 開拓을 爲한 對外無償技術用役의 提供』이라는 規程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1989年에는 建設部訓令 第775號로 對外無償技術用役提供事業 管理規程을 制定), 그동안 開發調査는 建設部(實質的인 事業施行主體는 韓國海外技術公社 : KCI)가 實施해온 無償技術用役 提供事業이 大部分이었다.[3] 卽 建設部에서는 海外技術用役進出을 擴大하고 後續工事의 受注機會를 創出함으로써 國産 機資材 輸出을 圖謀하기 爲하여 1984年부터 開發途上國에 對한 無償技術用役提供事業을 推進한 것이 우리나라 開發調査의 始初라 할 수 있다.

開發調査는 建設部外에도 經濟企劃院, 科學技術處 및 外務部等에서 ODA의 一環으로 開途國에 對한 技術協力 및 對外經濟協力基金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해 部處別로 散發的으로 小規模로 實施되어왔으나 實施體制의 未洽性, 事業規模의 零細性等에 따른 問題點이 露呈되어 이에 對한 效率的인 事業遂行의 必要性이 提起되었다.

이에따라 1991年 1月에 制定된 韓國國際協力團法(法令 第4313號) 第7條 第1項 다, 라에 特定協力對象地域에 對한 『無償技術用役의 提供』 및 『開發調査事業에 對한 支援』을 規定하고 그동안 各 部處에서 實施해 오던 業務를 1991年 4月에 發足된 韓國國際協力團에서 承繼하게 됨으로서(但, 無償建設 技術用役業務의 承繼時期에 關하여는 外務部長官과 建設部長官이 協議 決定함), 體系的이고 一貫性있는 開發調査를 推進할 수 있게 되었다.

---

3) 『無償技術用役』이나 『開發調査』等의 用語는 그동안 實施한 事業의 性格, 內容, 節次等으로 보아 이를 區分할 實益이 없다.

나. 槪　念

開發調査란 開發途上國의 經濟·社會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各種 開發事業 및 計劃에 對해 調査團 또는 專門家를 派遣하여 綜合開發計劃, 基礎調査, 妥當性調査, 實施設計를 作成하는等 各 分野에 對해 技術用役을 無償으로 提供하는 事業으로서 通常 世界銀行의 5段階 프로젝트사이클(Project Cycle)[4]인 ①事業

---

4) 프로젝트의 發生에서 實施에 이르는 사이클(Project Cycle)에 關해서는 學者나 各國에 따라 그 段階가 相異하고 各 段階別 名稱과 業務內容에 약간의 差異가 있으나 代表的으로 W.C. Baum의 4段階와 世界銀行의 5段階를 들 수 있으며 各國은 便宜에 따라 이 보다 複雜하게 몇個의 段階를 追加하고 있고 各 段階別로 具體的인 施行計劃과 業務內容이 매우 多樣하게 展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世界銀行等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① 프로젝트의 發掘(Identification) 또는 着想(Conception)
② 프로젝트의 準備 또는 作成(Preparation) 또는 形成(Formation)
③ 프로젝트의 審査(Appraisal) 또는 承認(Approval)
④ 프로젝트의 實施 또는 執行(Implementation) 및 監理 또는 監督(Supervision)
⑤ 프로젝트의 運營(Operation)과 評價(Evaluation)

• 美國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① 國家開發計劃書 樹立(Country Development Statement)
② 事業檢討書 作成(Project Identification Document)
③ 事業計劃書 作成(Project Paper)
④ 事業實施(Project Implementation)
⑤ 모니터링 및 評價(Monitering and Evaluation)

• 日本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① 發掘(Identification)
② 形成(Formation) 및 準備(Preparation)
③ 審査(Appraisal)
④ 實施(Implementation)
⑤ 監理(Supervision)
⑥ 評價(Evaluation)

• 英國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① 發掘(Identification)
② 計劃(Design)
③ 審査(Appraisal)
④ 承認(Approval)
⑤ 實施(Implementation)
⑥ 運營 및 評價(Operation and Evaluation)

發掘 → ②準備 → ③審査 → ④實施 → ⑤評價의 1,2段階인 事業發掘 및 準備段階에 該當하는 事業으로 볼 수 있다.[5)]

따라서 開發調査는 本事業 實施를 爲한 事前準備 段階로서 그 調査 結果는 基礎調査, 妥當性調査 等에 對한 報告書로 作成된 後 相對國 政府에 提出되어 政策判斷의 基礎資料로 活用됨과 同時에 向後 先進國 및 國際金融機關 等으로부터의 本 事業에 必要한 資金調達을 爲한 資料로도 活用케 된다.

日本이나 歐美先進國에서의 開發調査는 過去 植民地 統治國으로서 歷史가 오래되고 國內市場이 狹小하므로 海外開發프로젝트의 重要性이 認識되었다는 點과 國內業界의 活動과 政府의 支援等에서도 海外프로젝트에 力點을 두고 發展되어왔다.

따라서 오늘날 英國을 爲始한 많은 國家가 開發調査를 遂行하는 自國의 컨설팅 企業의 海外活動에 對한 體制造成을 爲한 支援은 勿論 補助金을 支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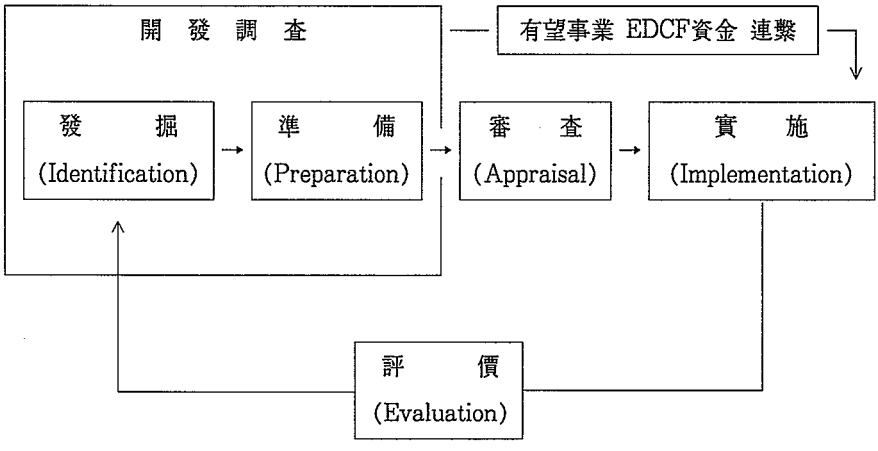
• 카나다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① 發掘(Identification)
② 妥當性調査 및 計劃(Feasibility and Design)
③ 承認(Approval)
④ 契約(Contracting Process)
⑤ 實施·모니터링 및 統制(Implementation, Monitering and Control)
⑥ 評價(Evaluation)
⑦ 終結(Project Termination)

• 濠洲의 프로젝트 實施段階
① 國家戰略樹立(Country Strategy Formulation)
② 國家 프로그램開發(Country Program Development)
③ 發掘 및 最初評價(Identification & Initial Assessment)
④ 準備 및 計劃(Preparation & Design)
⑤ 實施 및 監理(Implementation & Monitering)
⑥ 終了 및 評價(Completion & Evaluation)

5) 韓國國際協力團 事業遂行指針(制定 1991. 4. 23) 第3條의 開發調査等에 關한 槪念定義
8項. "無償技術用役提供"이라함은 特定地域에서 推進되는 開發事業에 對한 妥當性調査 및 實施設計를 爲하여 無償으로 技術用役을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9項. "開發調査事業"이란 特定地域의 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事業의 推進을 支援하기 爲하여 그 事業의 諸般妥當性을 包含한 綜合計劃을 作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는等 컨설팅産業을 育成하고 있으며 日本(JICA)의 境遇는 民間企業이 行하는 프로젝트에 對한 投融資支援은 勿論 開發調査業務까지 提供(開發協力事業)하여 事業의 圓滑한 實施를 圖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前述한 바와 같이 海外建設市場의 開拓을 爲한 目的等으로 1980年代부터 政府의 開發調査가 本格的으로 實施되기 始作하였다. 우리나라의 開發調査는 前述한 韓國國際協力團 事業修行指針 第3條의 規程에서와 같이 日本과 매우 類似한 制度를 採擇하고 있으며 歐美制度와는 實施體制와 目的等이 다소 相異하므로 이에대한 옳바른 理解가 必要하다.

〈圖 Ⅲ－1〉 프로젝트 사이클의 各段階



一般的으로 프로젝트란 目標達城을 爲한 複合的인 行爲의 推進으로 定義(Robertson)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管理過程은 繼續的이고 循環的인 하나의 週期를 形成한다.

開發援助의 프로젝트週期를 管理하는 過程은 나라에 따라 相異한데 美國(AID), 英國(ODA), 카나다(CIDA)等의 援助機關에서와 같이 5段階를 單一機關에서 一貫性있게 主導하는 境遇(이를 『歐美型』 또는 『一貫實施型』이라 부르

기로 한다)와 日本과 같이 5段階中 前 2段階인 事業의 發掘·準備는 JICA에서, 殘餘 段階는 OECF에서 各各 分離하여 管理하는 境遇(이를 『日本型』 또는 『區分實施型』이라 부르기로 한다)로 大分될 수 있다.

한마디로 兩者의 長短點을 判斷하기란 쉽지않다. 프로젝트를 受授國 政府의 要請에서부터 事業完了時(또는 評價)까지 所謂 完全한 形態의 프로젝트를 遂行하는 『一貫實施型』의 境遇에도 事業의 妥當性이 없다고 判斷되어 事業을 中斷하거나 事業施行中에라도 政治·外交的變化와 豫算制約으로 事業施行에 蹉跌을 겪게되는 境遇 相對國과의 摩擦이 發生할 素地가 있으며, 援助國이 開發프로젝트의 全段階를 獨自的으로 遂行하는 境遇가 많으므로 借款條件, 技術移轉等에 對한 受授國의 意思反映이 困難한 境遇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分離實施하는 日本의 『區分實施型』의 境遇는 大部分의 開途國이 社會·經濟를 發展시켜나가기 爲해 必要한 開發調査를 實施하려해도 人力·技術·資金 等에 制約이 있어 이를 實施하지 못하는 開途國들에게 開發調査를 實施하여 必要한 情報와 關聯技術을 移轉시켜주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供與國側으로서도 開途國의 資源等 情報獲得은 勿論 個別 프로젝트에 關聯된 OECF의 審査資料로서 使用되는等 技術協力과 資本協力에 連繫시키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境遇 開發調査는 妥當性調査報告書를 開途國에 提供함으로써 事業이 終了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의 具體的인 成果를 完成시키기 爲해 調査結果를 資金協力에 連結시키는 努力을 하게되는데 受援國은 後續事業施行에 所要로 하는 自己資金의 調達이 容易치 않는 境遇 先進融資國이나 國際金融機關에 資金協力을 要請하거나 또는 日本에 資金協力을 要請하게 되는 것이며 이 境遇 日本은 OECF나 無償資金協力에 連結시키거나 또는 技術協力의 테두리안에서 機資材供與와 專門家의 派遣 等을 組合하여 對應한다.

各國의 開發調査節次에 對해서는 第2部에서 詳論키로하고 開發調査의 『日本型』과 『歐美型』의 特徵과 長短點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兩制度의 特徵

<table>
<tr><th>區分</th><th>日本型(區分實施型)</th><th>歐美型(一貫實施型)</th></tr>
<tr><td>事業實施體制</td><td>• 開發調査를 爲한 獨立된 豫算과 組織을 갖추고 있음
• 開發調査 擔當機關(JICA)과 資金協力 擔當機關(OECF)이 別個의 組織임
• 開發프로젝트의 HARDWARE보다는 計劃樹立 및 調査技法傳受等 SOFTWARE에 重點을 둠
• 資金協力 보다는 技術協力의 一還으로 開發調査가 實施됨</td><td>• 開發調査를 위한 獨立된 豫算과 組織을 갖추고 있지 않음
• 大部分의 援助機關이 技術協力事業과 資金協力事業을 兼하고 있음
• 開發프로젝트의 土木, 建築工事等의 HARDWARE 構築 및 設置에 모든 活動이 置重됨
• 開發調査에 該當하는 調査活動은 資金協力을 爲한 準備過程으로 取扱됨</td></tr>
<tr><td>프로젝트 사이클과 開發調査</td><td colspan="2">(要請)→事業發掘→妥當性調査 → 融資審査→實施·監理→(完了)…>評價
〈日本〉 技術協力(開發調査) JICA ／ 資金協力 OECF
〈歐美國〉 技術 및資金協力 美國(AID), 英國(ODA), 카나다(CIDA)
〈韓國〉 技術協力(開發調査) KOICA ／ 資金協力 EDCF</td></tr>
<tr><td>事業目的</td><td>• 受援國에 日本의 OECF는 勿論 他國의 援助機關이나 國際金融機關等에 資金申請을 할 수 있는 資料의 生成 및 提供을 目的으로 함</td><td>• 特定 開發프로젝트의 資金協力에 앞서 그 妥當性 與否를 確認하거나 入札 等에 必要한 資料를 作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함</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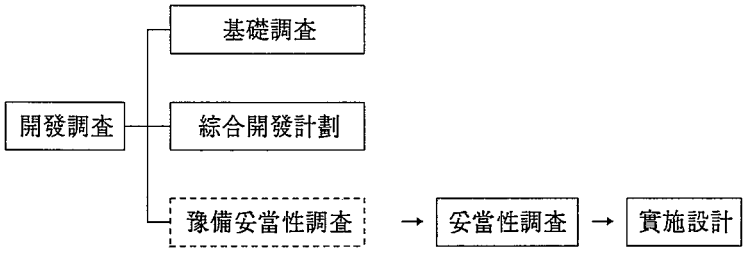
區分	日本型(區分實施型)	歐美型(一貫實施型)
事業發掘體制	• 海外事務所는 相對國 政府와 隨時 協議를 通하여 開發프로젝트의 成案을 도와줌 • 成案된 事業이 支援對象事業이 되기 爲해서는 外交的 通路를 通한 正式 支援 要請을 必要로 함	• 政治的, 經濟的 戰略에 依據 主要 受援國에 對해 COUNTRY PROGRAM이 作成됨 • 海外事務所에서는 同 PROGRAM의 範圍內에서 受援國政府가 提出하는 資料를 審査하여 支援與否를 決定하는 境遇가 많음

• 兩制度의 長短點

區分	日本型(區分實施型)	歐美型(一貫實施型)
長點	• 적은 費用으로 受援國의 開發計劃樹立에 貢獻할 수 있으며, 相對國 政策立案者들과의 協力體制 構築이 可能 • 供與國이 開發計劃 立案時부터 參與함으로써 開發情報를 早期에 把握 • 적은費用으로 多數의 開發프로젝트에 關與함으로써 受援國에 對한 影響力을 增大시킬 수 있고, 各 分野에 風富한 情報蓄積이 可能함 • 調査結果 妥當性이 없다고 判明될 境遇 相對國과 별 摩擦	• 開發프로젝트의 準備段階부터 本事業完成까지 一貫實施하므로 可視的 效果가 分明함 • 처음부터 本事業 實施에 對한 約束이 分明하므로 受援國이 積極的임 • 開發프로젝트의 損益槪念을 分明히 하므로 投資가 效率的임 • 現地事務所가 一定規模 以下의 事業은 支援與否를 決定할 수 있으므로 現地實情에 맞는 프로젝트의 實施 可能 • 大規模 綜合開發프로젝트를 實施할 境遇 受援國의 社會的, 經

區分	日本型(區分實施型)	歐美型(一貫實施型)
長點	없이 事業의 마무리가 可能함 • 自國의 資金協力 機關 및 金融機關 等에게 客觀性 있는 審査資料 提供→資金協力의 RISK를 줄임 • 自國內의 用役業體 및 專門家 養成→國際的 感覺을 갖춘 컨설턴트 育成이 可能함	濟的 發展効果를 直接的으로 期待할 수 있음 • 調査結果가 本事業으로 곧바로 連結되므로 調査業務에 對한 責任所在가 分明함
短點	• 調査結果가 本事業에 반드시 連結되는 것이 아니므로 調査結果가 死藏되는 境遇가 發生함 • 本事業에 對한 支援約束이 分明치 않으므로 相對國이 消極的임 • 調査結果에 對한 責任所在가 分明치 않음 • 調査 着手를 爲해서는 반드시 外交的 經路를 通해야 하므로 柔軟性이 缺如됨 • 資金協力과의 連繫率이 低調함	• 事業의 妥當性이 없다고 判明되어 事業을 中斷하거나 事業施行中에라도 政治·外交的變化와 豫算制約으로 事業施行에 蹉跌을 겪게되는 境遇 對象國과 摩擦이 發生할 素地가 큼 • 援助國이 開發프로젝트의 全段階를 獨自的으로 遂行하는 境遇가 많으므로 借款條件·技術移轉 等에 對한 受援國의 意思反映이 困難함 • 調査結果가 곧바로 本事業에 連結되므로 危險負擔 可能性이 있음 • 大規模의 資金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事業推進이 不可能함

다. 種　　類



- 基礎調査(Basic Study)

  各種 經濟開發 및 地域開發計劃 樹立에 利用할 수 있도록 基礎的인 調査를 遂行하는 것으로서 賦存資源 現況을 調査하거나, 地質圖 및 探査圖, 海圖等을 作成하는 資源開發 基礎調査와 交通量調査 等이 이에 該當한다.

- 綜合開發計劃(Master Plan)

  一定地域 또는 特定産業 分野에서의 開發可能性 및 開發方向을 提示하는 調査이다.

- 妥當性調査(Feasibility Study)

  特定 프로젝트의 實施가 經濟的, 技術的으로 妥當한지 與否를 評價하고 同 프로젝트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爲한 方法·手段 및 開發目標等을 決定하는 調査로서 開發調査의 大部分을 占有한다.

- 實施設計調査(Implementation & Detailed Design)

  特定 프로젝트에 對해 妥當性調査를 한 結果 經濟的, 技術的으로 適合하다는 結論을 얻은 境遇 本工事着手를 하기 爲하여 具體的으로 必要한 實施設計圖, 工事施方書, 入札關係書類等을 作成하는 것을 말한다.

라. 支援分野

開發調査를 實施하는 對象分野는 매우 廣範圍하다. 經濟나 技術, 人力分野의 綜合開發計劃을 爲始하여 産業別로 農林水産業, 製造業, 資源, 道路·港灣·鐵道·電力·通信등의 社會間接資本施設, 敎育, 環境, 保健·醫療등의 分野에 이르기까

지 모든 分野를 包括하나 우리나라의 初創期 與件을 勘案 當分間은 公共部門에 대한 中小規模 開發調査가 大部分을 이룰 것으로 展望된다.

〈圖 Ⅲ-2〉 開發調査 對象分野

區 分	細 部 分 野
開發計劃	開發計劃一般, 綜合 또는 地域開發計劃, 都市開發計劃, 環境保存計劃, 經濟開發計劃
建 設	港灣, 空港, 道路, 鐵道, 橋梁, 上下水道, 河川, 堤防
測量 및 土質調査	航空測量, 海洋測量, 一般測量, 試錐
建 築	住宅, 教育文化施設, 醫療福祉施設, 通信放送施設, 生産流通施設
運輸·交通	陸運, 鐵道, 海運, 船舶, 航空
通信·放送	通信, 放送, 電信, 電話, 라디오, TV放送, 郵便
農業·畜産 林業·水産	農業土木, 養蠶, 農産品加工, 農業機械化, 林業, 水産
工 業	重工業, 輕工業, 中小企業, 工業團地
鑛 業	金屬資源開發, 石炭開發
에 너 지	電力, 가스, 原子力
保健·醫療	保健, 醫療一般, 人口, 家族計劃, 環境評價
其 他	行政, 統計, 情報, 觀光, 教育文化, 勞動

마. 妥當性調査의 段階別 區分

開發調査의 大部分을 이루는 妥當性調査 作業段階는 다음과 같다.[6]

○ 事前調査(Project Identification) : 各種 프로젝트의 綜合開發計劃, 妥當

6) 綜合開發計劃調査, 實施設計調査 및 資源調査等도 妥當性調査와 類似한 作業過程을 거치게 된다.

性調査等의 本格調査에 앞서 行하는 準備段階의 調査이며 相對國 政府와 Scope of Work를 協議함과 同時에 本格調査의 實施方針을 檢討하는 것을 말한다.

- 現地政府와 TOR(안) 協議 및 現場踏査

○ 豫備妥當性調査(Pre-Feasibility Study) : 妥當性調査의 規模가 尨大하거나 長期間을 要하는 境遇 本妥當性調査에 앞서 事業의 經濟的, 技術的 妥當性을 槪略的으로 評價하는 作業을 말한다.

- 一般的으로는 豫備妥當性調査 段階를 省略하고 바로 本 妥當性 調査를 實施한다.

○ 妥當性調査(Feasibility Study) : 特定事業에 對해 經濟的, 技術的 側面에서 當該 프로젝트의 場所, 時間, 必要한 技術, 必要한 投資, 開發의 目標, 프로젝트의 規模 및 內容, 波及效果等을 精密 檢討하여 當該 프로젝트의 Input과 Output을 算出함으로써 最終的으로 當該 프로젝트의 適合性 與否를 判斷하는 作業을 말한다.

- 作成되는 書類 : Inception Report, Progress Report, Interim Report, Final Report

바. 目的과 效果

開發調査의 目的은 開途國이 推進코자하는 主要開發事業의 計劃樹立·準備등에 對한 基礎 및 妥當性調査를 爲한 技術用役을 無償으로 提供함으로써 受援國의 經濟·社會開發에 寄與함과 同時에, 先發開途國으로서 國際經濟社會에서의 役割을 遂行함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 受援國에 주는 效果

- 開發프로젝트에 對한 事業推進情報의 提供
  - ·· 事業의 妥當性與否判定 및 事業優先順位 提示
  - ·· 先進國이나 國際金融機關等에 事業推進을 爲한 財源調達에 必要한 資料 提供

- 開發調査過程에서 相對國 技術者와의 共同作業으로 開發調査에 關聯된 技術을 移轉

○ 供與國에 주는 效果

- 開途國과의 經濟·外交協力 增進
- 我國의 開途國進出 機會擴大
  - ·· 關聯事業等에 關한 廣範圍한 資料 및 情報의 蒐集
  - ·· 關聯事業 推進時 我國業體 參與可能性 提高
  - ·· 國產機資材輸出 및 專門人力 活用
- 對外經濟協力基金과 連繫 良質의 프로젝트 發掘 및 借款供與 決定에 有用한 資料提供
- 國際水準에 比해 相對的으로 낮은 國內用役技術水準의 海外進出에 따른 情報·經驗蓄積을 通한 技術向上과 競爭力 提高

사. 實施節次

韓國國際協力團에서 실시하고 있는 開發調査節次 및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圖 Ⅲ-3〉 開發調査節次 및 主要內容

需要調査 實施
- 協力團이 主管, 在外公館등 國內外 關聯部處를 對象으로 實施
- 受援國政府로부터 事業要請書 接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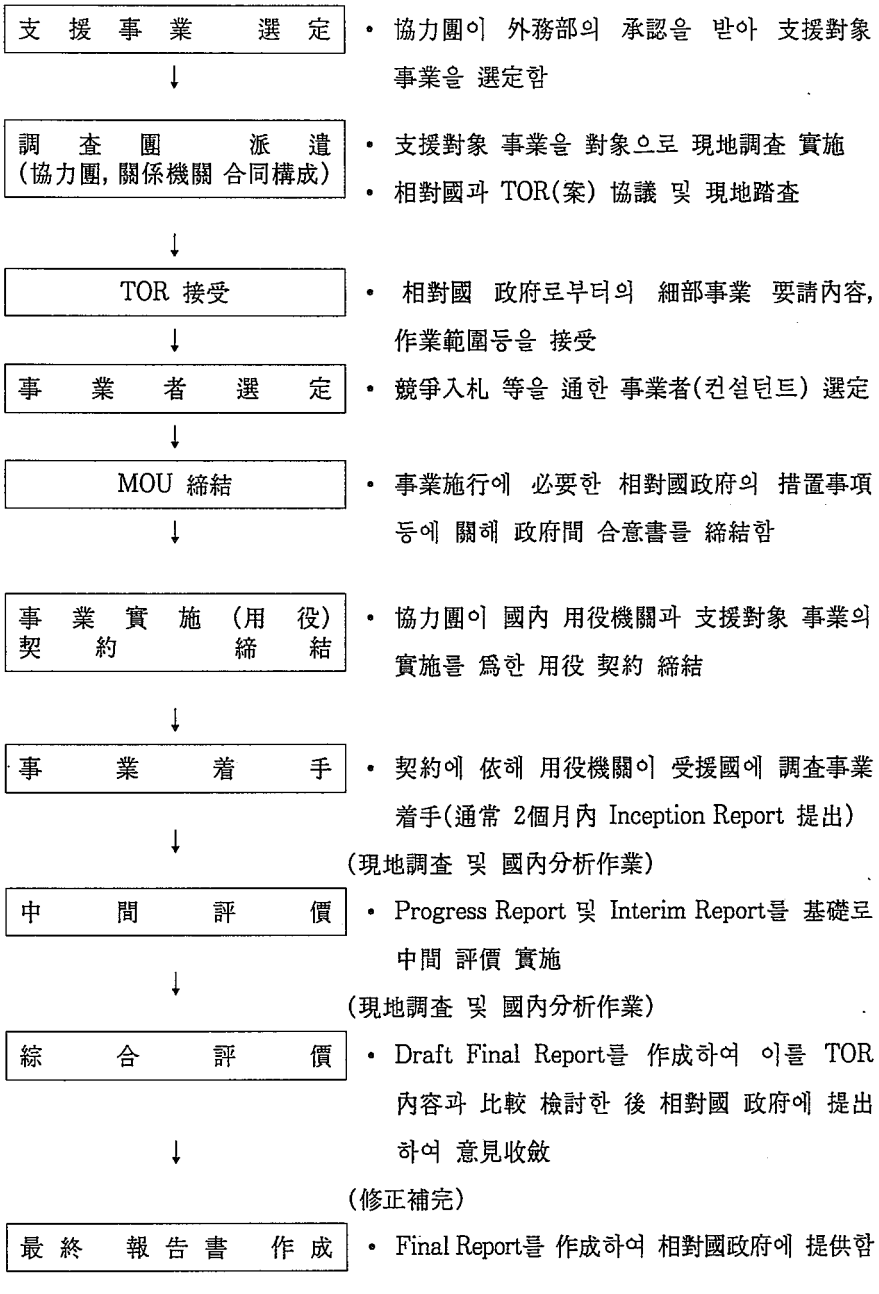
↓

候補事業 發掘
- 需要調査 實施結果 候補事業 聚合
- 詳細事業 內容把握(在外公館등)

↓

支援事業 選定作業
- 候補事業을 對象으로 支援事業 選定을 위한 協力團, 外務部(關聯機關)間 協議, 檢討作業

↓


支 援 事 業 選 定
• 協力團이 外務部의 承認을 받아 支援對象 事業을 選定함
調 査 團 派 遣 (協力團, 關係機關 合同構成)
• 支援對象 事業을 對象으로 現地調査 實施
• 相對國과 TOR(案) 協議 및 現地踏査
TOR 接受
• 相對國 政府로부터의 細部事業 要請內容, 作業範圍등을 接受
事 業 者 選 定
• 競爭入札 等을 通한 事業者(컨설턴트) 選定
MOU 締結
• 事業施行에 必要한 相對國政府의 措置事項 등에 關해 政府間 合意書를 締結함
事 業 實 施 (用 役) 契 約 締 結
• 協力團이 國內 用役機關과 支援對象 事業의 實施를 爲한 用役 契約 締結
事 業 着 手
• 契約에 依해 用役機關이 受援國에 調査事業 着手(通常 2個月內 Inception Report 提出)
(現地調査 및 國內分析作業)
中 間 評 價
• Progress Report 및 Interim Report를 基礎로 中間 評價 實施
(現地調査 및 國內分析作業)
綜 合 評 價
• Draft Final Report를 作成하여 이를 TOR 內容과 比較 檢討한 後 相對國 政府에 提出하여 意見收斂
(修正補完)
最 終 報 告 書 作 成
• Final Report를 作成하여 相對國政府에 提供함

아. 實　績

우리나라의 ODA部門 開發調査는 1984년 業務가 始作된 以來 8年間의 實績이 16個 國家(單純海外外出張 5個國 除外)에 總 61件으로서 (單一事業純計基準은 45件) 件當 支援規模는 1.5億원으로 年間 300餘件에 件當 支援規模가 4億원이 넘는 日本에 比較하면 微微한 實情이나 國際社會에서의 政治·外交的 變化와 經濟的 位相을 勘案할 때 事業規模의 急激한 伸張이 豫想된다.

〈表 Ⅲ－13〉　　開發調査의 年度別, 部處別實績

(單位 : 件, 百萬원)

年度 / 部處別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 ('84-'91)	1992 計劃
建設部	1,000	1,000	790.5	709.5	800	974	974.5	1,023.7	7,272.2	1,243.3
	(4)	(4)	(6)	(3)	(5)	(5)	(8)	(9)	(44)	(5)
科技處		27	30	30	38	17.2			142.2	
		(1)	(1)	(1)	(2)	(2)			(7)	
外務部			348						348	
			(2)						(2)	
遞信部						184	345	500	1,029	
						(1)	(1)	(2)	(4)	
經濟企劃院						86.1			86.1	
						(2)			(2)	
韓國國際協力團								37	37	960
								(2)	(2)	(11)
計	1,000	1,027	1,168.5	739.5	838	1,261.3	1,319.5	1,560.7	8,914.5	2,203.3
	(4)	(5)	(9)	(4)	(7)	(10)	(9)	(13)	(61)	(16)

註 : (　)內는 單一年度施行基準 事業件數로 1984~1991間의 單一事業純計基準 件數는 45件임.

〈表 Ⅲ－14〉 開發調査의 地域別 實績

(件, 百萬원)

地域別	件 數	%	事業費	%
〈亞細亞〉	45	74	6,855.8	76.9
인 도 네 시 아	15	24.6	2,792.5	31.3
방 글 라 데 시	8	13.2	1,633.9	18.3
파 키 스 탄	4	6.6	522.5	5.9
네 팔	4	6.6	644.1	7.2
태 국	5	8.2	337.7	3.8
필 리 핀	3	4.9	380	4.3
스 리 랑 카	4	6.6	520	5.8
其他(인니·말련·브루나이·태국)	2	3.3	25.1	0.3
〈大洋洲〉	7	11.5	1,156	12.9
P N G	5	8.2	841	9.4
西 사 모 아	2	3.3	315	3.5
〈아프리카〉	4	6.5	515.6	5.7
세 네 갈	1	1.6	174	1.9
케 냐	1	1.6	174	1.9
中 央 아 프 리 카	2	3.3	167.6	1.9
〈中南美〉	3	4.8	57.1	0.7
콜 롬 비 아	1	1.6	25	0.3
코 스 타 리 카	1	1.6	5.1	0.1
其他(브라질·페루·파나마)	1	1.6	27	0.3
〈東 歐〉	2	3.2	330	3.8
루 마 니 아	1	1.6	300	3.4
유 고	1	1.6	30	0.4
計	61	100	8,914.5	100

61件을 國家別로 보면 아세아地域(45件)이 가장 많고 大洋洲(7件), 아프리카地域(4件), 中南美地域(3件), 東歐地域(2件)의 順이다. 國別로는 總 16個國中 印尼가 15件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8件), PNG(5件), 泰國(5件), 네팔(4件), 파키스탄(4件), 스리랑카(4件), 비율빈(3件), 西사모아(2件), 中央아프리카(2件) 및 세네갈, 케냐,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루마니아 및 유고等이 各 1件이다.

分野別로 보면 道路建設이 가장 많고(15件), 地下水等 農業開發(10件), 洪水調節 및 排水(8件), 硏究所 및 技術協力(7件), 橋梁 및 터널建設(5件), 都市開發·上下水道(5件), 通信(4件), 資源開發(2件), 鐵道(2件), 造船所建設(2件) 및 空港建設(1件)等 多樣하게 施行되었다.

〈表 Ⅲ－15〉 開發調査의 分野別 實績

(單位 : 件, 百萬원)

分野別	件數	%	事業費	%
道路建設	15	24.6	2,559.3	28.7
地下水等 農業開發	10	16.3	864.9	9.7
洪水調節 및 排水	8	13.1	1,525.8	17.1
橋樑 및 터널建設	5	8.2	916.5	10.3
硏究所 및 科學技術	7	11.5	167.9	1.9
都市開發·上下水道	5	8.2	1,157	13.0
資源開發	2	3.3	42.1	0.5
通信	4	6.6	1,029	11.5
鐵道	2	3.3	320	3.6
空港	1	1.6	17	0.2
造船所建設	2	3.3	315	3.5
計	61	100.0	8,914.5	100.0

4. 프로젝트型事業

가. 概　要

우리나라의 프로젝트型事業은 1978年 네팔에 蠶業試驗研究所 運營支援을 始作으로 1992年末까지 總 13件 977萬$의 豫算이 支援되었다. 件當 支援規模는 인도네시아와 수단의 職業訓練所를 除外하고는 62萬$로 日本의 640萬$(1988基準) 및 年間施行 50餘國 200件 內外에 比해 아직은 小規模이며 機資材供與事業費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10% 未滿에 不過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프로젝트型事業으로 推進된 事業들중 一部는 單純히 機資材만을 研究所 또는 訓練所等 프로젝트에 數年間에 걸쳐 提供하였다는 點에서 프로젝트型事業으로 看做되었으나 이들 事業은 嚴密한 意味에서 單純機資材供與 로 볼수 있다.

나. 實　績

事業의 地域別 配分을 보면 아세아 5件, 中南美 4件 및 아프리카 4件이고 分野別로는 農林水產業과 職業訓練이 各各 5件, 研究開發, 保健 및 通信이 各各 1件이다. 1992年부터는 이의 本格的인 實施를 爲해 수단에 450萬$ 規模(1992年은 58萬$)의 職業訓練所 建立事業外에도 當初 新規事業으로 10件에 200萬$(機資材 供與의 18%)를 計劃하였으나 事業發掘의 어려움과 受援國의 事情등으로 3個國 3件만이 推進되었을 뿐이다.

5. 技術協力

가. 概　要

技術協力은 DAC에 따르면 開途國의 經濟·社會發展과 國民福祉向上을 目的으로 開途國 國民의 知識, 技能, 生產能力등을 提高하기 爲한 資源의 提供을 意味하는 것으로, 政府次元의 技術協力은 政府 또는 그 實施機關이 該當 開途

〈表 Ⅲ－16〉 프로젝트型事業 支援實績

(單位：萬$)

國 名	프로젝트名	分 野	期 間	事業費			
				計	1978-1991	1992	1993以後
네 팔	蠶業試驗所 運營支援	農 業	'78～'92	53.8	52	1.8	－
태 국	示範農場 運營支援	農 業	'89～'92	28	19.6	8.4	－
	廢水處理 研究調査	研究開發	'90	7	7	－	－
인도네시아	職業訓練所 支援	職業訓練	'86～'94	520	410	26	84
쿡아일랜드	眞珠養殖場 運營支援	水 産 業	'86～'92	29.4	22.4	7	－
도미니카	農村地域 學校建築支援	敎 育	'92～'94	60	－	20	40
자메이카	技術訓練所 支援	職業訓練	'89～'91	60.5	51	9.5	－
콜롬비아	電子通信研究所支援	通 信	'89～'93	100	46.2	14.5	39.3
페 루	保健所 建立支援	保 健	'92～'95	80	－	19.5	60.5
라이베리아	示範農場 運營支援	農 業	'88～'90	80.8	80.8	－	－
세 네 갈	示範農場 運營支援	農 業	'86～'90	79	79	－	－
케 냐	技術訓練所 支援	職業訓練	'89～'90	100	100	－	－
수 단	職業訓練所 支援	職業訓練	'92～'96	450	－	2.4	447.6
	計			1,648.5	868	109.1	671.4

國에 대하여 無償으로 訓練生招請, 專門家派遣, 物資·用役의 提供등의 事業을 實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技術協力의 對象은 生産·經營技術 뿐만 아니라 敎育·行政·社會開發에 관한 公共技術등 거의 모든 分野의 技術을 包含하며 韓國國際協力團에서는 硏修生招請, 專門家 派遣事業은 技術協力事業으로 醫療團등 派遣事業 및 靑年奉仕團 派遣事業은 人力協力事業으로 區分하여 實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政府次元 對 開途國 技術協力은 1963年 USAID의 援助資金으로 開途國 政府의 委託을 받아 硏修生을 받아들인 것이 그 嚆矢로서 우리 政府資金에 依한 硏修生招請은 1965年부터 實施되었으며 專門家 派遣은 1967年부터 始作되었다. 그리고 人力協力事業의 醫療團派遣 事業은 1968年, 靑年海外奉仕團 派遣事業은 1990年부터 各各 始作되었다.

나. 硏修生招請

硏修生 招請은 1963年 最初로 USAID 資金에 의하여 實施된 以來 韓國國際協力團 發足 以前인 1990年까지 꾸준히 實績이 增加되어 왔다. 1991年 招請人員은 當初 計劃人員 436名 對比 83% 水準인 362名이며 前年度 實績 602名 對比 240名이 減少하였다. 이는 關聯豫算이 1990年 1,989百萬원에서 1991年 1,781百萬원으로 大幅 縮小되어 當初 計劃人員이 적게 策定되었을 뿐아니라, 韓國國際協力團 新設에 따라 事業 準備期間이 促迫하였고, 인도네시아, 페루, OAS, 在蘇同胞 硏修等에 對한 特別約定에 依한 硏修課程이 實施 되지 못한 것

〈表 Ⅲ－17〉 研修生 地域別 招請實績

(單位：名, %)

年度 / 地域	1963～1981	1982～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63～'91)
亞細亞	2,411 (80.8)	1,973 (62.9)	325 (60.8)	314 (57.0)	291 (49.1)	328 (54.5)	176 (48.6)	5,818 (66.4)
아프리카	164 (5.5)	540 (17.2)	104 (19.4)	96 (17.3)	103 (17.4)	75 (12.5)	41 (11.3)	1,123 (12.8)
中南美	124 (4.2)	340 (10.8)	64 (12.0)	76 (13.7)	105 (18.0)	109 (18.1)	58 (16.0)	876 (10.0)
中東	279 (9.3)	282 (9.0)	41 (7.7)	50 (9.0)	84 (14.2)	41 (6.8)	27 (7.5)	804 (9.1)
其他	6 (0.2)	3 (0.1)	1 (0.2)	17 (3.1)	9 (1.5)	49 (8.1)	60 (16.6)	145 (1.7)
計	2,984 (100.0)	3,138 (100.0)	535 (100.0)	553 (100.0)	592 (100.0)	602 (100.0)	362 (100.0)	8,766 (100.0)

〈表 Ⅲ－18〉 研修生 分野別 招請實績

(單位：名, %)

年度 / 分野	1963～1971	1972～1981	1982～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63~'91)
鑛工業	35 (4.3)	271 (12.5)	311 (9.9)	71 (13.3)	60 (10.9)	157 (26.5)	85 (14.1)	5 (1.4)	995 (11.4)
農林水產業	125 (15.2)	856 (39.6)	967 (30.8)	142 (26.5)	97 (17.5)	104 (17.6)	126 (20.9)	102 (28.2)	2,519 (28.7)
科學·敎育·行政	187 (22.8)	349 (16.1)	915 (29.2)	83 (3.3)	259 (46.8)	121 (20.4)	221 (36.7)	122 (33.7)	2,257 (25.8)
保健·社會	422 (51.5)	612 (28.3)	264 (8.4)	103 (19.3)	63 (11.4)	119 (20.1)	99 (16.5)	16 (4.4)	1,698 (19.4)
建設	–	–	182 (5.8)	42 (7.9)	48 (8.7)	51 (8.6)	35 (5.8)	42 (11.6)	400 (4.6)
職業訓練	–	–	38 (1.2)	23 (4.3)	26 (4.7)	40 (6.8)	36 (6.0)	48 (13.3)	211 (2.4)
其他	51 (6.2)	76 (3.5)	461 (14.7)	71 (13.3)	–	–	–	27 (7.5)	686 (7.8)
計	820 (100.0)	2,164 (100.0)	3,138 (100.0)	535 (100.0)	553 (100.0)	592 (100.0)	602 (100.0)	362 (100.0)	8,766 (100.0)

이 主要原因이다.

地域別 實績을 보면 1963年~1991年까지의 累計 8,766名中 66.4%인 5,818名이 아시아·大洋洲 地域으로부터 招請되었으며 아프리카 地域 12.8%, 中南美地域 10.0%, 中東地域 9.1%, 其他地域 1.7% 順으로 되어 있다.

이는 日本과 마찬가지로 우니나라와 經濟的, 地理的으로 密接한 關係에 있는 아시아地域에 實績이 集中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分野別 實績을 보면 1963年~1991年까지 累計 8,766名中 農林水產業이 全體의 28.7%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科學·敎育·行政部門이 25.8%, 保健·社會部門이 19.4%, 鑛工業이 11.4%, 建設이 4.6%, 職業訓練이 2.4%, 其他 7.8% 順으로 되어 있다. 年度別로 보면 1963年~1971年에는 保健·社會部門이 51.5%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고, 1972年~1981年과 1982年~1986年에는 農林水產業이 各各 39.6%와 30.8%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1987年 以後에는 每年 分野別 比重의 變化에 대한 起伏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事業遂行에 있어 우리나라의 比較優位 分野에 대한 重点 支援方式보다는 相對國의 要請에 依存한 데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分析될 수 있다.

다. 專門家派遣

專門家 派遣은 硏修生招請과 마찬가지로 1967年 事業始作 以來 꾸준히 事業規模가 增加하여 왔다. 1991年 派遣人員은 36名으로 前年對比 27名이 減少하였으며 當初 計劃人員 40名 對比 90%의 實績을 보여주고 있다. 前年對比 實績不振 事由는 硏修生招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關聯豫算이 1990年의 270百萬원에서 1991年에 93百萬원으로 縮小되었을 뿐아니라 對象國側의 事情으로 要請이 取消되었거나 派遣希望者가 없는 事例등이 發生하였기 때문이다.

地域別 實績은 보면 1963年~1991年까지 累計를 基準으로 全體 558名中 52%인 290名이 아시아·大洋洲 地域에 派遣되었으며, 中南美가 23.3%, 아프리카

〈表 Ⅲ－19〉 專門家 地域別 派遣實績

(單位：名, %)

年度 / 地域	1963～1981	1982～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 ('63～'91)
亞細亞	37 (37.8)	109 (61.0)	26 (57.8)	25 (42.0)	51 (66.2)	28 (44.4)	14 (39.0)	290 (52.0)
아프리카	38 (38.8)	25 (14.0)	9 (20.0)	17 (28.0)	8 (10.4)	2 (3.2)	4 (11.1)	103 (18.4)
中南美	16 (16.3)	41 (22.7)	10 (22.2)	18 (30.0)	13 (16.9)	20 (31.8)	12 (33.3)	130 (23.3)
中東	7 (7.1)	1 (0.6)	—	—	2 (2.6)	7 (11.1)	3 (8.3)	20 (3.6)
其他	—	3 (1.7)	—	—	3 (3.9)	6 (9.5)	3 (8.3)	15 (2.7)
計	98 (100.0)	179 (100.0)	45 (100.0)	60 (100.0)	77 (100.0)	63 (100.0)	36 (100.0)	558 (100.0)

〈表 Ⅲ－20〉 專門家 分野別 派遣實績

(單位：名, %)

年度 / 分野	1963～1971	1972～1981	1982～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 ('63~'91)
鑛工業	13 (72.2)	15 (18.8)	28 (15.6)	12 (26.7)	10 (16.7)	20 (26.0)	4 (6.4)	4 (11.0)	106 (19.0)
農林水產業	3 (16.6)	55 (69.0)	84 (47.0)	19 (42.2)	15 (25.0)	23 (30.0)	21 (33.3)	14 (39.0)	234 (42.0)
科學·敎育·行政	—	4 (5.0)	49 (27.3)	3 (6.7)	24 (40.0)	23 (30.0)	29 (46.0)	14 (39.0)	146 (26.2)
保健·社會	1 (5.6)	3 (3.6)	1 (0.6)	1 (2.2)	—	—	—	2 (5.5)	8 (1.4)
職業訓練	—	—	2 (1.1)	10 (22.2)	11 (18.3)	11 (14.0)	9 (14.3)	—	43 (7.7)
其他	1 (5.6)	3 (3.6)	15 (8.4)	—	—	—	—	2 (5.5)	21 (3.7)
計	18 (100.0)	80 (100.0)	179 (100.0)	45 (100.0)	60 (100.0)	77 (100.0)	63 (100.0)	36 (100.0)	558 (100.0)

地域에 18.5%, 中東地域에 3.6%, 其他地域에 2.7%가 派遣되어 亦是 아시아·太平洋地域 中心으로 實績이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分野別로 보면 1963年~1991年까지 累計 558名中 農林水産業分野에 全體의 42%이 234名이 派遣되었으며 科學·教育·行政 分野에 26.2%, 鑛工業分野에 19%, 職業訓練分野에 7.7%, 保健·社會分野에 1.4%, 其他分野에 3.7%가 派遣되었다. 年度別로 보면 1963年~1971年에 鑛工業이 72.2%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한 반면, 1972年~1987年까지는 農林水産業이 1988年 以後는 科學·教育·行政部門이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다.

라. 醫療團等 派遣

醫療團 等 派遣은 아프리카 및 中東地域 開途國에 醫療團 및 跆拳道 師範을 派遣하여 風土病 等의 豫防 및 治療와 跆拳道 普及을 通한 現地住民의 健康을 增進시켜 兩國間의 友好를 增進하는 事業이다.

醫療團 派遣은 1968年부터 實施한 以來 1991年까지 總 103名이 派遣되었고, 1991年末 現在 11個國에 14名이 活動中에 있으며 跆拳道 師範 派遣은 1972年 以來 1991年까지 總 52名이 派遣되었고 1991年 現在 16個國에 18名이 活動中이다.

兩事業의 派遣殘留人員은 1987年 52名에서 1988年 42名, 1989年 41名, 1990年 37名, 1991年 32名으로 漸次 減少趨勢에 있으며, 醫療團의 境遇 國內醫師들의 平均報酬와의 懸隔한 差異 等으로 經歷이 豐富하고 有能한 醫療團員을 募集하는데 限界가 있는 點이 問題点으로 指摘되고 있다.

마. 青年海外奉仕團 派遣

青年海外奉仕團 派遣은 韓國의 젊은이들이 나눔과 섬김의 精神으로 現地 住民과 一體가 되는 實踐的 參與를 通하여 當該地域의 經濟社會發展 및 協力關

〈表 Ⅲ－21〉 青年奉仕團 國別 派遣實績

(單位：名)

國別 / 年度別	스리랑카	네 팔	필리핀	인 니	泰 國	PNG	휘지	몽 골	計
1990 (1期)	16	14	7	7	—	—	—	—	44
1991 (2期)	7	5	3	5	7	5	5	—	37
1992 (3期)	5	4	8	6	9	6	7	7	52
計	28	23	18	18	16	11	12	7	133

〈表 Ⅲ－22〉 青年奉仕團 分野別 派遣實績

(單位：名)

國別 / 分野別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인니	泰國	PNG	휘지	몽골	計
技 術 協 力	10	8	5	2	4	—	7	3	39
教 育	13	1	—	—	10	—	—	3	27
農 畜 産	—	1	5	10	—	10	2	—	28
看 護 · 保 健	—	11	3	—	—	—	1	—	15
地 域 開 發	4	—	3	5	1	—	—	—	13
코 디 네 이 터	1	2	2	1	1	1	2	1	11
計	28	23	18	18	16	11	12	7	133

係 增進을 爲한 事業으로 事業初期의 諸般與件의 未備에도 不拘하고 第1,2期團員 81名에 이어 1992年 第3期團員 52名을 成功的으로 派遣함으로써 國內外的으로 肯定的인 評價를 받고 있다.

國家別 派遣實績을 보면 스리랑카에 28名으로 가장 많은 人員이 派遣되었고

네팔에 23名,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各各 18名, 泰國에 16名, 휘지에 12名, PNG에 11名, 몽골에 7名 順으로 派遣되었다. 分野別로는 技術協力分野가 39名으로 가장 많고, 農畜産分野 28名, 敎育分野 27名, 看護·保健分野 15名, 地域開發 13名 및 코디네이터 11名 順으로 되어 있다.

6. 對外經濟協力基金

가. 法的根據 및 目的

對外經濟協力基金(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은 對外經濟協力基金法(法律 第3863號, 1986.12)에 依해 設置되었으며 이의 目的은 經濟力向上에 따른 國際的 地位의 上昇으로 後發開途國으로부터의 經濟協力要請이 增大됨에 따라 南南協力(South-South Cooperation)의 基本精神下에 우리나라의 對開途國協力을 能動的으로 遂行함으로써 對外進出 基盤確保를 效率的으로 推進하는데 있다.

나. 支援節次

基金에 依한 借款의 支援節次는 日本의 OECF나 IBRD와 같은 國際支援機關과 類似하다. 開途國이 適切한 事業을 發掘·選定하여 우리나라의 外務部長官과 主務部長官에 支援要請하면 韓國輸出入銀行은 이에 對한 妥當性과 實施可能性等을 檢討한 審査報告書를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한다. 財務部長官은 經濟企劃院長官·外務部長官 等 關聯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支援方針을 決定하며 外務部長官은 該當供與國에 支援方針을 通報하고 兩國政府間에 政府間協定(Exchange of Notes : E/N)과 借款協定(Loan Agreement : L/A)이 締結되면 事業에 必要한 財貨와 用役購買後 資金이 引出되게된다. 이와같은 節次에 依한 그동안의 運用實態를 分析해 본 結果 支援要請 接受로부터 支援決定까지 平均 1年 3個

月(日本의 境遇 所要期間 9個月)이라는 많은 期間이 所要되고있는 點 等이 問題点으로 指摘되고 있다.

다. 基金의 種類와 條件

基金의 融資支援은 크게 開途國政府 또는 法人에 對한 借款과 大韓民國에 對한 海外投融資資金貸出 또는 大韓民國 法人에 對한 出資의 두가지로 區分된다.

開途國政府 또는 法人에 對한 借款에는 5가지 種類가 있는데 이를 보면

① 開途國의 經濟開發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資金을 融資하는 開發事業借款

② 開途國 產業發展에 必要한 機資材의 調達資金을 支援하는 機資材借款

③ 開途國 產業發展에 必要한 機資材 調達資金을 轉貸하기 爲한 資金을 開途國政府 또는 開途國 金融機關에 融資해주는 基金轉貸借款

④ 開途國의 經濟安定을 爲하여 特히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物資를 大韓民國으로부터 輸入하는데 必要한 資金을 支援하는 物資借款

⑤ 經濟開發事業의 準備를 爲한 調査 또는 經濟開發事業의 試驗的 實施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하는 事業準備借款 等이 있다.

다음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海外投融資資金貸出은 大韓民國 國民이 協力事業의 推進을 爲해 海外에 出資 및 融資를 하는 境遇 이에 所要되는 資金을 支援하는 것으로 農林水產業, 炭鑛業 等과 같이 事業의 危險度가 높고 收益性이 낮은 事業, 投資資本의 回收期間이 長期인 事業 또는 中小企業의 海外投資事業인 境遇에 限하여 支援된다.

大韓民國 法人에 對한 出資는 該當協力事業의 推進이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나 收益性이 낮아 이를 推進하는 業體에 基金의 出資로 支援하지 않으면 事業實施가 困難하다고 財務部長官이 認定하는 境遇에 限하여 海外投融資를 目的으로 新設되는 大韓民國 法人에 出資되는 것을 말한다.

基金의 支援條件은 開途國政府, 法人에 對한 借款에 境遇 利子率은 3.5%, 償

還期間은 20年以內 据置期間은 5年以內이다.

〈圖 Ⅳ－4〉 基金支援 條件

區 分	開途國 政府 또는 法人에 대한 借款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海外投融資資金 貸出
① 融資限度	○開發事業借款:外貨所要資金範圍內(現地貨 費用도 一部支援可能함) ○機資材借款, 基金轉貸借款:機資材購買額 範圍內 ○物資借款:物資購買額範圍內 ○事業準備借款 : 所要資金 範圍內	出資 및 融資 等에 必要한 資金의 80%範圍內
② 利子率	年 3.5%以上 (但, 事業準備借款은 年 3.0%以上)	年 5～6% 範圍內
③ 償還期間	20年 以內	15年 以內
④ 据置期間	5年 以內	5年 以內
⑤ 元金償還方法	年 2日 定期分割	年 1日 定期均等 分割
⑥ 利子徵收方法	每 6個月 後取	每 1年 後取
⑦ 擔 保	中央政府, 中央銀行:必要없음 地方自治團體, 法人:中央政府 또는 中央銀行의 支給保證書	國內 또는 國外金融機關의 支給保證書 등
⑧ 表示通貨	원 貨	원 貨

資料 : 韓國輸出入銀行,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制度 (1991. 5)

註 : 大韓民國 法人에 對한 出資의 경우 出資限度는 資本金의 50% 未滿으로 하며 出資方法은 原則的으로 株式取得의 方法에 依함.

라. 財源造成 및 運用實績

基金의 財源은 政府出捐金, 政府投資機關 또는 經濟團體의 出捐金,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出損金, 長期借入金, 債券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基金運用收益金等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基金의 造成實績을 보면 1987年 政府出捐金으로 300億원의 基金이 造成된 後 꾸준히 基金規模를 擴大하여온 結果 1991年에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서 財政出捐 100億원, 借入 500億원이 새로이 造成되어 1991年度 現在 基金의 總造成額은 2,987.6億원(約 4.1億$) 規模이며 純造成額은 2,901億원(4.0億$)에 達하였다.

基金의 運用實績을 보면 1991年末까지 많은 開途國으로부터 支援要請이 接收되어(34個國, 96個事業, 1,319百萬$) 이中 인도네시아 道路建設事業 等 11個國 13個事業에 約 1,104億원(152百萬$)을 支援決定하였고 8個國 8個事業(145百萬$)에 對해 支援을 推進中에 있다.

基金引出은 1991年末까지 3個國 4個事業에 約 132億원(18.2百萬$)이 引出되었으며 基金과 開發調査事業과의 連繫實績을 보면 1984年 以後의 開發調査 45件中 EDCF 支援이 決定된 것은 인도네시아 파당市 道路建設事業 等 3件에 不過하다.

한편 政府는 基金關聯規程을 改正, 基金運營을 活性化함으로써 開途國과의 實質的인 經濟協力을 圖謀한다는 側面에서 基金支援 條件을 多少 緩和(年 4~5%→年 3.5%以上)하고 東歐圈 未修交 開途國에 對한 基金支援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IBRD, ADB 等 國際金融機構와의 共同融資(Cofinancing)도 積極 推進키로한 바 있다.

向後 對外經濟協力基金은 우리나라의 開發援助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漸次 높아지고 對開途國 經協手段으로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遂行할 것으로 期待되므로 長期的인 戰略下에 基金의 造成과 支援推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開發調査事業과의 連繫性도 크게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表 Ⅲ－23〉 對外經濟協力基金 造成現況

(單位：億원)

區 分		1987~1989	1990 小計	1990	1991 小計	1991	1992 小計(計劃)	1992計劃
造成規模 (A)	政府出捐	1,000	1,000	100	1,200	100	1,300	100
	財特借入	400	400		900	500	1,000	100
	運用收入	163.2	444.8	281.6	887.6	442.8	84	159.7
	小 計	1,563.2	1,944.8	381.6	2,987.6	1,042.8	3,347.8	359.7
運用費用 (B)	委託手數料	9.8	12.1	2.3	25.0	12.9	37.0	12.0
	借入利子支給等	4.4	26.4	22.0	61.6	35.2	111.1	49.5
	小 計	14.2	38.5	24.3	86.6	48.1	158.1	61.5
純 造成額(A－B)		1,549	1,906.3	357.3	2,901	994.7	3,199.2	298.2

資料：經濟企劃院, 前揭書

〈表 Ⅳ－24〉 借款支援方針決定 現況

(單位：億원, ( )內는 百萬$)

對 象 國	對 象 事 業	事 業 概 要	借款額	借款條件 利子率 償還期間 (据置)	備考 (支援 決定)
인 도 네 시 아	파당市 迂廻道路 建設事業	22㎞ 2次線道路 工事	98(13.3)	年 3.5% 25年(7年)	87.12
나 이 지 리 아	鐵道車輛 現代化 事業	鐵道車輛購入	81(10)	年 4% 20年(5年)	87.12
페 루	漁船現代化事業	漁船購入	71(9.8)	年 3.5% 20年(5年)	88.12
피 지	Ba 및 Sigatoka 橋梁建設事業	190m 및 182.5m 橋梁 2個 建設	42(6.2)	年 4% 20年(5年)	89.7

對象國	對象事業	事業概要	借款額	借款條件 利子率 償還期間 (据置)	備考 (支援決定)
가 나	精油製品貯藏所建設事業	5個據點에 精油製品貯臟施設設置	90(13.0)	年 3.5% 20年(5年)	90.5
필 리 핀	電話網 擴充事業	TDX-IB 全電子交換機 設置	38(5.4)	年 3.5% 20年(5年)	90.3
스 리 랑 카	콜롬보-골간道路 改補修事業	콜롬보-골간 98㎞ 道路改補修 및 擴張	104(14.5)	年 3.5% 20年(5年)	90.8
요 르 단	廢水處理施設事業	廢水處理施設事業	72(10.0)	年 2.5% 25年(7年)	91.3
우 간 다	地方電話網 擴充事業	TDS-IB 全電子交換機 設置	54(7.5)	年 2.5% 25年(7年)	91. 4
파 키 스 탄	產業設備貸與產業	發電機 變壓器 等	72(10.0)	年 3.5% 17年(5年)	91.3
인 도 네 시 아	移動式 職業訓練事業		182(25.0)		91. 9
나 이 지 리 아	機關車 現代化 事業	디젤機關車 및 部品購入	109(15.0)	年 3.5% 20年(5年)	91.11
파 퓨 아 뉴 기 니	洪水 排水路 擴大事業	排水路 整備 및 新設	91(12.5)	年 3.5% 20年(5年)	91.11
計 (11個國)	13個 事業	—	1,104 (152.2)		

資料：經濟企劃院, 前揭書

7. 多國間協力

多國間協力으로서 國際機構에 對한 分擔金負擔 및 出資·出捐은 우리의 ODA 中에서 每年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1年에는 60.8百萬$로서 全體 ODA 99.9百萬$中 61%의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國際機構出資金은 韓國銀行이 IBRD等 世界銀行 그룹과 ADB, AFDB 等 地域開發 銀行·그룹 等에 出資하는 것이 大部分이나 遞信部가 國際電氣通信衛星機構等에 出資한 것도 있어 1991年에 新規로 出資한 規模는 48.8百萬$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國際機構 分擔金은 UNDP, WHO等 100餘個 國際機構 및 基金에 外務部, 科技處 等이 寄與한 金額으로서 우리의 經濟力向上과 國際社會에서의 位相 및 役割 提高에 따라 負擔規模가 꾸분히 增加해 왔으며 1991年에는 前年에 比해 18.5% 增加한 12.2百萬$ 規模에 이르고 있다.

向後 우리 經濟力向上에 따라 增額이 豫想되는 國際機構分擔金負擔은 可及的 國際機構의 性格, 우리나라와의 關係程度, 經濟的 利害關係 等을 勘案한 優先順位를 考慮하여 增額시켜 나가면서 特히 民間經濟機構 性格이 強한 機構(國際小麥委員會 等)에 對해서는 相對的으로 政府參與를 縮小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同一한 國際機構에 對해 外務部를 비롯한 여러 關係部處가 各自 分擔金을 確保·負擔하고 있는 점을 考慮, 必要한 境遇 相互 有機的으로 連繫 調和시키도록 하고 分擔金의 管理活用에 對한 積極的인 對應努力이 있어야 될 것이다.

*〈表 Ⅲ－25〉 國際機構 出資金 出捐

(單位：千$)

國際機構名	1985末殘存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IMF	457,622	77,814.4	22,569	Δ34,971.5	Δ88,027.3 27,557.7	–	27,207
世界銀行그룹				Δ3,688.6			
IBRD	3,175.5 18,812.7	229.1 2,070.1	9,497.8	1,756.4 16,652.4	Δ4,162.8	1,488.2 13,393.4	351.5
IDA	126 8,825.4	2,676.9	6,425	7,430.4	7,582.1	12,180	10,789.6
IFC	2,450	–	1,756.4	585	585	3,637	–
MIGA	–	–	–	979	–	–	–
아시아開發銀行							
ADB	49,404.3 40,350.5	1,957.6 2,532.5	1,957.6 2,753.5	–	–	–	–
ADF	2,625	384.4	1,250	1,740	1,250	1,250	–
TASF	1,450	150	150	150	–	150	–
아프리카開發銀行							
AfDB	2,012.2	677.8	1,394.5	1,612.8	639.6	711.3	694.9
AfDF	25,255.7	3,088.5	3,866.6	4,471.7	6,185.1	12,370.2	
商品共同基金 (Common Fund for Commodities)	–	–	–	350.6	364.4	356	442.9
유럽復興 開發銀行 (EBRD)	–	–	–	–	–	–	4,551.3
財務部小計	612,109.3	91,581.3	51,620.4	35,728.9	44,163.8	45,536.1	47,199
國際電氣通信 衛星機構 (INTELSAT)	–	–	–	–	15,076	774	1,072
國際海事衛星機構 (INMARSAT)	–	–	–	–	535	177	353
遞信部小計	–	–	–	–	15,611	951	1,425
合 計	612,109.3	91,581.3	51,620.4	35,728.9	66,874.8	46,487.1	48,804

資料：經濟企劃院, 前揭書에서 整理

〈表 Ⅲ－26〉 國際機構 分擔金 實績

(單位：千$)

國 際 機 構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國際經濟機構(外務部)	1,290.5	1,750.5	1,994.2	2,013.0	2,103.3	2,346.7
○國際機構	3,646.7	4,003.2	4,734.3	6,931.3	8,217.3	9,827
• UN 直屬機構	943.9	1,190.0	1,265.5	2,055.5	1,707.7	2,418.7
外務部	943.9	1,190.9	1,265.5	1,530.5	1,252.7	1,822.7
科技處	—	—	—	525.0	455	596
• UN 專門機構	1,868.0	1,680.3	2,393.2	3,177.4	4,291	4,432.8
外務部	1,868.0	1,680.3	2,393.2	2,519.4	2,746	2,958
科技處	—	—	—	30	30	30
遞信部	—	—	—	604	1,452	1,422
教育部	—	—	—	20	20	18.8
保社部	—	—	—	4	43	4
• 政府間機構	706.6	894.7	920.6	1,211.5	1,464.6	1,471.5
外務部	706.6	894.7	920.6	1,065.5	1,350	1,302.2
遞信部	—	—	—	146	114.6	169.3
• 非政府間機構	105	125	150	190	190	700
外務部	105	125	150	150	150	150
保社部	—	—	—	40	40	50
農振廳	—	—	—	—	—	500
• 其他(外務部)	23.2	112.3	5.0	297.2	564	804
計	4,987.2	5,803.7	6,778.5	8,944.6	10,320.6	12,173.7

資料：經濟企劃院, 前揭書

Ⅳ. 開發援助의 政策方向

1. 事業의 戰略的 推進

가. 現況 및 問題点

大部分의 援助供與國들은 開發援助를 國家의 重要한 政策의 하나로서 戰略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開發援助의 戰略的 推進이란 다른 모든 事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事業의 理念, 目的 및 支援國家나 支援分野等에 對한 基本政策方向의 樹立을 通한 體系的인 事業推進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協力 形態別로 이의 必要性에 따라 關係部處別로 推進되어 왔기 때문에 開發援助 對한 綜合的 基本政策이나 效率的인 事業推進을 爲한 戰略이 樹立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주는 協力으로서의 開發援助에 關心을 갖게 된 것은 最近의 일로서 援助規模가 漸次 增大되고, 國際社會에서의 役割增大로 늦게나마 政府에서도 開發援助에 對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事業推進의 必要性이 提起되게 되었다. 特히 1987年 對外經濟協力基金의 設置를 契機로 우리나라도 援助供與國의 모습을 갖추기 始作하였으며, 1991.4.1 韓國國際協力團의 設立으로 本格的인 開發援助事業推進體制를 갖추게 됨에 따라 開發援助의 戰略的인 推進이 무엇보다 重要한 政策課題로 擡頭되었다.

나. 政策方向

(1) 理念의 定立

戰略的 事業推進을 爲한 첫 段階는 事業理念의 體系化이다. 理念이 分明하게 設定되어 있어야만 事業의 目標와 政策方向을 確定할 수 있고 事業完了後에는 이에 對한 評價의 尺度가 될 수 있다. 援助의 基本理念은 主要先進國의 境遇에도 〈圖 Ⅳ-1〉에서 보는바와 같이 各 國家別로 相異하고 援助의 理念, 目標 및 政策方向等의 區分이 明確하지 못한 實情이다.

〈圖 Ⅳ-1〉 主要 先進國의 援助理念 및 目標

國 別	基 本 理 念	目 標
美 國	• 戰略援助 • 自由, 民主主義, 人權의 普及 • 自由主義 經濟秩序의 構築 및 推進 • 西方諸國의 安全保障	
英 國	• 英聯邦 優先 援助 • 人道的 配慮 • 相互 依存主義 • 援助의 柔軟한 運營으로 國益圖謀	
프 랑 스	• 舊植民地國家에 對한 責任 • 開途國의 信賴獲得을 通한 國益의 充足	• 第3世界 自立能力의 紐帶強化 • 프랑스語 및 프랑스 文化普及
獨 逸	• 第3世界와의 協調 • 人道的 配慮 • 相互依存	• 南北問題의 解決 (緊張緩和의 一環) • 援助를 通한 國內經濟 發展 (雇傭創出等)
스 웨 덴	• 人道的 配慮가 極히 重要함. (國內福祉制度의 延長)	

國　別	基 本 理 念	目　　標
	• 最近 經濟的 相互依存關係를 比較的 重視	
이탈리아		• LLDCs等 低所得 國家의 救濟 • 開發途上國의 政治經濟社會의 安定
日　本	• 相互依存性의 認識 • 人道主義的 努力	• 開途國의 開發 및 自助努力 支持

資料：日本經濟企劃廳, 經濟協力政策硏究會 中間報告(1990) 參考

오늘날 援助動機의 核心 혹은 共通分母가 되는 所謂 一般理念으로서 적어도 다음 2가지 點은 西方先進工業國間에 國際的인 合意(Concensus)로서 定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즉, 世界全體를 하나의 共同體로, 人類를 地球市民으로 보고, 그 連帶性에 立脚한 人道的·道義的 考慮(Humanitarian Consideration)와 南北相互依存의 認識(Recognition of Interdependency between South and North)이 그것이다.

開發援助 一般理念의 첫번째 要素인 人道主義的 考慮의 觀點을 強調한 代表的인 例는 1969年 發表된 피어슨 報告書이다.

이 報告書는 우리는 하나의 世界社會에 살고 있다는 世界共同體(World Community)의 觀念을 基調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世界를 變化시키려는 人間의 能力에 制約을 加하고 있는것은 따뜻한 마음씨가 不足하거나 아니면 視野가 좁은 때문이므로 世界의 安全과 繁榮을 爲하여서는 모든 國民에게 共通的인 問題에 對하여 共通의 關心을 表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趣旨의 主張을 하고 있다.

두번째 南北相互의 依存關係의 認識은 1980年 2月 브란트 委員會(國際開發

問題 獨立委員會)가 提出한 報告書를 基礎로 하여 人道主義的 考慮의 重要性에 對한 變함없는 認識의 前提下에 그 以後 漸次的으로 援助의 國際的인 一般理念으로 定着하게 되었다.

이러한 相互依存의 認識은 1960年代에 擡頭되기 始作한 南北問題가 1970年代들어 南北對決 樣相으로 深化됨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다. 즉 1961年 第17次 UN總會時 行한 케네디 大統領의 演說을 契機로 始作된 UN開發 10個年計劃이 事實上 失敗로 돌아감에 따라 南北間의 經濟隔差가 더욱 深化되었고, 1973年의 第1次 石油波動, 1974年의 新國際經濟秩序(NIEO)宣言等으로 開發途上國이 世界의 經濟秩序 또는 構造全體의 改革을 追求하는 國際社會에서의 새로운 힘으로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다.

特히 1980年 2月 브란트委員會가 UN에 提出한 報告書(北과 南-生存을 爲한 프로그램)는 世界開發 基金의 創設, 南北間頂上會談의 開催等을 主張하여 先進國의 發想轉換을 促求하는 契機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81.10月 멕시코 캉쿤에서 先進國 8個國 및 開途國 14個國이 參加한 南北頂上會談이 開催되었다.

이러한 南側 開途國 立場의 強化는 先進工業國側에 여러가지 意味에서 開途國의 重要性을 새롭게 認識시키는 契機가 되어 開途國의 所得水準向上을 支援하여 友好的 協力關係를 構築하는 것이 先進工業國 自體의 生存과 繁榮에 있어서도 不可缺한 條件이며, 南北關係는 相互依存關係에 있다는 認識을 強化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理念이라는 것은 窮極的으로 追求하는 바인 最善의 狀態, 즉 어떠한 犧牲을 치루고서라도 實現해야 할 絶對的인 價値로서 彼我의 利害關係를 떠나 價値志向的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現在 開發援助의 一般理念으로 認識되고 있는 人道主義的 考慮 및 相互依存 關係의 認識은 開發援助의 理念이라기 보다는 國際協力의 動機로 볼 수 있으며 이는 開發援助의 一般的인 動機로 認識되고 있는 政治的動機, 經濟的動機, 人道主義的動機와도 一致한다.

主要 先進各國의 援助動機는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지만 一般的으로 人

道主義的動機, 政治的動機, 經濟的動機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중 政治的 動機 및 經濟的動機는 供與國側의 國益과 關聯된 動機로서, 開發援助의 一般理念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相互依存關係의 認識은 政治的動機 및 經濟的動機에 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家의 行爲는 自國의 利益과 利己的인 競爭心에서 出發하게 되는데 相互依存關係의 認識이라는 槪念도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南北對決이라는 狀況下에서 各國의 利益을 위하여 不可避하게 생겨나게 되었다. 開途國이 國際社會에서 새로운 힘으로 登場하여 南北對決 樣相이 深化됨에 따라 先進工業國들은 開途國을 工業製品 輸出市場 및 援助供給源 對象이라는 從來의 認識에서 自身들의 生存과 繁榮을 維持하기 爲한 國際政治的 力學關係 및 經濟的 必要性(動機)에 依해서 南北相互 依存關係로 認識을 轉換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相互依存關係 認識은 先進國이 貧困한 開途國을 도와 함께 繁榮을 누리자는 意圖에서 出發한 것이 아니라 自身들이 누려온 旣存의 生存과 繁榮을 維持하기 爲하여 不可避하게 새로운 勢力으로 登場한 開途國의 存在를 認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點은 1979.5月부터 6月에 거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開催된 第5回 UNCTAD의 第8議題 相互依存을 둘러싼 南北間의 論議 및 意見對立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以上과 같은 點을 考慮할 때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바람직한 理念의 設定方向은 무엇인가? 이에는 여러가지 見解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다음 몇가지 要件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모든 分野의 理念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價値志向的이어야 한다. 즉 開發援助(ODA)의 窮極的目標는 開發援助가 必要없는 世界를 만드는데 있으며, 이는 開途國의 經濟發展 및 福祉向上을 通하여 함께 잘사는데 그 뜻이 있다.

둘째, 非政治的이어야 한다.

OECD의 DAC가 標榜하고 있는 바와 같이 ODA는 開途國의 經濟發展

및 福祉의 向上等 經濟的, 人道的 支援이 主目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民主主義 또는 社會主義의 擴散이나 西方諸國이 앞세우는 安全保障의 確立等 政治的인 理念이나 目的을 前提로 한 協力은 開發援助의 理念에서 排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國際的인 性格을 가져야 한다.

開發援助가 政府를 主體로 하여 行하여지는 以上 國家의 利益을 強調하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開發援助 그 自體는 對外的이며 國際的 性格을 가진 것이다.

네째, 調和로운 發展을 圖謀할 수 있어야 한다.

資本主義下에서의 調和와 協力은 일찌기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指摘하였듯이 利己的인 競爭에서 出發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依해서 全體的인 調和와 成長의 놀라움을 만들어 낸다. 開發援助도 各國의 利己的인 競爭에서 出發하지만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이 保障된다면 亦是 全世界的인 調和와 成長으로 歸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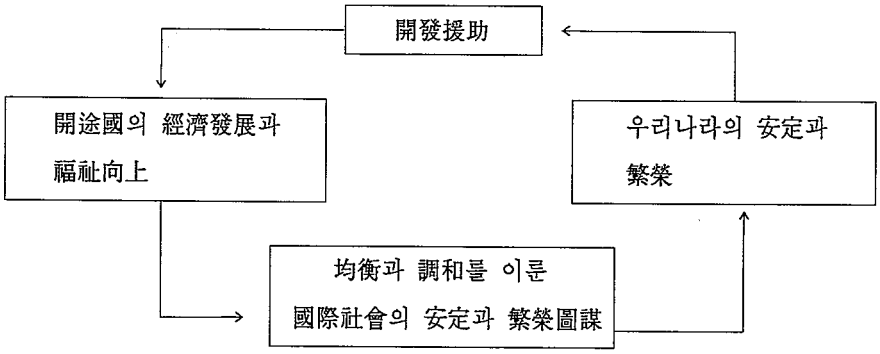
우리가 世界資本主義內에 位置하고 그러한 自由市場經濟의 價値를 追究하는 한 政治·經濟·歷史的 背景 및 現實이 顯著히 相異한 各國의 特性을 살린 國際的 分業과 相互補完을 通하여 調和로운 發展을 圖謀하는 것이 重要한 일이다.

以上과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開發援助의 理念으로 旣 提示된 바 있는 相互利益과 共同繁榮은 첫번째와 두번재의 要件을 充足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번째 및 네번재 要件을 反映한 開發援助의 理念은 開途國의 經濟發展 및 福祉向上의 增進(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을 通하여 均衡과 調和를 이룬 國際社會의 安定과 繁榮에 寄與하는 것으로 整理하여 볼 수 있으며 그 槪念圖는 아래와 같다.

(2) 目的의 設定

開發援助의 戰略的 推進을 爲한 두번째 段階는 目的의 明確化이다. 開發援助의 理念이 窮極的으로 追求하는 上位 目標인 反面, 目的은 理念에 到達하기 爲

〈圖 Ⅳ－2〉 開發援助理念의 槪念圖



한 現實的인 政策目標라 할 수 있으므로 國家利益 및 現實的인 與件이 反映되지 않을 수 없다.

主要 先進國의 開發援助 目的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지만 一般的으로 政治·外交的目的, 經濟的目的, 人道的目的 3가지로 區分하여 볼 수 있으며 어는 供與國을 莫論하고 이러한 目的에 依하여 開發援助를 實施하고 있다.

이중 特히 政治·外交的, 經濟的 目的은 供與國側의 國益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開發援助가 供與國 國民의 負擔에 依해 遂行된다는 點을 勘案한다면 이러한 國益 考慮는 當然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境遇에도 이러한 3가지 目的이 마찬가지로 適用된다 할 수 있다.

援助供與國의 開途國에 對한 開發援助는 上記 3가지 目的中 어느 한가지의 目的에 依한 境遇보다는 두가지 或은 세가지 複合的인 目的을 가진 境遇가 大部分이다. 重要한 것은 어느 目的에 보다 많은 比重을 둘 것이가 하는 것인데 이는 供與國이 處한 對內外 政治·經濟的 與件에 左右될 수 밖에 없다.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그동안 主로 政治·外交的 目的에 置重되어 왔다. 南北의 分斷狀況下에서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非同盟等 第3世界와의 關係增進, 未修交國과의 關係改善, UN加入等을 爲한 政治·

〈圖 Ⅳ-3〉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目的

區 分	內 容
政治·外交的目的	• 國家의 安保維持 • 國際社會에서의 支持獲得 및 影響力 增大
經 濟 的 目 的	• 輸出增大를 爲한 海外位相 確保 • 原資材 供給先 確保 • 受援國에 對한 民間投資 促進 • 産業構造調整 促進
人道主義的 目的	• 人道主義에 立脚한 道德的 責務 • 國際社會에서 地位上昇에 따른 責任 및 役割 遂行

外交的 手段으로 使用되어 온 側面이 많았던 것이다. 最近 共産圈의 民主化등 國際政勢의 急變과 함께 南北韓 和解,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關한 合議, 韓半島의 非核化에 關한 共同宣言等으로 長期的으로 볼때 從前과 같은 政治·外交的 目的支援의 重要性은 減少될 것으로 展望되나 冷戰終熄以後 새로운 世界秩序가 形成되는 過程에서 統一基盤 造成을 爲한 外交對策, UN等에서의 多者間 外交強化의 必要性으로 急激한 政策轉換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最近 經濟블럭化 趨勢等에 따른 旣存 國際經濟秩序의 變化, 우루과이 라운드, CIS 및 東歐의 經濟不安, 環境問題의 擡頭等과 같은 世界 經濟與件의 急激한 變化와 함께 國內經濟의 惡化 및 貿易逆調 等으로 經濟·通商目的 開發援助의 重要性이 더욱 增大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人道的次元에 依한 支援은 政治·外交的 目的 및 經濟的目的과는 달리 比較的 供與國의 國益과는 關係가 적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援助規模等의 諸般與件을 考慮할 때 優先順位가 뒤지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現在 全世界 人口의 約 1/5이 絶對貧困狀態로서 貧困救濟 問題가 開發援助의 가장 主要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으므로 最貧開途國 및 災難救護에 對한 人道的次元의 支援에 對한 努力을 疏忽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3) 適正 ODA規模와 中長期비젼의 提示

1991年度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規模는 約 9,990萬弗로 GNP對比 0.04% 水準인데 (正確히는 0.036%), 이는 우리나라의 經濟規模에 比해 적은 規模라는 데 一般的으로 意見이 一致되고 있다.

ODA 適正規模는 GNP에 對한 比率이 그 尺度가 되고 있는데 1991年度 DAC 會員國의 平均은 0.35%로서 ODA比率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의 0.16%나, IMF나 各國의 經濟力을 反映한 出資比率 0.19%等을 勘案할 때 OECD 加入을 積極的으로 推進中인 우리나라의 立場으로서는 經濟規模에 알맞는 水準으로 ODA 規模를 增大할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 經濟社會發展 7次 5個年 計劃에서는 『1996年까지 ODA의 GNP比重을 우리의 經濟力 水準에 相應하게 提高』한다는 目標를 設定하고 具體的인 計數는 提示하고있지 않은데 그동안의 政府와 學者들間의 論議는 7次 5個年計劃이 끝나는 1996年의 ODA規模를 GNP의 0.15%~0.2%水準으로 推定하고 있다.[7] 1996年 GNP規模가 4,710億弗로 計劃되어 있으므로 이에 相應하는 ODA 規模를 最少한 0.1%~0.15%로 할 境遇 약 4.7億$~7億弗로 推定되며, 이를 達成하기 爲해 1992年을 基準으로 每年 47%~62% 以上의 豫算增加率이 要求되는 바 國際收支나 財政需要와 이의 部門別 優先順位等 現實與件으로 보아 ODA 豫算의 劃期的 增大가 容易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ODA 規模의 量的增大에 豫算制約(Budget Constraint)이 있음을 勘案하여 當分間은 配分構造의 適正化로 事業效果의 極大化를 圖謀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보며 NGO의 協力을 얻는 方案도 積極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

7) 金學洙 博士는 우리나라 ODA의 適正規模를 測定하기 爲해 緩慢한 增額方式, 漸進的 增額方式 및 急進的 增額方式이라는 3가지 시나리오를 假想하고 結論的으로 OECD의 非DAC 5個會員國의 對 GNP比率이 1986-89平均 0.08%이고 1989年의 5個國 合計金額이 4億$水準이므로 韓國이 '90年代 中盤에 0.1%金額으로 4~5億$이 되어도 國際的으로 充分히 容納될 수 있는 線으로 보았다. ODA 展望値를 보면 1996年은 GDP의 0.14%인 6.5億$, 1999年은 0.2%인 12.6億$로서 이는 當初 金博士가 提案했던 '90年代 中盤頃의 0.2%, 1999年의 0.3%線에서 크게 後退한 數値이다.

NGO는 歐美先進諸國에서는 이미 긴 歷史를 갖고 海外에서 活發하게 活動하고 있는데 이들의 ODA에서의 比重을 보면 6%－10%에 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NGO의 成長을 支援함과 同時에 함께 提携하여 開發援助를 보다 效果的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表 Ⅳ－1〉 ODA 適正規模 推定

(單位:億弗)

區 分	1991實績	1992	1993	1994	1995	1996
GNP	2,808	2,913	3,152	3,494	3,993	4,710
ODA	0.99	1.0	1.47～1.63	2.17～2.65	3.20～4.31	4.71～7.07
ODA/GNP(%)	0.036	0.034	0.047～0.05	0.06～0.08	0.08～0.11	0.10～0.15

註:經濟企劃院 7次 5個年計劃上 1996 GNP 規模에 ODA比率을 0.1%～0.15%로하여 年度別 推定함.

現在와 같은 財源制約下에서는 무엇보다도 手段間 配分構造의 最適模型의 提示가 必要한 바 이를 爲해 現實與件에 合當한 開發援助 中長期計劃의 樹立이 時急하며 短期的으로 援助手段間의 連繫를 勘案한 體系的인 事業計劃의 樹立과 이의 遂行을 爲한 豫算確保 努力이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ODA政策에 對한 이렇다 할 綜合的인 中長期 戰略(Strategic Plan)이 樹立된 바가 없어 每年 計劃的이고 一貫性 있는 政策樹立과 執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ODA 中長期計劃의 樹立問題는 무엇보다도 時急하게 解決되어야 할 課題中의 하나이다.

ODA 中長期計劃은 開發援助의 理念, 目的의 確立은 勿論 適正 ODA 規模의 推定, 個別事業目標와 優先順位의 設定, EDCF를 包含하는 協力形態別 豫算配分과 國別·分野別 推進戰略, 이런 長期戰略 遂行을 爲한 人力等 下部構造의 定立方案等 諸般分野를 包括하는 現實性이 있는 綜合計劃아어야 하며 每年 連動(Rolling)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計劃樹立을 爲해서는 優先 計劃의 Macro한 指針을 作成하여 이에 對한 各界의 意見을 收斂한 後 重點 課題別로

Task Force를 構成하여 Micro한 細部作業을 推進토록 하고, 各 作業班에서 作成된 部門別 試案을 綜合하여 公聽會 等으로 政府 關係部處는 勿論 各界의 意見을 聚合한 後 最終案을 마련함으로써 國民的 合意(National Consensus)를 얻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카나다는 ODA 戰略을 樹立하여[8] 國會에서의 論議等으로 國民에 對한 理解를 增進시키고 있으며 日本은 그동안 4次에 걸친 ODA 中期目標를 樹立한 바 있고, 外務省은 ODA에 對한 國民的 理解를 돕기 爲해 經濟協力理念(副題 : 政府開發援助를 왜 遂行하는가)이라는 冊子를 發刊하여 國民에게 弘報하고 있다.

(4) 支援對象國

開發援助對象國家를 地域別·國家別로 選定하고 이를 差等化하여 支援金額을 配分(Geographical Distribution)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援助의 歷史가 오래된 先進國에서조차 國別選定基準에 對한 一般化된 理論的基準이나 模型을 찾아보기 힘들다.

---

8) 카나다의 ODA戰略(Sharing Our Future : 1988).
- ㅇ 開發援助의 基本原則
  - ① 貧困問題 最優先
  - ② 開途國의 自助努力支援
  - ③ 開途國의 開發優先順位 考慮
  - ④ 開途國과 캐나다의 共同協力關係 重視
- ㅇ 開發援助의 優先順位
  - ① 貧困緩和
  - ② 開途國의 構造調整過程 支援
  - ③ 女性參與 促進
  - ④ 開發의 環境的 考慮
  - ⑤ 食糧供給의 安定性 確保
  - ⑥ 에너지의 効果的 利用
- ㅇ 開發援助의 當面目標
  - ① ODA의 GNP 比率을 1990年 0.5%, 1995年 0.6%, 2000年 0.7% 水準으로 提高
  - ② LLDCs에 ODA의 對 GNP 比率은 0.15%를 繼續 維持
  - ③ 人道主義的 援助에 ODA의 2%를 割當
  - ④ 모든 ODA는 無償으로 供與
  - ⑤ ODA의 1/2은 國家 主導프로그램에, 나머지 1/2은 共同協力 프로그램에 配分
  - ⑥ 二國間 援助의 75%는 低所得 및 小島嶼開途國에 支援
  - ⑦ 二國間 援助의 75%는 30個 重點支援對象國 및 地域그룹에 重點支援
  - ⑧ 食糧援助豫算의 5%까지는 開途國 剩餘食糧物資 購買에 對해 Untied 購買可能

開發援助의 圈域別 또는 國家別 配分에 對한 카나다의 援助戰略(1988)을 보면 ① 向後 5年間에 二國間援助의 65%를 英聯邦 및 佛語圈 開途國에, ② 二國間援助의 75%는 低所得 및 小島嶼開發國에, ③ 二國間援助의 75%는 30個 重點支援 對象國 및 地域그룹에, ④ 向後 5年間에 二國間援助의 45%는 아프리카, 39%는 아시아, 16%는 中南美에 支援토록하고 있다.

特히 個別國家의 支援을 爲해 圈域別로 援助支援適格國(Country Eligibility List)을 3個그룹으로 分類하여 그中 第 1部類인 重點 支援對象 30個國(아프리카 및 中東 14國, 中南美 7國, 아세아 9國)을 國家프로그램計劃에 依해 支援되는 國家로 設定하고 5個年에 걸친 支援計劃을 樹立하여 二國間 援助額의 75%를 配分하고 있다.

第 2部類는 經濟的, 政治的 側面에서 카나다와의 關係가 相當한 程度로 認定되나 國家프로그램이 適切치 않은 國家이고 第3部類는 援助프로그램이 豫想되지 않거나 兩者間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없는 國家로서 이들 國家와는 카나다의 機關이나 NGO 等을 通한 援助만을 實施하고 있다.

重點支援對象國의 選定基準으로 援助의 必要性, 開發에 對한 政治的 意志, 援助의 受容能力, 經濟開發을 爲한 政策努力, 受援實績, 카나다의 政治的利益과 通商利益等을 들고 있고, 援助水準을 決定하는 基準으로는 受援國의 需要, 援

〈表 Ⅳ-2〉 카나다의 國別援助配分

圈域別	中南美	佛語圈 아프리카	英語圈 아프리카	아 시 아
1部類	콜럼비아等 7國	카메룬等 7國	이집트等 7國	방글라데시等9國
2部類	바베이도스等 11國 및 地域機關	알제리아嶝 5國 및 地域機關 베넹等 13國	보츠와나等 7國 앙골라等 13國 및 地域機關	말레이지아, ASEAN機關, 地域機關
3部類	알젠틴等 12國			부탄等 7國 및 南太平洋 島嶼8國

資料 : Canada's ODA Program : An Overview(1989)에서 整理

助管理努力과 能力, 人權記錄, 國民參與度, 社會.經濟政策의 質 및 政策改善努力, 카나다와 受惠國과의 政治·經濟關係等을 들고 있다.

濠洲는 地理的으로 가까운 隣接國家를 中心으로하는 重點支援戰略을 推進하는 等 援助對象國家를 4個그룹으로 分類하고 第 1部類인 PNG, 南太平洋 및 印度洋國家들에는 一般無償援助와 모든 分野의 프로젝트 및 細部的인 方式에 依據한 國家프로그램을 提供하고 第2部類(東南亞 및 南아시아小國), 第3部類(中國 및 南아시아大國), 第4部類(아프리카, 中東, 中南美, 東歐) 國家에 對해서는 一般無償 援助는 모두 供與對象이 되나 프로젝트와 國家프로그램 援助提供에는 差等을 두고 있다.

援助配分實績을 보면 1986-1990年間 二國間 援助額 4,409百万$(濠洲$)中 第 1部類 國家에 49.1%(이中 PNG는 36.8%), 第 2部類 國家에 28.6%, 第 3部類國家에 11.5%, 第 4部類 國家에 10.8%를 配分하였다.

二國間援助를 提供하는 基準으로는 人道主義的 配慮, 受援國의 需要, 濠洲의 援助提供能力, 地域的·傳統的 紐帶, 濠洲의 戰略的 經濟的 關係, 受援國의 吸收能力等의 要素가 考慮된다.

英國은 國別配分基準으로 國民所得 700$ 內外의 最貧國에 二國間 援助의 80%를 配慮함과 同時에 特히 英聯邦國家에 二國間援助의 75%를 供與하고 그 외에 受援國의 吸收能力, 適切한 經濟社會政策追求努力, 人權과 遵法履行等을 重視하고 있으며, 開發援助의 目的은 開途國의 經濟改革增進, 善한 政府의 發展, 貧困輕減, 人間開發, 環境保全, 經濟開發에 있어 民間部門의 發展, 國際的 災難救助의 役割增大等에 높은 優先順位를 두고 援助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開發援助에 對한 援助供與國家의 地域別·國家別 配分에 關한 統計는 本書 第2部의 開發援助의 實績에서 詳細하게 提示하고 있는데 主要國家가 供與한 上位 20國까지의 二國間援助의 集中度를 보면 DAC國家全體로는 上位 5個國에 25.0%, 上位 10個國에 38.0%, 上位 20個國에 56.0%를 供與하였는데 이를 國別로 보면 美國은 上位 5個國에 56.3%, 上位 10個國에 66.8%, 上位 20個國에 80.3%를, 日本은 上位 5個國에 48.4%, 上位 10個國에 65.7%, 上位 20個國에

81.0%를, 프랑스는 上位 5個國에 37.8%, 上位 10個國에 53.9%, 上位 20個國에 72.2%를 供與하고 있다.

〈表 Ⅳ-3〉 濠洲의 國別援助配分

(單位:濠洲百萬$)

圈域別		支援額 (1986-1990)		援助方式		
		金額(百萬$)	%	一般援助	프로젝트	國家프로그램
1部類	PNG, 南太平洋(15國) 및 印度洋(4國) 島嶼國家	2,163.6	49.1	該當	모든分野該當	細部的인 方式採擇
2部類	東南亞 및 南아시아 小國(10國)	1,259.8	28.6	該當	優先順位 分野만 該當	細部的인 方式採擇
3部類	中國 및 南아시아 大國(11國)	507.5	11.5	該當	特定分野만 該當	廣範圍한 方式採擇
4部類	其他 開途國(아프리카 41國, 中東 14國, 中南美, 東歐 33國)	478.2	10.8	該當	除外	除外
計	130國	4,409.1	100.0			

資料:AIDAB의 Details of Australian ODA Expenditure(1991) 및 Jackson Report(1984)에서 整理

註:1) 國家數는 1986-1990年間의 純計임

2) 一般援助는 技術協力, 研究調査, 多者間協力機構를 通한 援助, 食糧援助, 災難救護, 開發輸入金融, 奉仕活動支援等을 包含

우리나라 二國間 開發援助의 集中度는 統計資料의 未備로(金額基準으로 過去實績에 對한 總體的 把握이 不可함) 動態的 把握이 不可能하므로 最近 年度인 1992年의 10大 重點供與國을 中心으로 보면, 1位는 印尼로 總供與額 35,356

千$中 24.6%인 8,681千$을 供與하였으며 2位는 나이지리아 9.6%, 3位는 가나 7.7%, 4位는 스리랑카6.8%, 5位는 필리핀 6.4%, 6位는 泰國 2.1%, 7位는 PNG 2.0%, 8位는 파키스탄 1.6%, 9位는 이디오피아 1.3%, 10位는 몽골 1.1%의 順으로 總 10個國中 아세아 地域이 7個國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 地域의 3個國이다.

二國間 援助의 上位 10個國 集中度는 63.0%로서 DAC 全體의 38%보다는 높고 先進國의 50%~60% 水準과 類似하나 上位 5個國의 集中度는 55.1%로 美國, 日本의 50% 水準과 類似하며 DAC 全體의 25%나 英國, 카나다等의 30% 水準에 比해 매우 높다. 그러나 上位 20個國 集中度는 70.9%로서 DAC 全體의 56%보다는 높으나 美·日等 先進國의 70%~80% 水準보다는 낮다.

이를 國家別로 보면 上位 1位國인 印尼의 集中度가 24.6%로 1國 集中度가 가장 높은 美國의 25.7%와 類似하며(日本은 17%), DAC 全體의 7.0%나 카나다等 先進國의 10%內外 水準보다 倍 以上임을 알 수 있다.

上位 20個國의 集中度를 協力形態別로 보면 研修生招請은 79.6%, 專門家派遣은 86.5%이나 醫療團·跆拳道·青年奉仕團 派遣, 開發調査, 프로젝트 및 EDCF等은 各各 100%로 매우 높고 機資材供與는 41.0%에 不過하다. 開發調査, 프로젝트, EDCF 事業은 이들 事業이 프로젝트와 關聯된 協力形態라는 特殊性과 初創期의 적은 豫算을 數個國에 限定하여 配分할 수 밖에 없는 點, 그리고 이들 事業이 經濟的 目的과 크게 關聯되어 진다는 點等에서 數個國에의 集中化 現象은 不可避한 것이며 이같은 集中化 現象은 向後 豫算의 增大와 供與國의 多邊化를 通해 緩和될 것으로 展望된다.

10大 供與國이 協力形態中 國當 支援規模가 가장 큰 有償協力(EDCF) 供與 如何에 따라 크게 左右되고 있는데 受援 1位國인 印尼의 境遇 EDCF를 比較的 多額으로 支援함으로써 同國에 對한 集中度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1國에의 지나친 偏重은 無償協力手段과의 有機的 連繫로 緩和시킬 수 있을 것이다.

特히 印尼는 이집트에 이어 最近 19國 및 國際機構들로 부터 年間 約 50億$이라는 莫大한 ODA를 받는 世界 第2位의 最大受援國(DAC 二國間 援助의 6%)으로 浮上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援助目的을 勘案 効果的으로 對處해야

〈表 Ⅳ－4〉 二國間 援助의 國家別 集中度 (1989/1990)

(單位：援助額 集中度, %)

國別順位		1位－5位	6位－10位	11位－15位	16位～20位
DAC 全體	計	25.0	13.0	10.5	7.5
	累 計	25.0	38.0	48.5	56.0
美國	計	56.3	10.5	7.9	5.6
	累 計	56.3	66.8	74.7	80.3
日本	計	48.4	17.3	9.4	5.9
	累 計	48.4	65.7	75.1	81.0
카나다	計	28.4	17.5	13.1	10.7
	累 計	28.4	45.9	59.0	69.7
英國	計	33.8	19.2	13.3	10.1
	累 計	33.8	53.0	66.3	76.4
프랑스	計	37.8	16.1	9.9	8.4
	累 計	37.8	53.9	63.8	72.2
獨逸	計	28.8	16.2	9.5	6.5
	累 計	28.8	45.0	54.5	61.0
스웨덴	計	51.2	20.2	11.8	6.3
	累 計	51.2	71.4	83.2	89.5
네덜란드	計	36.2	16.6	10.6	8.7
	累 計	36.2	52.8	63.4	72.1

資料：OECD 統計에서 整理

〈表 Ⅳ－5〉 二國間援助의 協力

國別 順位	研修生		專門家		醫療團		跆拳道		奉仕團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1	中國	206	泰國	98	니제르	107	이집트	57	泰國	253
2	CIS	154	필리핀	61	西사모아	67	가나	50	필리핀	190
3	泰國	133	中國	22	스와질랜드	64	수단	37	인니	190
4	필리핀	131	말레이지아	21	모리타니아	62	튀니지	35	스리랑카	174
5	베트남	113	볼리비아	20	레소토	58	니제르	30	PNG	174
6	말레이지아	96	에쿠아돌	15	카메룬	58	中央아(共)	30	휘지	174
7	몽골	84	코스타리카	11	이디오피아	56	자이르	30	네팔	126
8	폴란드	75	튀니지	10	코트디브와르	55	세네갈	29	몽골	111
9	인니	74	헝가리	9	中央아(共)	52	요르단	28	—	—
10	印度	50	멕시코	8	케냐	39	오만	25	—	—
小計 (A)	10	1,116	10	275	10	618	10	351	8	1,392

形態別 集中度(1992)

(單位 : 千$,%)

機資材		開發調査		프로젝트		無償協力計		有償協力(EDCF)		合計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이디오피아	387	인니	1,013	인니	260	인니	1,584	인니	7,097	인니	8,681
탄자니아	353	필리핀	895	도미니카(共)	200	필리핀	1,473	나이지리아	3,355	나이지리아	3,379
베넹	284	파키스탄	426	페루	195	태국	745	가나	2,581	가나	2,726
이집트	243	PNG	380	콜롬비아	145	PNG	693	스리랑카	2,065	스리랑카	2,388
모리타니아	240	태국	52	자마이카	95	파키스탄	574	필리핀	774	필리핀	2,247
과테말라	217	유고	39	泰國	84	이디오피아	443	—	—	태국	745
파라과이	213	베트남	19	쿡아일랜드	69	몽골	392	—	—	PNG	693
아프가니트탄	202	네팔	19	수단	24	탄자니아	353	—	—	파키스탄	574
캐냐	199	—	—	네팔	18	베트남	329	—	—	이디오피아	443
부룬디	198	—	—	—	—	스리랑카	323	—	—	몽골	392
10	2,536	8	2,843	9	1,090	10	6,909	5	15,872	10	22,268

國別順位	研修生		專門家		醫療團		跆拳道		奉仕團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11	파키스탄	49	페루	8	우간다	13	나이지리아	24		
12	헝가리	46	예멘	8	나미비아	10	태국	22		
13	스리랑카	42	인니	8	잠비아	5	리비아	21		
14	루마니아	40	스리랑카	8			미얀마	20		
15	불가리아	40	모리타니아	7			인니	19		
16	멕시코	37	수단	7			부루키나파소	9		
17	체코	34	파라과이	6			네팔	7		
18	콜롬비아	31	오만	6						
19	과테말라	30	세네갈	6						
20	나미비아	30	카타르	6						
小計 (B)	10	379	10	70	3	28	7	122		
計 (A+B=C)	20	1,495	20	345	13	646	17	473	8	1,392
1992 支援總計 (D)	87	1,877	31	399	13	646	17	473	8	1,392
集中度(%) A/D	11.5	59.5	32.3	68.9	76.9	95.7	58.8	74.2	100.0	100.0
集中度(%) C/D	23.0	79.6	64.5	8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韓國國際協力團의 無償協力, 財務部의 EDCF, 建設部의 開發調査 基準

(單位 : 千$, %)

機資材		開發調査		프로젝트		無償協力 計		有償協力(EDCF)		合 計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國名	金額
몽 골	197					모리타니아	309			탄자니아	353
베트남	197					이집트	300			베트남	329
비동맹아프리카기금	197					베 넹	284			모리타니아	309
필리핀	196					코트디브와르	251			이집트	300
코트디브와르	196					네 팔	249			베 넹	284
부 탄	195					과테말라	247			코트디브와르	251
방글라데시	194					휘 지	243			네 팔	249
자이르	190					케 냐	238			과테말라	247
앙골라	169					니제르	235			휘 지	243
엘살바돌	149					중 국	228			케 냐	238
10	1,880					10	2,584			10	2,803
20	4,416	8	2,843	9	1,090	20	9,493	5	15,872	20	25,071
105	10,764	8	2,843	9	1,090	132	19,484	5	15,872	132	35,356
9.5	23.6	100.0	100.0	100.0	100.0	7.6	35.5	100.0	100.0	7.6	63.0
19.0	41.0	100.0	100.0	100.0	100.0	15.2	48.7	100.0	100.0	15.2	70.9

〈表 Ⅳ－6〉　　機資材 및 프로젝트型事業의 國家別 集中度

(單位:援助額 集中度, %)

國別順位	1979		1985		1990		1991		1992	
	計	累計	計	累計	計	累計	計	累計	計	累計
1位－5位	60.4	60.4	21.8	21.8	19.1	19.1	21.5	21.5	19.0	19.0
6位－10位	14.2	74.6	14.0	35.8	11.1	30.2	8.4	29.9	9.7	28.7
11位－15位	11.5	86.1	12.0	47.8	8.9	39.1	8.0	37.9	7.8	36.5
16位－20位	9.1	95.2	10.3	58.1	7.6	46.7	7.6	45.5	7.1	43.6

註： 機資材供與 및 프로젝트型事業基準

될 것이다. 過去 프로젝트型事業은 機資材供與事業의 一還으로 實施되어 왔으며 事業實績도 微微하므로 兩者를 合算한 集中度를 보면(表 Ⅳ－6參考) 對象國 數가 20國 以上이 되는 最初年度인 1979年에는 5位까지의 集中度가 60.4%로 매우 높은데 이는 同 年度의 總供與額이 3,100千$에 不過하나 세네갈大統領 訪韓 및 經濟技術協定 締結等에 따른 後續措置로 세네갈에 1,270千$을 集中的으로 供與한 때문이다.

年度別推移를 보면 上位 20國까지의 集中度가 初期의 60% 水準에서 1985年 58.1%, 1990年, 46.7%, 1991年 45.5%, 1992年 43.6%로 繼續 減少되어 集中度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7－1992年間의 受援國家數는 14國에서 109國으로 7.8倍가 增加 되었으나 供與額은 1,103千$에서 11,854千$로 10.7倍가 되어 受援國家數增加의 거의 倍가되었음에도 不拘하고 上位 20國까지의 集中度가 下向 趨勢를 보인것은 援助配分의 基準으로 外交的觀点에서 每年 많은 受援國에 거의 均一하게 配分하는 政策을 固守해 온 때문이다.

特히 最近年度의 上位集中度가 크게 減少되고 있는데 1991年의 45.5%比率은 年度中 몽골에 對한 特別支援 1,483千$을 考慮하지 않을 境遇 더욱 減少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最近年度의 減少趨勢는 最近 5年(1988－1992)동안 受援對象國은 90國內外로 一定하나 豫算은 每年 11,000千$ 內外로 거의 增額이 이루어지지 않는 點도 主要要因으로 指摘될 수 있다. (換差要因도 다소 있음)

1992豫算配分計劃에서는 처음으로 重點 및 準重點國家를 選定하여 豫算을 差等配分하는 外에도 프로젝트事業으로 수단의 職業訓練院 建設費 580千$을 計上하여 上位 20國의 集中度는 43.7%로 前年에 比해 多少 減少되는 것으로 計劃되었으나 1992年中 同事業의 推進未備로 豫算執行이 保留되어 集中度는 43.6%로 減少되었다. 1992年의 集中度가 減少되는 것은 前述한 豫算制約要因 이외에도 重點 및 準重點國에 對한 配分額의 差가 그리 크지 않은 때문으로 判斷되는데 上位集中度의 增大를 爲해서는 豫算의 增額은 勿論 配分基準에 對한 硏究檢討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先進國에서 開發援助對象國의 決定은 被援國의 援助需要(Recipients Need)와 供與國의 主觀的이거나 政治的인 判斷에 依한 援助目的(이른바 Donor's Interest) 및 供與國의 能力(Capacity)이 合一되는 境遇에 이루어져 온 것으로서[9]이러한 過程은 적어도 이들 國家의 援助의 出發時期에서 부터 오랜 期間에 걸쳐 쌓아진 結果로 把握될 수 있으므로 어떤 時點에서 一定한 基準에 依해 豫想國을 크게 加減하는 政策轉換은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國家選定基準을 어떤 圖式的基準에 依해 定한다는 것은 별로 有用하지 못할 것이라는 見解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基準도 없이 그때 그때의 必要性에 따라 주먹구구式으로 援助供與基準을 決定하는 일은 避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 開發援助對象國의 選定에 關한 硏究는 〈圖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件의 硏究와 (沈義燮 包含時 7件) 韓國國際協力團의 1992年 機資材供與對象國選定을 들 수 있다.

이들 硏究中 選定基準의 提示와 함께 各 變數에 加重値를 附與하여 對象國家를 選定한 것은 4件(韓國國際協力團 包含)으로 이러한 定量的 方法이 國家選定에 合理性과 客觀性을 높이는데 크게 寄與할 것으로 生覺되나 政策樹立에 아무런 濾過없이 實際로 適用하기에는 많은 制約이 따름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

9) ODA의 決定에 對한 硏究로서 Louis M. Imbeau의 實證的 分析을 代表的으로 들 수 있는데 그에 依하면 援助의 決定은 供與國家의 官僚나 政治人等 集團이 諸般制約要因을 勘案하여 合理的方案(Bounded Rational Perspective)을 模索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援助水準을 決定하는 要因으로 手段的(Instrumental), 人道主義的(Humanitarian), 理念的(Ideological) 및 漸增主義的(Incremental) 側面을 들고 있다.

〈圖 Ⅳ-4〉 國 家 選 定

서울 國際컨설팅 Co. (1989.1)	羅元燦, 宋河律 (1989.11)	金 學 洙 (1990.10)	李善煥, 孫正植 (1991.8)
〈우리나라와의 相互依存關係에 依한 基準〉 1. 우리보다 經濟水準이 낮은 國家 2. 地理的, 歷史的 配慮 3. 對外政策과 符合性 4. 經濟的인 相互補完性 〈對象國 評價에 關한 基準〉 5. 成長潛在力 6. 外債償還 7. 外交効果 期待되는 未修交國	〈成長潛在力〉 1. 經濟成長率 2. 政治的 安定度 3. 產業成熟度 〈自助努力〉 4. 經濟成長率 5. 國內 總投資增加率 6. 總輸出增加率 〈外債所要額〉 7. 財政收支/GDP 8. 經常收支/GDP 〈外債償還能力〉 9. 外 債 殘 額 (GDP) 10. 外 債 元 利 金 償還 比率 〈우리나라의 進出擴大 可能性〉 11. 直接投資環境 12. 天然資源 賦存度 13. 總輸入規模	1. 輸出 2. 輸入 3. 海外投資	〈定量的 要因〉 1. 國民總生產 2. 雇傭 3. 外債償還比率 4. 貧困程度 5. 援助要請規模 〈定性的 要因〉 6. 우리나라의 長短期 國益 7. 受援國의 經濟狀況과 必要 8. 援助管理能力 9. 經濟政策의 質 또는 政策 改善努力 10. 他援助에 依한 資金調達 可能性

資料：서울國際컨설팅Co,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對象事業의 效率的 選定方案, 1989. 1.
羅元燦·宋河律,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開發援助政策, 1989. 11.
金學洙,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經濟協力方案, 1990. 10.
李善煥·孫正植,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經濟協力 政策方向, 1991. 8.
韓國國際協力團, 開發協力部, 1991. 12.
黃仁政, 韓國型 對開途國 經濟協力方案 : 槪念과 政策方向, 1992. 9.
尹海鎭, 우리나라 政府開發援助의 國別差別化政策方案, 1992. 11.
註：順序는 硏究發表日字 基準임.

基 準 의 比 較

1992 豫算 (1991.12)	黃 仁 政 (1992.9)	尹 海 鎭 (1992.11)
1. 經濟的 側面 (成長·交易· 資源) 2. 外交·政治的 側面 3. 人道主義的 側面 4. 協力形態別 配慮 5. 圈域別 配慮	〈經濟的 要因〉 －成長潛在力 1. 經濟成長率 2. 投資率 3. 製造業比重 4. 輸出增加率 －外資所要額 5. 財政狀態 6. 經常收支 －外債償還能力 7. 外債比率 8. 元利金償還 負擔率 －우리나라 進出可能性 9. 輸入規模 10. 資源保有 11. 投資環境 〈12. 受援國의 自助努力〉 〈13. 所得그룹別 配慮〉 〈地域別 配慮〉 14. 아시아 重點, 其他地域은 政治, 經濟的 據點確保考慮 〈15. 協力形態別 配慮〉	○一般配分基準 〈交流潛在性〉 1. 交易量/GNP 2. 交流便利性(距離) 〈自救努力度〉 3. 經濟成長率 4. 產業成長率 5. 投資增加率 〈經濟性〉 6. 市場性(人口) 7. 市場性(1人當 GNP) 8. 市場性(面積) 9. 市場性(GNP) 10. 交流性(我國과 貿易/總交易量) 11. 交流性(我國과 投資) 12. 交流性(我國과 建設) 〈資源配分 效率性〉 13. 軍人數/人口 14. 國防費/GNP 〈援助受容性〉 15. 被援助額/人口 16. 被援助額/GNP 〈基本生活水準〉 17. 敎育達成度 18. 平均壽命 19. 라디오 補給率 20. 1人當 實質所得 ○特別配分基準 1. 國際政勢變化 2. 歷史·文化的 特殊한 關係 3. 其他 特定要因 ○BHN基準 1. 基本生活水準(4個) 2. 援助依存度

〈圖 Ⅳ-5〉 重點協力 上位對象

	羅元燦 1』	金學洙 2』	1992豫算 3』	尹海鎭 4』
아세아	泰國 印度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PNG (7國)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泰國, 印度, 필리핀 PNG 파키스탄 브르나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10國)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PNG 미얀마 (6國)	인도네시아, 泰國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PNG,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네팔, 스리랑카 (13國)
中南美	코스타리카 (1國)	파나마 칠레 과테말라 에쿠아돌 (4國)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共) 과테말라 에쿠아돌 볼리비아 (6國)	도미니카(共) (1國)
아프리카	보츠와나 소말리아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 카메룬 모리셔스 짐바브웨이 (8國)	라이베리아 카메룬 (2國)	코트디브와르 자이레 앙골라 세네갈 카메룬 케냐 (6國)	나이지리아 말리 라이베리아 자이레 카메룬 (5國)
中東·其他	예멘 터키 이집트 모로코 (4國)	예멘 오만 리비아 이집트 (4國)	이집트 모리타니아 (2國)	예멘 (1國)
計	20國	20國	20國	20國

註 : 1) 다음 資料에서 選定된 協力對象國家中 上位 20個 國家를 基準으로 作成함.
1』 羅元燦·宋河律, 前揭書.
2』 金學洙, 前揭書
3』 韓國國際協力團, 開發協力部(機資材 供與의 境遇)
4』 尹海鎭, 前揭書(一般配分基準의 境遇)
2) 서울國際컨설팅Co와 沈義燮의 硏究에서도 國家를 提示하고 있으나 定量的 方法에 依한 具體的 基準이 明示되고 있지 않으므로 參考로 收錄함.

20個國家 選定比較

共通選定國家	純計	參考	
		서울國際컨설팅 Co.	沈義燮
〈4人 共通〉 PNG, 방글라데시 〈3人 共通〉 인도네시아, 泰國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2人 共通〉 베트남, 印度, 미얀마	17國	베트남 캄푸치아 미얀마 스리랑카 솔로몬제도 西사모아 PNG (7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泰國 필리핀 北마리아나 피지 (6國)
〈2人 共通〉 도미니카(共) 과테말라 에쿠아돌	9國	페루 (1國)	CBI (9國)
〈4人 共通〉 카메룬 〈2人 共通〉 라이베리아 자이레 세네갈 케냐	14國	나이지리아 앙골라 (2國)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브와르 中央아프리카 카메룬 (6國)
〈3人 共通〉 예멘 이집트	7國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3國)
	47國	10國	24國

羅元燦, 宋河律의 硏究는 定量的 方法에 依해 國家를 選定한 最初의 試圖로 評價되는데 成長潛在力 等 經濟的 變數를 使用하여 最貧國과 低·中所得國의 順位를 提示하고 最貧國에서 5國과 低·中所得國에서 15國을 選定 20個國을 重點國家로 選定함으로써 BHN次元의 援助目的도 함께 配慮하고 있다.

金學洙 硏究는 變數의 基準年度에 動態性을 考慮하고 輸出·入과 海外投資 等 經濟的 目的에 重點을 두었고, 가장 最近의 尹海鎭 硏究는 從來 提示된 方法論보다 多樣한 接近을 試圖하였는데 對象國家選定基準을 모든 國家에 一律的으로 適用되는 一般配分基準과 人道主義的 次元의 BHN基準 및 特別配分基準으로 分類하고 開發援助의 目的인 政治·外交的 側面, 經濟的 側面 및 人道主義的 側面에서 考慮될 수 있는 變數를 廣範圍하게 利用하는 等 더욱 進展된 硏究로 評價된다.

〈表 Ⅳ-7〉 1992 機資材 供與事業의 國別配分計劃

(單位 : 個國, %)

	아시아	아프리카	中南美	中東	其他	計
A. 프로젝트型事業 實施國	3	2	4	1		10(11.1)〈20.0〉
B. 重點協力 對象國	3	4	2	1	2	12(13.3)〈16.9〉
C. 準重點協力 對象國	4	10	6	2		22(24.4)〈22.0〉
D. 人道的次元 支援對象國	2	8	4	1	1	16(17.8)〈11.2〉
E. 移住 및 外交支援 對象國	1	5	2國 2協力圈	1	1機構	9國 1機構 2協力圈(21.1)〈8.5〉
F. 旣 支援約束 및 繼續事業國	3	2	1	1	4機構	7國 4機構 (12.2)〈21.4〉
計	16 (17.8) 〈20.7〉	31 (34.9) 〈32.2〉	19國 2協力圈 (31.1) 〈25.6〉	7 (7.8) 〈9.6〉	3國 5機構 (8.9) 〈11.9〉	76國 5機構 2協力國 (100.0)

註 : 1) 財源配分基準 : A(20萬$), B(14萬$), C(10萬$), D(7萬$), E(7萬$), F(7萬$~30萬$)

2) ( )內 構成比는 76國+2協力圈(알젠틴, 칠레外 카리브沿岸 7國의 合計)의 9國+5個機構를 合計한 85國 5個機構를 母數로 함.

3) 〈 〉表는 金額基準構成比로 留保額은 除外됨.

韓國國際協力團은 1992年의 機資材 國別配分計劃에서 처음으로 프로젝트型 事業 實施國家와 重點 및 準重點協力對象國 等으로 區分하고, 이를 圈域別로 國家를 選定하여 財源을 差等配分하는 政策轉換이 試圖되었는데 이와같은 方法이 開發援助政策 部署에서 最初로 試圖되었다는데 意義를 찾을 수 있다.

이들 4가지 硏究를 基準으로 各己 選定된 國家中 上位順位 20個 國家를 基準時 對象國家에 包含되는 國家數는 總 47個國이고 이中 4人 또는 機關이 共通으로 選定한 國家는 아세아의 PNG,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의 카메룬 等 3個國에 不過하며 3人이 共通으로 選定한 國家는 아세아의 인도네시아, 泰國,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中東 및 其他의 예멘, 이집트 等 7個國, 2人 共通選定國家는 베트남 等 10個 國家이고 나머지 27個 國家는 전혀 重複이 안된 1人選定 國家이다.

支援對象國家 選定이나 選定된 國家를 重點 또는 準重點 等으로 區分하는 等의 差等化 戰略에 있어 各自 考慮하는 變數의 種類와 이들의 加重値 및 基準時點이 다르고 方法論의 差異가 있으므로 多樣하게 論議되고 있는 基準을 劃一化 또는 統一시키기는 至難한 일이나 硏究方法上 다음과 같은 點들이 補完되었으면 한다.

첫째, 提示된 變數의 數가 3個에서 20餘個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바 政治, 外交的 側面, 經濟的 側面, 人道主義的 側面 等 援助의 目的을 配慮한 各種 變數를 總網羅(Exhaustive)하여 變數의 內容이 經濟的 側面 等 一部 目的에 偏在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둘째, 變數가 지나치게 많아 槪念的으로 類似하여 獨立性이 缺如되고, 各 要素를 說明하는 數個의 最終說明 變數間에 높은 相關關係가 있을 境遇 一部變數를 除外시키는 作業을 先行하는 共線性(Collinearity)의 問題가 論議됨으로써 要素의 說明力을 提高하는 가장 適合性(Appropriateness)이 있는 變數가 選定되어야 하며 說明力을 提高할 수 있는 要素나 變數의 開發이 時急하다.

세째, 變數가 많을 수록 統計의 信賴性이나 結果의 客觀性에 보다 接近될 수도 있겠으나 加重値賦與에서 나타나는 主觀的 自意性은 그만큼 커지게 되므로 變數의 獨立性과 加重値의 信賴性 提高를 爲해 變數의 種類와 加重値에 變化를 주어 導出된 數個의 시뮬레이션中에서 國別順位를 定하는 方法도 考慮해 볼 수 있다.

네째, 援助의 3가지 目的을 同時에 配慮할 境遇 이들 目的間의 相衝性 — 例컨대 無償協力이나 人道的 考慮에 依한 援助를 하면서 有償協力이나 經濟的 考慮에서 論議될 수 있는 外債償還能力 等을 國家選定의 變數로 考慮하는 等 — 에 對한 克服問題에 有念해야 되며 그 代案으로 變數內容과 加重値의 調整은 勿論 援助形態別, 援助目的別 基準設定이 提示될 수 있다.

다섯째, 國別 援助의 決定이 各 受援國의 多樣한 援助需要 — 例컨대 A國은 敎育, B國은 農業 —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援助對象國의 援助需要를 同一하게 보고 國別選定基準을 劃一化시키는 것은 問題가 있다. 大部分의 硏究된 國別 配分基準들이 援助手段을 統合한 綜合配分基準만을 提示하고 있는 바 手段別 配分基準(二國間 協力의 形態別, 多國間, 또는 綜合配分基準)은 勿論 圈域別, 所得그룹別, ODA 目的別 等 多樣한 基準이 提示되어 政策樹立에 選擇의 幅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變數의 基準時點은 後進國統計의 未備點을 勘案 動態性이 勘案되어야 한다.

일곱째, 새로운 國別基準의 提示에 앞서 過去와 現行 國別配分政策에 對한 現況과 問題點에 對한 分析이 前提되어야 하고 새로 提示된 代案을 實施하였을 境遇 豫想되는 實益과 效果 等에 對한 檢證이 必要하다.

여덟째, 受援對象國이 우리나라 ODA의 對象國家를 選定하는 것이므로 모든 開途國 中에서 우리나라보다 1人當 國民所得이 높은 國家나, 開途國中 比較的 國民所得이 높은 高中所得國(UMICs), OECD에서 論議되고 있는 1人當 GNP가 2.465$(1990年 基準) 以上인 國家, 政府當國에서 政

策的으로 受援對象에서 除外하거나 또는 包含豫定國家들에 對해서는 硏究對象國에의 包含與否를 愼重히 考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開發援助를 어떤 나라에 얼마만큼을 支援할 것인가 하는 基準을 設定하는 것은 그리 容易한 問題가 아니므로 이에 對한 深度깊은 硏究가 持續化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主로 政治·外交的 目的으로 小規模 多國家 支援方式이 繼續되어 왔으나 앞으로 經濟的 要因을 보다 많이 考慮하여 우리나라와의 開發援助를 通하여 相互利益이 極大化될 수 있는 國家를 重點對象國으로 選定하는 協力方式으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몇가지 事項이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定量的 方法에 依한 國別配分基準의 硏究와 이의 提示는 政策的으로 重要한 參考는 될 수 있으나 國家政策에 그대로 反映하기에는 많은 無理한 點이 따른다.

둘째, 앞으로 適切한 模型開發에 따라 重點對象國 協力方式을 指向한다 하더라도 過去 支援對象國에 對한 갑작스런 援助中斷은 旣存効果를 半減 또는 逆効果를 가져오게 되므로 漸進的인 政策轉換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旣存 政治·外交的 目的 援助對象國에 對하여서는 現象維持 또는 漸進的으로 援助規模를 縮小하고 重點協力對象國에 對하여서는 每年度의 豫算增額分과 他國家 援助節減分을 集中的으로 支援하는 方法(Incrementalism) 等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機資材供與事業의 境遇 旣存의 受援國을 減少시키기 爲해서는 1992機資材 供與國中에서 公館不在國家 39個國과 人口規模가 100萬 未滿인 17個國中에서 選別的으로 供與對象에서 除外하거나 支援規模가 적은 技術協力으로 代替하는 方案이 講究될 수 있을 것이다.

(5) 支援分野

開發援助의 支援分野는 開途國의 經濟開發 및 福祉向上에 寄與할 수 있도록 支援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目標를 爲해 開途國의 經濟發展이 發展의 다음 段階로 圓滑히 移行될 수 있도록 經濟發展 段階別 接近方法을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開途國의 發展段階 및 程度를 考慮하여 適切한 協力對象事業, 對象技術 및 協力形態를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爲해서는 優先 開途國 發展段階別 分類基準을 明確히 하여야 하는데 開途國 經濟의 發展段階에 따른 産業構造, 貿易構造, 勞動市場, 技術水準을 勘案한 分類方法을 適用토록 하고 特히 各 發展段階別 主要 經濟發展 目標를 勘案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特히 機資材 等 供與事業의 境遇 開途國의 經濟開發이나 福祉向上과 無關한 分野에 消費財 爲主로 開發援助가 執行되고 援助의 受惠도 特定部類에 限定되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農水産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等 全産業에 걸쳐 各 發展段階別로 受援國의 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適格分野를 選定支援함으로써 援助의 惠澤이 國民全體에 擴散됨은 勿論 우리나라의 國家的·經濟的 利益이 隨伴될 수 있는 互惠的分野에 優先을 두어야 할 것이다.

卽 우리의 立場에서 볼때 制限된 資本, 技術力을 考慮하여 우리가 比較優位를 가진 國際競爭力이 있는 産業과 産業構造調整에 連繫되는 分野, 資源의 安定的 供給 等 援助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는 事業을 發掘·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開發援助의 分野別 配分政策을 爲해 가장 알려진 方法論의 하나가 經濟發展段階別 接近方法으로 同 方法을 援用한 日本 經濟企劃廳報告書(1988)는 開途國을 4段階 發展過程으로 區分하여 이에 알맞은 對象産業·對象技術·協力形態를 提示하고 있다.

우리나라 境遇는 羅元燦(1989)이 最初로 이같은 方法을 試圖한 바 있는데 그는 開途國을 3段階 發展過程으로 區分하고 段階別 對象産業과 對象技術을 提示하였다.

韓國國際協力團에서는 1991年末 1992年度의 豫算配分計劃을 樹立하면서 國

〈圖 Ⅳ－6〉 開發段階別 協力對象分野 및 協力形態

區分	1 段 階	2 段 階	3 段 階	4 段 階
對象產業	○農林水產業 ・食糧自給 및 輸出作物 增産 ・農産物 加工 및 流通 ・金融制度의 擴充 ○鑛工業 ・在來産業 ○基礎 인프라스트락쳐 ・農村道路, 基幹道路, 鐵道·港灣의 整備 ・都市 上下水道의 擴充	○農林水產業 ・食糧自給 및 輸出作物의 增大 ・農産物加工 및 流通 ○鑛工業 ・在來産業 ○基礎 인프라스트락쳐 ・農村道路, 基幹道路, 鐵道·港灣의 整備 ・都市 上下水道의 擴充	○農林水產業 ・生産作物의 多角化 ・農産物의 加工, 流通 ○鑛工業 ・非耐久財를 中心으로 한 輸出代替産業(第1次 輸出代替)	○農林水產業 ・生産作物의 多角化 ○鑛工業 ・鑛工業等 重化學工業製品을 中心으로 한 輸入代替的 産業(第2次 輸入代替) ・機械類等 重化學 工業製品을 中心으로 한 輸出代替的 産業(第2次 輸出代替) ・中小企業 育成
對象技術	○一般 基礎育成等 受容이 容易한 應用技術의 移轉 ○研究補給基盤의 擴充	○一般 基礎育成等 受容이 容易한 應用技術의 移轉 ○研究補給基盤의 擴充	○研究補給體制의 強化 ○中位技術의 移轉	○專門技術分野의 交流
協力形態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技術協力 프로젝트等 ○無償資金協力等 ○ODA 協力中心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技術協力 프로젝트等 ○無償資金協力과 有償資金協力 併行(無償>有償) ○ODA와 民間協力併行 (ODA>民間協力)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技術協力 프로젝트等 ○有償資金과 無償資金協力 併行(民間協力>ODA)	○共同研究, 프로그램, 專門家의 派遣 및 招請 ○有償資金協力 中心

資料 : 日本經濟企劃廳 報告書(1988)

家選定에 있어 重點國家方式을 導入한 外에도 支援對象分野의 基準을 『1992年度 機資材 等 供與事業 施行指針』에 마련하여 90余個國에 示達하고 있다.

同 基準에 依하면 機資材供與는 BHN과 經濟開發支援을 爲한 部門으로 分類하여 5個 圈域別로 7個分野 14個의 重點支援品目에서 支援토록 하였고, 프로젝트型事業은 受援國의 經濟·社會의 均衡있는 發展과 國民福祉向上에 直結될 수 있는 6個分野 29個 對象事業을 提示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巨視的 方法에 依한 支援分野의 基準設定은 個別國家에 對한 實際 援助供與에 있어 均一的으로 適用하기에는 많은 問題點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一般原則의 提示로서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 現實이므로 國別硏究에 依해 이를 補完토록 해야 될 것이다.

2. 開發援助配分의 構造調整과 協力形態別 推進戰略

가. 現況 및 問題點

1991年 開發援助의 二國間協力(Bilateral) 對 多國間協力(Multilateral) 比率은 39.1 : 60.9%로서 DAC會員國들의 同 比率 73 : 27%와는 크게 相異하며 二國間協力 比率은 無償協力이 77.2%로 有償協力 22.8%보다 높다.

無償協力 豫算은 數個 部處로 分散되어 있으나 主로 韓國國際協力團이 管掌하고 있다. 無償協力의 內容을 보면 機資材供與事業 等의 無償援助가 62.3%, 硏修生招請 等의 技術協力이 37.7%이나 無償協力中 프로젝트型 事業(4%)과 開發調査事業(9%)이 技術協力事業의 性格을 기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包含時 技術協力의 比率은 40% 以上이 된다.

無償協力의 主要 事業別 構成比를 보면 機資材供與가 49.3%로서 가장 많고 技術協力事業은 硏修生招請 14.6%, 專門家派遣 0.9%, 靑年奉仕團·醫療團·跆拳道 等 派遣 6.3% 等이다.

1991年 開發援助의 形態別 地域別 配分構造를 보면 無償援助는 아세아(31.6%) > 아프리카(28%) > 中南美(27.2%) > 中東(5%) 順이고, 硏修生招請 및 專門家 派遣은 아세아(48.6%, 39%) > 中南美(16%, 33.3%) > 아프리카(11.3%, 11.1

家選定에 있어 重點國家方式을 導入한 外에도 支援對象分野의 基準을 『1992年度 機資材 等 供與事業 施行指針』에 마련하여 90余個國에 示達하고 있다.

同 基準에 依하면 機資材供與는 BHN과 經濟開發支援을 爲한 部門으로 分類하여 5個 圈域別로 7個分野 14個의 重點支援品目에서 支援토록 하였고, 프로젝트型事業은 受援國의 經濟·社會의 均衡있는 發展과 國民福祉向上에 直結될 수 있는 6個分野 29個 對象事業을 提示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巨視的 方法에 依한 支援分野의 基準設定은 個別國家에 對한 實際 援助供與에 있어 均一的으로 適用하기에는 많은 問題點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一般原則의 提示로서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 現實이므로 國別硏究에 依해 이를 補完토록 해야 될 것이다.

2. 開發援助配分의 構造調整과 協力形態別 推進戰略

가. 現況 및 問題點

1991年 開發援助의 二國間協力(Bilateral) 對 多國間協力(Multilateral) 比率은 39.1 : 60.9%로서 DAC會員國들의 同 比率 73 : 27%와는 크게 相異하며 二國間協力 比率은 無償協力이 77.2%로 有償協力 22.8%보다 높다.

無償協力 豫算은 數個 部處로 分散되어 있으나 主로 韓國國際協力團이 管掌하고 있다. 無償協力의 內容을 보면 機資材供與事業 等의 無償援助가 62.3%, 硏修生招請 等의 技術協力이 37.7%이나 無償協力中 프로젝트型 事業(4%)과 開發調査事業(9%)이 技術協力事業의 性格을 기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包含時 技術協力의 比率은 40% 以上이 된다.

無償協力의 主要 事業別 構成比를 보면 機資材供與가 49.3%로서 가장 많고 技術協力事業은 硏修生招請 14.6%, 專門家派遣 0.9%, 靑年奉仕團·醫療團·跆拳道 等 派遣 6.3% 等이다.

1991年 開發援助의 形態別 地域別 配分構造를 보면 無償援助는 아세아(31.6%) > 아프리카(28%) > 中南美(27.2%) > 中東(5%) 順이고, 硏修生招請 및 專門家 派遣은 아세아(48.6%, 39%) > 中南美(16%, 33.3%) > 아프리카(11.3%, 11.1

〈表 Ⅳ－8〉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形態別 地域別 配分

(單位：%)

區分 \ 地域			아시아	아프리카	中南美	中 東	其 他	計
無償援助[1]	1977～1990		18.5	40.2	29.3	7.4	4.6	100.0
	1991		31.6	28.0	27.2	5.0	8.2	100.0
	計		20.0	38.8	29.0	7.1	5.1	100.0
技術協力[2]	研修生招請	1963～1990	67.1	12.9	9.7	9.3	1.0	100.0
		1991	48.6	11.3	16.0	7.5	16.6	100.0
		計	66.4	12.8	10.0	9.1	1.7	100.0
	專門家派遣	1963～1990	52.9	19.0	22.6	3.2	2.3	100.0
		1991	39.0	11.1	33.3	8.3	8.3	100.0
		計	52.0	18.4	23.3	3.6	2.7	100.0
	青年奉仕團派遣	1990～1992	100.0	-	-	-	-	100.0
對外經濟協力基金[3]	1991		56.8	30.3	6.4	6.5	-	100.0

註：1) 金額基準

2) 人員基準

3) 金額基準：'91末 借款決定額 基準

%)>中東(7.5%, 8.3%)의 順이며 靑年奉仕團은 아세아地域에 限定되고 있고, 對外經濟 協力基金은 아세아(56.8%)>아프리카(30.3%)>中東(6.5%)>中南美(6.4%) 順으로 되어있어 全體的으로 아세아地域이 높은 比率을 點하고 있다. 國別配分에 있어서 提起되는 問題點은 年度別 趨勢에 起伏이 甚한데 이는 그동안 開發援助가 各 部處로 多元化되어 推進됨으로써 國別 配分에 對한 綜合的인 基準이 없이 受援國의 要請이나 短期的 眼目에 따른 配分의 結果이며, 形態別 配分에 있어서 相互 有機的인 考慮가 全혀 되어있지 못하다는 點이다.

〈表 Ⅳ-9〉 ODA 構造의 國際比較(1991)

(單位 : %)

區 分	韓 國	先 進 國						備考 1)
		日本	美國	프랑스	오스트리아	伊太利	DAC	
〈二國間協力〉	39.1	74	72	78	75	61	69	70
無償援助	18.8	16	48	22	22	24	34	10
技術協力	11.4	15	25	29	17	40	22	20
有償協力	8.9	43	△1	27	36	25	13	40
〈多國間協力〉	60.9	26	28	22	25	39	31	30
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 : OECD

註 : 1) 經濟企劃院의 1996年度 構造調整目標値임(經濟企劃院 資料, 1990.12)

〈表 Ⅳ-10〉 開發援助의 配分構造(1991)

區 分	構成比 (%)
二國間 協力	39.1
〈無償協力〉	30.2 (100.0)
○無償援助	18.8 (62.3)
機資材供與	14.9 (49.3)

區　分	構成比 (%)
프로젝트型事業	1.2 (4.0)
開發調査	2.7 (9.0)
○技術協力	11.4 (37.7)
研修生招請	4.4 (14.6)
專門家派遣	0.3 (0.9)
特殊目的支援 [1]	1.9 (6.3)
其他 [2]	4.8 (15.9)
〈有償協力〉	8.9
多國間 協力	60.9
〈國際機構 分擔金〉	12.2
〈國際機構 出資〉	48.7
計	100.0

註 : 1) 青年奉仕團, 醫療團, 跆拳道 等 派遣
2) 共同研究開發, 韓·아세안協力 等

1992年 韓國國際協力團의 開發援助規模는 3千萬$에 不過하나 協力對象國數는 126個國(6個 國際機構 除外)으로 우리나라와 協力對象國家數가 類似한 日本의 130個國 116億$(英國은 120個國 26億$)에 比較하여 적은 豫算으로 많은 國家를 支援하고 있어 援助의 質的低下를 가져오는 것으로 判斷된다. 이 點에 對해 Mosley의 見解에 依하면 援助供與國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援助의 質은 더욱 低下되게 마련인데 그理由는 主로 可能한한 많은 國家에 對해 援助를 두루 供與하려는 外交的 實利(Diplomatic Interest)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受援對象國家를 줄이고 重點國家支援 方式으로 轉換하기 爲해서는 于先 開發 援助의 主要形態인 無償援助와 技術協力間에 形態別, 國別, 豫算配分에 對한 連繫性 強化가 必要하다.

例컨데 單位事業費가 比較的 큰 機資材供與國中 重點國家가 아닌 國家에 對해서는 單位事業費가 적은 技術協力 中心으로 轉換하거나, 經濟的 目的과 聯關이 큰 開發調査는 아세아中心으로 實施하는 것이 効果的일 것이다.

나. 政策方向

(1) 開發援助配分의 構造調整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配分構造는 主要 先進國의 國別配分은 勿論 援助形態別 配分構造와 크게 相異한데 先進國의 配分比率이 우리나라의 政策樹立에 큰 도움이 되는지 與否를 判斷하는 것은 이에 對한 構造的 分析 없이는 매우 어려운 問題이며, 우리의 經濟的 與件, 援助理念과 目的, 援助效果 等을 勘案 우리에게 適正한 配分構造政策을 樹立해야 될 것이다.

外國의 境遇 二國間協力이 主가 되고 二國間의 形態別 配分에 있어서는 日本을 除外한 DAC 大部分 國家들의 境遇에는 無償協力의 比率이 매우 높다.

開發援助의 形態中 多國間協力의 豫算配分은 우리의 對外位相 提高에 따라 漸增趨勢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形態에 比해 漸次 硬直性을 띄게 될 것이므로 豫算의 劃期的인 增額이나 形態別 配分政策 樹立은 二國間의 協力이 主로 問題가 될 것이다.

二國 및 多國間 協力의 豫算配分이 다른 國家와는 달리 多國間協力의 構成比가 높은데 앞으로는 援助效果가 直接的으로 浮刻되는 二國間 協力의 比重이 增大되어야 할 것이다.

二國間 協力에 있어 有·無償援助間 配分構造의 目標를 定하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며 事業主體가 財務部와 韓國國際協力團으로 區分되어 每年 統合된 豫算戰略의 樹立은 勿論 事業施行上의 連繫가 容易하지 않다.

特히 援助形態別 配分에 있어 問題가 되는 것은 韓國國際協力團이 管掌하는 無償協力 — 機資材供與, 프로젝트型事業, 開發調査, 研修生招請, 專門家派遣, 青年奉仕團 派遣 — 等 無償援助 및 技術協力의 諸形態間의 構造調整이다.

1992年 韓國國際協力團 開發援助의 豫算規模는 3千萬$에 不過하여 우리나라의 援助形態別 1國當 豫算支援規模가 크게 零細한데 〈表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償援助事業은 1億원 內外이나 研修生招請이나 專門家派遣等의 技術協力은 1千萬원-2千萬원에 不過한 實情이다.

援助形態別 國別 支援規模와 件當支援規模를 우리나라 總 ODA規模의 100倍以上 水準인 日本과 比較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와 外交與件은 相異하나 經濟力이

類似한 自由中國과 比較해 보면 無償援助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05個國에 8,356百萬원을 供與하여 1國當 支援規模가 80百萬원이나 自由中國은 24個國에 22,650百萬원을 供與하여 1國當 支援規模는 우리의 12倍인 944百萬원이다.

無償援助의 最低와 最高支援額의 경우에 韓國은 最低 10千$, 最高 390千$에 不過하나 自由中國은 最低 300千$, 最高 3.150千$로 그 規模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開發調査와 프로젝트型事業에 있어서도 豫算基準의 1國當 支援規模가 우리의 1.3倍이며 硏修生招請은 3.3倍이다.

〈表 Ⅳ－11〉 開發援助의 形態別 1國當 支援規模比較(1992)

(單位：百萬원)

援助形態別	支援規模			支援國家數 (C)	1國當 支援規模		備考 (1國當 物量支援基準)
	豫算 (A)	物量 (B)	件當規模 (A/B)		豫算 (A/C)	物量 (B/C)	
〈無償援助〉							
機資材供與	8,356	105件[1]	80	105	80	1	1萬$－39萬$
프로젝트型事業	845	9件	94	9	94	1	1件
開發調査	2,203	12件	184	8	275	1.5	1－3件
〈技術協力〉							
硏修生招請	1,455	461名	3.2	87	17	5.3	1－39名
專門家派遣	309	47名	6.6	31	10	1.5	1－5名
靑年奉仕團派遣	1,079	52名	21	8	135	6.5	4－9名
醫療團派遣	501	17名	29	13	39	1.3	1－3名
跆拳道師範派遣	367	19名	19	17	22	1.1	1－2名

註：1) 國當 1件으로 看做

〈表 Ⅳ－12〉 韓國과 外國의 ODA 比較

援助形態別	單位	韓國[1]	自由中國[2]	日本[3]	1國當 支援規模			倍 數	
					韓國 (A)	自由中國 (B)	日本 (C)	B/A	C/A
〈無償援助〉									
支援國家數	個國	105	24	109					
豫算	百萬원	8,356	22,650	909,320	80	944	8,342	11.8	104.3
支援規模 (最低－最高)	千$/件	10－390	300－3,150	10－120,000					
〈開發調査 및 프로젝트型事業〉									
支援國家數	個國	14	9	64					
豫算	百萬원	3,048	2,580	267,486	218	287	4,179	1.3	19.2
件數	件 (百萬원/件)	21	9	460	1.5 (145)	1 (287)	7.2 (581)	0.7 (2.0)	4.8 (4.0)
支援規模 (最低－最高)	千$/件	18－735	100－1,500						
〈研修生招請〉									
支援國家數	個國	87	67	125					
豫算	百萬원	1,455	3,780	88,299	17	56	706	3.3	41.5
人員	名 (百萬원/名)	461	729	5,183	5.3 (3)	11 (5)	17 (17)	2.1 (1.7)	3.2 (5.7)

註：1) 韓國國際協力團 1992基準
2) 自由中國 外交部 및 經濟部의 1991豫算基準(研修生招請은 1992豫算)
3) 日本 外務省 및 JICA의 1990實績基準

協力對象國數를 段階的으로 縮小調整하기 爲해서는 援助形態別로 地域이나 國家別 配分에 있어 相互連繫性을 強化해 開發援助 可用財源을 最適配分(Optimum Allocation)하는 것이 重要한 當面課題中의 하나이다.

아직도 援助形態別로 몇개 部處에 業務가 分散되어 있어 綜合된 單一의 配分體系를 이룩하기는 困難하나 韓國國際協力團의 豫算이 兩者間 協力의 61% (1991基準)를 占하고 있고 이 比率은 每年 더욱 增大될 것으로 期待되므로 日本과 같이 15個 部處에 業務가 分散되어 體制의 整備·強化와 關聯하여 國際協力廳이라는 援助行政의 一元化된 機關을 새로 設置해야 한다는 意見이 擡頭되고 있는(豫算의 大部分은 外務省과 大藏省에 計上되어 있으며 그中 JICA豫算은 12%에 不過함) 實情에 比較하면 우리의 境遇 形態別 構造調整에 있어 큰 難點은 없을 것으로 生覺된다.

우리의 ODA 規模가 絶對的으로 零細하므로 短期的으로는 金額 規模가 가장 많고 事業의 施行單位가 比較的 큰 機資材供與事業보다는 적은 金額으로 開途國의 經濟發展에 必需的인 人力開發(Human Resources Development : HRD)을 圖謀할 수 있는 技術協力의 增大가 必要하고, 經濟的 目的과 關聯이 큰 開發調査와 援助效果가 國民에게 擴散되는 프로젝트型 事業 等에 重點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開發援助의 主要形態인 無償援助와 技術協力間에 形態別, 國別, 豫算配分에 對한 圓滑한 有機的 協力을 爲해 韓國國際協力團 組織內의 綜合調整機能이 強化되어야 한다. 形態別 連繫의 一還으로 1992 豫算配分에서 아프리카地域의 境遇 言語, 航空卷負擔 等 어려움으로 技術協力의 非效率性을 勘案, 機資材供與는 아프리카>中南美>아시아 順으로, 技術協力 및 開發調査의 境遇는 아시아>中南美>아프리카 順으로 協力形態의 地域別 特化를 配慮한 바 있다.

(2) 協力形態別 推進戰略

開發援助의 構造的 適正配分의 目標가 定해지면 이의 形態別 推進戰略이 樹立되어야 한다.

(가) 無償援助

無償援助의 對象國家 및 地域에 있어서는 無償援助의 境遇 償還負擔이 없으므로 基本的으로 最貧開途國(LLDCs)을 中心으로 하되 우리나라와의 外交 및 經濟協力의 增進을 通하여 相互利益이 極大化될 수 있는 國家와 地理的, 文化的 및 歷史的으로 가까운 國家에 對한 配慮를 強化해야 될 것이다.

現行의 多數國家 小規模援助方式을 止揚하고 重點協力國家에 特定事業의 戰略的 實施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爲해 高中所得國家(UMICs), 公館不在國家, 人口規模가 적은 國家 等은 漸次 選別的으로 供與對象에서 除外하거나 또는 支援規模가 적은 技術協力으로 代替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支援分野는 開途國의 經濟開發 및 國民福祉의 向上에 寄與할 수 있는 分野로 하되, 國家別로 特性에 맞는 對象分野를 積極 發掘해 나가도록 하고 災難救護나 食糧援助 等 人道的性格의 援助를 配慮토록 해야 될 것이다.

支援形態는 單純한 機資材供與에서 計劃的 프로젝트型事業 方式으로 漸進的으로 轉換토록 誘導하고 機資材供與 境遇에는 單純消費財보다는 受援國의 經濟開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資本財 또는 生産財로 轉換토록 해야 될 것이다.

(나) 技術協力

技術協力의 對象國家 및 地域에 있어서는 技術移轉의 受容能力과 受容態勢를 갖추고 있는 國家, 旣存 技術協力事業에 對한 事後管理가 必要한 國家, 商品輸出이나 直接投資 等 經濟協力의 增進이 期待되고 政府次元에서 支援이 約束된 國家, 所得水準이 높아 無償援助對象이 되지 않거나 大規模 有償協力이 困難한 開途國 等을 優先支援해야 될 것이다.

支援分野는 費用이 적게 드는 中間 또는 勞動集約的 技術, 開發經驗이나 人力養成 等을 爲해 緊要한 適正技術(Appropriate Technology)를 移轉토록 하고(Stewart), 우리가 相對的으로 強點을 지니고 있고 開途國에의 波及効果가 큰 事業, 機資材 供與事業과 패키지化 할 수 있는 프로젝트型事業, 農業 等 一次的 國民生活需要를 充足하기 爲한 分野, 硏究開發管理 및 基礎科學技術 振興을 爲한 科學技術分野 및 疾病退治와 人口抑制 等 保健·醫療分野를 優先支援해야

될 것이다.

(다) 有償協力

有償協力(EDCF)의 對象國家 및 地域에 있어서는 新規市場開拓, 輸出市場 多變化 및 資本財 輸出支援 等으로 우리나라와 經濟交流 및 相互 經濟的利益을 增進시킬 수 있는 地域을 優先하고 支援分野는 開途國의 經濟開發事業 實施에 必要한 開發事業 借款과 開途國의 産業發展에 必要한 機資材調達 借款 等을 優先 支援해야 될 것이다.

(라) 多國間協力

多國間協力에 있어서는 國際機構에 對한 出資 및 分擔金負擔은 우리의 經濟力 및 國際的 地位 變化에 相應한 義務的 性格의 負擔이므로 우리 能力에 맞게 忠實히 履行토록 하고, 國際機構에 對한 分擔金은 우리의 經濟的 能力을 勘案하여 適正한 優先順位를 基準으로 負擔規模를 決定토록 해야 될 것이다.

(마) 開發調査

그동안 實施된 開發調査의 問題點과 政策方向을 提示하면

첫째로 開發調査의 對象國家 및 地域에 있어서는 事業施行 與件 等을 勘案最貧開途國보다는 中進開途國을 對象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輸出, 海外投資, 資源開發, 建設進出擴大 等에 有利한 位置를 占有한 國家를 優先支援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 支援分野는 開途國의 國家開發計劃上 優先順位가 높고 開途國의 經濟開發 및 國民福祉 向上에 實質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分野, 開途國과의 共同事業 推進을 通하여 援助事業의 効果提高 및 技術移轉 圖謀가 可能한 分野, 經濟計劃·農業·資源·建設 等 우리나라의 開發經驗이나 컨설턴트가 國際的으로 競爭力을 갖고 있는 分野 및 技術協力 및 對外經濟協力基金과의 連繫가 可能한 分野 等을 優先支援토록 해야 될 것이다.

세째로 歐美先進 各國에서는 事業發掘 → 準備 → 審査 → 實施 → 評價라는 프로젝트사이클에 따라 完全한 形態의 프로젝트를 實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開發調査의 大部分을 日本과 같이 프로젝트사이클의 1, 2段階인 事業發

掘, 事前(PreF/S) 또는 本 妥當性 調査(F/S)만을 遂行하여 報告書를 相對國에 提供하는 것으로 事業을 마무리하고 있어 歐美先進供與國에서 完全한 形態의 프로젝트를 遂行하는 制度와는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因해 受援國의 關心低下 等 憂慮도 없지 않으나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EDCF와의 連繫로 事業의 效果性을 提高시킬 수 있으며 또한 期待되는 效果도 적지 않다. ODA 豫算規模가 너무 적고 開發調査와 EDCF의 主務部署가 分離되어 있는 等의 現實與件으로 보아 當分間은 歐美型의 프로젝트實施는 容易치 않을 것으로 展望되는 바 小規模 프로젝트型 事業에 對해서는 歐美型의 方法을 따르되, 大規模 프로젝트에 對해서는 長期的으로 歐美型과 日本型의 制度를 比較硏究하여 適切한 對應方案을 檢討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事業主管을 開發調査의 草創期인 1980年代初에는 海外建設事業을 振興하고 海外建設工事의 適正한 施工을 期하고저 主로 建設部에서 建設分野를 中心으로 限定的으로 施行하였으나, 一部 部處에서도 所管分野나 國家間 約束事業의 履行이라는 次元에서 通信을 爲始하여 資源, 農業 等에 對해 個別部處가 一貫性있는 計劃樹立 및 實施體系 等이 未備된 狀態에서 散發的이고도 一時的으로 實施하였다.

韓國國際協力團의 設立으로 業務의 統合的 推進이 期待되나 職員經驗 및 專門人力의 不足 等으로 內部 實施體制가 未洽한 實情인 바, 開途國의 開發調査 要請과 EDCF要請事業과 關聯한 需要增加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爲하여 開發調査事業을 體系的, 效率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體制가 早速히 構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財源의 制約으로 事業規模가 零細하여 事業施行實績은 年間平均 10件 內外에 不過하고 規模도 小規模 프로젝트가 大部分이며 事業에 따라서는 事前 妥當性 調査만 實施하고 本 妥當性 調査나 實施設計調査 等 本格的인 開發調査事業은 抛棄하는 境遇도 있어 一貫性 있는 事業施行이 要求된다. 向後 開發調査의 支援規模는 豫算制約 等을 勘案 短期的으로는 中·小規模事業(件當 100萬$ 內外)을 優先支援하고 長期的으로 支援規模를 擴大시켜 나가야 될 것

이다.

여섯째로 前述한 바와 같이 歐美型의 프로젝트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開發調査와 EDCF間에 連繫性이 要求되나 그간의 實績은 連繫性이 缺如되어 開發調査의 意義가 半減되고 있다는 點이다. 그동안 實施된 開發調査와 EDCF의 連繫實績을 보면 總實施件數 45件(單一事業基準) 中에서 EDCF 支援이 決定된 것은 3件으로 6.6%에 不過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兩 事業擔當機關間에 事業計劃에 對한 情報交流와 有機的인 業務의 連繫로 開發調査事業의 効果를 增大시켜야 될 것이다.

日本의 境遇 JICA의 開發調査가 OECF에 連繫되는 比率은 25%이고, ADB는 自體的으로 開發調査를 實施하여 이中 60%가 借款事業에 連繫되고 있다.

〈表 Ⅳ－13〉 開發調査의 連繫現況

(單位 : 件, %)

開發調査	資本協力과 連繫 1)		OECF와 連繫 2)	
	件數	連繫率	件數	連繫率
442	200	45	110	25

資料 : JICA企劃部(1992. 11)

註 : 1) OECF以外의 資本協力實績임.

2) 1974－1990年間 JICA가 外務省의 交付金으로 施行한 社會開發 및 農林水産分野의 實績으로 通産省 委託金施行分은 除外됨.

일곱째로 開發調査는 事業의 性格上 專門性이 要求되고 分野가 多樣하며 實施地域이 海外라는 等 特殊性으로 國內의 專門用役業體中 이와같은 業務를 海外에서 遂行한 經驗이 있거나 또는 向後 遂行할만한 與件을 갖춘 專門用役業體가 매우 制限되어 있는 바(日本의 境遇 19個分野에 475個社에 達하며 主로 契約에 應하는 業體는 140個社임) 專門 컨설턴트業體에 對한 育成策이 時急하다.

여덟째로 無償技術 用役業務를 建設部로부터 名實共히 韓國國際協力團에 承繼하는 法的問題뿐만 아니라(韓國國際協力團法 第6條), 그동안 各 部處에서 遂

行해오던 開發調査를 圓滑히 執行하기 爲해서는 關係部處와 事業計劃의 樹立時 綿密히 協調토록 하고(同法施行令 第11條), 技術協力이나 機資材供與 等 他協力手段과도 有機的 關係를 높이는 等의 業務體制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로 以上의 列擧한 事項들 外에도 日本 等과 같이 海外 47個國에 50個의 支社를 가지고 있는 JICA와 달리 韓國國際協力團의 境遇 優秀事業發掘을 爲한 情報채널의 未備와, 豫備調査를 爲한 分野別 派遣專門家의 確保上 隘路, 調査事業을 爲한 用役契約 節次上의 複雜性, 그리고 資金規模의 零細性과 歷史가 日淺하여 受援國들의 認識이 不足하거나 이를 國家官僚들의 消極的인 業務協助 行態 等도 克服해야 될 課題들이다.

3. 國別援助計劃의 樹立

가. 現況 및 問題點

開發援助의 實施는 各 受援國의 實情에 適合한 援助가 提供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分野에 어떠한 形態의 援助를 어느程度 規模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兩國間 協力 全般的인 次元에서 檢討·研究하여 國別援助 基本方針을 樹立하는 일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그러나 援助를 効果的으로 推進하기 爲한 이러한 國別援助計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프로젝트를 發掘·形成할 能力이 없는 開途國이 많고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아도 이들間에 事業優先順位를 判斷하기 困難한 國家들이 大部分이다. 援助計劃을 樹立해 보아도 計劃에 包含되지 않은 非計劃事業이 隨時로 追加되거나 事業의 優先順位가 變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家別 計劃의 立案이 이와같은 沮害要因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實的인 國家別 援助計劃을 樹立하는 努力은 繼續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先進國은 國別援助計劃에서의 이와같은 어려움 때문에 實際作業에 있어서 包括的인 國別援助計劃이 樹立되는 境遇는 적고 現實的으로는 實施豫定인 프

行해오던 開發調査를 圓滑히 執行하기 爲해서는 關係部處와 事業計劃의 樹立時 綿密히 協調토록 하고(同法施行令 第11條), 技術協力이나 機資材供與 等 他協力手段과도 有機的 關係를 높이는 等의 業務體制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로 以上의 列擧한 事項들 外에도 日本 等과 같이 海外 47個國에 50個의 支社를 가지고 있는 JICA와 달리 韓國國際協力團의 境遇 優秀事業發掘을 爲한 情報채널의 未備와, 豫備調査를 爲한 分野別 派遣專門家의 確保上 隘路, 調査事業을 爲한 用役契約 節次上의 複雜性, 그리고 資金規模의 零細性과 歷史가 日淺하여 受援國들의 認識이 不足하거나 이를 國家官僚들의 消極的인 業務協助 行態 等도 克服해야 될 課題들이다.

3. 國別援助計劃의 樹立

가. 現況 및 問題點

開發援助의 實施는 各 受援國의 實情에 適合한 援助가 提供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分野에 어떠한 形態의 援助를 어느程度 規模로 實施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兩國間 協力 全般的인 次元에서 檢討·研究하여 國別援助 基本方針을 樹立하는 일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그러나 援助를 効果的으로 推進하기 爲한 이러한 國別援助計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프로젝트를 發掘·形成할 能力이 없는 開途國이 많고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아도 이들間에 事業優先順位를 判斷하기 困難한 國家들이 大部分이다. 援助計劃을 樹立해 보아도 計劃에 包含되지 않은 非計劃事業이 隨時로 追加되거나 事業의 優先順位가 變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家別 計劃의 立案이 이와같은 沮害要因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實的인 國家別 援助計劃을 樹立하는 努力은 繼續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先進國은 國別援助計劃에서의 이와같은 어려움 때문에 實際作業에 있어서 包括的인 國別援助計劃이 樹立되는 境遇는 적고 現實的으로는 實施豫定인 프

로젝트 目錄을 中心으로 한 短期的인 計劃을 選好하는 傾向이 많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一回的이고 非計劃的인 事業推進으로 國家別 特性에 맞는 事業推進 計劃이나 戰略이 未備되어 援助事業의 效率性을 提高시키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나. 政策方向

國別援助計劃(Country Programming)은 個別國家의 經濟, 歷史, 社會, 文化, 政治 等에 對한 綜合的인 知識을 土臺로 誘導的이고 轉向的인 土臺위에서 技術, 資本, 人力 등 모든 開發資源 手段을 總網羅한 開發援助計劃을 그 나라의 開發與件과 要求에 알맞게 樹立施行하기 爲해 體系的이고 一貫性있게 接近하는 基本的인 틀을 만드는 方式이다. 主要先進國 大部分은 이러한 國別援助計劃을 基礎로 하여 援助를 實施하고 있다.

카나다는 內閣에 依해 決定된 重點支援對象國(現在 30國)에 對해서는 5個年 支援計劃으로 國別援助計劃(Country Program Review : CPR)을 CIDA의 3個 地域部署에서 作成하고 있다. 그러나 同 內容이 複雜하여 이의 作成에 2-3年의 長期間이 所要되므로 政勢變化에 迅速하게 對處하기 爲하여 援助의 基本的인 重點方向만을 簡單히 記述하는 Country Policy Framework(CPF)로 代替할 計劃으로 있다.

〈圖 Ⅳ-7〉 先進國의 國別援助計劃

國 名	國別援助計劃名	主 要 內 容
美 國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	○USAID 本部指針에 따라 現地事務所가 作成하는 5年單位의 分野別 援助計劃임.

國 名	國別援助計劃名	主 要 內 容
美 國		○對象國家 • 重點協力對象國 • 開發政策에 變更이 생긴 國家 • 現地事務所가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國家
카나다	Country Program Review	○CIDA에서 5年 單位로 最重點 協力對象國을 中心으로 하여 作成 ○支援規模, 重點支援分野, 援助實施方式, 他援助機關과의 協助, 援助國內 制約要因 等을 主要 內容으로 함.
스웨덴	Country Programming	○SIDA에 依하여 每 2年마다 原案을 作成하여 外務省의 承認을 得하는 形式을 取함. ○對象國은 프로그램支援 重點協力對象 17個國에 限함. ○一般經濟槪況, 外國援助의 動向, 스에덴의 支援實績, 分野別 槪況, 有望프로그램에 對한 翌年度 援助額 等이 主要內容임.
네델란드	Country Policy Plan	○外務省 國際協力總局 地域擔當課에서 作成 ○적은 資金의 效率的 利用 및 보다 計劃的인 援助實施라는 觀點에 10大 重點援助對象國(프로그램對象國)에 對하여 作成 ○過去 援助實績 및 問題點, 向後 援助指針, 네델란드의 農產物加工 分野外에 敎育訓練開發, 女性의 役割 및 環境 等에 關한 것을 內容으로 함.

國 名	國別援助計劃名	主 要 內 容
英 國	Country Policy Paper	○海外開發廳(ODA) 地域事務所의 資料 等을 基礎로 經濟企劃스텝(EPS)의 地域擔當 專門家가 草案을 作成하고 地域國이 整理하는 責任을 짐. • 草案을 在外公館으로부터의 意見收斂과 함께 外務省 英聯邦 本省, 大藏省, 通產省 및 英國 銀行과의 協議를 거쳐 正式 決定됨. • 同 페이퍼는 每年 作成됨. ○同 페이퍼는 所定樣式에 依해 作成되며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음. • 經濟情勢 • 援助의 歷史的, 政治的, 經濟的 背景 • 開發計劃 및 關聯 行政制度 • 必要한 援助의 形態 • 政治·經濟的 堅持에서의 援助의 檢討 • 其他 國家의 過去 5個年間 援助實績 • 向後 5個年間 英國의 援助方針 • 主要 프로젝트에 對한 援助支出 스케줄
日 本	國別援助實施指針	○國別援助 基本方向의 設定에 도움을 주기 爲하여 JICA에서 作成 ○JICA 海外事務所 設置 地域을 中心으로 作成함.

資料：日本 國際開發저널社, 主要先進國의 無償援助(1989) 및 本書2部에서 整理

國別援助計劃은 英國의 境遇가 比較的 發達이 되어 있는데 이는 舊植民地에 對한 行政指導에 根源을 두고 있을뿐 아니라 尨大한 人力과 時間들이 計劃 樹立作業에 投入되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의 境遇도 이러한 英國의 制度를 一部 導入하여 JICA에서 國別硏究會를 設置·運營하여 重點協力對象國에 對한 Country Report를 作成하고 있으며 海外事務所 設置國家를 中心으로 國別 援助實施 指針을 作成하고 있다.

國別援助計劃을 作成하기 爲하여서는 國別硏究가 先行하여야 하는데 日本 JICA의 國別援助硏究會 運營 및 國別援助實施 指針制度는 우리에게 많은 參考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의 國別援助硏究會의 目的은 重點協力對象國에 對한 有·無償援助의 效率的 支援方案을 講究하는 것으로 그 組織은 大學敎授 等 關係專門人士, OECF 關係者 등 6~7名으로 構成된 國別援助硏究會가 있으며 傘下에 JICA職員 8~10名으로 構成된 專擔硏究班(Task Force)이 있다.

運營方法은 專擔硏究班에 各 分野別로 基礎資料를 作成하며 이 資料를 基礎로 國別援助硏究會는 每月 1回씩 7~8回의 討論을 거쳐 報告書를 完成하게 된다. 現在까지 필리핀, 泰國,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等 主로 아시아 地域을 中心으로 13件의 報告書가 나왔다.

다음은 國別援助 實施指針으로[10] 作成目的은 國別援助 基本方向 設定에 도

---

10) 國別援助實施指針의 包含事項(日本)

Ⅰ. 政治, 經濟, 社會狀況
1. 政治狀況 : 政體, 獨立年月日, 國家元首, 政治機構, 內政, 政治動向, 外交關係
2. 經濟狀況 : 一般動向, 主要產業別 動向, 財政政策, 國際收支, 對外債務, 對日本 經濟關係
3. 社會狀況 : 主要分野別 動向, 所得分配 및 地域間 格差, 其他
4. 特技事項 : (例) 環境, 開發과 女性, 軍事費支出, 民主化 및 基本人權 等
5. 各種指標

Ⅱ. 經濟社會開發의 現況
1. 開發計劃의 槪要 : 目標, 課題
2. 開發重點分野別 主要政策 및 開發推進上의 問題點
3. 開發計劃을 爲한 投資計劃
4. 國家豫算

Ⅲ. 國際機關, 先進國의 援助動向
1. 主要 先進國의 援助

움을 주기 爲한 것이며, 作成節次는 1次的으로 所定樣式에 依하여 JICA 海外事務所가 基礎資料를 作成하며 本部 地域課에서 資料를 整理하게 된다. 이 資料는 各 事業部의 海外勤務經驗者를 中心으로 構成된 國別協力檢討會議를 거쳐 理事會 承認을 得한 후 外務省에 報告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國別援助計劃을 樹立하기 爲해서는 Country Report의 作成이 優先되어야 하며 이에는 많은 時日이 所要될 것이므로 圈域別로 重點國家를 選定하여 年次的으로 CR作成作業을 擴大토록 하되, 短期的으로는 主要受援國에 對한 國內外에서 쉽게 獲得될 수 있는 國別情報를 聚合하여 日本의 國別援助實施指針(또는 카나다의 CPF) 같은 形式의 指針書를 作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最適協力模型의 開發

가. 現況 및 問題點

우리나라 開發援助는 形態別로 各各 分散實施됨으로써 協力手段間에 相互關聯性을 缺如하였으며, 各各의 援助事業이 事業을 主管하는 各部處의 個別的論理 또는 主張에 左右되어온 面이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들間의 連繫性을

---

10) 繼續
2. 國際機關의 動向
3. 日本의 援助動向
Ⅳ. 援助의 重點分野
1. 槪 要
2. 內 容

部分	主 要 目 標				目的	內容	重點對象地域
	安定的 成長	輸出 促進	地域間 格差 是正	環境 保全			

Ⅴ. 協力實施上 有意事項
Ⅵ. 評價 結果의 포인트

強化시키고 資本協力과 技術協力을 패키지化하여 하나의 프로젝트事業으로 推進하는等 우리에게 適合한 援助模型을 開發할 必要가 있다. 無償協力의 境遇 無償援助는 單獨機資材 供與爲主로 되어왔고 技術協力은 資本協力과의 連繫를 爲한 協力이 不足하는等 非프로젝트援助를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主要先進國이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型 爲主로 支援하고 있는것과는 매우 對照的인 것으로 앞으로는 여러가지 協力形態中에서도 支援效果가 期待되는 中小型規模의 프로젝트型事業으로 漸次 轉換하여야 할 것이다.[11]

프로젝트型事業은 프로젝트에 關聯된 各種協力手段인 物的(例：機資材供與). 人的(專門家派遣, 硏修生招請).運營費用要素를 相互間의 適切한 組合으로 實施되는 事業으로, 特히 이들 要素를 하나의 事業計劃으로 統合하여 프로젝트의 發掘에서 計劃立案, 實施를 거쳐 終了에 이르기까지 一貫하여 計劃的이고도 綜合的으로 運營·實施하는 協力形態이다.

프로젝트型事業의 長點은 供與對象國의 經濟開發에 높은 優先順位를 갖는 投資에 寄與함으로써 經濟開發政策이나 過程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을 뿐만아니라 費途가 明確하여 援助資源이 適正하게 使用되었는지를 把握하기가 容易하고 受援國의 國民에게 技術移轉等의 實質的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援助의 效果도 現在와 같은 一回性 消耗的 機資材 供與에 比해 長期持續性을 維持할 수 있다. 프로젝트型事業의 被援國은 通常 프로젝트의 據點이되는 土地, 建物·施設等의 準備, 카운터파트의 提供 및 運營費等의 로칼코스트를 負擔하는것이 原則이며, 相互協力하여 共同으로 프로젝트를 實施하게된다. 또한 數年間에 걸쳐 人力面이나 金額面에서 相當한 規模의 協力을 展開하는 關係上 事前에 兩者의 責任分擔이나 附帶條件等에 對해 相互間에 充分한 合議가 있어야 하므로 通常 政府間協定 또는 事業 調査팀과 相對國 擔當機關과의 사이에 合

11) 開發援助의 效率性과 效果性側面에서 프로젝트援助가 重視되어야 함은 學者들을 爲始하여 (Browne) DAC나 主要供與國에서도 認識을 같이하면서도 最近에 非프로젝트援助가 漸增하고 있다.

그理由는 受援國側의 事情으로 經濟的 與件에 따른 援助吸收能力의 低下와 이에따른 프로젝트事業機會의 減少를 들 수 있고 供與國側 事情으로는 單純機資材供與가 財政 또는 人力負擔을 輕減시키는 便宜性, 機資材供與에 따른 輸出振興 및 市場擴大效果, 援助資金償還의 容易性 및 外交政策上 效果等의 面에서 長點이 있는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이다.

意議事錄(Record of Discussions : R/D)이 署名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프로젝트型事業은 이에對한 政策不在, 豫算規模의 零細性, 優秀事業發掘의 難易性, 受援國에서의 프로젝트事業 計劃 樹立能力의 不足과 프로젝트型事業보다는 單純한 機資材供與를 選好하는 性向等으로 活性化되지 못하였고 但只 이와 類似한 事業이 數件 實施되었을 뿐이다.

프로젝트型事業의 實施는 單純한 機資材供與에 比해 이를 擔當할 分野別 專門家가 必要하고 事業發掘, 施行, 事後管理에 이르기까지 長期間에 걸쳐 被援國과의 緊密한 協調가 必要하며 그동안 主要 先進國들의 施行過程에서 露出된 여러 問題點에 對해서도 留意해야 될 것이다.

나. 政策方向

(1) 事業發掘과 選定基準

프로젝트型事業을 活性化시키고 成功的으로 施行하기 爲해서는 適正한 프로젝트를 發掘하는 일이 가장 重要한 先決課題이다.

大部分의 開途國이 經驗不足으로 프로젝트型事業에 對한 槪念把握은 勿論 計劃樹立等에 어려움이 豫想되므로 事業計劃 立案段階에서부터 韓國國際協力團 海外事務所나 海外公館에서 適切한 情報蒐集과 受援國政府와의 政策對話를 通하여 優秀事業의 發掘과 形成에 積極的으로 協力해야 될 것이다.

○ 對象事業 選定基準

- 供與對象國에 對한 經濟開發은 勿論 우리나라의 國家的, 經濟的 利益이 隨伴될 수 있는 互惠的 事業
- 事業目標의 設定이 明白하고 現實的이며 國內의 社會·文化·環境에 對한 適應이 可能한 事業
- 供與 및 受援兩國家의 豫算과 技術面等을 考慮한 支援可能 事業
- 受援國의 프로젝트 實施體制가 準備된 事業(Local Cost負擔, 援助終了後 管理能力 및 維持體系保有與否等)
- 政府次元에서 旣 約束한 事業 및 旣存繼續事業

(2) 支援規模와 費用負擔

豫算制約等을 勘案하여 當分間은 1個國當(또는 프로젝트當)事業費 規模를 100萬 $ 內外의 中·小型 프로젝트를 對象으로 2~5年間에 걸쳐 支援하되 漸進的으로 支援規模를 擴大토록한다. 事業要素別로 受援國側의 費用負擔(Local Cost)事項을 事前에 明確히 할 必要가 있는데 被援國의 財源調達等에 制約이 있을 境遇에는 이에 對한 融通性을 賦與하여 援助效果를 有效하게 이끌어야 될 것이다.

〈圖 Ⅳ-8〉 프로젝트型事業 構成要素別 負擔主體

構成要素		負擔主體
物的要素	不動產：土地	受援國
	建物	兩側
	機械設備 (機資材 包含)	供與國
	附帶施設 (電氣, 用水施設等)	兩側
人的要素	專門家 派遣	供與國
	研修性 招請	供與國
	青年奉仕團 派遣	供與國
運營費	事業運營上 費用	原則：受援國

供與對象國의 Loal Cost 負擔事項(建物 및 施設建設의 例)

- 建物의 施設建設을 爲한 融資確保 및 整地作業
- 建設用地에 對한 配電, 給水, 排水, 電話線 施設等 附隨施設
- 援助에 必要한 機資材에 對하여 迅速한 通關 및 陸上運搬手段 確保
- 援助에 從事하는 人力에 對한 關稅, 入國稅 및 其他 財政的 徵收金을 免除
- 프로젝트를 完成하기 爲하여 供與國이 贈與하는 資金部門을 除外한 모든 經費負擔
- 施設 完成後, 當該施設이 效果的으로 利用 및 維持될 수 있는 方案 講究

(3) 事業의 種類 및 支援形態

事業種類는 施設支援事業, 프로젝트連繫 支援事業 및 前二者의 複合形事業으로 區分하여 施行한다.

〈圖 Ⅳ-9〉 프로젝트型事業의 種類

種 類	內 容
施設 支援事業	• 開發 프로젝트 遂行에 必要한 建物이나 施設의 建設에 必要한 支援
프로젝트 連繫 支援事業	• 關聯 施設物의 建築이나 整備는 供與 對象國側 責任下에 完了하고 • 我國側에서는 機資材供與+專門家 또는 靑年奉仕團 派遣+硏修生 招請事業을 連繫하여 支援함
施設支援事業+프로젝트 連繫支援事業	• 我國側에서 施設建築과 프로젝트 連繫事業을 同時에 支援하는 形態의 事業 施設建築事業+機資材供與+專門家 또는 靑年奉仕團 派遣+硏修生 招請事業

(4) 支援分野

供與對象國의 經濟·社會의 均衡있는 發展과 住民福祉 向上에 直結될 수 있는 分野로서 主要 對象事業은 農林水産業, 製造業,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等 모든 分野를 包括한다.

〈圖 Ⅳ-10〉 프로젝트型事業의 對象分野

分 野	對 象 事 業
農林水産業	• 食糧增産 • 家畜 및 水産養殖 • 園藝開發 • 土壤硏究 • 作物保護 • 家畜病豫防 • 灌漑技術增進 • 農業協同組合振興 • 食品 및 水産加工技術 增進 • 農耕地 利用

分　野	對 象 事 業
製造業	• 小規模 工場建立 및 運營 • 勞動集約的(衣類, 신발類)產業 • 組立加工業 • 生必品 加工關聯 事業 • 輸入代替產業
保健・醫療	• 家族計劃 • 母子保健 • 地域保健 및 醫院 • 醫藥品 製造技術
敎育·職業訓練	• 硏究所 및 職業訓鍊센타 運營 • 學校建立 • 韓國語敎育센터 運營
社會間接施設	• 中・小規模 交通施設(道路, 港灣, 橋梁) • 中・小規模 通信施設
其他	• 새마을事業 • 流通構造改善

5. 優秀事業의 發掘과 選定

가. 現況 및 問題點

오늘날 開發援助의 歷史가 길고 尨大한 規模의 協力을 實施하고있는 先進國家에서 조차 開發援助의 成敗要因으로 規模의 增大, 適切한 事後評價의 實施, 優秀人力確保와 함께 優秀事業發掘에 對한 問題意識을 갖고 있다. 一般的으로 自國의 經濟社會開發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이 不足한 開途國은 自國實情에 適合한 事業의 發掘(Identification)이나 形成 (Formation)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援助供與國은 優秀事業 發掘을 위하여 有關機關을 通한 情報蒐集, 需要調査, 政策對話등 多樣한 努力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그동안 開發援助를 部處別로 施行하여 總括調整하는 機能이 脆弱했으며 따라서 有關機關間의 協調體制를 通한 效率的 情報蒐集體制가 未備되어 있었다. 開發援助의 國別需要調査만 하더라도 事業에 따라서는 定期的인 需要調査가 實施되지 못하였거나 次年度의 計劃을 豫算要求後에 需要調査를 實施하는 境遇가 많았고 定型化된 需要調査 樣式도 없어 需要調査를 通한 優秀事業 發掘이 어려운 實情이었다.

受援國의 事業要請이 있을 境遇에도 이에 對한 確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事業推進 妥當性 協議等을 爲한 定期的인 政策對話(Policy Dialogue) 制度가 마련되지 못하는등 단지 受動的 要請主義(Request Basis)에 依한 事業推進의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이러한 要請主義에 依한 事業推進의 境遇에는 相對國이 要請하는 프로젝트만을 支援하게 되기때문에, 다른 援助供與國과의 重複可能性은 勿論 國民福祉와는 無關한 展示的인 事業이나 또는 다른 國家에서 忌避하는 優先順位가 낮은 殘存開發事業(Residual Development Projects)만을 맡을 可能性도 적지 않을 것이다.

特히 開發調査나 프로젝트型事業 및 專門家 派遣事業等의 大部分이 多數의 國別候補事業리스트中에서 良質의 프로젝트를 選定하는 方式을 取하지 못하고 受援國의 要求를 그대로 受容하는 實情인 바 이는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初創期에 나타나는 業務現實로 理解되며 따라서 앞으로는 프로젝트의 審査를 現行 要請順序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一定期間동안 모아서 優先順位를 가려내는 프로젝트 集合評價制度(Project Pool Appraisal System)를 導入』(金學洙 參考)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類似한 制度的 接近을 1992年의 開發調査 對象事業 選定을 爲한 事業發掘 過程에서 試圖한 바 있는데, 韓國國際協力團은 3次에 걸친 需要調査를 在外公館(30個), 政府關聯部處(15個), 政府投資機關 및 研究所等 出捐機關(23個), 民間用役協會(2個), 大學地域研究所(4個)等 總 74個 機關에 實施한 결과 39個國으로부터 56件의 事業要請書가 接收되었다.

그러나 韓國國際協力團 發足後 最初로 實施한 需要調査에서 나타난 共通的인 特徵은 開發調査에 對한 事前知識이나 認識等의 不足과 事前에 配布한 11個 問項에 達하는 需要調査表에 對한 記述上의 어려움等으로 事業名만을 記載한 것이 大部分이어서 事業의 槪略的인 內容把握마저 어려운 實情이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單純한 事業리스트의 獲得은 開途國의 長期開發計劃書나 또는 一部國家들이 每年 作成하는 T/A事業 提議目錄(印尼의 境遇 國家開發企劃部는 1992/1993年度 T/A事業으로 24個 分野에 353個를 提示하고 있음) 또는 世界銀行에서 提示하고있는 開途國의 Cofinancing 프로젝트 目錄에서 記述되고 있는 內容보다도[12] 資料의 價値가 뒤떨어진 것이 事實이므로 事業發掘에 큰 도움이 안되었다.

따라서 56件의 事業中 ①漠然히 事業題目만을 提示하고 內容이 具體的으로 記述되지 않는 事業, ②開發調査事業費나 本事業費가 지나치게 큰 大規模의 事

12) 印尼國家開發企劃部, List of Technical Assistance Proposals 1992/1993 및 世界銀行, Projects with Potential for Cofinancing by Official Aid Agencies,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Private Sources, 1992.

業, ③開發調査事業으로 볼 수 없는 性質의 事業 ④國內 컨설팅業體에서 遂行이 어렵다고 判斷되는 分野等을 除外시킨 殘餘事業을 事業選定基準에 依據 圈域別, 國家別 및 分野別로 配分하여 8個國의 7個分野 11個事業을 主候補事業(Prime Project Candidates)으로, 같은 方法으로 11個事業을 豫備候補事業(Reserve Project Candidates)으로 選定하였다.

그러나 1992年度의 事業實施中에 實際 受援國에 對한 事前調査를 爲한 出張準備過程에서 ①主 또는 豫備候補事業中 公館을 通해 보다 具體的인 事業內容 把握이 不可能하였거나, 內容把握을 爲한 質疑에 受援國의 應答이 없었던 境遇, ②P/I調査를 하기에는 受援國의 政情不安, 調査團의 身邊安全確保 困難等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 ③事業確認過程에서 受援國이 F/S를 直接着手 하였거나 또는 다른 供與國에서 먼저 着手된 境遇, ④外務部, 建設部等 關係部處와의 協議過程에서 否定的 意見이 提示되거나 當分間 保留意見이 提示된 境遇等의 事由로 當初 計劃했던 事業이 大幅 變更되었다.

이와같은 開發調査의 需要調査와 P/I實施까지의 過程에서 提起된 問題点은 開發調査에 對한 事前知識이나 認識이 不足하고, 豫算制約等으로 이의 實施 與否에 對한 確信感의 缺如等에서 오는 公館에서의 事業發掘에 對한 積極性 缺如等으로, KOICA의 事業發掘의 主要通路인 公館과의 事業發掘體制가 너무 脆弱하다는 點이다.

나. 政策方向

主要先進國의 境遇에는 援助實施機關의 尨大한 海外組織이나 在外 公館等을 通하여 優秀한 事業發掘을 爲하여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을뿐 아니라 年次協議에 依한 相對國 政府와의 充分한 政策對話를 通하여 優秀事業을 發掘 및 形成하는 積極的인 協議主義方式(Consultation Basis)을 採擇하고 있다.

〈圖 Ⅳ－11〉 先進國의 事業發掘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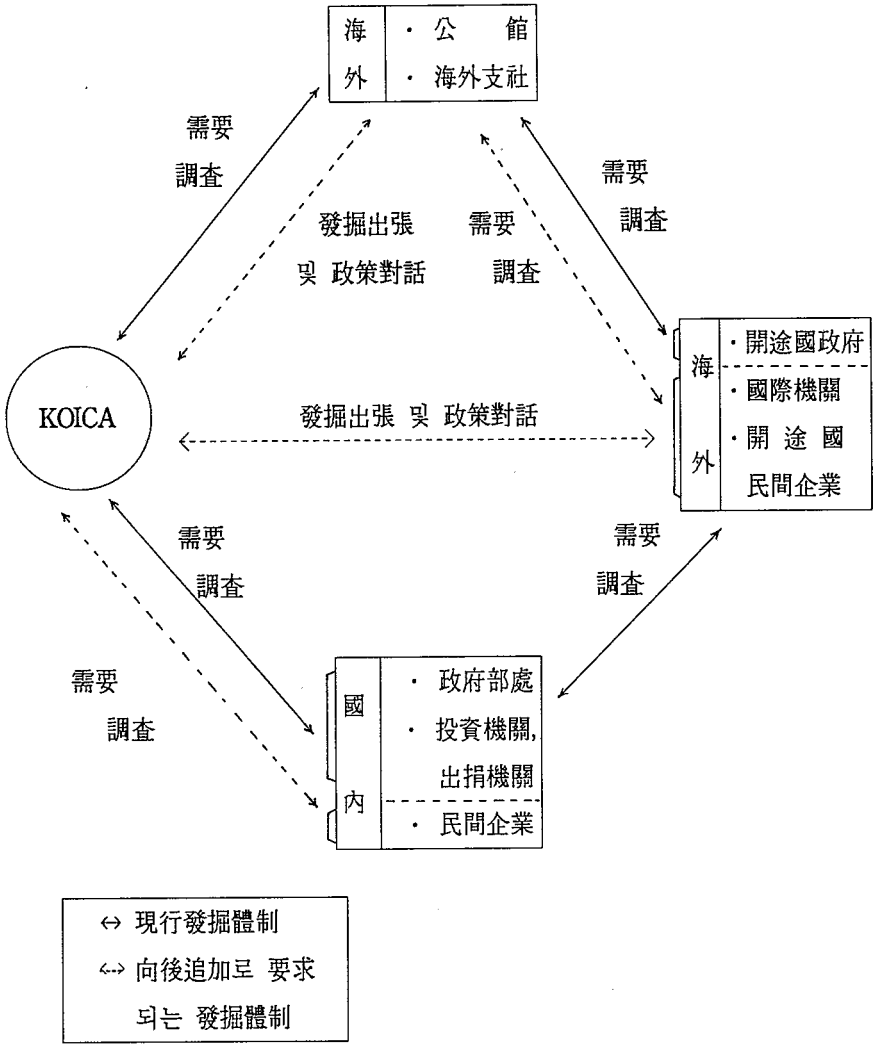
國 名	內 容
프 랑 스	○ 各國과 每年 1回씩 經濟協力 全般에 걸친 協議를 함. • 파리와 現地에서 相互開催 • 必要에 따라 分野別 委員會를 設置함. ○ 協議團은 本國으로부터 7～8名을 包含하여 全體 10名程度로 構成됨. • 團長은 主要國인 境遇는 經協省의 局長級이지만 나라에 따라 經協省 및 現地大使館의 協力班外에 硏究省의 國內農業開發硏究센타, 海外科學技術硏究公社에서 參加하기도 함.
스 웨 덴	○ 프로그램 支援對象國에 對하여 2年에 1回씩 政府次元의 協議를 實施하며 主要國家의 境遇 年 1回씩 實施함. • 同 會議에서 援助額, 援助條件, 援助實施節次等에 關한 協定을 締結함. ○ 協議團은 外務省 事務次官補, 2國間 援助部長, 地域擔當官, 大使館, SIDA本部 및 地域事務所 職員이 參加함.
네 델 란 드	○ 年 2回 開催되며, 年初에는 國際協力總局의 部長 또는 課長級이 되며 現地 公館에서도 2～3名이 參加를 하며 公館長이 團長이 되는 境遇도 있음. • 年初 會議는 國別計劃에 對한 說明 및 合議議事錄(R/D) 作成이 主目的임. ○ 中間會議는 7～9月頃 開催되는데 小規模單位로 派遣되며 案件의 進陟狀況의 체크가 中心 內容으로 됨.
西 獨	○ 主要國家에 對해서는 2年에 1回, 其他國家에 對해서는 年 1回 獨逸 및 相對國에서 開催됨. • 2個年間에 걸쳐 提供할 支援額을 提示하고 個個 프로젝트에 對하여 協議하게 됨 • 約 5年 以前부터 相對國에 對하여 長期的인 計劃을 알려주기 爲해 主要國에 對해서는 每2年마다 會議를 開催함. ○ 60～70個國을 對象으로하며, 每年 15～20個國과의 協議를 獨逸에서 實施하고, 其他 15～20個國에 對해서는 相對國에서 協議를 함. ○ BMZ, 大使館, GTZ, KfW 關係者가 參席함. ○ 合議結果는 合議文 形式으로 作成함.

國 名	內 容
英 國	○ 印度와 파키스탄에 對해서는 年 1回 次官補가 訪問하여 援助의 全般的인 範圍에 對하여 協議함 ○ 아프리카局長은 年 1回程度 東·南北 아프리카를 訪問 合議함. ○ 其他地域은 ODA 地域事務所 所長 및 職員이 數時 管轄國을 訪問하여 合議함.
日 本	○ 每年 援助規模가 큰 約 25個國을 對象으로 年次協議團을 派遣함. ○ 有償協力은 外務省, 經濟企劃省, 大藏省, 通產省 職員 10名 以內로 構成 ○ 無償協力은 外務省 및 JIAC職員 10名 以內로 構成 ○ 主要協議 內容은 當該國으로부터 合議받은 案件에 對하여 • 要請案件이 當該國의 實情에 一致하는지 與否 • 當該國에 있어 優先順位 程度 • Local Cost 負擔 • 日本과의 2國間 關係等을 考慮, 適切한 事業規模, 形態, 分野等을 決定함.

資料 : 本書2部 參照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每年 1~3月中에 定期的으로 翌年度 事業에 對한 需要調査를 完了하여 關係機關 豫算審議時 充分한 反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韓國國際協力團과 國內·外 關聯機關과의 事業發掘채널을 보다 公式化 또는 擴大하여 積極的인 發掘體制를 構築하는 일이 時急하다. 受授國에서 要請하는 프로젝트에 對해서 海外公館으로 하여금 Proposal Paper를 作成케 하는등 最初評價(Initial Assessment) 機能을 強化토록 하고 韓國國際協力團 職員의 發掘出張과 開途國과의 政策對話實施는 勿論 外國에서와 같이 比較的 많은 海外情報를 蓄積하고있는 國內 民間企業을 通한 事業發掘이 積極化 되어야 할 것이다.(圖 Ⅳ-12參考)

〈圖 Ⅳ－12〉 事業發掘體制의 強化模型



優秀事業의 發掘(Identification) 또는 着想(Conception)을 爲해서는 事前分析(Preliminary Study)을 土臺로 檢討할 必要性이 있는 프로젝트의 目錄을 作成하게 되고 이 段階에서는 當該分野 專門家들의 經驗과 創意性에 크게 依存할 수도 있을 것이다. 情報나 資料가 制限되어 있기는 하지만 槪括的인 實現可能性分析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選擇與否를 決定짓는 最終段階에서는 經濟的·技術的·制度的·財政的·社會的·環境的인 妥當性(Feasibility)과[13] 費用과 便益을 圖謀함으로써 測定되는 能率性 乃至는 收益性의 側面, 國家的 目標와 投資優先順位에 비추어 본 妥當性, 社會正義的 觀點에서의 適合性(Desirability)等을 勘案토록하고 境遇에 따라서는 政治的 折衝이나 戰略的 必要에 依해서 프로젝트의 選擇이 左右되는 境遇도 있을 것이다.

13) 프로젝트의 妥當性(Feasibility) 審査基準(Baum & Tolbert)

檢 討 項 目	內 容
① Technical Analysis	• 技術側面(技術水準, 原料調達, Utility等) • 事業規模(Economies of Scale等) • Loation • 工事期間 • Process
② Economic Analysis	• 國家的 現地에서 본 Net Benefits • Shadow Prices • Opportunity Cost
③ Financial Analysis	• 直接的인 受惠者立場에서 본 財務的 效果 • 事業自體의 財政收支 • 政府立場에서의 財政收支
④ Social Analysis	• 事業便益의 階層間 配分效果 • 消費·貯蓄에 미치는 影響 • 民間部門·公共部門에 미치는 效果
⑤ Institutional Analysis	• 事業의 內部的 組織構造 • 監督者 및 經營者의 能力 • 訓練施設의 具備程度 • 專門職·技術職要員의 確保狀況
⑥ Environmental Analysis	• 環境과 關聯된 諸般事項

開途國에서 프로젝트의 選擇決定이 不合理하게 이루어지는 原因을 Puri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① 主要人士들이 프로젝트를 自身들이 認定을 받기 爲한 手段으로 利用하는 境遇
② 政治的인 흥정의 對象이 되는 境遇
③ 財源供給側이나 援助提供機關이 實際 與件을 無視한 基準을 適用한 境遇
④ 分析과 決定이 여러가지 制約때문에 拙速으로 이루어지는 境遇
⑤ 國家目標와 프로젝트의 利益사이에 葛藤과 衝突이 생기는 境遇
⑥ 政府가 外部効果나 戰略的 考慮때문에 妥當性이 낮은 投資를 奬勵하는 境遇

프로젝트의 選擇에 있어 合理性을 높이기 爲해서는 達成하려는 目標와 選擇의 準據(Criteria)가 明確하게 規定되어 있어야하며, 프로젝트의 選擇決定에 必要로하는 情報와 知識을 完全히 갖추고 있고, 決定者의 個人的인 偏見이나 選好, 政治的인 考慮等 非合理的인 要素들은 排除되어야하며, 對象國과 類似한 狀況에 處했던 다른 地域이나 國家의 經驗을 參照하거나 對外援助機關들의 投資優先順位 및 支援事例等을 參考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프로젝트가 高度의 冒險이나 危險이 內包된 것, 財源動員이나 原料調達이 不可能한 것, 技術이나 技能人力의 確保가 어려운 것은 適合하지 못한것으로 排除되어야 할 要素이다.

Bruce는 프로젝트 企劃體制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爲한 制度的인 要因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① 政策決定者가 合理的인 프로젝트企劃過程의 重要性을 認定할 것.
② 關聯機關들의 機能과 責任을 明確히 規定하고 組織構造上의 連繫를 強化할 것.
③ 프로젝트企劃 및 運營部署에 有能한 專門要員과 支援人力을 確保할 것.
④ 프로젝트企劃에 關한 各 段階의 作業(活動)節次를 明確히 規定할 것.
⑤ 妥當性 分析,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等 共通的인 方法論을 補給, 活用할 것.
⑥ 繼續的인 評價, 環流體制를 維持할 것.
⑦ 採擇된 프로젝트의 執行에 必要한 所要財源과 人力을 蹉跌없이 供給하기 爲한 綜合的 資源豫算制度를 運營할 것.

6. 事後管理의 強化와 評價制度의 導入

가. 現況 및 問題點

開發援助의 質的向上을 期하기 爲해서는 樹立된 政策이나 이의 實施에 對한 올바른 評價와 事後管理를 通해 問題点과 援助의 成果를 밝히고 援助의 效果性을 測定하여 當初事業目的의 達城程度를 判斷토록하며 意思決定에 必要한 情報를 提供해 주어야 된다.

事業評價는 이를 넓은 意味로 볼 때 實施時期, 目的 및 技法에따라 事業의 推進實績을 單純히 點檢(Monitoring)하거나 評價(On-Going Evaluation : 執行中評價)하는 境遇와 모든 成果를 事後分析하는 事後評價(Ex-Post 또는 Post Evaluation)로 大分할 수 있다.

前二者는 事業實施中 各種 데이타를 定期的으로 蒐集, 整理하며 實際 事業推進狀況과 當初計劃을 比較, 分析한 後 必要한 措置를 講究함으로써 事業管理에 必要한 情報를 提供해주는 制度이고(嚴密한 意味에서 모니터링은 事業計劃의 管理業務로 執行中 評價와는 差異가 있음), 事後評價制度는 事業의 實施結果를 組織的이고 客觀的으로 檢討하여 事業의 效果性, 效率性, 自生能力, 當初 事業目的의 達成程度를 判斷하고 意思決定에 必要한 情報를 提供해 주는 것으로서 事業評價에있어 點檢도 重要하지만 窮極的으로는 事業의 效果性(Effectiveness)을 測定하는 作業이 核心的인 것이다.

OECD援助評價 專門家그룹의 報告書는 評價의 類型으로 事業發掘後 最初評價(Identification 또는 Appraisal), 事前審査(Appraisal Ex Ante), 事業進行中 또는 終了時評價(Evaluation), 事業施行中評價(Mid-Term Evaluation 또는 On-Going Evaluation), 事後評價(Ex-Post Evaluation), 部門別評價(Sector Evaluation), 프로그램評價(Programme Evaluation)等을 들고있다.

이中 Identification은 各國에 따라 用語上 差異가 있는 데 UN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에서는 Appraisal, 프랑스에서는 Ex Ante라는 用語를 使用

하고 있다.

評價類型中 英國은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技術協力部門別로 細部基準을 만들어 評價를 遂行하며 카나다는 프로젝트評價, 프로그램(國家)評價外에 政策評價를 並行하고 있다.

〈圖 Ⅳ－13〉 主要國의 評價制度比較

組織과 人員의 構成		評價의 目的	評價方法
美國	• 國際開發廳, 國際情報評價本部, 計劃政策評價課 • 評價課 人員은 14名이나 AID 機構內 約50名이 評價業務에 從事	• 프로젝트評價 : 프로젝트進行中 또는 終了後에 各 프로젝트의 實施狀況, 豫想效果 및 問題點等을 調査하여 이의 改善策을 提示하고, 今後 다른 프로젝트의 計劃樹立의 改善에 가이드라인으로 活用 • 效果評價 : 經濟協力의 廣範圍한 中長期的인 影響을 硏究하여 個別 프로젝트의 計劃樹立에 參考토록함. 아울러 開途國, 美議會에 對한 高次元의 開發政策, 援助政策 樹立을 爲해 參與토록함.	• 프로젝트評價 : AID支出機關이 獨自로 民間 컨설턴트等의 協調를 얻어 評價를 實施. • 效果評價 : 評價課가 中心이되어 AID內의 專門家, 民間 컨설턴트等으로 評價팀을 構成하여 實施함.

組織과 人員의 構成		評價의 目的	評價方法
日本	• 外務省, 經協評價 委員會(隨時構成10名), 評價室(8名), 調査計劃課(14名), JICA 計劃部評價監理課(6名)	• 援助效果의 測定 • 問題點에 對한 訊速한 措置 • 評價結果의 向後 援助政策反映	• 經協評價委員會 : 評價基準 및 方法의 策定, 年度別 評價 計劃樹立, 對象案件의 選定, 評價結果의 整理 • 外務省, JICA : 獨自的 또는 共同으로 評價實施
英國	• 海外開發廳, 評價部 • 7名으로 構成, 이中 2名은 經濟學者	• 國會, 國家에 英國의 開發援助實績 成果를 報告함 • 評價에서 얻어진 敎訓을 檢討하여, 將來의 援助活動에 利用	• ODA의 海外駐在事務所, 大使館等 現地機關으로부터 報告를 받거나, • 評價미션 (ODA스텝의 觀察, 專門家·硏究機關等 外部에 委託하는 方法, 兩者의 併合等 3가지 形態가 있음)의 派遣에 依함.

組織과 人員의 構成		評價의 目的	評價方法
프랑스	• 經濟協力部, 開發政策局, 評價室 • 4名으로 構成, 이中 1名은 常勤컨설턴트	• 援助의 適正性과 效果的實施를 確保코자함 • 援助效果의 形態別 比較檢討 • 開發計劃과 實施事業의 成果를 確認	• 評價팀(平均3名)을 約1個月 現地에 派遣(例로 農業關聯事業의 境遇 經濟學, 社會學, 農學의 各 專門家로 構成) • 效果에 重點을 둔 評價를 實施하는 바 社會經濟分析과 巨視經濟分析을 링크시킴. • 事後評價만을 實施.
西獨	• 經濟協力部, 中央評價監査室 • 4名	• 部內의 國別로 進行中인 프로젝트에 關한 提言을 行함. • 行政組織改善을 爲한 提言을 함 • 自國 또는 開途國에 프로젝트에 關해 옳바른 情報를 傳達	• 年間 60~80件中 30件을 監査室 自體가 行함 • 美國 AID의 Logical Framework方式을 使用

日本外務省, 日本의 政府開發援助(上卷, 1987)에서 整理

評價基準으로는 效果性(Effectiveness), 能率性(Efficiency), 影響(Impact), 持續性(Sustainability), 直接效果(Direct Effects), 間接效果(Indirect Effects), 費用受益分析(Cost-Benefit Analysis), 財務的 費用受益分析(Financial Cost-Benefit Analysis), 經濟的 費用受益分析(Economic Cost-Benefit Analysis), 社會的 費用受益分析(Social Cost-Benefit Analysis), 費用效果性分析(Cost-Effective-

ness Analysis), 內部受益率(Internal Rate of Return)等을 들고있다.

開發援助에 對한 評價를 爲하여 일찌기 틴버겐報告書의 勸告에따라 審査 및 評價委員會(CRA)에 依해 援助의 效果性測定 業務가 遂行된 바 있으며 最近 DAC는 事業評價指針을 制定하였고 主要供與國들도 圖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미 70年代前半까지 ODA評價를 專擔하는 部署를 設置하여 援助에 對한 體系的인 評價를 主된 業務의 하나로 遂行하고 있다.

美國은 執行中點檢 및 評價(Ongo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中間評價(Interim Evaluation), 事業完了報告 및 最終評價(Completion Reports and Final Evaluations), 事後評價(Ex-Post Evaluations), 프로그램評價, 部門別評價 및 復合事業評價(Program Reviews, Sector Assessments, and Multiproject Evaluations)等으로 區分하여 評價를 實施하고 있다.

援助規模가 크게 增大되고있는 日本은 80年代 以前에는 援助實施機關을 中心으로 援助影響을 主로 調査해 왔으나 1981年 1月에 外務省 經濟協力局內에 經濟協力評價委員會를 設置하여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評價를 實施하게 되었으며 後에 JICA와 OECF에서도 專擔部署를 設置하여 各種 評價를 實施하고 있다. 이들의 實施하는 評價種類는 事業段階別로 ①事前審査, ②執行中點檢, ③事業終了時 評價 및 ④事業終了後 一定期間이 經過後 行하는 事後評價等으로 區分되며 外務省은 原則的으로 ④의 境遇만 實施하고 其他의 評價는 基本的으로 援助實施機關이 行하고 있다. 이들이 行하는 各種 形態別 評價의 特色은 ①重點援助對象國에 對해 兩國官民學者와 專門家等이 行하는 國別評價를 爲始하여 ②JICA事業實績에 對한 部門別評價, ③在外公館에 依한 評價, ④日本과 다른나라 援助機關이 主要援助國을 對象으로 프로젝트에 對해 事後에 行하는 合同評價, ⑤外國人 援助專門家가 第 3者的 立場에서 行하는 國際專門家에 依한 評價, ⑥日本 民間專門家에 依한 評價等을 行한다는 點이다.

外務省은 自體 및 援助實施機關에서 實施한 이들 各種 評價結果를 經濟協力評價報告書에 聚合하여 1982年부터 每年 公表하고 있다.

援助의 評價에 있어 評價事項이 各 國家別로 다소 相異한데 評價事項이 매

우 類似한 英國과 濠洲는 技術的·財政的·經濟的·制度的·社會文化的·環境的側面과 女性開發, 成果와 管理, B/C分析等의 諸般側面에서 評價를 行하고 있다.

評價制度가 매우 體系的인 獨逸의 境遇 經濟協力部(BMZ)는 그들이 支援하는 프로젝트를 프로젝트進行評價(Project Progress Reviews), 프로젝트 最終段階評價(End-of-Projcet Reviews), 프로젝트 遂行後의 最終評價(Final Evaluations Following the End of Project)로 區分하여 效率性을 定期的으로 評價하고 그 結果를 議會와 一般國民에게 提供한다.

프로젝트의 評價體系를 보면 評價者의 評價에 對한 理解를 容易하게하고 特定基準에 基礎한 比較를 容易하게 하기爲해 評價者의 口頭評價를 計數評價로 解析한 5段階 評價體系를 使用하고 있으며 評價觀点은 目標·計劃·實行·調整 및 開發政策의 效率性等의 5個로 分類하여 各各 順位가 주어진 3個의 下位側面에 對한 加重値를 附與하고 있다.

〈評價의 5個 觀点〉

① 目標(Objectives) : 目標水準을 決定하기 爲해 目標의 明確性, 實行可能性, 兩立可能性(供與國과 受援國의)을 評價

② 計劃(Planning) : 計劃의 基礎, 組織, 結果를 評價

③ 實行(Implementation) : 技術的遂行, 投入量, 遂行組織을 評價

④ 調整(Steering) : 進步事項點檢, 計劃과 目標調整, 事業段階別活動調整等을 評價

⑤ 開發政策의 效率性(Development-Policy Effectiveness) : 目標達成, 收益.費用比率(B/C Ratio), 持續性에 主眼點을 둔 影響(Impacts)等을 土臺로 評價

開發援助의 歷史가 짧고 規模가 적은 우리나라의 境遇는 事後管理 및 評價에 疏忽히하여온 點을 否認할 수 없다. 아직까지 開發援助에 對한 評價는 實施된 바가 없으나 韓國國際協力團에서는 今年初에 事後管理實態를 調査한 바 있다. 1990-1991年間의 機資材 供與事業의 事後管理實態를 例로 問題가 提起된 主要內容을 보면 매뉴얼 未送付가 19件, 援助品의 自然磨耗等에 따른 不良

品 船積이 10件, 機資材 設置 및 操作未熟에 따른問題發生이 9件, 必需部品漏落이 7件, 通關費 追加支援事例가 4件, 仕樣 未確認이 3件 等 總 76件이다.

이를 內容別로 보면

첫째, 總 76件의 事後管理問題 發生中 매뉴얼 및 部品漏落이나 不良品船籍, 通關費 事前未確認에 追加費用 發生等이 40件으로 輸出業體 不注意 및 過失에 依한 問題發生이 全體의 約 53%나 차지하고 있다.

둘째, 供與機資材의 設置나 操作·運營에 따른 措置未備와 現地에서의 整備및 部品調達體制 未備에 의한 問題事例가 27件으로 全體의 約 36%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船籍物品 破損이나 紛失事例가 6件으로 供與對象國 政府當局의 關心이나 監視가 未洽한 點이 指摘되고 있다.

넷째, 供與物品에 對한 要請 樣式等이 定型化되고 있지 않아 要請品目에 對한 基本仕樣 및 關聯事項의 事前 未確認으로 因한 問題가 3件이 發生하였다.

〈表 Ⅳ－14〉 機資材供與의 事後管理現況 (1990－1991)

區 分	原 因	發生件數	該當國家數	該當業體數
計		76	42	19
매뉴얼 未備	業體不注意	19	17	11
必需部品未備	〃	7	6	6
不良品 船積	〃	10	9	7
仕樣(SPEC)未確認에 따른問題發生	仕樣未確認	3	3	3
船積物品 破損紛失	現地監督不徹底	6	6	4
設置 및 操作未熟	操作技術未備	9	8	6
援助品의 自然磨耗等에 따른 後續支援	現地 事後 A/S 體制未備	18	15	8
通關費 追加	業體 事前未確認	4	4	2

나. 政策方向

적은 援助規模로 最大의 支援效果를 거두기 爲해서는 事後管理의 徹底와 事後評價가 必히 實施되어야 한다. 事業效果에 對한 評價는 두가지 次元에서 測定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事業의 直接的인 産出(Output)에 對한 評價이고 다른 하나는 事業이 가져온 影響(Impact)또는 成果(Performance)에 對한 評價로서 事業이 目標로했던 受惠者(Target Beneficiaries)가 惠澤을 입었는지? 解消하고자했던 問題點과 障碍가 除去되었는지? 等에 對한 結果 및 原因이 深度있게 分析되어야하며 評價結果는 是正措置를 取하거나 管理體制를 改善하는데는 勿論 次期事業을 計劃하는데 適切히 反映되어야 한다.

DAC는 開發援助의 質的向上(To Improve the Quality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爲한 評價業務의 重要性을 強調하고[14] 開發援助의 質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 期待以下의 投資受益率, 事業費用의 超過, 事業範圍의 變更, 事業의 持續性缺如等 事業實施中이나 完工後 자주 發生하는 問題點들을 들고 이런 問題點들은 大部分이 보다 確實한 事業準備와 審査를 通해 豫測 또는 豫防될 수 있는것으로 보았으며 不明確한 事業目的, 非現實的인 目標設定, 지나치게 樂觀的인 事業實施計劃等이 事業審査 段階에서 흔히 나타나는 誤謬의 代表的인 例로 評價되었다.

開發援助의 質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는 要素中 事業計劃 및 實施段階에서 考慮해야 할 事項으로 不適切한 技術의 選擇이 問題로 提起되고 있는데 이로 因해 技術利用能力의 不在, 資本集約的技術로 因한 勞動力 代替, 操業中斷, 施設維持의 困難等이 惹起되고 있으므로 國家 및 關聯 産業部門의 開發優先順位와의 符合, 技術協力 및 資本協力의 均衡, 人的資源의 能力等 現地力量의 開發을 念頭에 두어야하며 特히 援助事業의 顯示的 目的達成에 急急하여 擔當職員의 管理技術研修等 人的資源開發이 疏忽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것이다.

開發環境 亦是 援助事業의 質的向上을 爲한 要因으로 指摘되고 있는데 事業과 關聯된 政策環境이 事業審査나 事業實施段階에서 充分히 考慮되었는지, 또

14) DAC의 援助評價專門그룹(DAC 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은 事業評價業務의 役割을 開發援助의 Effectiveness와 關聯 事業計劃 및 實施段階(Design and Implementation), 政治·社會·經濟的 開發環境(Development Circumstances), 援助供與國의 政策(Donor Policies), 增加되고 있는 非프로젝트型援助(Non-Project Assistance), 開發事業의 持續性(Sustainability)等의 觀点에서 提起하고 있다.

한 援助國과 受援國의 政策對話 및 政策助言이 適切하였는지를 事業評價時 檢討해야하며, 供與國의 財政, 經營, 技術的支援이 終了된 以後에도 開發事業이 適切한 便益을 長期間 提供될 수 있도록 하는 事業의 持續性(Sustainability)[15] 與否가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前述한 機資材供與事業의 事後管理와 關聯한 改善方案은

첫째, 事後管理에 關한 豫算을 別途로 策定하여 適期에 機動性있는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次的으로 1992年度에는 124百萬원의 豫算을 確保하였으나 事業規模에 比例하여 漸次的으로 豫算을 增大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輸出業體에 對한 管理를 보다 徹底히 하여야 할 것이다.

關聯業體에 對하여서는 公文 및 定期 懇談會를 通하여 注意를 促求하고, 擔當職員에 對하여서는 關係規程이나 問題事例에 對한 敎育을 實施하고 事後管理問題 頻發業體에 對하여서는 見積依賴制限等의 措置도 아울러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事後管理問題 發生例集을 作成하여 各公館 및 輸出業體에 配付함으로써 類似事例 再發을 最大한 防止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事後管理를 爲한 海外出張實施 및 아프터서비스팀 派遣活動 強化이다.

主要 援助對象國에 對하여서는 現地 出張을 通한 供與機資材 活用實態 및 改善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아프리카, 中南美地域等 供與物品 紛失이 잦은 地域에 對하여서는 物品 船積時 當該公館을 通하여 相對國 政府에 事前注意를 促求하는等 細心한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5) 事業持續性의 檢證事項 (DAC)

- 納得할만한 政策環境 및 必要한 政策變更이 事業實施가 開始되기 以前에 合意되었는지의 與否
- 明白하고 現實的인 目標의 設定與否
- 受惠者의 管理 및 技術能力에 맞는 事業計劃樹立 與否
- 最初의 費用算定, 事業의 運營 및 維持面에서의 適正性
- 女性을 包含한 目標그룹 및 現地當國의 能動的 參與 與否
- 受惠者의 經濟的·社會的狀況에 適正한 技術의 選擇與否
- 實際的인 所要期間檢討
- 一旦 外部의 援助가 終了되었을 때의 管理能力 및 維持體系 保有與否
- 國內의 社會·文化·環境에 對한 適應度
- 環境的 持續性이 있는지 與否

7. 共同協力事業의 積極推進

가. 現況 및 問題點

開發援助는 事業에 따라서는 어느 한나라나 一個 援助關聯으로서는 經驗 및 專門人力의 不足과 豫算의 制約等으로 効果的으로 遂行하기에는 限界가 있기 때문에 開發事業의 經驗과 專門的知識이 蓄積되어있는 先進國 또는 國際機構와 共同으로 事業을 推進함으로써 援助의 效率을 期할수 있다.

이러한 共同協力事業은 各國이 保有하고 있는 高度의 專門知識, 農富한 經驗 및 廣範圍한 情報의 利用이 可能하고, 政治的 中立性을 確保할 수 있는 利點이 있으며 難民, 環境, 麻藥問題等 二國間 援助로서 支援困難한 事業에 參與가 可能하게 된다.

國際機構와의 共同協力事業의 境遇에는 垂直·水平協力等 2가지 方法이 있으나 現在 우리나라 境遇에는 機資材等 供與事業의 一還으로 UNESCO等의 國際機構에 若干의 支援을 하고 있는 實情이며 協力의 歷史가 日淺할 뿐 아니라 可用財源이나 技術의 不足으로 大規模事業이나 尖端技術分野에 對한 協力事業을 單獨으로 推進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援助國이나 援助機關과의 政策協調나 共同事業 推進이 早晩間 重要한 課題로 擡頭될 것이다.

〈圖 Ⅳ－14〉 共同協力事業의 形態

垂直協力(Vertical Cooperation)	水平協力(Horizontal Cooperation)
○ 國際機構等이 形成한 事業을 協力團이 遂行 ○ 國際機構等이 遂行한 事業에 對한 協力團의 運營·管理 ○ 國際機構等에 依한 資金支援으로 協力團에서 事業 妥當性調査遂行	○ 協力團과 國際機構等이 1個事業에 對하여 分野別로 事業分擔施行 ○ 國際機構等이 遂行하는 事業에 協力團이 參與 • 世界銀行等이 資金支援한 事業과 關聯하여 協力團에서 研修生招請이나 專門家派遣 • 協力團이 資金支援한 事業에 對하여 UNDP等에서 專門家 派遣等

나. 政策方向

先進國 및 國際機構와의 共同協力事業은 可用財源, 經驗 및 技術不足等의 諸般與件을 勘案하여 段階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第1段階로는 情報 및 人力交流를 促進시키도록 한다.

첫째, 資料蒐集 및 情報蒐集 體系를 構築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重點協力對象國에 關한 國別硏究報告書(Country Report), 分野別 硏究報告書(Sector Report)를 蒐集하여 第3國이나 國際機關의 客觀的인 分析 및 評價를 1次的으로 活用하도록 하고 世界銀行等이 이들 國家에 融資해주고 있는 프로젝트에 關하여 事前計劃에서부터 事後評價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資料를 徹底하게 蒐集分析하여 우리가 計劃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活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各種 國際會議나 세미나 및 워크샵에 積極的인 參加이다.

世界銀行 및 國際機構等이 主管하는 會議에 積極 參與함으로써 支援對象國 政府와의 自然스런 政策對話가 可能하며, 다른 援助供與國의 援助動向을 把握할 수 있다. 또한 協力團과 援助關聯機構와의 定期的인 交換訪問 및 硏修計劃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第2段階는 支援可能 프로젝트 發掘 및 形成 參與段階이다.

우리나라와의 地域的인 與件等을 勘案하여 優先 아시아 開發銀行(ADB), ESCAP, Mekong Committee等과 보다 緊密한 協議 및 協調體制를 構築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方式은 專門開發金融機關이 推進하는 良質의 좋은 프로젝트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가 確保되며, 協調 融資機關의 專門知識과 經驗을 배우고, 또한 行政費用도 節減할 수 있다.

具體的인 方法으로는 國際機構等에 프로젝트의 發掘 또는 形成段階에 있는 事業에 對한 人的 또는 財政支援을 通하여 本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하거나 國際機構와의 信託基金設置等이 檢討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年豫算에 1次的으로 메콩委 事業參與를 爲한 基盤構築을 爲하

여 機資材等 供與事業費에서 메콩委 라오스 國境地域 電力化事業에 23萬$을 支援키로 하였고, UNIDO와는 外務部와 經濟企劃院 主管下에 1989年에 協定을 締結 年間 30萬$ 規模의 資金을 運用中에 있다.

第3段階는 共同開發事業의 參與段階이다.

第2段階에서 우리나라가 支援 또는 協力한 事業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여 漸次的으로 事業對象 및 規模를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執行業務體制의 確立

가. 現況 및 問題點

現在 遂行하고 있는 各種 開發援助는 그 동안 各 部處에서 遂行하여 오는 過程에서 人力不足 및 專門性缺如로 效率的인 執行體制를 갖추지 못한 境遇가 많았다. 韓國國際協力團의 發足과 함께 各種 執行業務를 改善토록 努力하고 있으나 20年 가까운 執行慣行을 하루아침에 軌道에 올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機資材等 供與事業은 90餘個國에 對한 國產物品을 支援하는 過程에서 여러가지 問題点이 提起되고 있는데 1991年 境遇 다음의 問題點들이 提起되었다.

첫째, 要請時期의 遲延이다.

總要請件數는 143件으로 이중 後半期 要請이 75件으로 全體의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特히 4/4分期中 要請이 25件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要請接受日로부터 物品船積日까지 通常 3~6個月 以上의 長期間이 所要되는 點을 勘案할때, 當該年度內의 豫算執行等 圓滑한 業務推進에 많은 어려움이 露出되고 있다.

〈表 Ⅳ-15〉 機資材의 要請時期

(單位:件)

分期別	計	1/4	2/4	3/4	4/4
要請件數 (%)	143 (100)	25 (17.5)	43 (30.0)	50 (35.0)	25 (17.5)

둘째, 頻繁한 分割要請 事例이다.

1國當 平均 要請件數는 1.6件이며 2回以上 要請한 國家의 平均 要請件數가 2.6件으로 要請物品을 分割要請한 事例가 많다.

機資材供與 業務는 契約事務處理規定等에 依하여 業體選定에서부터 船積까지 複雜한 節次와 많은 期間을 要하기 때문에 業務處理의 複雜化로 因한 適期船積이 遲延되고 있다.

〈表 Ⅳ-16〉 機資材의 要請回收

(單位:件)

要請回收	計	1回	2回	3回	4回	5回以上
國家數	90	57	16	15	1	1
(%)	(100)	(63.3)	(17.8)	(16.7)	(1.1)	(1.1)
要請件數	143	57	32	45	4	5
(%)	(100)	(39.3)	(22.4)	(31.4)	(2.8)	(3.5)

셋째, 少量多品目의 要請이다.

要請品目의 數量別로는 4個 以上의 品目要請이 49件으로 全體의 41.2%이며, 10個以上 品目要請이 16件으로 13.4%를 차지하여 支援對象國別 配定規模가 10餘萬$의 小規模임을 勘案時 少量多品目 要請으로 援助效果의 半減은 勿論 業務處理의 複雜化를 招來하고 있다.

넷째, 仕樣不明確 品目要請事例이다.

全體 物品要請 119件中 仕樣 不明確으로 因하여 管轄公館에 再確認한 事例가 31件으로 全體 26.1%를 차지하여 業務遲延과 通信費用에 따른 浪費事例가 많다.

〈表 Ⅳ-17〉 機資材의 要請品目數

(單位:個, 件)

要請品目數量	計	1~3	4~9	10~20	21~60	98	426
要請件數	119	70	33	7	7	1	1
(%)	(100)	(58.8)	(27.8)	(5.9)	(5.9)	(0.8)	(0.8)

註 : 現金要請 24件은 除外

다섯째, 豫算超過 要請事例이다.

全體 物品要請 119件中 豫算超過 要請事例가 32件으로 全體 26.9%를 찾이하여 管轄公館과의 再協議에 따른 業務遲延이 發生되고 있다.

여섯째, 當初 要請品目의 隨時變更이나 國內生産 不可品目 要請으로 因한 業務遲延事例가 頻繁한 편이다.

일곱째, 供與目的이나 受惠機關이 不分明한 境遇가 많으며(17%), 要請形式에 있어 對象國의 外交文書에 依한 公式要請은 23%에 不過하고 公館文書이나 電文(54%) 및 外務部 要請에 依한 緊急 또는 特別支援(23%)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나. 政策方向

機資材 要請과 關聯 在外公館은 從來 駐在國 政府의 要請을 그대로 受容하는 要請主義方式에서 協議主義 方式으로 轉換하여 在外公館의 1次的 評價와 調査機能을 強化하되 供與目的과 受惠機關을 確實히 하고, 要請形式은 對象國의 外交文書에 依한 定式要請의 節次를 取하도록 한다. 供與機資材는 當該年度 上半期中 要請토록하되 國當支援金額의 規模가 小額임을 勘案하여 可及的 品目數를 줄이고 이를 1回에 一括要請함으로써 供與物品의 適期供給으로 援助效果를 提高해야 한다.

支援勸奬品目 및 止揚品目 리스트를 提供하여 在外公館이 相對國 政府와의 協議時 便宜提供은 勿論, 對象國의 實質的인 經濟開發과 福祉向上에 寄與하도록 하고 機資材 要請書, 品目리스트 및 機資材供與業務關聯 체크리스트等 各種 樣式을 定型化하여 業務의 效率性을 提高토록 해야 될 것이다.

9. 專門人力의 確保

가. 現況 및 問題點

援助事業의 效果性이나 能率性의 提高 또는 援助의 質的向上과 關聯하여 專門人力의 確保는 가장 優先的으로 解決해야 될 課題中의 하나이다. 特히 技術協力은 사람이 協力의 主體가 되므로 協力 活動에 直接從事하는 사람은 充分한 能力과 豐富한 經驗을 가진 優秀한 專門家이어야 하므로 이들의 確保는 事業推進의 重要한 要件이 되고 있다.

各國은 業務의 多樣化에 따라 多動多樣한 人力確保를 爲해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데 日本의 境遇 人材의 確保를 爲해 專門家登錄, 公募, 特別囑託, 專門技術囑託, 國際協力專門家 制度를 活用하고 있으며 人材의 養成을 爲해 海外派遣前 短期硏修, 中期硏修, 海外長期硏修를 通하여 語學能力과 專門知識을 習得시키고 있으며 프로젝트리더, 國際協力세미나, 留學生派遣, 海外開發專門家 招聘等의 技術協力綜合硏修를 實施하고 있다. 人力確保는 우선 量的으로 適正해야하고 質的으로 優秀專門人力이 多數 確保되어야 한다.

나. 政策方向

優先 人力의 量的增大—增員等의 問題는 適正人力에 對한 所要判斷이 前提되어야 한다.

職務分析(Job Analysis)을 通한 適正人力問題가 恒時 論議되고 있지만 職務記述書 作成에 있어서 形式的記述等으로 客觀性確保에 限界가 있으므로 外國과의 1人當 ODA나 行政費의 比較를 通하여 有用한 判斷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年을 基準으로 供與國의 1人當 ODA規模를 比較해보면 日本은 開發援助를 擔當하고있는 外務省 經濟協力局, 在外公館經濟協力擔當官, JICA 및 OECF

職員의 總數는 1,560名이나 ODA總額은 8,965百萬$로 職員 1人當 ODA가 5.63百萬$(1980年은 3百萬$)이고, 美國은 2.17百萬$, 英國은 1.62百萬$, 카나다는 1.84百萬$이며 우리나라의 境遇(1992)는 357千$(KOICA는 124千$)로 先進國에 比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Ⅳ-18〉 供與國의 1人當 ODA및 行政費比率

	單位	日本	美國	英國	카나다	韓國
1人當 ODA	百萬$	5.63	2.17	1.62	1.84	0.357 (0.124)
行政費比率	%	2.9	5.0	3.1	6.1	9.0 (26.1)

資料：日本外務省, JAPAN'S ODA(1991) 및 Browne, Foreign Aid in Practice(1990)에서 整理

註：1人當 ODA는 1990年, 韓國은 1992年, 行政費比率은 1988年, 韓國은 1991年. ()內는 KOICA分임.

開發援助의 行政費用의 경우는 이를 管理하는 機關의 職員과 組織의 規模 및 豫算編成構造에 따라 그 規模가 相異하며, 技術協力의 行政費用이 無償援助나 借款의 境遇보다 더 所要된다. DAC 平均은 3%~4%이고 IDA는 6%이며 技術協力을 擔當하는 部署에서는 20%에까지 達하고 있는데 이를 國別로 보면 日本 2.9%, 美國 5.0%, 英國 3.1%, 카나다 6.1%로 多樣하다. 우리나라의 ODA는 1990-91年間 89.2百萬$에서 99.9百萬$로 12% 增加되었으나 同 期間中 行政費用은 1.9%에서 9.0%로 373.7%라는 커다란 增加를 보이고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ODA規模가 다른 나라에 比해 絶對的으로 적으나 無償援助·技術協力이 少額多國家支援形態를 取하여 많은 管理人力을 所要하고 있고, 그동안 數個 部處에서 少數人力이 擔當해오던 開發援助業務가 旣存의 海外開發公社의 組織과 人力을 모두 吸收하여 發足한 韓國國際協力團으로 移管되어 ODA 擔當人力이 新規로 크게 增大된 때문이다.

特히 韓國國際協力團만의 行政費用을 보면 1991年에 25.4%, 1992年에 26.1%라는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는 바 DAC統計基準과 關聯하여 이에 對한 正確한 檢討가 要望된다. 韓國國際協力團職員의 階級別 構成比를 政府投資機關과 比較하면 執行幹部의 構成比가 3.7%로 政府投資機關의 0.9%(政府投資機關 23個 平均은 0.09%)에 比해 높고 課長級 以上 및 次長級 以上도 各各 26.5%와 13.2%로서 政府投資機關의 20.5%(全體平均은 8.5%) 및 6.0%(全體平均은 2.6%)에 比해 매우 높으며, 金融機關等 一部政府投資機關에만 있는 次長制度를 갖는 등 組織의 階級(Grade)이 너무 多段으로 되어있어 行政費 節減과 行政能率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表 Ⅳ-19〉 職級別 職員 構成比 比較

(單位 : %)

	計	任員	執行幹部	部長	次長	課長	係長	職員 및 勞務員等
韓國國際協力團	100.0	0.8	3.7	3.7	5.0	13.3	21.6	51.9
政府投資機關[1]	100.0	0.3	0.9	4.8	—	14.1	30.4	49.4
(政府投資機關 全體)	100.0	0.02	0.09	1.1	1.4	4.9	12.1	80.4

註 : 1) 人力構造가 韓國國際協力團과 比較的 類似한 觀光公社, 大韓貿易振興公社, 大韓鑛業振興公社의 平均値임.

따라서 精確한 職務分析으로 適正人力을 算出하여 合理的인 組職體系로 整備토록하고 行政費規模等 豫算構造도 適正하게 調整[16]토록 해야 될 것이다. DAC는 韓國國際協力團豫算 30.1百萬$에 對한 行政費用 9百萬$이 매우 높다는 指摘과 함께 이에 對한 說明을 要求한 바 있는데 行政費用 9百萬$은 우리나라의 ODA總計 約 1億$에 對한 費用이므로 內容을 잘못 理解한 것으로 判斷된다.

16) 金秀勇, 金完淳敎授等의 報告書(Korea's Development Assistance)는 受援國數를 現在의 1/2 또는 1/3로 漸次줄이고 經濟的·政治的으로 紐帶가 깊은 少數國家에 援助를 重点支援하여 開發援助의 能率性과 效率性을 높이고 行政費用도 減少시킬 것을 勸告하였다.

人力確保에 있어 量的擴大 또는 適正人力의 確保 못지않게 質的增大가 매우 重要하다.

韓國國際協力團의 現在의 人的構成으로 보아 開發援助의 圓滑한 遂行을 爲해 優秀한 專門人力을 確保하여 適所에 配置한 問題는 가장 時急하게 解決해야 할 課題中 하나이다.

〈表 Ⅳ-20〉 韓國國際協力團 人員現況

(單位 : 名,%)

區 分	KOICA(1992.11)		JICA(1988.12)	
	人 員	%	人 員	%
人文社會系	212	88.0	581	62.6
理 工 系	21	8.7	96	10.3
農林水產系	8	3.3	242	26.1
其 他	—	—	9	1.0
(派遣公務員)	(17)	(7.1)	(37)	(4.0)
計	241	100.0	928	100.0

註 : 1) KOICA는 國際研究交流團地 人員(30名)除外
2) 人員數에 派遣公務員이 包含됨
3) JICA의 派遣公務員 比率 : 1974創設時(38名 3.8%)→1991(39名 3.7%)

ODA歷史가 길은 日本의 境遇 ODA의 實施體制가 脆弱하다는 點이 現在에도 자주 指摘되고 있으며 政府自身도 이 點을 認定하고 體制強化를 爲해 有能한 人材의 育成을 위한 國際開發大學院의 設立을 構想中에 있다.

開發援助의 各 形態別로 業務가 複雜多樣하고 各 分野에 對한 專門知識의 要求와 對外指向性等의 特徵으로 오늘날 主要先進國의 大部分이 人力確保手段으로 組織內的으로는 職員의 敎育訓鍊과 外部專門家의 常勤職 採用을 制度化하고 있으며 組織外的으로는 業務關聯部處로부터 公務員을 派遣받거나, 各 分

野別로 外部專門家 또는 컨설턴트의 登錄制等 多樣한 方法을 實施하고 있다.

韓國國際協力團에서는 現在 技術協力에 必要한 農業等 27個 分野에 351名의 外部專門家를 隨時로 登錄받아 活用하고 있으며, 開發調査와 프로젝트型事業은 豫算會計法 第 76條 및 韓國國際協力團 會計規定 第 124條에 依한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捐機關等과의 隨意契約條項과 1985年 3月 29日字 國務總理指示 第 6號에 依한『公共投資事業 事前調査等에 關한 施行指針』等에 따라 事業의 初創期임을 勘案 主로 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 包含)과 一部 大學敎授를 P/I 調査等에 活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優秀한 民間用役業體도 積極的으로 參與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다.

〈表 Ⅳ-21〉 技術協力 分野別 專門家 登錄現況

(單位 : 名)

分野別	人員	分野別	人員
農業	47	金屬工學	3
林業	16	機械工學	5
水產業	20	產業工學	1
蠶業	22	에너지	2
畜產業	11	高分子工學	1
食品工學	15	非破壞檢査	2
獸醫	11	光學	1
藥學	2	表面코팅	1
環境	4	鑛物資源	62
建設	20	海洋	20
水資源	4	保健衛生	1
職業訓鍊	16	經營經濟	21
電氣·電子·通信·컴퓨터	16	其他	20
材料工學	7	計	351

註 : 1992. 8. 31 現在

〈表 Ⅵ-22〉 開發調査 및 프로젝트型事業 關聯專門機關現況

分野別	機關名	分野別	機關名
農業	農漁村振興公社	都市開發, 工團	國土開發研究院
	農村振興廳		韓國土地開發公社
養蠶	國立蠶絲所	交通	交通開發研究院
流通	農水産物流通公社	通信	韓國電氣通信公社
	農村經濟研究院		韓國通信技術株式會社
資源	韓國資源研究所	水資源	韓國水資源公社
	大韓鑛業振興公社	住宅	大韓住宅公社
電力·에너지	韓國電力株式會社	醫療	韓國醫療管理研究院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	職業訓練	韓國産業人力管理工團
	에너지技術研究所	經濟, 産業開發	KDI
	에너지管理公團		KIEP
道路	韓國道路公社		KIET
	韓國建設技術研究院		

註 : 上記 機關은 韓國國際協力團에서 그동안 開發調査, 프로젝트事業과 關聯하여 事業의 發掘, P/I 調査團 派遣, 技術評價等의 業務에 關聯된 公共機關을 中心으로 作成함.

韓國國際協力團의 경우 專門人力의 保有는 專門技術의 多樣性을 勘案할때 當分間 지나친 專門化는 要하지 않을것임으로 自體 人力의 育成活用에 重點을 두되, 아울러 外部專門人力을 適切히 活用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向後 開發援助業務의 圓滑한 遂行을 爲해 協力團 組職 內·外的으로 必要한 專門家는 開途國地域에 對한 政治·經濟·外交·社會現象을 深層的으로 分析·研究하고, 開發調査와 프로젝트事業에 對한 事業計劃의 作成과 이를 專擔遂行하게 될 專門 컨설턴트들의 業務를 調整總括하며, 國際機構에 從事하게 될 人力의 確保를 爲해 開途國地域專門家, 經濟協力 및 經濟分析 專門家, 農業·土木·電氣·資源 등

分野 專門技術者 및 國際機構 專門家들이다.[17]

特히 사람이 協力의 主體가 되는 技術協力에 있어 專門家의 養成確保는 緊要한 問題인데 研修生을 招請하여 教育을 擔當하는 專門家는 勿論 異質的文化속에 들어가서 從事하게 되는 人材는 高度의 知識과 才能과 經驗이 要求될 것이다.

10. 援助業務領域의 擴大

가. 現況 및 問題點

OECD의 90年代 開發援助 戰略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援助方向도 새로운 分野에의 積極的인 參與가 要求되고 있다. 環境·人口問題를 爲始하여 女性開發, NGO의 活用, 開途國의 構造調整努力等이 그것이다.

나. 政策方向

(1) 環境과 人口

開發援助의 새로운 分野로 最近 크게 強調되고 있는 環境問題는 開途國의 經濟開發에 있어 長期的으로 健全하고 持續可能한 範圍內에서 自然資源을 利用하여 經濟的成長을 圖謀하도록 推進되어야 하며 開途國의 爆發的인 人口增大를 抑制토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다.

DAC는 1989年 環境專擔 作業團을 設立하고 1992年 파리會議에서 開途國의 環境保護 및 環境管理努力을 支援키 爲해 4個部門의 環境과 援助에 關한 指針

17) 프로젝트나 開發調査事業과 關聯하여 向後 豫見되는 韓國國際協力團 組織內·外의 必要한 專門人力은 Country/Program Officer, Economist, Specialist (Evaluation, Agriculture, Financial, Transport & Communication, Social Infrastructure 部門), Project Engineer(Irrigation, Civil, Electric Power 部門)들이다. 한편 金秀勇, 金完淳 教授等도 Country Specalists, Project Economists, Engineering Advisers 등 分野의 有能한 人力確保를 力說하고 있다.

(Guidelines on Environment & Aid)을 採擇하였다.[18]

主要 供與國들도 開發援助에서 環境問題에 커다란 關心을 갖고 專擔組職과 豫算을 配分하고 있는데 日本 JICA는 企劃部內에 環境室을 設置하고 있으며 開發調査 擔當部署들은 分野別로 이에 對한 業務指針을 가지고 있다. 最近의 環境關聯 援助實績을 보면 地球環境 및 資源問題(大氣汚染, 水質汚染, 原子力, 生態界維持, 山林造成, 砂防·土壤, 環境行政等 8個分野)와 人間 住居環境問題(保健衛生, 上水道, 下水道, 廢棄物, 住宅, 鑛山公害等 6個分野)에 關心을 갖고 1985年에는 이들 細部 14個分野에 開發調査中 8.4%(22件), 프로젝트事業中 9.9%(14件), 研修生招請中 6.0%(136件), 專門家派遣中 7.7%(95件)의 環境關聯 事業을 實施하였는데 이같은 環境關聯 援助比率은 每年 크게 增大되고 있다.

世界銀行(專門家 50~60名 保有)等의 國際援助機關과 USAID를 비롯한 歐美各國 援助機關들도 機關에 따라 差異는 있지만 開發 프로젝트의 環境評價에 必要한 具體的인 組職과 專門家體制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對外環境政策과 關聯하여 外務部에 科學環境課와 環境處에 地球環境課가 設置되어 있을 뿐 韓國國際協力團 組職에는 이를 專擔하는 部署가 없으며 但只 開發調査時 環境影響評價(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18) 環境과 援助에 對한 4個 指針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프로젝트 環境影響評價의 模範事例(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 援助機關들은 開發援助 프로젝트의 環境影響評價를 하여야 함.

② 國別 環境測定 및 環境戰略의 模範事例(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 環境과 天然資源의 管理에 必須的인 手段 確保를 爲한 接近方式을 規定.

③ 開發援助에 있어서 強制移住 및 再定着에 關한 援助機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Involuntary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in Development Projects) : 프로젝트의 實施로 因하여 移住하게 되는 住民들이 當該 프로젝트의 受惠者가 되어야 하며 이들을 健全한 生産的集團으로 再定着케 해야 함.

④ 地球環境問題에 關한 援助機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Global Enviromnental Problems) : 先進國들이 그 性格上 國境을 超越하여 어느 地域全體 또는 地球全體에 關聯된 環境問題에 關해 國際的인 協力을 增進시킬 수 있는 方法을 提示.

EIA)項目을 包含시키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環境과 人口問題에 對한 體系的인 硏究·調査와 技術協力事業에 이들 分野事業을 擴大토록 해야 될 것이다.

(2) 女性開發

오늘날 女性은 世界의 總勞動時間의 3分의 2를 차지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60%~80%, 南美에서는 40%의 食糧을 生産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公式的으로는 女性은 世界의 勞動力의 3分의 1밖에 되지않고, 所得은 10分의 1이며, 所有하고 있는 資産은 1% 以下에 不過한 實情이다.

各國은 開發活動에 女性의 役割이 重要함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그 認識이 不足한 것이 事實이며 UN에서 世界女性의 해(1975年) 및 UN女性 10年(1976~1985)을 指定한 것을 契機로 政府開發援助에 女性 프로그램을 積極的으로 包含시켜 이를 實施하기 爲한 基本的 方針과 重要課題等에 關心을 갖게 되었다.

UN의 境遇는 第 1, 2, 3次 開發 10年計劃이 樹立되어 UN의 開發援助 活動이 擴大되어 가면서 開途國의 社會經濟開發에 있어서 女性의 役割이 注目되었고, 特히 農村開發, 食糧增産, 人口抑制, 衛生狀態의 改善等을 爲해서는 女性의 役割이 不可缺하다는 것을 認定하게 됨으로서 開發의 全過程에 開發과 女性(Women in Development : WID)의 槪念이 形成되어 女性의 地位向上을 爲한 包括的인 問題를 다루게 되었다.

OECD內의 DAC는 開發과 女性에 關한 非公式會議를 수차례 開催하였고 美國, 스웨덴等이 中心이 되어 『DAC/WID專門家 그룹』이 結成되어 社會全體의 利益을 爲해서 開發에 女性의 積極的인 參加를 促進시키고 持續的인 開發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企劃, 實施의 段階에 女性의 役割을 認定하고 資源, 서비스, 敎育 및 訓鍊에 平等한 機會가 女性에게 주어지도록 努力하고 있다.

歐美 先進諸國의 NGO間에 開發과 女性에 關한 關心이 높고 政府와 協力해 나가면서 WID에 關聯된 活動을 하고 있다. 近年에 數個國에서 NGO에 依한 UN

女性開發基金(UNIFEM)國內 委員會가 設立되어 UMIFEM에 對한 弘報活動과 資金協力을 積極的으로 展開하고 있다. 日本은 技術協力에서 活潑한 女性參與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9年의 硏修生招請은 總人員 5,340名의 18.3%인 975名을, 專門家派遣은 總人員 1,714名의 2.7%인 46名을 派遣하였고 靑年海外協力隊員은 總 1,939名 中 約 1/3인 585名이 女性으로 構成되어 폭넓은 分野에서 活動하고 있으며, 프로젝트方式 技術協力 等에 依한 母子保健, 家族計劃, 看護敎育, 女性에 適合한 行政等의 分野에도 活潑한 女性參與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靑年奉仕團事業에서 그동안 派遣된 總人員 133名中 女性이 57名으로 42.9%라는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硏修生招請은 1992年 總 461名中 23.9%인 110名을 차지하는等 活潑한 女性參與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專門家派遣은 全無한 實情이며 無償援助分野에서도 女性과 關聯한 支援實績은 低調한 實情이므로 이에 對한 配慮가 있어야 될 것이다.

(3) NGO

오늘날 各國은 NGO가 開發戰略의 非經濟的인 面에 相當히 愼重하다는 認識과 NGO가 一般 大衆들의 BHN을 代辯하는 프로그램을 設定하는데 比較優位가 있다고 證明되었기 때문에 開發政策에 있어서 NGO役割의 影響이 있는 分野에 重點的인 政策을 두고 이를 積極活用하고 있다.

NGO의 歷史는 1940年代 中盤의 戰後 유럽再編과 더불어 始作되어 現在 全世界的으로 2.542個(1990)의 NGO가 매우 活潑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DAC 會員國의 NGO에 對한 援助實績은 1988年 現在 ODA의 4.7%인 23億$(自體資金造成額은 42億$로 ODA의 8.8%임)에 이르고 있으며 先進諸國은 NGO에 依한 開途國 援助를 資金과 機資材의 供與, 專門家의 派遣等을 中心으로 實施하고 있다.

NGO와 共同協力事業은 카나다의 CIDA가 模範的으로 遂行하고 있는데 CIDA는 NGO와 共同融資基金을 設置하여 150余個의 NGO가 各種 프로그램을 遂行하고 있으며 日本은 NGO의 自體資金造成의 ODA 比率이 1.2%로 DAC의

8.8%에 크게 뒤지고 있어 이에 對한 批判이 提起되엇는 바 最近에 政府는 NGO에 對한 活動을 높이 評價하여 이에 對한 支援을 強化하고 있는데 1989年에는 外務省이 事業補助金制度를 新設하였고 年間 70百萬$～100百萬$의 政府補助金을 支給하여 NGO의 活動을 크게 活性化 시키고 있다.

ODA規模가 작은 우리나라의 境遇 NGO와의 協力體制 構築은 매우 緊要하므로 國內 NGO의 精確한 現況把握과 豫算項目을 新設하여 協力形態別로 共同協力方案(Partnership Program)을 推進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19]

(4) 構造調整

오늘날 開途國이 共通的으로 겪고있는 景氣沈滯와 過多한 外債의 累增으로 이들에 對한 開發援助의 實效性이 低下되자 IBRD나 IMF等 國際機關과 主要先進國家에서는 開途國의 國際收支改善, 產業構造改革等을 爲한 長期低利借款과 構造調整融資(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 SAL)를 通하여 經濟成長과 國際收支改善을 圖謀하고 있는點도 우리가 EDCF와 無償援助分野에서 有意해야 될 事項이다.

(5) 政治的狀況 認識

先進國이 開發援助의 供與에 있어 民主化程度, 人權狀況, 軍費問題, 受援關聯 支配層腐敗等 政治的 要因을 重視하고 있는 點도(日本 政府는 1991. 4. 13日 (ODA供與 政治4原則을 가이후 首相이 發表한 바 있음) 認識해야 되며, 經濟協力의 效率性 提高를 爲해 援助供與國會議(Donor's Meeting)가 頻煩히 開催되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積極的인 參與가 바람직할 것이다.

---

19) 援助機關과 NGO의 共同協力方式은 各國에 따라 多樣하게 展開되고 있는데 OECD는 NGO에 對한 援助機關의 資金協力(Financial Cooperation)方式으로, NGO가 發掘한 事業에 支援하는 共同融資方式(Confinancing)과 政府가 事業을 發掘하고 NGO에 實施를 委託하는 下請契約方式(Sub-Contracts)으로 區分하고, 前者의 方式으로 NGO가 提示하는 個別事業別로 資金을 支援하는 Matching Grants, NGO가 提示한 여러個의 事業에 一括하여 資金을 支援하는 Block Grants, 事業施行에 數個年이 所要되는 事業에 資金을 支援하는 Multi-year Funding等을 들고있다.

11. 下部構造의 擴充

가. 現況 및 問題點

우리나라의 開發援助는 歷史가 日淺하고 規模도 微微하였으며 運用體制마저 多元化되어 10餘個에 이르는 多樣한 內容의 業務를 數個部處에서 分擔되어 實施됨으로써 有機的인 業務遂行이 되어오지 못하였으나 昨年 4月 이들 業務를 綜合專擔하게 될 새로운 機構로 韓國國際協力團이 設立되어 事業의 本格的인 推進은 勿論 業務의 綜合性과 效率性을 期待하게 되었다.

그러나 開發援助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爲해서는 아직도 法令, 組織, 統計, 人力, 硏究, 訓練, 調達, 情報, 弘報 및 協力團組織 둘러싸고 있는 外的要因으로서 環境(Ecology)問題等 下部構造에 對한 補完·強化가 持續的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 政策方向

(1) 關聯法規와 組織의 整備

開發援助의 母法中의 하나라고 볼수있는 韓國國際協力團法이 施行된지 1年이 지났으나 開發援助를 綜合的으로 連擊性과 一貫性있게 施行하기 爲해서는 關聯部處와의 業務分擔 및 關係設定에 對한 規定이 整備되어야 하며 關聯法規인 對外經濟協力基金法을 爲始하여 外務部의 指針등 規定 및 協力團 內部規程에 對한 補完이 必要하다.

韓國國際協力團의 人力問題는 增員보다는 組織內 人力構造의 調整과 人力의 高級化가 時急한 課題로 判斷되는데 人的資源配分에 있어 組織階層間, 單位部署別로 最適配分이 이루어졌는지에 對한 正確한 職務分析이 必要하다. 便宜에 따라 階層이 지나치게 多段으로 되거나 不要不急한 爲人設官式의 上位職級 設置止揚과 各 階層의 統率範圍(Span of Control)가 適正하지 못함으로써 惹起되는 業務의 非能率性과 浪費를 마고, 單位部署間 業務의 量과 內容을 勘案한 人

力配置가 必要하다.

無償援助의 實施體制를 例로들면 豫算規模는 全體의 約 50%(日本은 26%)를 占하고 對象國家의 擴大와 事業形態 및 支援品目이 多樣化 되고 있으나 專擔人力은 3.3%(日本은 25%)에 不過하다.

開發調査는 開途國의 經濟社會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모든 分野를 對象으로 하며 여러段階의 節次를 長期間에 걸쳐 遂行하는 協力團에서는 가장 專門性을 要하는 事業이나 人力(1.9%, JICA는 11.5%)等의 不足으로 內實있는 事業遂行이 困難한 實情이다.

따라서 組織內의 人力再配置를 通한 이들 部署에의 人力補強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2) 開發援助統計의 確立

援助政策樹立에 알맞는 體系的이고 正確한 統計의 作成이 要求된다. 그동안 業務가 여러 部處에 分擔되어 部處마다 統計基準이 相異하며 統計値도 多樣하게 提示되고 있다. ODA와 關聯한 綜合的인 統計가 經濟企劃院에서 作成되고 있으나 DAC의 統計指針과 相異한 境遇도 있다. ODA 行政費用의 境遇 一部機關은 除外되거나 費用構成項目이 漏落되는等 槪念이 相異하고, 그동안 外務部에서 施行해온 機資材供與의 品目別統計 境遇 施行初年度인 1977年부터 1988年까지는 把握이 全혀 不可能하여 推定値를 使用하고 있으며 協力形態別 受援國에 對한 金額基準統計, 分野別統計, 및 NGO統計等은 把握이 어려운 實情이다. 이밖에도 援助形態別로 各種 統計가 多角的으로 提示되고있지 못하여 政策樹立이나 硏究를 爲한 有用한 資料獲得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DAC 統計指針에 알맞게 體系的이고 正確한 統計를 早速히 作成하여야 될 것이다.

(3) 調査硏究와 綜合情報體制의 構築

韓國國際協力團이 專門硏究員을 確保하고 있으므로 開發援助의 效率的 推進

을 爲해서 短期的으로 開發援助의 初創期임을 勘案 優先 必要한 課題인 援助의 國別配分基準이나 中長期비젼의 提示等 事業部署에서 提起는 政策課題에 對한 硏究·分析을 통한 政策代案들이 時宜適切하게 提示되어야하며 長期的으로는 開途國에 對한 綜合的이고 深層的인 硏究를 遂行하여 開發援助政策에 關聯된 各種 政策提示와 情報 및 資料를 提共함으로써 싱크탱크의 役割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를 爲해 調査硏究事業의 效率的인 遂行을 爲한 與件造成이 必要하나 當分間은 人力等의 制約을 勘案 國內外의 關聯 硏究機關들과 有機的인 協調를 通해 情報를 交換 및 獲得토록하고 國內硏究機關들에게 一部의 硏究를 委囑分擔토록하여 協業體制를 構築하는 方法도 效果的일 것이다.

(4) 敎育訓練의 強化

專門人力의 養成을 爲해 組織內의 專擔機關으로 하여금 開發援助 業務遂行에 緊要하고 適切한 敎育프로그램을 開發하여 持續的 反復的으로 敎育시킴으로써 職務能力을 培養토록하고 優秀職員은 外國의 援助機關이나 IBRD等 主要國際機關의 硏修프로그램에 參與토록 機會를 擴大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專門技術職을 新規採用하고 外部專門家를 招聘하여 세미나 開催를 通한 幅넓은 政策方案을 論議收斂토록 해야 한다.

(5) 調達業務體制의 確立

開發援助 業務中 機資材 調達과 開發調査의 契約等 業務 比重은 매우 크다. 그동안 機資材 調達業務는 外務部에서 大韓貿易振興公社의 子會社였던 (株)高麗貿易과 對外無償援助物品 輸出代行契約을 締結하여 自動車等 一部品目을 除外한 大部分의 品目을 代行處理하여 왔으며, 1991年 7月 韓國國際協力團은 機資材 調達業務 改善策의 一環으로 手數料 節減等 豫算節減을 爲해 可能한한 生產業體와의 直接契約締結을 擴大하고, 輸出業體 境遇에는 (株)高麗貿易 以外

에 1個以上 輸出業體로부터 見積을 接受받는 複數見積制度를 採擇하였으며, 1993年 1月에는 增大되는 業務의 能率的이고 內實있는 購買行政을 爲해 調達課를 新設하여 購買業務의 專門化를 期하고저 하였다. 向後 調達業務에서 推進되어야 할 事項은,

① 機資材調達을 爲한 細部指針과 規程(會計規程의 改定, 契約事務取扱細則의 制定, 機資材 檢查實施要領의 制定, 機資材 保險請求規程의 制定, 機資材 現地調達 基準의 制定, 豫定價格과 隨意契約基準의 作成 等)을 마련하고,

② 機資材 調達業務를 直接遂行時 豫想되는 品目選定·原價計算·契約·保險·通關·檢收·船積等 購買 및 貿易에 關聯된 複雜한 諸般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商品市場의 事情에 能通하고 購買 및 貿易業務에 專門的인 知識의 習得으로 購買業務의 專門化를 期하며,

③ 契約方法을 從前의 隨意契約方式에서 競爭契約方式으로 轉換하고,

④ 調達方式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受援國의 事情 및 援助의 質等을 考慮하여 條件附(Tied)와 非條件附(Untied)에 依한 制度的 長短點을 檢討하고,

⑤ 徹底한 原價計算에 依한 購買制度를 確立하며,

⑥ 援助機資材를 輸出品目으로 認定할 것인지에 對한 論議로 協力團이 機資材를 直接調達時에는 關稅還給이 不可能하게 됨에따라(關稅等 還給에 關한 特例法 施行規制 第 2條) 多小의 價格引上이 不可避하므로 同 條項의 改定을 推進하고,

⑦ 調達品目이 少量多品種으로 當分間은 輸出代行業者에 委託(CAD方式)하거나 또는 製造業體가 直接輸出業務를 履行時 對外貿易管理規程에 依한 輸出實績範圍에 包含되지 않으므로서 關稅還給, 貿易金融融資 및 附加價値稅의 零稅率 適用에 問題가 提起되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對策을 마련하며,

⑧ 開發調查의 事業年度가 數個年에 걸쳐 繼續되고, 機資材 調達購買에 많은 時日이 所要되어 預算의 會計年度內 執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1991年의 機資材購買分 移越은 總執行額의 29.2%인 360萬$에 達함)事業의 融通性있는 執行을 할 수 있는 會計規程의 明確한 整理와,

⑨ 供與機資材에 對한 定期點檢 및 事後管理를 徹底히 하고,

⑩ 供與機資材品目을 標準化시켜 入札業務의 能率化, 一定한 品質의 保障, 物品檢查의 迅速等을 期해야 될 것이다.

(6) 有關機關과의 協調體制 構築

援助形態間의 有機的인 連繫을 強化하기 爲하여 政府의 關聯部處와의 業務協調 및 調整이 充分히 이루어져야 하며 政府投資機關이나 出捐機關等의 公共機關은 勿論 大學의 硏究所, 私企業體, 專門 컨설턴트 業體 및 民間專門家等과의 民間協調體制 構築및 國際機構들과도 폭넓은 紐帶關係가 이룩되어야 한다.

(7) 弘報活動強化

最近 主要先進國에서는 一部 制定된 官僚主導로 國民의 稅金에 依해 實施되는 ODA에 對해 議會에서 充分한 論議와 統制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反省과 ODA를 行政府의 손에 맡겨둔채로 放置할 수는 없다는 意見이 提起되고 있다.

따라서 開發援助의 國際的 理解와 協調增進을 通한 協力事業의 效率性 提高를 爲하여 國民 및 關聯機關의 理解와 幅넓은 支持基盤의 確保가 必要한 바 이를 爲해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弘報計劃의 樹立과 活動이 要求된다.[20]

---

20) 1990-1991年間 機資材供與에 對한 受援國의 反應을 地域別, 供與品目別, 支援規模別로 分析한 結果 體系的인 反應指數는 3點 滿點의 49%인 1.47點에 不過한 바 — 低所得國(1.67) 高中所得國(1.47) 低中所得國(1.2%) 最貧開途國(0.90)—國家의 所得水準, 供與品目의 種類, 援助規模에 따른 政策轉換과 아울러 弘報戰略의 活性化가 要求된다.

第二部　比較開發調査論

Ⅰ. 外國의 開發援助現況

1. 開發援助의 歷史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開發援助의 歷史的 흐름을 돌이켜보면 ①1960年까지 前史 ②1960年代 ③1970年代 ④1980年代 ⑤1990年代 5個의 時期로 區分할 수 있다.

가. 2次大戰後~1960年代初(開發援助의 前史)

이 時期는 開發援助가 發生한 時期로 볼 수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狀況이 作用하였다.

첫째, 제2次 世界大戰의 結果 敗戰國은 勿論 戰勝國도 마찬가지로 經濟的으로 큰 打擊을 입게됨에 따라 世界大戰中 兵站庫의 役割을 遂行하여온 美國이 指導的 地位를 獲得하게 되었다.
이에 美國을 中心으로하여 戰後復舊를 爲한 UN, 世界銀行等의 國際機關이 設立하게 되었고 이들 機關은 60年代 以後 開發途上國 援助를 그 重点活動對象으로 하게되었다.

둘째, 世界大戰의 終結後 50年代에는 아시아地域의 舊植民地가 60年代에는 아프리카 地域의 舊植民地가 大部分 獨立을 達成하였다.
政治的으로는 獨立을 이룩한 이들 新興國家들이 經濟的으로도 自立發展해 나가기 爲하여서는 아직 많은 障碍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先進諸國으로 부터의 開發援助가 必要한 實情이었다.
그러나 이들 國家의 舊宗主國들도 戰爭被害로 因한 復舊에 餘力이 없었으므로 콜롬보 플랜의 發展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美國을 비롯하여 其他 先進國을 包含함 共同發展援助를 遂行하는 方

式을 取하게 되었다.

셋째, 世界大戰後 美·蘇間의 東西對立이 激甚하게됨에 따라 美國을 中心으로한 西方諸國은 美國 트루만 大統領의 포인트·포(Point Four) 政策에서 볼 수 있듯이 開發途上國을 社會主義國家의 影響으로부터 排除하고 資本主義 陣營으로 끌어들이기 爲한 政策을 取하였다.

또한 蘇聯을 中心으로한 共產圈國家는 相互經濟援助會議(CMEA : 通常 코메콘이라 稱함)을 設置하여 獨自的으로 開發途上國에 對한 協力을 開始하여 東·西間 援助競爭 樣相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以上 3가지 要因이 作用하여 60年까지는 開發途上國의 開發援助에 對한 基本的인 認識이 確立되었으며 大部分의 主要 援助實施機關이 誕生하였다.

나. 1960年代(南北問題의 擡頭)

1960年代는 한편으로는 UN開發 10年(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의 發足等으로 開發援助가 長期展望에 立脚하여 着實한 第一步를 내딛은 時期이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政治的 獨立을 爭取한 開發途上國이 『77그룹』을 結成하여 UN 貿易開發會議(UNCTAD)等을 舞臺로하여 開途國 自身의 利益에 立脚한 世界經濟機構의 再編成을 要求하는等 獨自的인 主張을 提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先進諸國도 DAC를 中心으로한 活動等으로 先進國側의 立場을 明確히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다. 1970年代(南北問題의 展開)

70年代는 開發援助에 있어 混亂과 動搖의 時期로 特徵지어지고 있다.

유엔開發 10年이라는 이름으로 出帆했던 60年代는 國際的인 協力과 努力에도 不拘하고 實質的으로는 南北間의 隔差가 더욱 深化되자 IBRD 等에서는 人間의 基本的需要接近方式(Basic Human Needs : BHN)을 提案하여 開途國의 貧困輕減(Poverty Alleviation)에 對한 關心을 提起하였으며 先進國은 旣存의 協力政策에 對한 全面的인 再檢討를 實施하여 第2次 유엔開發 10年이 第25次 유엔總會에서 決議·採擇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닉슨쇼크 및 오일쇼크에 이은 開途國의 新國際經濟秩序運動等으로 南北間의 對立이 激化되기 始作함으로써 南北問題는 단지 經濟援助의 問題 또는 南北貿易의 問題에 그치지 않고 開途國을 中心으로 南側이 北側의 先進工業國에 새로운 國際秩序의 構築을 要求하는 形態로 展開되어 世界經濟 全體의 本質的인 問題로 登場하였다. 이에 1975. 12月에는 에너지 및 南北問題에 關하여 8個 先進國과 19個 開發途上國에 依하여 國際經濟協力會議(CIEC)가 開催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成果를 보지 못하였다.
한편 開途國은 産油國, 中進國, 最貧國等 階層分化 現象이 생기게 되어 開發援助의 方向이 한층 複雜한 樣相을 띄기 始作하였다.

라. 1980年代(南北問題의 多樣化)

80年代에 들어서는 70年代 나타나기 始作한 開途國의 階層分化 現象이 더욱 深化되었다. 즉 比較的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고 있는 新興工業國家(NICs), 外債 및 經濟沈滯가 繼續되고 있는 中南美國家, 油價下落 및 政治的 不安이 繼續되고 있는 中東地域, 慢性的인 貧困과 構造的인 經濟問題에 直面한 아프리카 地域等으로 이들 開途國의 援助欲求도 多樣化되었다.
또한 國際收支의 弱化와 經濟不況으로 主要先進國은 所謂 援助疲困(Aid Fatigue) 또는 援助倦怠(Aid Weariness) 現象을 겪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石油波動 以後 開途國의 債務累積 問題도 더욱 深刻한 樣相

을 띄게되어 世界銀行, IMF等에서 構造調整 政策을 實施하였으나 效果的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80年代末에는 環境問題(Environmental Issues), 人力資源開發(Human Resources Developement : HRD)과 女性의 役割問題(Women in Developement : WID)等 開發援助에 있어 새로운 課題가 登場하기 始作하였다.

마. 1990年代(開發援助의 轉換期)

90年代에는 傳統的인 南北間의 問題, 즉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經濟隔差深化와 함께 貧困, 人口, 食糧, 痲藥, 地球環境問題等 世界的 規模의 問題가 浮刻될 展望이며, 舊社會主義國家의 世界資本主義 體制로의 編入에 따라 開發援助에 新潮流가 形成될 展望이다.

開發援助委員會(DAC)는 이러한 여러가지 複合的인 90年代 課題를 解決하기 爲해 1989年 12月 開發協力閣僚 및 國際協力機關長 首腦會議에서 『1990年代의 開發協力』에 關해 合議, 政策方向을 決定한 바 있는데, 이는 90年代 開發援助 政策의 根幹이 될 것으로 보인다.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優先 開途國 스스로가 開發에 關한 最終的인 責任을 가지며 開發援助는 開途國의 開發努力을 補完하는 것이라고 言及, 開途國의 自助努力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둘째, 90年代 中心問題로서는 人口增加, 貧困, 營養不足, 文盲 및 劣惡한 環境과 結付된 低開發의 惡循環 問題가 重点 解決課題이며, 이의 解決을 爲해서는 다음 3分野에 一貫性있는 政策努力이 必要하다.

- 持續可能하며 폭넓은 基礎를 지닌 經濟成長의 促進(Broad-Based Economic Growth)
- 廣範圍한 參與的 開發(Participatory Development)

- 環境改善 및 人口增加 抑制

셋째, 相互依存關係의 深化와 OECD 諸國의 全般的인 經濟政策의 重要性을 勘案하여 다음과 같은 援助努力을 強化토록 한다.

- 開途國의 多樣化에 相應한 援助政策
- 構造調整(Structural Adjustment) 및 援助評價의 推進
- 政策改革支援과 並行하여 인프라스트락춰의 整備
- ODA의 量的, 質的 擴充

한편 最近 先進國의 開發援助供與에 몇가지 뚜렷한 動向을 나타내고 있는데 受援國(Recipient Country)의 人權이나 民主化 程度, 軍費狀況等의 非經濟的要因이 重視되고(1991. 4月 日本이 發表한 ODA供與時 4個原則), 現在 開途國이 지고있는 莫大한 外債(1991年末 總 1兆 2,800億$)를 蕩減시키려는 努力이 — 代表的인 方法으로 1988年의 Tronto Terms와 1990年의 Trinidad Terms— 增大되고 있다. 아울러 開途國의 要請에 依한 援助方式만으로는 開途國經濟의 根本的 構造改善이 어렵다고 判斷하고 開發援助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爲해 各種의 援助供與國會議(Donor's Meeting)를 活發히 開催하고 있으며, 開途國의 受援能力不足으로 供與된 援助를 效率的으로 活用하지 못하는 點을 考慮하여 프로젝트型事業을 支援時에는 BOT方式(Build—Operate—Transfer—Scheme)또는 BOO方式(Build—Operate—Own—Scheme)으로 推進토록 하고 있다.

2. 開發援助의 實績

本項은 重要한 統計만을 提示하고 具體的인 內容(Ⅳ의 2項 各國의 援助프로그램에서 一部說明)은 紙面關係上 略述한다.

(資料 : OECD의 1991 Report,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作成)

가. 開發援助의 規模

○ 對開途國 資金協力의 總量은 1982年 이후 每年 減少하다 最近에 多少 增加趨勢임
  • 1,756億$('82)→1,006億$('86)→1,289億$('90)
○ 資金協力의 總量中 ODA比重의 增加에 따라 ODA의 重要性이 增大되고 있음
  • 29.1%('82)→44.5%('85)→43.4%('90)
○ 1990年 現在 ODA 總規模는 552億$로서 DAC國家支援이 86.3%인 476億$(經常基準 541億$)을 占有함.
○ DAC國家의 ODA實績
  • 美國 : 114億$로 對 GNP 比率은 0.18%
  • 日本 : 91億$로 對 GNP 比率은 0.31%
  • 北歐國家의 對 GNP率이 높음 : 네델란드(0.94%), 덴마크 및 노르웨이(各 0.93%)
  • DAC平均(0.35%), DAC勸告(0.7%), DAC目標(1.0%)

나. 開發援助의 地域別, 所得그룹別 配分

○ 最貧地域인 사하라 以南地域에 對한 援助가 꾸준히 增加
29.2%(79/80)→29.1%(84/85)→34.3%(89/90)
  • 아시아地域은 減少
○ 供與國別(Donor Countries)로 地域別 差等化 戰略追求
  • 美 國 : 軍事·外交政策側面에서 라틴아메리카地域 增加, 이스라엘, 이집트等 中東國家에 集中支援
  • 日 本 : 資本財輸出과 連繫시켜(Tied Loan) 아시아地域(特히 ASEAN)에 集中支援
  • 英 國 : 二國間援助의 75%를 印度等 英聯邦國家에 支援

- 프랑스 : 아프리카等 佛語圈地域에 集中支援
- 北歐國家 : 宗教的動機에 依한 人道主義에 重點支援

○ 最貧國家보다 低所得國家에 對한 支援比率이 높음
- LICs(53.6%), LLDCs(22.4%)

다. 開發援助의 分野別 配分

○ 經濟等 인프라스트락춰(45.8%) 및 프러그램援助(13.3%) 比率이 높음

○ BHN(食糧援助等)에 對한 比重은 크게 낮고 每年 漸次減少됨
12.7%(75/76)→4.8%(88/89)

○ 美國은 食糧援助(16.2%), 프로그램援助(24.6%)에 集中하는 反面 日本은 經濟인프라스트락춰(36.4%)에 集中, 食糧援助(0.6%) 比率이 낮음

라. 開發援助의 條件

○ ODA의 質을 나타내는 GE比率은 92.8%로 改善되고 있으며, 無償贈與比率은 77%에 不過함
- 國別 GE : 美國(98.8%), 日本(81.4%),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랄리아等(100%)

○ 非條件附(Untide)가 36.5%, 條件附(Tied)가 33%, 部分非條件附가 4.1%임

〈表 Ⅰ－1〉 對開途國 資金協

區分 \ 年度	金			
	1982	1983	1984	1985
Ⅰ. 公的開發金融(ODF)	44.1	42.4	47.5	48.6
1. 公的開發援助(ODA)	33.8	33.9	34.8	37.0
二 國 間	26.3	26.3	27.2	28.8
多 國 間	7.5	7.6	7.6	8.2
2. 其他公的開發金融(ODF)	10.3	8.5	12.7	11.6
二 國 間	3.7	1.3	4.5	3.7
多 國 間	6.6	7.2	8.2	7.9
Ⅱ. 輸出信用金融	13.7	4.6	6.2	4.0
1. DAC 國家	12.7	3.9	5.2	3.4
短期金融	3.0	−3.5	0.3	3.2
2. 其他國家	1.0	0.7	1.0	0.6
Ⅲ. 民間資金移動	58.2	47.8	31.7	30.5
1. 直接投資(OECD)	12.8	9.3	11.3	6.6
2. 銀行借款	37.9	35.0	17.22	15.2
短期借入金	15.0	−25.0	−6.0	12.0
3. 債券發行	4.8	1.0	0.3	4.5
4. 其 他	0.4	0.2	0.3	1.3
5. 民間援助	2.3	2.3	2.6	2.9
總 計(Ⅰ＋Ⅱ＋Ⅲ)	116.0	94.8	85.4	83.1
ＩＭＦ 信用(NET)	116.0	94.8	85.4	83.1
'89年 不變價格 및 不變換率基準				
資金 純흐름 總計	175.6	144.4	133.7	128.9
公的開發金融總計	66.8	64.6	74.4	68.7
ODA總受惠額	51.2	51.7	54.5	54.0
DAC의 ODA	42.1	42.1	44.9	45.2

資料：OECD

力總量 變動推移

額 (10億$)					構 成 比 (%)		
1986	1987	1988	1989	1990	1982	1985	1990
55.8	61.5	65.5	65.5	78.8	38.0	58.5	54.6
43.9	38.2	51.4	52.9	62.6	29.1	44.5	43.4
35.0	38.3	40.2	40.7	49.4	22.7	34.7	34.3
8.9	9.9	11.2	12.2	13.2	6.5	9.9	9.2
11.9	13.3	14.1	12.6	16.2	8.9	14.0	11.2
4.1	6.6	7.6	5.6	6.0	3.2	4.5	4.2
7.8	6.7	6.5	7.0	10.2	5.7	9.5	7.1
−0.7	−2.6	−2.1	9.5	4.6	11.8	4.8	3.2
−0.9	−2.9	−2.1	9.6	4.5	10.9	4.1	3.1
3.0	4.1	2.0	4.8	3.0			
0.2	0.3	x	−0.1	0.1	0.9	0.7	0.1
26.7	33.7	43.8	48.3	60.8	50.2	36.7	42.2
11.3	21.1	25.3	30.4	32.0	11.0	7.9	22.2
7.0	7.0	7.8	10.5	18.5	32.7	18.3	12.8
−4.0	5.0	4.0	8.0	9.0			
1.2	−0.4	1.3	−0.3	0.8	4.1	5.4	0.6
3.9	2.5	5.2	3.7	5.0	0.3	1.6	3.5
3.3	3.5	4.2	4.0	4.5	2.0	3.5	3.1
81.8	92.6	107.2	123.2	144.2	100.0	100.0	100.0
81.8	92.6	107.2	123.2	144.2	100.0	100.0	100.0
100.6	98.2	105.8	123.3	128.9			
68.7	65.2	64.7	65.5	70.4			
54.0	51.1	50.8	52.9	55.9			
45.2	44.1	47.4	46.7	48.6			

〈表 Ⅰ-2〉 ODA 供

國名 \ 年度	金額 ('89 價格)				
	1970-71	75-76	80-81	89-90	(90)
美國	8,618	8,608	9,128	9,292	(11,366)
EEC會員國	11,055	12,809	16,905	22,185	
(프랑스)	3,782	4,105	5,261	7,614	(6,571)
(獨逸)	2,610	3,331	4,580	5,097	(6,320)
(이태리)	695	554	1,095	3,191	(3,395)
(네델란드)	843	1,269	1,955	2,125	(2,592)
(英國)	2,367	2,459	2,627	2,445	(2,647)
(덴마크)	285	428	631	948	(1,171)
(벨기에)	475	644	715	717	(889)
(아일랜드)	—	20	41	48	(57)
日本	2,871	3,285	5,863	9,152	(9,069)
카나다	1,144	1,742	1,720	2,340	(2,470)
스웨덴	493	1,179	1,251	1,746	(2,012)
노르웨이	157	403	608	981	(1,205)
오스트레일리아	847	911	898	977	(955)
스위스	184	273	371	578	(750)
핀란드	52	121	205	712	(846)
오스트리아	56	151	299	305	(394)
뉴질랜드	62	150	107	88	(93)
DAC 計	25,540	29,632	37,356	47,640	(54,077)
스페인	—	80	288	617	
그리스	—	—	2	36	
포루투갈	—	—	7	117	
룩셈부룩	—	5	7	20	
아이스랜드	—	2	3	2	
OECD 國家 非 DAC 計	—	87	307	792	

與의 長期推移

(單位：百万$)

構成比(%)				對 GNP 比率(%)			
70－71	75－76	80－81	89－90	70－71	75－76	80－81	89－90
33.7	18.2	16.5	16.6	0.30	0.26	0.23	0.18
43.3	27.1	30.5	39.7	0.42	0.44	0.48	0.50
14.8	8.7	9.5	13.6	0.68	0.61	0.67	0.78
10.2	7.1	8.3	9.1	0.33	0.38	0.45	0.41
2.7	1.2	2.0	5.7	0.16	0.11	0.16	0.36
3.3	2.7	3.5	3.8	0.60	0.77	1.01	0.94
9.3	5.2	4.7	4.4	0.42	0.39	0.39	0.29
1.1	0.9	1.1	1.7	0.40	0.53	0.74	0.93
1.9	1.4	1.3	1.3	0.48	0.55	0.54	0.46
—	0.0	0.1	0.1	—	0.10	0.16	0.16
11.2	7.0	10.6	16.4	0.22	0.21	0.30	0.31
4.5	3.7	3.1	4.2	0.41	0.49	0.43	0.44
1.9	2.5	2.3	3.1	0.40	0.78	0.80	0.93
0.6	0.9	1.1	1.8	0.33	0.68	0.86	1.11
3.3	1.9	1.6	1.7	0.59	0.53	0.44	0.36
0.7	0.6	0.7	1.0	0.12	0.19	0.24	0.31
0.2	0.3	0.4	1.3	0.09	0.17	0.24	0.63
0.2	0.3	0.5	0.5	0.07	0.17	0.28	0.24
0.2	0.3	0.2	0.2	0.23	0.47	0.31	0.22
100.0	62.8	67.5	86.5	0.34	0.34	0.36	0.35
—	0.2	0.5	1.1	—	—	0.10	0.15
—	—	0.0	0.1	—	—	0.00	0.06
—	—	0.0	0.2	—	—	0.02	0.25
—	0.0	0.0	0.0	—	—	0.12	0.27
—	0.0	0.0	0.0	—	—	0.06	0.05
—	0.2	0.6	1.4	—	—	0.08	0.15

國名 \ 年度	金額 ('89 價格)			
	1970－71	75－76	80－81	89－90
사우디아라비아	－	6,065	8,016	2,234
쿠웨이트	－	1,789	1,650	829
UAE	－	2,161	1,400	403
其他	－	1,432	1,636	173
아랍計	－	11,447	12,702	3,639
舊蘇聯	－	2,681	3,296	2,374
其他	－	585	748	256
中·東유럽計	－	3,266	4,044	2,630
中國	－	749	342	160
印度	－	146	242	104
베네수엘라	－	155	162	44
韓國	－	－	26	60
其他	－	1,729	201	104
非아랍LDC計	－	2,778	973	473
全世界總計	25,540	47,210	55,382	55,174

資料：OECD

註：( )內는 經常價格基準

構成比(%)				對 GNP 比率(%)			
70-71	75-76	80-81	89-90	70-71	75-76	80-81	89-90
-	12.8	14.5	4.0	-	6.66	4.05	6.08
-	3.8	3.0	1.5	-	5.81	3.58	5.89
-	4.6	2.5	0.7	-	9.57	3.34	3.46
-	3.0	3.0	0.3	-	-	-	-
-	24.2	22.9	6.5	-	7.92	4.45	5.81
-	5.7	6.0	4.2	-	-	-	-
-	1.2	1.4	0.5	-	-	-	-
-	6.9	7.3	4.7	-	-	-	-
-	1.6	0.6	0.3	-	-	0.09	0.04
-	0.3	0.4	0.2	-	-	0.10	0.08
-	0.3	0.3	0.1	-	0.24	0.18	0.10
-	-	0.0	0.1	-	-	0.03	0.03
-	3.7	0.4	0.2	-	-	0.08	0.08
-	5.9	1.8	0.8	-	-	-	-
100.0	100.0	100.0	100.0	-	-	-	-

〈表 Ⅰ-3〉 ODA의

地域別 / 國 名	사하라 以南地域			南 아 시 아		
	79/80	84/85	89/90	79/80	84/85	89/90
1. DAC國家 二國間供與						
美 國	12.7	16.1	14.0	11.8	9.0	10.3
日 本	10.4	9.6	13.5	32.6	19.6	16.9
프 랑 스	45.2	49.6	54.3	2.0	3.2	2.7
獨 逸	32.5	33.6	36.4	20.9	17.8	12.3
北 유 럽 小 計	51.9	58.5	58.7	26.5	23.8	19.2
(덴 마 크)	55.0	58.4	61.3	30.4	31.4	22.5
(핀 란 드)	65.4	64.0	59.6	5.1	14.4	14.2
(노 르 웨 이)	50.7	62.7	64.5	30.4	25.2	20.5
(스 웨 덴)	49.3	54.7	54.1	25.5	21.4	18.7
이 태 리	54.1	66.7	55.9	3.1	3.1	4.4
네 델 란 드	31.1	36.7	36.2	21.9	21.2	18.5
英 國	36.3	39.5	50.5	40.7	35.9	26.7
카 나 다	41.1	41.6	53.5	35.3	28.9	14.1
오스트레일리아	3.8	7.1	10.1	11.1	7.2	8.0
뉴 질 랜 드	2.2	1.0	1.7	3.2	0.4	0.8
其他 DAC 小計	52.3	49.5	49.5	11.3	8.9	9.0
(오 스 트 리 아)	10.3	9.2	18.5	7.1	0.6	5.2
(벨 기 에)	64.9	72.4	75.0	7.3	5.7	3.6
(아 일 랜 드)	94.2	96.6	95.2	1.7	1.4	1.7
(스 위 스)	38.8	51.5	49.2	31.2	21.0	17.1
D A C 小 計	29.2	29.1	34.3	18.4	13.4	11.8
2. 多國間供與						
E E C	63.9	63.3	64.8	10.7	12.2	10.6
I F I s	20.5	26.8	43.0	44.3	44.5	35.2
UN機構	28.1	41.4	42.5	18.3	20.7	19.6
3. 非DAC供與小計	11.9	15.3	6.7	9.0	8.7	5.5
總 計 (1+2+3)	25.1	27.9	34.4	18.3	16.4	14.4

資料：OECD

地域別 配分

(單位 : %), 全體供與額中 比率

기타아시아, 오세아니아			中東, 北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브리沿岸		
79/80	84/85	89/90	79/80	84/85	89/90	79/80	84/85	89/90
10.1	6.6	7.1	54.4	48.1	48.2	11.0	20.3	20.5
41.3	53.3	52.5	8.6	8.8	8.8	7.1	8.6	8.2
14.4	14.0	14.0	13.0	12.7	9.7	25.3	20.5	19.2
7.2	15.6	13.6	29.6	22.4	26.2	9.8	10.7	11.4
13.4	9.5	7.8	4.9	2.3	5.1	3.4	5.8	9.2
8.7	5.2	5.2	4.2	2.9	7.1	1.6	2.0	3.9
23.8	7.6	9.4	3.6	6.8	9.7	2.0	7.1	7.0
7.5	5.4	3.1	8.2	1.6	1.0	3.3	5.0	10.9
16.8	14.5	10.9	4.0	1.4	4.5	4.4	7.9	11.9
10.4	2.7	6.0	21.2	16.7	13.5	11.3	10.8	19.9
10.7	13.2	17.5	5.3	6.1	5.7	31.0	22.7	22.2
9.4	8.2	10.5	6.8	8.7	4.5	6.8	7.7	7.8
4.9	8.6	12.0	7.6	3.4	6.7	11.1	1.75	13.9
83.7	84.4	79.3	1.2	1.0	2.5	0.1	0.3	0.1
92.9	98.2	96.9	0.0	0.1	0.1	1.7	0.5	0.5
15.3	7.7	17.1	13.7	24.7	14.0	7.4	9.2	10.4
42.5	9.9	37.1	33.1	75.9	34.7	7.2	4.4	4.2
11.4	8.2	6.0	11.3	7.0	5.8	5.2	6.6	9.6
0.8	1.4	0.3	0.0	0.5	2.1	2.5	0.5	1.0
7.2	5.5	12.0	6.5	4.6	5.4	16.2	17.4	16.3
16.7	18.0	21.2	22.9	24.3	18.4	12.9	15.3	14.5
5.3	3.6	5.2	14.9	10.1	7.6	5.2	10.7	11.8
6.7	8.5	12.4	6.4	4.0	1.0	17.5	16.1	8.5
20.4	13.6	13.6	19.9	11.9	9.9	13.3	12.4	14.4
17.1	29.5	26.6	54.5	33.0	52.5	7.5	13.6	8.7
15.6	18.5	19.5	29.2	22.5	18.7	11.7	14.7	13.0

〈表 Ⅰ－4〉 ODA의

DAC 計		美 國		日 本		카 나 다		英
國 名	%	國 名	%	國 名	%	國 名	%	國 名
이 집 트	4.4	이 집 트	16.6	인도네시아	12.4	카 메 룬	3.4	인 도
인도네시아	3.8	이스라엘	12.1	중 국	7.7	방글라데시	3.2	방글라데시
중 국	2.7	피키스탄	2.8	필 리 핀	5.9	케 냐	2.5	케 냐
이스라엘	2.5	엘살바돌	2.7	태 국	5.2	가 나	2.5	나이제리아
인 도	2.4	필 리 핀	2.2	방글라데시	4.1	중 국	1.9	말 라 위
방글라데시	1.9	온두라스	1.6	말레지아	3.2	잠 비 아	1.9	파키스탄
필 리 핀	1.8	방글라데시	1.5	인 도	2.6	코트디브와르	1.7	가 나
케 냐	1.6	인 도	1.2	파키스탄	2.3	인도네시아	1.7	탄자니아
파키스탄	1.6	수 단	1.2	한 국	2.3	파키스탄	1.6	수 단
리유니온	1.4	코스타리카	1.2	터 어 키	2.1	짐바브웨	1.4	모 잠 빅
탄자니아	1.4	과테말라	1.2	스리랑카	1.9	세 네 갈	1.3	우 간 다
태 국	1.4	자마이카	1.0	이 집 트	1.4	탄자니아	1.3	잠 비 아
마티니크	1.3	태평양군도	1.0	나이제리아	1.3	인 도	1.3	성헬레나
터 어 키	1.3	케 냐	1.0	케 냐	1.2	자마이카	1.2	중 국
모 잠 빅	1.2	인도네시아	1.0	브 라 질	1.1	자 이 레	1.2	스리랑카
세 네 갈	1.1	볼리비아	0.8	볼리비아	1.0	모 잠 빅	1.1	이디오피아
자 이 레	1.0	모 로 코	0.8	요 르 단	0.9	모 로 코	1.1	네 팔
모 로 코	0.9	스리랑카	0.7	가 나	0.8	이 집 트	1.0	말레지아
잠 비 아	0.9	요 르 단	0.7	세 네 갈	0.8	필 리 핀	1.0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0.9	페 루	0.6	자 이 레	0.8	태 국	0.9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0.8	아 이 티	0.6	미 얀 마	0.7	이디오피아	0.9	이 집 트
가 나	0.8	자 이 레	0.5	모 로 코	0.7	페 루	0.8	필 리 핀
스리랑카	0.8	파 나 마	0.5	네 팔	0.7	말 리	0.8	구 와 나
수 단	0.8	아프가니스탄	0.5	온두라스	0.6	나이제리아	0.8	보츠와나
카 메 룬	0.7	소말리아	0.5	파라과이	0.6	니 제 르	0.6	태 국
計	39.8		54.3		62.0	37.0		
多國間援助	24.9		18.6		21.8	27.9		
其 他	11.8		16.7		5.4	24.5		
총 ODA(百萬 $)	55,952		10,409		10,269	2,723		

資料：OECD

集中度 (1989－90)

(單位 : %)

國	프 랑 스		獨 逸		스 웨 덴		네 델 란 드	
%	國 名	%	國 名	%	國 名	%	國 名	%
5.0	리 유 니 온	9.1	터 어 키	4.7	인 도	6.9	인도네시아	8.4
3.4	마 티 니 크	8.3	이 집 트	4.0	탄 자 니 아	6.3	인 도	6.3
2.8	코트디브와르	4.0	인 도	3.6	모 잠 빅	6.2	탄 자 니 아	3.3
2.3	뉴칼레도니아	3.4	케 냐	3.5	니 카 라 과	2.5	방글라데시	2.7
2.0	폴리네시아프랑스	3.2	중 국	3.1	베 트 남	2.3	케 냐	2.6
2.0	과 데 로 프	3.1	인도네시아	2.5	이 디 오 피 아	2.1	네델란드영안틸제도	2.5
1.9	세 네 갈	3.0	잠 비 아	2.2	앙 골 라	2.0	수 단	2.4
1.8	모 로 코	2.4	가 나	2.2	중 국	2.0	모 잠 빅	2.3
1.6	카 메 룬	1.8	파 키 스 탄	2.1	잠 비 아	1.9	수 리 남	1.8
1.5	마 다 가 스 칼	1.6	이 스 라 엘	1.6	케 냐	1.6	잠 비 아	1.7
1.4	자 이 레	1.6	세 네 갈	1.5	짐 바 브 웨	1.5	파 키 스 탄	1.5
1.3	중 국	1.5	요 르 단	1.5	방글라데시	1.3	이 집 트	1.5
1.3	인도네시아	1.4	자 이 레	1.1	보 츠 와 나	1.1	볼 리 비 아	1.3
1.1	말 리	1.4	모 로 코	1.1	아프가니스탄	0.9	브루키나파소	1.3
1.0	가 봉	1.4	마 다 가 스 칼	1.0	우 간 다	0.8	말 리	1.3
1.0	콩 고	1.4	방글라데시	1.0	라 오 스	0.7	예 멘	1.2
1.0	구 와 나	1.3	태 국	0.9	기 네 비 소	0.6	중 국	1.1
0.9	이 집 트	1.2	페 루	0.8	알 제 리 아	0.6	페 루	1.1
0.9	챠 드	1.2	탄 자 니 아	0.8	튜 니 지 아	0.5	니 카 라 과	1.1
0.8	알 제 리 아	1.1	브 라 질	0.8	깝 베 르 데	0.5	아 루 바	1.1
0.6	기 네 아	1.1	볼 리 비 아	1.8	레 소 토	0.5	스 리 랑 카	1.0
0.5	인 도	1.1	튜 니 지 아	0.8	스 리 랑 카	0.4	자 마 이 카	1.0
0.5	브루키나파소	1.0	시 리 아	0.7	파 키 스 탄	0.3	필 리 핀	1.0
0.5	베 넹	0.9	이 디 오 피 아	0.7	코스타리카	0.3	가 나	0.9
0.4	튜 니 지 아	0.9	수 단	0.7	수 단	0.3	짐 바 브 웨	0.9
37.5		58.3		43.8		44.1		51.1
41.5		16.2		25.8		30.2		25.4
12.7		9.9		8.7		22.5		10.4
2,759		8,805		7,083		1,907		2,506

〈表Ⅰ-5〉 ODA의

分野別 / 國名	社會·行政 인프라스트락춰		經濟 인프라스트락춰		農業	
	75/76	88/89	75/76	88/89	75/76	88/89
오스트랄리아	17.5	27.9	7.1	12.0	4.3	10.2
오스트리아	7.4	24.7	31.7	44.9	3.3	2.6
벨기에	4.9	26.4	31.8	11.4	2.7	12.2
카나다	16.5	18.8	20.0	14.7	8.4	11.9
덴마크	14.0	14.0	7.5	18.8	11.4	25.0
핀란드	10.9	25.4	9.0	22.9	3.6	13.6
프랑스	53.7	39.6	17.4	20.8	7.0	8.4
獨逸	23.4	27.6	19.2	28.6	7.5	8.6
아일랜드	—	42.0	—	2.3	—	21.8
이태리	14.0	22.5	14.8	23.6	2.9	17.2
日本	3.3	16.6	37.7	36.4	6.0	9.5
네델란드	34.6	23.5	13.7	19.4	20.9	18.1
뉴질랜드	14.5	60.6	35.3	2.9	23.7	6.8
노르웨이	22.9	17.3	24.4	10.8	25.9	16.5
스웨덴	22.2	18.6	2.6	17.8	9.0	7.9
스위스	12.3	22.0	21.4	8.1	17.9	21.3
英國	4.7	24.4	28.2	23.4	4.3	8.5
美國	8.1	21.0	2.6	3.7	8.1	9.0
DAC 小計	19.9	24.2	14.4	21.6	8.2	10.4
世界銀行	—	18.0	—	35.8	—	16.2
IDA	—	24.7	—	24.2	—	28.6
EEC	—	—	—	—	—	—
UN機構	—	37.7	—	7.9	—	8.8
其他	—	16.9	—	40.7	—	25.9
多國間供與小計	—	21.8	—	30.5	—	18.8
總計	—	22.4	—	26.9	—	14.1

資料：OECD

分野別 供與

(單位 : %), 全體供與額中 比率

工業		食糧援助		프로그램援助		其他		NGO를 通한 ODA
75/76	88/89	75/76	88/89	75/76	88/89	75/76	88/89	89
1.9	2.3	9.2	4.6	43.9	34.3	16.1	8.8	1.0
56.0	15.5	—	0.7	—	0.0	1.6	11.5	0.3
32.4	13.3	2.9	1.9	—	—	25.3	14.7	0.3
9.1	4.7	20.6	9.6	—	4.8	25.4	35.5	9.2
17.0	17.5	3.5	—	8.2	0.2	38.5	24.6	0.33
11.0	8.3	7.3	0.2	—	7.6	58.2	22.0	2.6
10.9	3.4	1.1	0.6	5.0	4.9	4.9	22.3	0.2
16.2	13.2	3.1	2.8	2.6	5.4	28.0	13.6	3.1
—	6.2	—	—	—	—	—	27.8	1.4
15.5	14.1	—	5.5	—	5.2	52.8	11.9	3.6
20.6	8.9	0.5	0.6	0.1	17.8	31.8	10.2	0.8
9.5	5.6	1.6	2.2	0.6	14.4	19.1	16.9	6.9
4.5	7.4	5.5	0.2	13.5	13.3	3.0	8.8	1.1
15.1	5.0	—	0.6	—	6.2	11.7	43.6	7.8
14.5	7.1	8.4	1.3	0.9	13.0	42.4	34.2	5.1
13.6	4.6	10.6	4.4	—	9.7	24.2	29.9	16.2
28.8	6.2	—	1.7	5.0	14.7	29.0	21.2	0.5
4.5	5.3	29.5	16.2	8.8	24.6	38.4	20.2	(14.3)
11.5	7.7	12.7	4.8	5.8	13.3	27.5	17.9	4.6
—	20.1	—	—	—	9.9	—	0.1	—
—	10.0	—	—	—	11.6	—	1.0	—
—	—	—	—	—	—	—	—	—
—	5.5	—	21.4	—	—	—	18.7	—
—	13.9	—	—	—	2.2	—	0.4	—
—	15.3	—	3.0	—	7.6	—	3.0	—
—	12.2	—	3.4	—	10.9	—	10.1	—

〈表 Ⅰ-6〉 ODA의 供與

供與條件 / 國名	G E		無償贈與比率	
			兩者間	計
	1981-82	1989-90	1989-90	
오스트랄리아	100.2	100.2	100.0	100.0
오스트리아	57.1	75.5	39.6	52.6
벨기에	97.7	93.4	87.2	93.4
카나다	97.8	97.7	96.6	97.7
덴마크	95.1	100.0	100.0	100.0
핀란드	95.8	98.8	98.2	98.8
프랑스	88.8	90.2	68.0	68.4
獨逸	83.1	90.6	62.5	70.5
아일랜드	100.0	100.0	100.0	100.0
이태리	90.1	91.3	64.6	74.9
日本	73.0	81.4	32.0	45.0
네델란드	94.1	96.9	87.1	90.0
뉴질랜드	100.0	100.0	100.0	100.0
노르웨이	99.4	99.8	99.4	99.7
스웨덴	99.4	100.0	100.0	100.0
스위스	95.8	100.0	100.0	100.0
英國	98.4	98.2	96.5	97.8
美國	92.5	98.8	94.1	94.8
DAC 計	88.9	92.8	70.2	76.9

資料 : OECD

條件(89－90平均)

(單位：%)

借款中 GE	LLDCs에 對한 GE	LLDCs에 對한 兩者間 供與의 GE
—	100.0	100.0
48.3	95.5	91.3
—	100.0	100.0
61.5	100.0	100.0
—	100.0	100.0
57.4	100.0	100.0
54.3	89.0	80.2
58.7	100.0	100.0
—	100.0	100.0
62.3	96.1	93.3
59.8	96.8	93.3
55.1	100.0	100.0
—	100.0	100.0
28.7	99.2	98.3
—	100.0	100.0
—	100.0	100.0
65.8	100.0	100.0
63.1	98.9	98,5
58.6	97.8	95.9

〈表 Ⅰ-7〉 ODA의 條件

供與條件 / 國名	兩者 非條件附 計	現金	技術協力	商品購入
오스트랄리아	6.0	2.4	1.7	1.9
오스트리아	2.5	2.5	—	—
벨기에	26.0	3.3	3.5	19.3
카나다	27.9	19.8	5.2	2.9
덴마크	43.1	0.8	1.1	31.7
핀란드	14.2	9.5	1.5	3.1
프랑스	40.2	23.0	7.9	9.3
獨逸	39.4	3.7	18.0	15.9
아일랜드	32.1	9.5	20.8	1.9
이태리	5.8	3.4	0.6	1.8
日本	59.6	23.7	—	35.9
네델란드	33.0	8.5	14.9	9.7
뉴질랜드	42.1	18.2	3.5	21.6
노르웨이	19.3	1.8	—	—
스웨덴	49.5	45.3	—	4.2
스위스	64.2	57.5	5.5	1.1
英國	13.9	10.3	0.0	3.6
美國	30.9	30.9	—	—
DAC 計	36.5	18.5	5.0	12.6

資料：OECD

附 供與現況

(單位：%)

間				多 者 間	
部分 非條件附		條 件 附		EEC除外	EEC
計	技術協力	計	技術協力		
—	—	52.0	24.7	42.0	—
10.6	8.0	66.8	1.5	20.2	—
—	—	34.2	19.1	20.2	19.7
2.9	0.6	36.5	11.0	32.8	—
0.9	0.9	15.9	—	33.1	7.3
—	—	53.9	9.1	31.9	—
3.1	3.1	40.8	20.4	8.3	7.6
—	—	32.5	11.1	13.6	14.7
—	—	3.8	—	30.2	34.0
—	—	58.4	8.2	21.7	14.1
3.0	—	13.8	13.1	23.7	—
29.2	14.0	9.9	—	19.4	8.5
10.3	10.3	36.4	36.4	11.4	—
—	—	20.9	—	60.0	—
—	—	20.1	17.9	30.4	—
—	—	21.5	12.9	14.3	—
—	—	44.0	21.2	21.6	20.5
17.5	17.5	40.2	16.3	11.4	—
5.6	4.1	33.0	13.8	19.1	6.1

〈表 Ⅰ-8〉 ODA의 所得 그룹別 配分(89-90平均)

(單位 : %), 全體 ODA中 占有率

所得그룹別 / 國名	國際機構	LICs	LLDCs		LIMICs	UMICs
			1979-80	1989-90		
오스트레일리아	26.1	49.4	18.8	19.7	31.5	6.6
오스트리아	26.0	62.9	12.9	23.1	8.4	17.6
벨기에	28.7	56.7	26.0	27.4	6.3	3.5
카나다	31.7	52.0	30.3	25.7	9.2	3.9
덴마크	36.1	64.2	43.2	38.7	4.2	2.1
핀란드	39.9	64.2	38.8	33.6	4.3	3.2
프랑스	8.8	35.2	16.5	18.0	12.5	34.7
獨逸	18.6	53.0	30.4	23.5	13.5	10.4
아일랜드	19.8	47.2	13.6	29.2	3.8	2.8
이태리	26.6	59.6	36.4	32.7	10.9	6.8
日本	24.8	64.0	31.6	17.1	12.8	6.6
네델란드	19.4	57.0	29.2	28.1	6.7	8.3
뉴질랜드	12.2	25.0	15.0	13.9	22.8	10.0
노르웨이	38.3	68.1	37.6	38.4	4.2	2.2
스웨덴	30.2	63.2	36.4	32.1	2.9	3.4
스위스	25.5	62.7	33.5	35.6	7.2	3.9
英國	23.0	61.0	31.1	29.1	4.0	4.5
美國	20.2	47.9	16.0	15.6	11.1	16.1
計	21.7	53.6	25.2	22.4	10.8	12.9

資料 : OECD

註 : LICs(低所得國家) : '89年 1人當 GNP 750$ 以下인 國家

LLDCs(最貧國家) : '90年 UN리스트 42個 國家

LIMICs(低中所得國家) : '89年 1人當 GNP 750$ ~1, 500$ 인 國家

UMICs(高中所得國家) : '89年 1人當 GNP 1,500$ 以上인 國家

Ⅱ. 開發調査의 國際比較(要約)

開發調査(Development Survey 또는 Development Study)라는 用語는 日本에서만 使用되고 있으며 國際機關를 包含한 外國 援助機關에서는 使用되고있지 않다. 勿論 其他 援助機關에서도 JICA에서 定義하고 있는 開發調査에 該當하는 開發援助에 關聯되는 여러가지 調査가 開發援助프로젝트 사이클의 不可缺한 要素로서 認識되고 있으나 日本처럼 이를 爲한 獨立된 豫算과 組職體制가 있는것은 아니다.

이미 第1部에서 記述한 바와같이 日本型(區分實施型)과 歐美型(一貫實施型)의 相異點에 對한 理解를 前提로 開發調査의 實施體制, 프로젝트의 發掘·形成·調査(妥當性調査等)의 推進節次, 컨설턴트의 活用等에 對하여 日本, 歐美先進國 및 國際機關等의 制度를 槪略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開發援助의 實施體制

가. 實施體制의 類型

開發援助의 實施體制를 살펴보면 英國, 美國, 스웨덴, 네델란드, 濠洲等과 같이 外務部 中心으로 實施하는 國家, 獨逸, 프랑스等과 같이 經濟協力部 中心으로 實施하는 國家, 日本과 같이 各部處 混合으로 實施하는 國家等 3類型으로 區分될 수 있다.

外務部中心의 國家에서는 外務部傘下의 獨自的 機構形態(또는 外局形態)와 內局

〈圖 Ⅱ-1〉 主要先進國의

國名 \ 形態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
日本	主務官廳	外務省	外務省等
	實施機關	外務省, JICA	JICA等
美國	主務官廳	國務部(經濟支援援助) 國際開發協力廳(IDCA) (開發援助)	國際開發協力廳
	實施機關	國際開發廳(USAID)	國際開發廳等
프랑스	主務官廳		經濟財政部
	實施機關	經濟協力部 (카리브, 아프리카, 인도洋諸國等) 外務部(其他地域)	技術・工業・經濟協力會議(ACTIM)
西獨	主務官廳	經濟協力部(BMZ)	經濟協力部
	實施機關	復興金融金庫(KfW)	技術協力公社(GTZ)
이탈리아	主務官廳	外務部	外務部
	實施機關	(部內 Central Technical Unit)	(部內 Central Technical Unit)
英國	主務官廳	外務部(海外開發廳(ODA))	外務部(海外開發廳)
	實施機關	ODA은 外務部傘下의 廳(States)	海外開發廳, British Council等
카나다	主務官廳	外務部(國際開發廳(CIDA)) (CIDA는 對外關係長官이 代表이나, 組織上 外務長官의 指揮下에 있음)	外務部(國際開發廳) 國際開發研究센타(IDRC) 國際海洋開發센타(ICOD) Petro Cananda 國際援助公團(PCIAC) 國際人權·民主開發센타(ICHRDD)
	實施機關		
네델란드	主務官廳	外務部 國際協力總局	外務部 國際協力總局
	實施機關		
오스트랄리아	主務官廳	外務貿易部	外務貿易部
	實施機關	濠洲國際開發援助局(AIDAB)	濠洲國際開發援助局(AIDAB)
스웨덴	主務官廳	外務部(援助問題는 外務長官과는 別途로 專擔 擔當長官을 두어 同 長官이 總括)	外務部
	實施機關	國際開發廳(SIDA)	國際技術經濟協力事業團(BITS) 開發途上國調達協力事業團(SAREC)

援助實施體制

有償資金協力	國際機關에 대한 出資·據出 (1)開發金融機關, (2)UN機關	備考
外務, 大藏, 經企, 通産省	(1)大藏省, (2)外務省	
OECF		
農務部, 國際開發協力廳	(1)財務部, (2)國務部	
商品金融公社, 國際開發廳		
	(1)經濟財政部, (2)外務部	○ 其他海外領·海外領土部가 DOM/TOM에 대한 援助 擔當 ○ ACTIM은 UN, OECD, 世界銀行等의 援助關聯 研修生의 研修實施 ○ 86年 3月 組織改正
經濟協力中央金庫(CCCE)		
經濟協力部	(1), (2)經濟協力部	
復興金融公庫		
外務部, 國庫部, 外國貿易部	(1)國庫部, (2)外務部	
中期信用中央金庫(MC)等		
外務部(海外開發廳)	(1), (2)外務部(海外開發廳)	其他 各種形態의 援助關聯業務를 代行하는 國營企業으로서 Crown Agent(CA)가 있음
英聯邦開發公社(CDC)		
(카나다는 1986年以後 有償資金協力을 實施하지 않음)	(1)財務部, (2)外務部	IDRC, ICOD, PCIAC 및 DD는 모두 公社(Crown Corporation). ICHRDD은 아직 事務所가 開設되지 않았음
外務部, 經濟部	(1), (2)財務部, 外務部	
外務部, 經濟部, 네델란드 開發途上國投資銀行(NIO)等		
濠洲는 ODA로서의 有償資金協力은 實施하지 않음.	(1)大藏省, (2)外務部	
(1978年以來 有償資金協力을 實施하지 않음)	(1), (2)外務部	其他 스웨덴 企業과의 合併事業 推進을 위한 基金으로서 SWEDFUND가 있음

形態의 2類型으로 分類될 수 있는데 前者의 國家로는 英國의 海外開發廳(ODA)과 美國의 國際開發協力廳(IDCA) 傘下의 獨立機構인 國際開發廳(USAID), 카나다의 國際開發廳(CIDA), 스웨덴의 國際開發廳(SIDA)이 있고 外務部의 直屬局(內局) 形態로는 네델란드의 國際協力總局, 이태리의 中央技術局이 있다.

經濟協力部 中心의 프랑스는 經濟協力部와 傘下의 經濟協力中央金庫(CCCE)等이, 獨逸은 經濟協力部(BMZ)와 傘下機關인 復興金融金庫(KfW)와 技術協力公社(GTZ)가 있다.

各部處 混合型의 日本은 外務省과 傘下機關인 JICA, 大藏省, 經濟企劃廳과 傘下機關인 OECF等에서 混合으로 實施하고 있다. 美國을 除外한 거의 모든 國家에서 開發援助, 國際協力 및 經濟協力等에 對한 責任者로 長官級이 任命되고 있다.

나. 豫算制度

많은 援助供與國이 地域別·國別 援助政策을 立案하여 豫算을 配分하며 주어진 豫算의 限度內에서 援助受惠國과 協議를 거듭하면서 援助프로그램을 作成하고 있다. 豫算額을 包含한 多年間에 걸친 援助 計劃을 設定함으로써 連續性과 一貫性을 維持하고 있으며 또한 援助 受惠國側에서도 自國의 開發計劃에 미리 支援內容을 包含할 수 있게 된다.

다. 組織體制

外國의 援助實施機關의 組織을 살펴보면 日本의 JICA와 西獨의 GTZ가 產業部門別 組織體制를 취하고 있을뿐 거의 모든 機關이 地域別·國別 組織體制를 取하고 있다(GTZ도 地域別 組織을 檢討하고 있다). 地域別·國別 組織體制를 取하는 機關들은 本部의 地域部 밑에 海外事務所 또는 海外公館의 一部가 設置되고 있으며 產業部門別 組織體制는 취하는 JICA의 경우는 各事業部와는 別途로 海外事務所등이 設置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海外事務所의 役割과 機能, 이를 爲한 人員의 投入, 權限委任의 程度 등에 있어서는 國家와 援助機關에 따라 상당히 큰 差異를 보이고 있으나, 基本的으로 對象地域 및 對象國에 對한 노우하우, 經驗, 接近方式등을 重視하는 점에 있어서는 同一하다. 또한 先進國 援助機關들은 一般的으로 海外 事務所를 強化하고 있으며 海外事務所에 權限을 委任하고 있다.

라. 國別擔當者와 産業部門別 專門家의 相互補完

地域別·國別 擔當者와 産業部門別 專門家의 補完作業은 固定的인 組織이 아닌 프로젝트팀式의 管理體制에 依해 遂行되는 경우가 많다.

네델란드의 경우는 地域部가 擔當하는 프로젝트에 技術諮問機構의 産業部門 專門家가 助言家로서 프로젝트의 全段階에 關與하고 있다. 또한 援助機關의 人力不足으로 因해 援助機關自體의 運營機關自體의 運營業務에 外部의 個人컨설턴트를 活用하는 경우도 있다.

2. 開發프로젝트의 發掘 및 形成

가. 國別 援助計劃

先進國 및 世界銀行등의 國際機關은 國別援助計劃과 Country Program에 援助의 基本方針, 主要援助受惠國, 主要援助分野등을 提示함으로써 一貫性 있는 援助를 實施하고 있다.

나. 海外事務所의 強化와 職員의 專門性 確立

國別援助計劃과 Country Program등에 海外事務所의 強化, 實務經驗을 바탕으로

한 開發感覺이 있는 地域專門家 및 産業部門專門家의 育成과 活用, 이러한 體制를 바탕으로 한 援助受惠國과의 持續的인 對話와 人脈의 形成, 援助機關의 日常機能으로써의 事後 評價의 重視 및 案件의 事前 評價 機能의 充實化等이 優良事業을 早期에 發掘하기 위한 基本要件이다. 歐美先進國과 世界銀行등 援助機關들은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이러한 體制를 整備하여 商業的 關心主導의 案件이 우선되는 事態를 防止하고 있다.

다. 民間部門의 活用

西獨의 KfW에서는 商業 베이스의 프로젝트 發掘이나 컨설턴트에 依한 프로젝트 發掘도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發掘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프로젝트 內容이지 그 出處는 아니다. 다시말해 援助機關이 審査權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出處가 問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援助機關은 민간베이스의 프로젝트 發掘도 積極 活用해야 할 것이다.

3. 開發調査의 實態

가. 槪 念

開發調査라는 用語는 그 槪念이 國際的으로 統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定義도 그렇게 明確하지 않다.

이것을 "開發援助·協力에 關係되는 諸般調査"라고 解釋하면 援助機關自體의 援助戰略의 作成,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創出하기 爲한 巨視經濟分析이나 分野別分析, 投資前 調査(入札示方書의 作成, 入札評價등), 技術協力 프로젝트의 準備에 對한 모든 調査, 地域綜合計劃 또는 部門別 計劃등 어느 援助機關에서나 實施되고 있는 多樣한 作業이 모두 開發調査에 包含될 것이다.

또한 投資 프로젝트의 實施段階에서의 設計, 엔지니어링, 建設, 施工, 監理등의 業務도 一部 開發調査에 內包될 수 있을 것이다.

나. 妥當性調査(F/S調査)

開發調査의 主流를 이루는 投資프로젝트의 妥當性調査는 一般的으로 모든 國家(國際機關)에서 有償資金協力과 連繫되어 實施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LLDCs 諸國을 對象으로한 開發援助의 主體가 되는 無償資金協力에 있어서도 實施에 必要한 妥當性調査를 하고 있다.

妥當性調査에는 金融機關의 審査以前에 行해지는점 외에는 定型化된 共通의 範圍나 內容이 있는 것은 아니며 實際로는 어떤 프로젝트의 調査着手 時點에서 確保된 情報, 當該 프로젝트에 對해 融資機關이 必要로 하는 審査의 레벨등에 따라 事案別로 그 範圍 및 內容이 定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必要한 Man Month, 費用, 實施方法(例컨데 援助機關의 專門家나 個人컨설턴트, 그 混成팀 또는 컨설턴트 會社에 依한 實施등)도 프로젝트別 狀況에 따라 定해지고 있다.

4. 컨설턴트의 活用

가. 活用 範圍

컨설턴트는 事前調査 또는 事業發掘(Project Identification)에서부터 事後評價(Post Evaluation)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사이클의 모든 段階에서 活用되고 있다.

個人컨설턴트는 特히 事前調査, 審査, 評價등의 段階에서 많이 活用되고 있으며, 컨설팅 會社 및 機關은 컨설턴트의 組織的인 後方支援이 必要하고 Consulting Service의 規模가 큰 프로젝트의 準備段階 및 實施段階에서 많이 活用되고 있다. 個人컨설턴트의 用役 및 一定額 以下의 Consulting Service는 隨意(特命)契約에 依

하여 調達되고 있다.

나. 프로젝트 情報의 公開

프로젝트의 情報는 大部分 一般에게 公開되고 있다.

다. 컨설팅 會社의 選定方法

컨설팅 會社의 選定方法은 援助機關에 따라 약간씩 差異가 있으며 修行해야할 業務의 內容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으나 技術提案書의 評價를 優先하는데는 變함이 없다. 다만 簡單한 物件의 入札과 같이 그 仕樣을 明瞭하게 쓸 수 있는 業務일수록 價格이 重視되는 傾向이 있다.

라. 選定節次

Consulting Service의 調達節次는 모든 援助機關에서 世界銀行方式을 準用하거나 參考로 하고 있다. 事前審査 및 Long List 審査를 通해 通常 3~6個社를 包含하는 Short List가 作成되어 各 會社에 招請狀과 함께 當該 業務의 入札에 관한 TOR, 契約書 草案 및 其他 關聯 情報등이 送付되고 Proposal 提出이 要請된다. Proposal 提出期限은 通常 招請狀 發送日로부터 45~60日 程度이다. 모든 援助機關은 優秀한 Proposal이 提出될 수 있도록 充實한 TOR의 作成에 힘쓰고 있으며 Proposal作成을 위한 充分한 時間이 賦與될 수 있도록 配慮한다.

마. 外國人 컨설턴트

外國人 컨설턴트의 活用은 네델란드, 스웨덴, 서독의 GTZ등에서 實際로 行해지고 있으나 當該國家內에서 調達할 수 없는 特殊한 職務등 不得已한 경우에 限定되어 있다. 즉 國內에서 調達可能한 業務를 外國 컨설턴트도 같이 參與하는 競爭入

札을 通해서 調達할 정도로 外國人 컨설턴트 活用에 積極的인 國家는 없다. KfW에서는 西獨의 컨설팅産業이 다른 歐美先進國에 比하여 後發産業인 點을 勘案하여 이를 保護하기 爲해 타이드(Tied)條件으로 調達한다.

또한 모든 國家 및 機關에서는 可能한 한 로컬 컨설턴트를 活用하도록 勸奬하고 있다.

〈圖 Ⅱ－2〉 各國의 開發援

	美 國	카 나 다	日 本	프 랑 스
主要援助機關	AID	CIDA	· JICA · OECF	經濟協力部, CCCE
援助體制의 特徵	· USAID 는 國務部傘下에서 IDCA 內의 한 機構로 移管(1979) · 現地事務所에 大幅的인 權限과 人員(現地雇傭專門職을 包含)을 附與 · 本部는 地域局으로 構成(分野別 擔當官은 地域局으로 分散配置)	· CIDA가 一元的으로 立案, 施行 · CIDA의 主要部分은 國別로 援助를 주도하는 2國間 프로그램局과 國內外 援助支援을 섹터別로 管轄하는 共同協力事業局등으로 構成	· 日本의 二國間 無償援助業務는 外務省에서 專擔하며 그중에서 技術協力業務는 JICA가 擔當 · 한편 二國間 借款業務는 經濟企劃廳의 傘下機關인 OECF가 擔當 · JICA의 技術協力業務中 開發調査가 가장 重要한 業務이며 外務省에서 實施하는 無償資金協力의 效率을 높이기 위해 無償資金協力의 實施促進도 擔當	· 미테랑政權後 複雜한 援助體制를 簡素化. · 主로 經濟協力部가 佛語圈 아프리카 및 기타 地域에 技術協力과 無償(FAC를 通하여) 援助를, 經濟財政部가 有償(CCCE를 通하여)援助를 함. · 經濟協力部는 計劃行政部局, CCCE는 地域別部局을 軸으로 運營

助實施體制

스 웨 덴	네덜란드	西 獨	英 國	世界銀行
SIDA	外務部 國際協力總局, FMO	經濟協力部(BMZ), KfW, GTZ	海外開發廳(ODA)	IBRD
· 外務部傘下에 開發協力局이 있으며 이것이 스웨덴의 援助프로그램을 策定함. SIDA는 開發援助의 實施機關임. 長期的인 開發援助를 17個國에 대하여 實行하고 있음.	· 外務部 國際協力總局에 ODA가 一元化 되어 있음. · 地域國이 活動의 主軸이며 豫算도 國別配分이 基本임. '84年以來 新設된 部門管理局이 調整費性格의 섹터別 豫算을 配分함. · 案件發掘은 大使館役割이 큼	· 經濟協力部에 一元化. 實施는 資金協力과 技術協力으로 分化하고(各各 KfW 와 GTZ가 擔當) 兩者의 關聯은 적음.	· 海外開發廳에 一元化되어 있음. 同廳은 5개의 海外地域事務所가 있음. 同廳下에 英聯邦 開發公社(貸付機關), Crown Agent(調達機關)가 活動 · 同廳과는 別途로 開途國輸出과 投資의 促進機關이 있음.	· 世銀은 섹터別 組織이었으나 68年에 地域別 組織으로 改編 · 各部門別 專門家의 集團인 "Central Projects Staff"이 地域局에 技術的 助言을 提共. 그러나 最近의 貸付要請의 減少로 인해 프로젝트發掘이 CPS의 主務가 되고 있음.

	美 國	카 나 다	日 本	프 랑 스
本部組織의 特徵	IDCA 長官이 AID의 政策을 管理함. 日常業務를 AID長官이 責任짐. AID의 活動과 그밖의 開發途上國 關聯事項의 調整은 DCC(開發調整委員會)에서 함. AID의 機構는 地域局 3局, 計劃政策調整局 等 4局과 其他로 되어 있음.	CIDA는 外務部의 管轄下에 있으며 政策, 國內共同事業, 多國間援助, 3個地域, 財務, 一般프로그램등을 포함한 11局이 設置되고 있음. 職員數:1,050名 ('91)	· JICA는 外務省 傘下機關이며 本部組織은 事業分野別, 職能別 體制로 18部 1局 3室의 體制를 갖추고 있음 · 職員數:617名('91)	CCCE 理事會는 總裁以下 關係各部, 金融機關의 代表 11名으로 構成되어 있음. 本部外에 海外의 2個支社와 33個 事務所가 있음. 本部의 機構로서 4個地域部를 포함하는 9部가 있음. 職員數:1,236名 ('85)
海外公館 및 海外事務所의 運營	現地主導型	本國主導型	本國主導型	本國主導型
ODA 實績 ('90,百萬달러)	11,366	2,470	9,069	6,571
ODA/GNP比率 ('90, %)	0.18	0.44	0.31	0.50
贈與比率(%) ('89~'90平均)	98.8	97.7	81.4	90.2
援助比率(%) (2國間 對 多國間)	70 : 30	60 : 40	75.3 : 24.7	80 : 20

스 웨 덴	네덜란드	西 獨	英 國	世界銀行
SIDA 總裁外에 14名으로 構成되는 理事會는 政黨, 關係 各界의 代表로 構成됨. 運營委員會는 總裁의 諮問機關으로써 15名으로 構成됨. 11部·局, 3地域部 및 16個所의 大使館內의 開發事務所로 組織되어 있음.	外務部 國際協力總局, 3地域局과 技術스텝과의 매트릭스 機構. 大使館에는 援助業務의 擔當官을 두고 있음.	BMZ:3地域局 KfW:4地域局 GTZ:섹터別로부터 地域別體制로 檢討中 BMZ에서 外務部에 派遣勤務, 在外公館에 高位級 擔當官 15名을 두고 있음.	海外開發閣僚(ODA 長官)아래 地域的 機能的으로 各國이 責任을 짐. ODA의 組織은 本部와 開發事務所로 構成됨. 職員數:1,555名 ('85)	6地域局과 프로젝트 스텝과의 매트릭스 機構
現地·本國補完型	現地·本國補完型	本 國 主 導 型	現地·本國補完型	現 地 主 導 型
2,012	2,592	6,320	2,647	
0.93	0.94	0.41	0.29	
100	96.9	90.6	98.2	55.2
70 : 30	70 : 30	65 : 35	55 : 45	80 : 20

〈圖 Ⅱ-3〉 案件의 發

	美 國	카나다	日 本	프랑스
援助의 指針等	○ 國別開發戰略書 DA/ESF의 豫算등이 있음.	○ 國別援助프로그램	○ 地域別 方針을 作成하여 各國의 援助規模, 方法作成에 活用, ○ 重點援助對象國에 대해 CR을 作成함	○ 特別한 國別, 섹터別 方針은 없음.
主要援助受惠國(地域)	○ 中近東(이집트·이스라엘·터키等)이 二國間援助의 40%	○ Core Country에 二國間 援助의 80%	○ 10大 供與國에 二國間 援助의 60%以上	○ 舊植民地 中心 佛語圈 아프리카가 二國間 援助의 70%
主要援助分野	○ BHN, 農業, 保健, 女性의 問題中心	○ 農業·食糧, 에너지, 人的資源開發等	○ Infrastructure, BHN, 農業, 保健, WID, 環境, 鋼工業등	○ 農村開發과 食糧戰略, 에너지, 住宅, 保健, 敎育等

掘·形 成

스 웨 덴	네델란드	西 獨	英 國	世界銀行
○ 國別援助프로그램	○ 國別援助計劃	○ 國別援助計劃 BMZ의 地域局에서 試驗的 作成	○ 國別援助計劃 英國의 政治·經濟等도 考慮함.	○ 國別프로그램과 基礎經濟調査書를 參考로 함.
○ 南部아프리카와 東部아프리카의 低所得國에 프로그램國 17 개 國의 全援助豫算의 40%(二國間 援助의 約 60%)	○ 프로그램國 10 個 國이 二國間援助의 40%	○ 低所得國인 아프리카, 아시아諸國에 各各 40%, 36%	○ 舊植民地에 二國間援助의 75%	○ 一人當 國民所得 3,500달러 以下 對象
○ 衛生, 敎育, 林業, 上水道	○ 地域開發(農村·生活用水) 工業開發, 敎育, 研究等	○ 地域開發, 에너지, 敎育, 環境, 保健	○ 農林業, Infrastructure, 에너지, 敎育, 社會福祉	○ 農業, 農林開發, 에너지, 交通, 都市, 上下水道

	美 國	카 나 다	日 本	프 랑 스
援助의 特徵	○ 自國의 安全保障上의 利益이 強하게 反映되는 한편 人道的考慮가 同時에 考慮됨. 레이건政權以後 前者에 重点을 두는 傾向임. 目標援助額을 設定함.	○ 二國間援助의 40%를 아시아에, 20%를 英語圈 아프리카와 프랑스語圈 아프리카에, 나머지를 美洲로 하며 카나다의 商業的利益을 考慮함. 目標援助額을 提示함.	○ 二國間援助의 大部分이 日本과 地理的,經濟的으로 密接한 關係에 있는 아시아地域에 集中 ○ 中東에는 資源確保次元에서, 中南美에는 日本移民支援次元에서 몇몇 國家에 重點支援 ○ 最近 日本援助에 대한 批判의 시각을 意識하여 BHN支援도 늘려나가고 있음 ○ 國別 援助金額設定	○ 二國間援助의 60%를 사하라以南佛語圈에, 10%를 사하라以北佛語圈에 配分. 多者間援助 比重의 增加計劃에 柔軟性을 賦與하기 위하여 各國別目標援助額은 設定하지 않음.
프로젝트의 發掘節次	○ 國別援助計劃에 따라 年次豫算書를 作成함. 議會의 承認을 받은후 프로젝트를 發掘하는 PID作成에는 現地 Mission, 擔當官, 專門家, 로칼 컨설턴트等을 活用함.	○ Country Program에 따라 要請된 案件을 審査하여 決定함. PIM 作成에는 CIDA의 職員, 專門家, 個人 컨설턴트를 活用함.	○ 우수프로젝트 發掘을 위해 開發調査(Development Study)를 위한 獨立된 豫算과 組織을 運營하고 있음. ○ 開發調査는 반드시 外交루트를 통한 相對國政府의 要請을 받아 實施함. ○ 要請은 通常 口上書와 TOR을 通해 이루어 짐.	○ 現地事務所의 Field Officer가 現地政府와 密接한 接觸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發掘함.

스 웨 덴	네덜란드	西 獨	英 國	世界銀行
○ 長期的展望에서 樹立한 最貧國援助를 主體로 하여 貧困地域에서의 經濟成長, 政治的 自立, 平等, 民主社會의 實現이라는 스웨덴이 理想으로 하는 開發패턴의 具體的 手段을 目標로 함. 國別目標援助額을 策定함.	○ 네덜란드와 關係깊은 最貧國, 타게트國·地域이 中心, 資金協力보다도 開發效果가 높은 技術協力이 中心이며 보다 持續的인 開發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作成함. 國別目標援助額을 設定함.	○ 貧困打破를 위한 援助分野가 中心이 되고 있으나 西獨國內雇傭의 增加에 直結되는 分野를 重點的으로 다루고 있음. 國別 調査費를 設定함 (調査·專門家基金)	○ 二國間援助의 大部分이 英聯邦에 행해짐. 基本方針은 最貧國, 最貧層에 대한 援助를 目標로 하는 Grant가 많으며 多國間 援助의 比率도 높음. 어려운 財政事情을 反映하여 ODA 實績이 減少하는 傾向임. 國別目標援助額을 設定함.	○ '80年代는 에너지 및 構造調整融資에 重點
○ Country Program에 따라 開發計劃에 關한 協議를 하고 發掘메모를 作成하여 本部의 地域部로 提出하여 決定함. SIDA의 職員, 專門家, 個人컨설턴트를 活用함.	○ Country Program에 따라 年次協議를 하고 發掘메모를 作成하여 國際協力總局으로 提出하여 決定하며 在外公館의 擔當者, 專門家, 個人컨설턴트를 活用함.	○ BMZ, KfW, GTZ 合同 Mission이 現地에서 年次協議를 거쳐 프로젝트를 發掘함. 프로젝트 發掘을 위한 調査가 必要한 경우 調査·專門家基金으로 이를 커버함.	○ 年次協議를 거쳐 프로젝트를 發掘하며 現地政府와 緊密히 接觸하여 案件을 찾아냄. 專門家, Field Officer 等이 이를 履行함.	○ Country Program 擔當과 Sector 擔當 Officer가 別途로 支援受惠國을 訪問하여 프로젝트를 發掘함. 1年間 90~120日 現地出張

〈圖 Ⅱ－4〉 各國의 開發調査

	美 國	카 나 다	日 本	프 랑 스
開發調査政策 (F/S·M/P等)	單獨프로젝트로서의 開發調査는 最近에는 거의 없음.(例外는 파키스탄의 에너지분야 計劃立案等). 實施를 希望하는 프로젝트의 形成段階에 있어서 Pre-F/S나 F/S를 행함.	어디까지나 實施 또는 實施를 希望하는 프로젝트의 形成段階에서 開發調査를 행함. 즉 PIM을 作成하는 경우에 Pre F/S, PAM을 作成하는 경우에 F/S等이 實施되는 일이 있음.	開發調査가 獨自的으로 遂行됨. 다시말해서 開發調査는 對象國政府에 開發政策樹立 資料 및 Data를 提供키위해 實施됨. 또한 開發調査事業은 日本 無償援助事業중 第一 重要한 事業이 되고 있음.	開發調査結果는 經濟協力實施案件의 基礎資料 또는 當該國政府의 政策判斷의 基本的資料로 使用됨. CCCE가 財政支援하는 資金프로젝트에 대해서는 F/S가 實施됨.
豫 算	F/S만의 特別한 豫算이 編成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當該프로젝트의 豫算에 編入되어 있음.	國別로 나눈 CIDA의 豫算에서 充當	JICA의 豫算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 開發調査費가 別途로 策定됨.	年間 豫算 $1,500萬規模 ('85)
開發調査實施機關등	• 컨설턴트會社 • USAID의 職員 • 個人 컨설턴트等	• 컨설턴트會社 • CIDA의 職員 • 個人컨설턴트	• 컨설턴트會社 • 個人컨설턴트 • JICA의 職員 • 各 省廳의 專門家	• 調査內容에 의하여 硏究所, 專門機關 (國際農業開發硏究센터, 파스퇴르硏究所等) • 컨설턴트會社

(F/S等)의 槪要

스 웨 덴	네 델 란 드	西 獨	英 國	世界銀行
F/S만을 위한 調査는 實施되지 않으며 프로젝트의 實施에 必要한 調査가 實施됨. 새로운 開發協力活動의 可能性 또는 旣存의 開發協力活動의 再檢討등과 關聯하여 精密히 檢討할 必要가 있을 경우 SIDA는 自體開發協力活動의 基礎資料를 作成할 目的으로 各種調査活動을 遂行.	資金援助보다도 開發效果가 높은 技術協力이 主體가 됨. 生活用水, 地域開發, 農漁村開發 事業 等의 · Basic Document · Policy Document · Yearly Plan 等을 作成키 위한 調査를 함.	KfW가 財政支援하는 資金프로젝트에 있어서 F/S가 實施됨. GTZ에서는 技術協力中心의 調査를 함.	開發調査만을 위한 部·局의 豫算은 없음. 二國間援助의 프로젝트의 實施는 ODA의 地域擔當部가 責任을 지고 있음. 特定 프로젝트를 위해 開發調査가 必要한 경우 이를 實施함.	實施가 바람직한 프로젝트에 對하여 F/S를 實施함. 그前段階로 섹터別分析, 섹터別作業等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F/S의 費用의 上限은 프로젝트의 總費用의 2.5% 정도 섹터作業 等을 內部의 作業計劃의 目的으로 實施함.
國別로 나뉘어진 SIDA의 豫算에서 調査活動의 費用을 必要에 따라 充當	基礎調査團, 評價團 等의 派遣費用이 200萬$ 수준임. ('85)	· 各國別로 配定된 調査, 專門家基金 · 프로젝트 基金	ODA 地域部가 管理하는 技術協力의 項目에서 支出됨.(各國別援助豫算이 아님)	· UNDP와 提携에 의한것. · Technical Assistance 의 一部
· 一般的으로2年契約으로 必要한分野의專門家를 雇傭하여 SIDA의在外事務所(또는 援助受惠國政府의職員)와 協力하여 調査活動을 遂行 · 大學, 其他의 專門家와 委託契約을 締結하여 調査報告書를 作成. · 컨설턴트의 會社	· 컨설턴트 會社 · F/S가 꼭 必要한 경우 政府職員, 專門家, 컨설턴트等의 混成팀으로 遂行하는 경우가 있음.	· 컨설턴트會社 · 技術協力의 短期專門家가 F/S를 하는 경우도 있음.	· 調査는 ODA 職員이 자력으로 實施하는 경우도 있음. · ODA 職員과 專門家 · 컨설턴트	· 컨설턴트企業 · 섹터作業等 小規模인 調査에는 個人컨설턴트를 쓰는 경우가 있음.

〈圖 Ⅱ－5〉 컨 설 턴 트

	美 國	카 나 다	日 本	프 랑 스
調達適格條件	・適格國市民 및 美國國籍이 있는 個人, 適格國의 法律에 따라 設立된 法人(美國 以外의 法人에 있어서는 株式의 50%以上을 適格國 株主가所有) ・株式의 50%以上을 美國人 株主가 갖고 그 支配下에 있는 外國會社	・카나다國籍을 갖는 個人 또는 法人 ・그랜트의 比率이 매우 높으므로 대체로 타이드(Tied)條件임.	・日本國籍의 個人 또는 法人으로서 該當分野에서 JICA에 登錄되어 있을것. ・外國 컨설턴트도 登錄可能	(CCCE) ・F/S의 경우 거의 프랑스國籍의 法人 또는 個人이 實施(그랜트) ・프랑스語圈의 컨설턴트 (Loan) ・컨설턴트登錄이 必要함.
프로젝트情報	公 開		公 開	
컨설턴트의 調達	・業務의 內容에 따라 隨意(特命)契約도 있음. ・公開競爭契約을 原則으로 함. ・契約額에 따라 承認責任者가 다름(現地事務所長등)	・契約額에 따라 承認責任者가 바뀜. ・隨意(特命)契約도 있음. ・競爭을 原則으로 함. ・政治的으로 決定이 되는 수도 있음.	・Proposal 方式 原則 (Technical Proposal競爭方式) ・Technical Proposal을 評價하여 最優秀業體와 隨意契約 ・特命隨意契約도 있음	・契約額의 大小에 따라 隨意(特命)契約도 있음. ・競爭을 原則으로 함.
Short list	3～5社	3개의 Proposal	3～5社	
Proposal提出	必要에 따라		2週日	

의 活用

스 웨 덴	네델란드	西 獨	英 國	世界銀行
· 스웨덴國籍을 갖고 있는 個人 또는 法人 · 스웨덴에서 調達할 수 없는 경우는 他國籍의 컨설턴트의 雇傭도 可能. · 그랜트의 比率이 높으므로 타이드(Tied)가 大部分임.	· LDC 언타이드(Untied)에 의한 調達을 原則으로 함. (原則的으로 他國企業에도 公開됨) · 컨설턴트 登錄이 必要함.	(KfW) · 西獨에 登錄되어 있는 컨설턴트를 雇傭함. (GTZ) · 西獨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는 他國籍의 컨설턴트를 雇傭하기로 함.	· 그랜트의 比率이 높으므로 英國籍 또는 受惠國籍의 企業에만 許容하며 ODA와 受惠國의 協議 및 ODA의 承認에 따름.	· 原則的으로 特別한 條件은 없음.
公 開	公 開	公 開	公 開	公 開
· 公開競爭契約을 原則으로 함. · 隨意(特命)契約도 있음. · 價格은 싼편이 絶對的으로 有利함.	· 業務의 內容에 따라 隨意(特命)契約도 함. · 競爭契約을 原則으로 함. · 價格을 考慮한 選定을 함.	· 契約額에 따라 選定方式이 다름. · 公開競爭契約이 原則임. · 價格을 考慮한 選定도 함. (技術 Proposal評價結果 점수차가 10%未滿인 경우) · 隨意(特命)契約도 함.	· 指名競爭契約을 原則으로 함. · Two-Envelope-System으로 함. · 隨意(特命)契約도 있음.	· 公開競爭契約을 原則으로 함. · Technical Proposal의 評價가 가장 重要함. · 業務內容에 따라 選定基準이 바뀌는 일도 있음. (價格)
2~3社	3~5社	3~5社	2~5社	3~6社
世界銀行等에準함	必要에 따라	60	30~60	45

	美 國	카 나 다	日 本	프 랑 스
Proposal 評 價 및 業體選定特色	技術評價結果가 第一 優秀한 會社에 價格의 提出을 要求하고 協商하여 契約額을 決定함.	Technical Proposal이 一定水準以上인 上位 3者中에서 政治的인 配慮로 決定하는 경우도 있음.	· 컨설턴트등 選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Technical Proposal을 招請 · 同 委員會가 Technical Proposal 을 評價한 후 最優秀業體와 協商하여 契約締結	業務內容에 따라 Technical Proposal과 價格을 考慮하여 決定함.
個人컨설턴트의 調達	· 프로젝트發掘에는 必要에 따라 雇傭 · 隨意契約(特命)	· 必要에 따라 · 프로젝트 發掘, 評價에 雇傭	· 豫備調査, 事前調査, 本格調査管理등에 雇傭 · 隨意契約	提出된 Proposal(F/S) 等의 不足데이타 解釋을 위하여 調達 · 隨意契約(特命)
로칼 컨설턴트의 調達	現地事務所의 承認下에 雇傭	· 타 이 드 (Tied), 언타이드(Untied)條件에 따라 다름.	○ 必要에 따라 調達가능	Grant의 경우는 타이드(Tied), Loan의 경우는 언 다 이 드 (Untied)임

스 웨 덴	네델란드	西 獨	英 國	世界銀行
Tehnical Proposal이 大同小異할 경우 核心人士의 인터뷰等을 하며 가장 싼 業者로 決定하는 일도 있음.	業務內容에 따라 隨意契約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격을 考慮하여 決定하는 일도 있음.	業務內容에 따라 價格을 考慮하여 決定함.	業務內容에 따라 價格을 考慮하여 決定함.	Technical Proposal이 一定水準以上인 上位 3者中에서 政治的인 配慮로 決定하는 경우도 있음.
· 프로젝트發掘, 形成, 實施 · 實費精算方式의 契約도 있음. · 隨意契約(特命)	· 프로젝트發掘, 形成, 實施를 不問하고 必要에 따라 雇傭함. · 隨意契約(特命)	· 必要에 따라 雇傭함. · 隨意契約(特命)	· 必要에 따라 雇傭함. · 隨意契約(特命)	· 2,000名 登錄 · 또한 職員의 個人的 네트워크等을 利用함.
必要에 따라 로컬 컨설턴트의 雇傭을 認定함.	原則的으로 타이드(Tied) 지만 他國에도 公開됨.	타이드(Tied), 언타이드(Untied)에 따라 다름.	受惠國과의 協議에 의함.	· 로갈·컨설턴트와의 合作을 奬勵함.

Ⅲ. 開發援助의 實施體制

1. 美 國

가. 援助體制의 特徵

(1) 槪 要

援助政策의 企劃立案 決定의 權限은 國際開發協力廳(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IDCA), 國務部, 財務部, 國際開發廳(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AID), 貿易開發計劃(Trade and Development Program : TDP), 海外民間投資公社(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 OPIC)등에 委任되고 있는데 特히 美國의 海外協力援助를 綜合的으로 總括하기 위하여 設置된 IDCA에 集中되어 있다. 그러나, 大統領이 上記機關들의 長官 또는 重要 責任者의 任命權을 갖고 있으므로 最高責任者는 事實上 大統領인 셈이다.

二國間 援助는 AID가 立案에서부터 實施까지 專擔하고 있다. AID가 取扱하는 援助實施豫算으로는 開發援助(Development Assistance : DA)와 經濟支援基金(Economic Support Fund : ESF)이 있다. DA는 外交上 特別配慮를 必要로 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AID가 立案에서 實施까지 責任지며 ESF는 援助受惠國 및 援助金額등의 決定에 있어서는 國務部가 關與하고 있다. 援助 프로젝트 및 援助形態등에 對해서는 AID가 決定하여 援助를 實施한다. AID는 또한 人道的救助法에 依해 地震, 饑餓, 洪水, 가뭄등의 自然災害에 對한 援助도 擔當하고 있다.

多國間援助는 財務部長官과 IDCA長官이 共同으로 責任을 지고 있다. 平和를 위한 食糧援助 (PL480 食糧援助)는 IDCA長官과 農務部長官이 責任을 지되 國務部長官이 外交的 觀點에 따라 意見을 提示하도록 되어 있다.

(2) 政府援助豫算

豫算上 海外援助는 國際安全保障援助(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 ISA) 및 海外經濟資金援助(Foreign Economic and Financial Assistance)로 되어있다. 그러나 海外經濟資金援助와 國際安全保障援助中에서 美國의 政府開發援助(ODA)에 計上되는것은 經濟支援基金(ESF)뿐이다. 參考로 同 豫算들의 構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國際安全保障援助
- 軍事援助金融 (Military Aid Financing)
- 經濟支援基金 (Economic Support Fund)
- 中央아메리카 援助 (Assistance to Central America)
- 國際軍事教育等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etc)
- 返濟에 의한 相計 (Offsetting Receipts)

海外經濟資金援助
- 多國間開發金融機關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 國際機關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國際開發廳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PL480食糧援助 (Public Law 480 Food Aid)
- 平和奉仕團 (Peace Corps)
- 難民援助 (Refugee Assistance)
- 其 他 (Others)
- 返濟에 의한 相計 (Offsetting Receipts)

(3) 政策決定에 관한 協力體制

① 國際開發協力廳(IDCA)의 主要 任務

○ 大統領에 對해 主要 國際經濟開發政策에 關해 助言

○ 多國間援助 및 二國間 援助에 관한 政策立案 및 豫算策定을 爲한 調整

○ 美國의 廣範圍한 國際經濟政策에서의 開發援助政策의 位置設定

② 開發調整委員會(Development Coordination Committee : DCC)

IDCA長官을 委員長으로 農務部, 勞動部, 財務部, 國家安全保障會議, 聯邦管理豫算局, 貿易交涉代表, USAID, 輸出入銀行, OPIC등의 代表로 構成되며, 開發援助政策 및 開發프로그램을 調整한다.

(4) 援助實施에 관한 協力體制

IDCA를 中心으로 한 全般的인 開發援助政策에 따라, 二國間 援助政策의 企劃 및 立案은 AID海外事務所(Field Mission : FM)에 依한 國別開發戰略書(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 : CDSS)의 作成에 依하여 具體化된다. 海外 事務所는 이에 對한 本部의 承認을 받은후 2年後 實施를 爲한 年次豫算書(Annual Budget Submission : ABS)案을 作成한다. 同豫算書는 議會의 承認을 얻기위해 作成되는 것인데도 AID의 本部가 아닌 海外事務所가 作成하는 점이 特色이다.

① AID와 IDCA의 關係

AID는 IDCA의 傘下機關이며 AID의 長官은 IDCA長官의 指示를 받아 일을 處理한다.

② AID와 國務部의 關係

AID는 원래 國務部의 下部機構로 設立되었으나 現在는 IDCA의 管轄로 되어 있다. 그러나 二國間 援助는 外交上의 主要 手段이므로 AID는 國務部와 密接하게 協力하면서 業務를 執行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ESF는 美國의 國際政治外交 및 國際戰略의 觀點에서 執行되기 때문에 國務部가 關與하는 比率이 매우크다.

③ AID와 財務部

AID는 財務部의 國際開發金融에 關與하고 있으며 多國間開發金融機關(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 MDB)의 美國理事室에 職員을 派遣시키고 있다.

④ AID와 農務部

AID는 農務部의 PL480 食糧援助의 供與에 關與하고 있다. 즉 AID는 供與對象國의 食糧事情을 調査하여 援助의 必要與否 및 金額등에 對하여 提案한다.

⑤ AID와 TDP의 關係

TDP는 IDCA의 傘下機關이다. AID와는 別途의 豫算을 갖고 있으나 AID에서 職員이 派遣되어 그 業務를 支援하고 있다. TDP의 目的은 美國製品과 서비스의 輸出促進에 關한 프로젝트의 準備段階를 爲한 業務를 援助하는 일을 目的으로 F/S 調査 및 其他 計劃事業에 對한 援助를 하고 있다.

⑥ AID와 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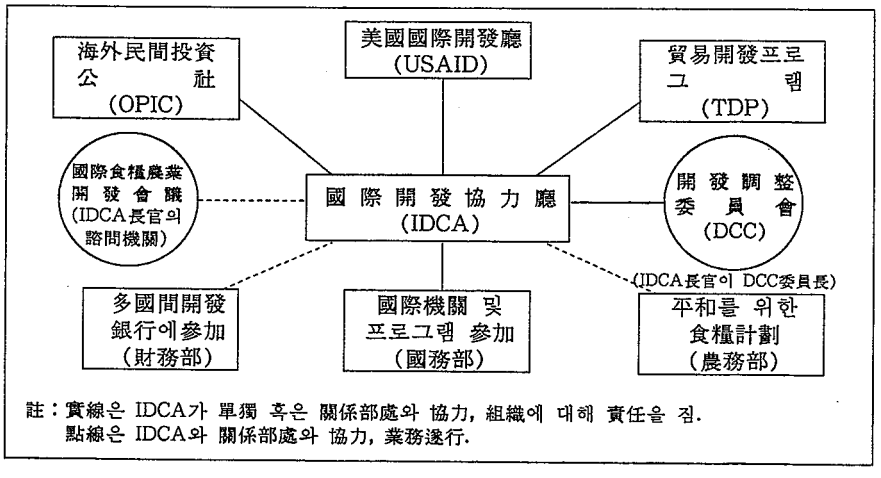
OPIC도 IDCA의 傘下機關이다. OPIC는 海外直接投資, 投資保險 및 投資保障業務를 實施하고 있으며 AID의 民間企業局과 緊密한 協調下에 業務를 執行하도록 되어 있다. AID長官은 OPIC 任員會의 議長을 맡고 있다.

나. 組 織

以上과 같은 美國의 援助組織은 全體的으로는 IDCA를 中心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特히 二國間 援助를 專擔하고 있는 USAID의 組織을 살펴보면 各地域局과 約 70個所의 海外事務所 外에도 各種 專門스텝部署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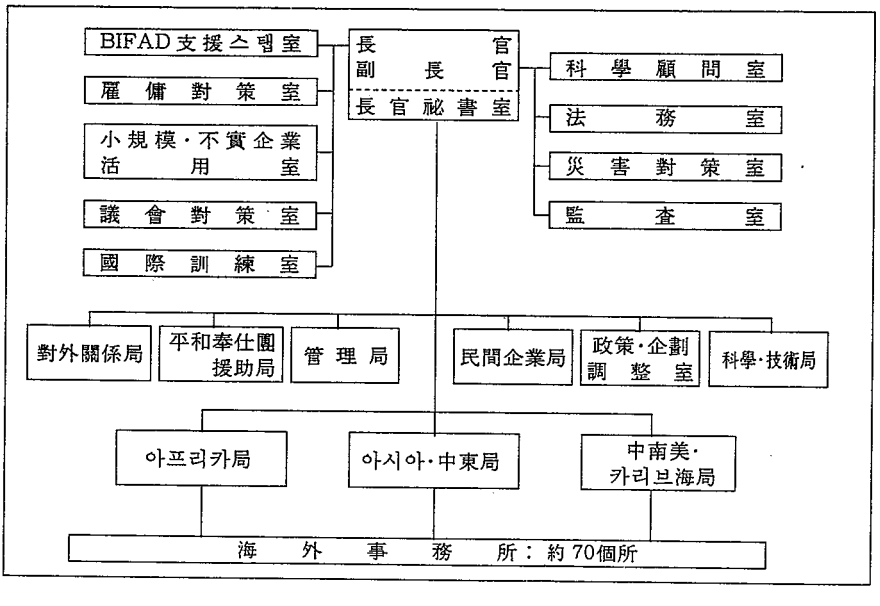
(1) 美國의 開發援助關聯機關

〈圖 Ⅲ－1〉 美國의 援助關聯體系圖



(2) AID組織

〈圖 Ⅲ－2〉 AID 組織圖



(3) 海外事務所

AID의 海外事務所는 다른 援助機關과 比較해볼때 그 規模, 數, 權限등에서 優秀한 體制를 갖추고 있다.

種類는 그 規模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分類된다.

① Mission : 援助가 繼續的으로 供與되는 國家에 設置되며 援助計劃立案·實施權限과 代表權이 附與되고 있다.

② 事務所(Office) : 中間規模의 援助對象國 또는 援助計劃이 縮小되던가 限定된 目的의 援助만을 供與하고 있는 國家에 設置되고 있다.

③ 大使館內 專擔組織(Section of Embassy) : 援助規模가 매우 작거나 停止되어 있는 國家의 美國大使館內에 專擔組織이 設置되고 있다.

이러한 AID 海外事務所의 主要業務는 다음과 같다.

- 援助政策의 立案……國別開發戰略書(CDSS)
- 豫算要求……年度豫算要求書(ABS), 對議會豫算要求書(CP)
- 프로젝트의 發掘·形成……프로젝트發掘書, 프로젝트審査調書
- 프로젝트의 開發
- 프로젝트의 交涉
- 프로젝트의 實施
- 評　　價
- 戰略立案의 基礎가 되는 分析과 프로젝트에 關聯되는 分野別 分析等의 活動
- 弘報活動

2. 카나다

가. 援助體制의 特徵

카나다의 開發援助는 政策決定에서 實施까지 모든 業務를 外務部의 外局에 該當하는 카나다 國際開發廳(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CIDA)이 다루고 있다. CIDA 援助體制의 第一의 特徵은 카나다 國內外의 NGO와 共同으로 實施하는 共同協力事業에 CIDA 全豫算의 50% 以上을 使用하고 있는 點이다.

CIDA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地域別·國別組織 體制를 갖추고 있다.

나. 組 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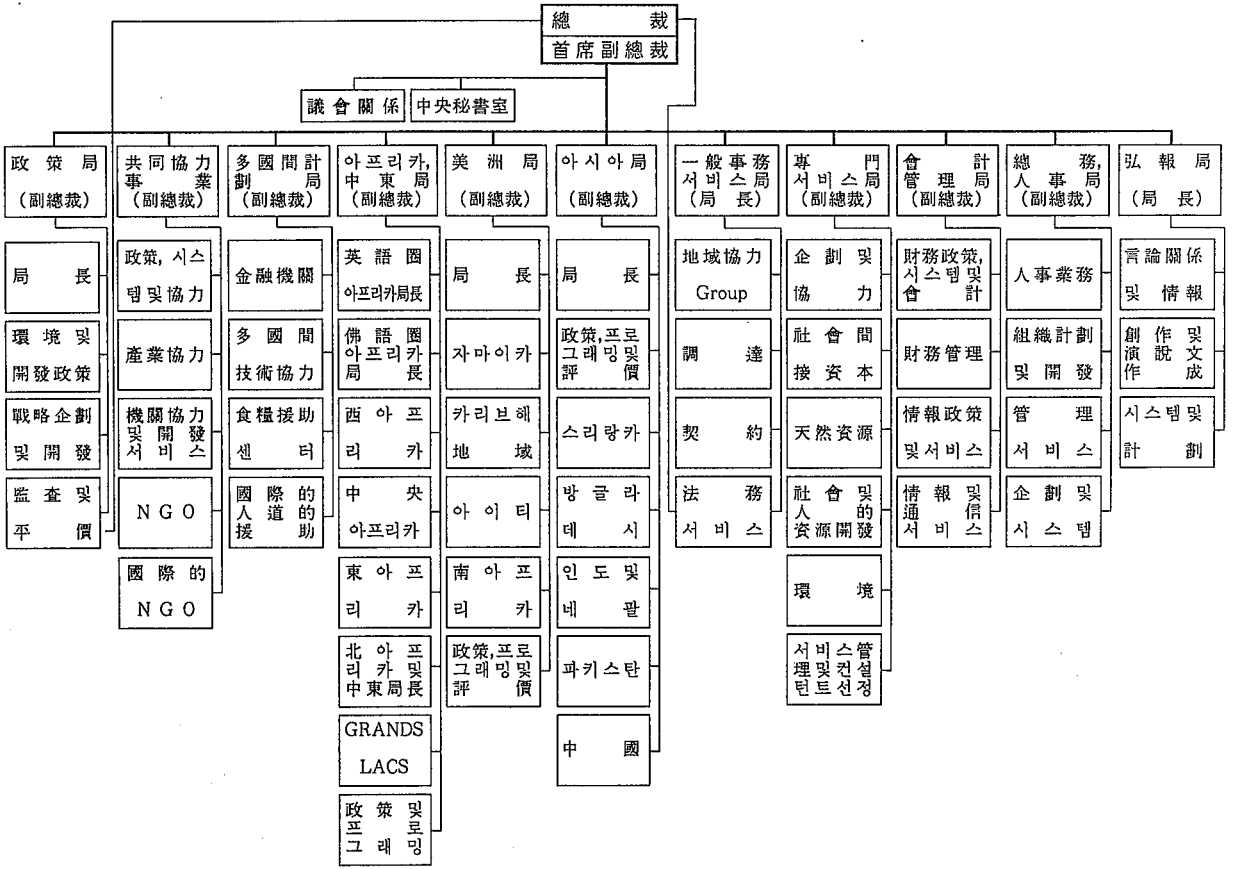
(1) CIDA의 組織

CIDA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地域別·國別 組織體制를 갖추고 있다. CIDA는 總裁를 頂点으로 하여 首席副總裁 아래에 11個局과 議會關係 專擔組織 및 中央秘書室을 두고있다.

(2) 海外事務所

CIDA는 獨立한 海外事務所는 갖고 있지않다. 海外의 援助事務는 大使館 業務의 一部로서 실시된다. CIDA로 부터 派遣된 援助擔當官이 外務部職員이라는 身分으로 事務에 從事하고 있다. 援助業務는 中央集權型이며 在外大使館에는 權限이 없다.

〈圖 Ⅲ－3〉 CIDA 組織圖


總裁
首席副總裁
議會關係
中央秘書室
政策局 (副總裁)
局長
環境및開發政策
戰略企劃및開發
監査및平價
共同協力事業 (副總裁)
政策, 시스템및協力
產業協力
機關協力및開發서비스
NGO
國際的NGO
多國間計劃局 (副總裁)
金融機關
多國間技術協力
食糧援助센터
國際的人道的援助
아프리카, 中東局 (副總裁)
英語圈 아프리카局長
佛語圈 아프리카局長
西아프리카
中央아프리카
東아프리카
北아프리카및中東局長
GRANDS LACS
政策및프로그래밍
美洲局 (副總裁)
局長
자마이카
카리브해地域
아이티
南아프리카
政策,프로그래밍및評價
아시아局 (副總裁)
局長
政策,프로그래밍및評價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및네팔
파키스탄
中國
一般事務서비스局 (局長)
地域協力Group
調達
契約
法務서비스
專門서비스局 (副總裁)
企劃및協力
社會間接資本
天然資源
社會및人的資源開發
環境
서비스管理및컨설턴트선정
會計管理局 (副總裁)
財務政策, 시스템및會計
財務管理
情報政策및서비스
情報및通信서비스
總務, 人事局 (副總裁)
人事業務
組織計劃및開發
管理서비스
企劃및시스템
弘報局 (局長)
言論關係및情報
創作및演說文作成
시스템및計劃

3. 프랑스

가. 援助體制의 特徵

프랑스의 援助機構는 상당히 複雜하며 單一 部廳이 援助全體를 統括하는 形態는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주로 프랑스語圈 아프리카를 擔當하는 經濟協力部 및 經濟協力中央金庫(Caisse Centrale de Cooperation Economique : CCCE)와 그 以外의 開發途上國을 擔當하는 經濟財政部처럼 地域, 歷史, 社會的背景을 考慮한 分擔構造로 되어있다.

○ 二國間援助機關

〈圖 Ⅲ-4〉 프랑스의 二國間援助體系 (1982年以後)

ODA의 形態 / 地域	資金協力	技術協力
佛語圈 포루투갈語圈 아프리카 칼리브海諸國	• 經濟協力部(贈與) • CCCE(借款)	• 經濟協力部 • CCCE
其他開途國	• 經濟財政部 (國庫援助)	• 協力開發部 • ACT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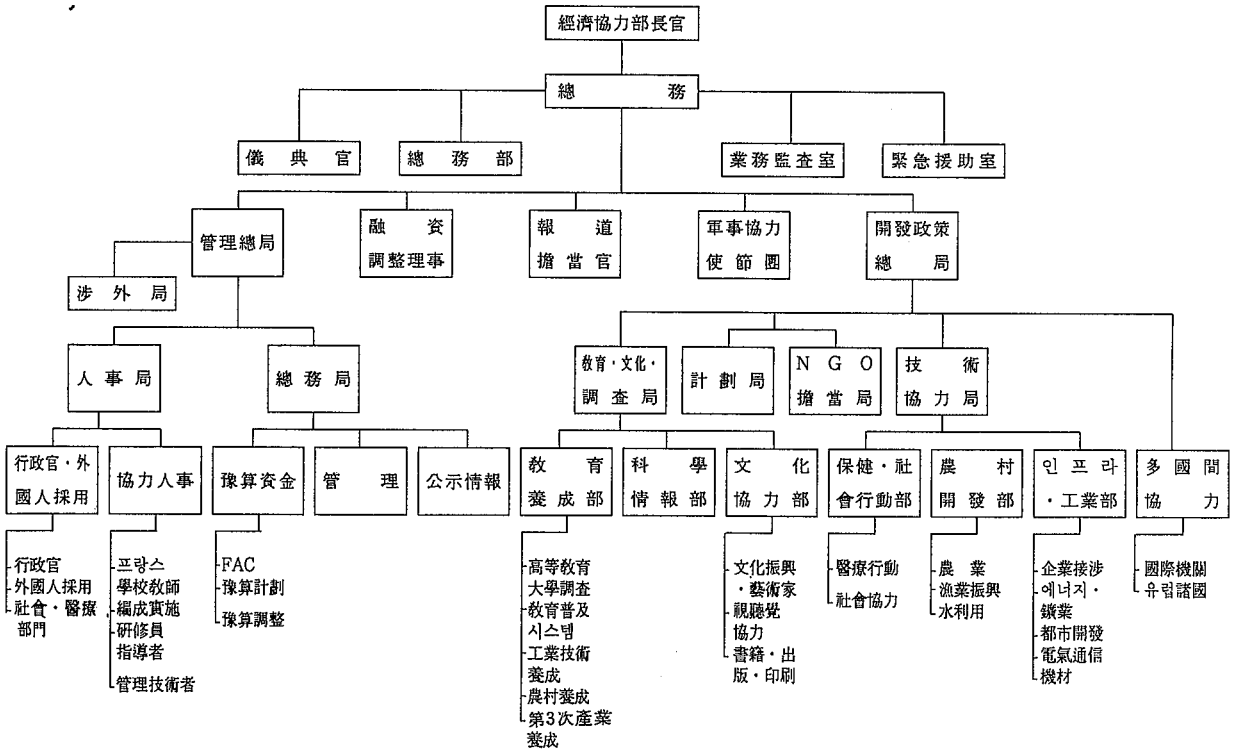
○ 多國間援助機關

- ACTIM : UN, OECD, 世銀等의 援助關聯 研修實施
- 經濟財政部 : 世界銀行, 地域開發銀行(AID, AFDB等), EC의 歐洲開發基金(EDF)等에 對해 出資 및 據出.
- 對外關係部/經濟協力部 : UN을 通한 開發活動(UNDP等)에 協力
- CCCE : EC의 EDF支拂代行業務

나. 組 織

(1) 經濟協力部의 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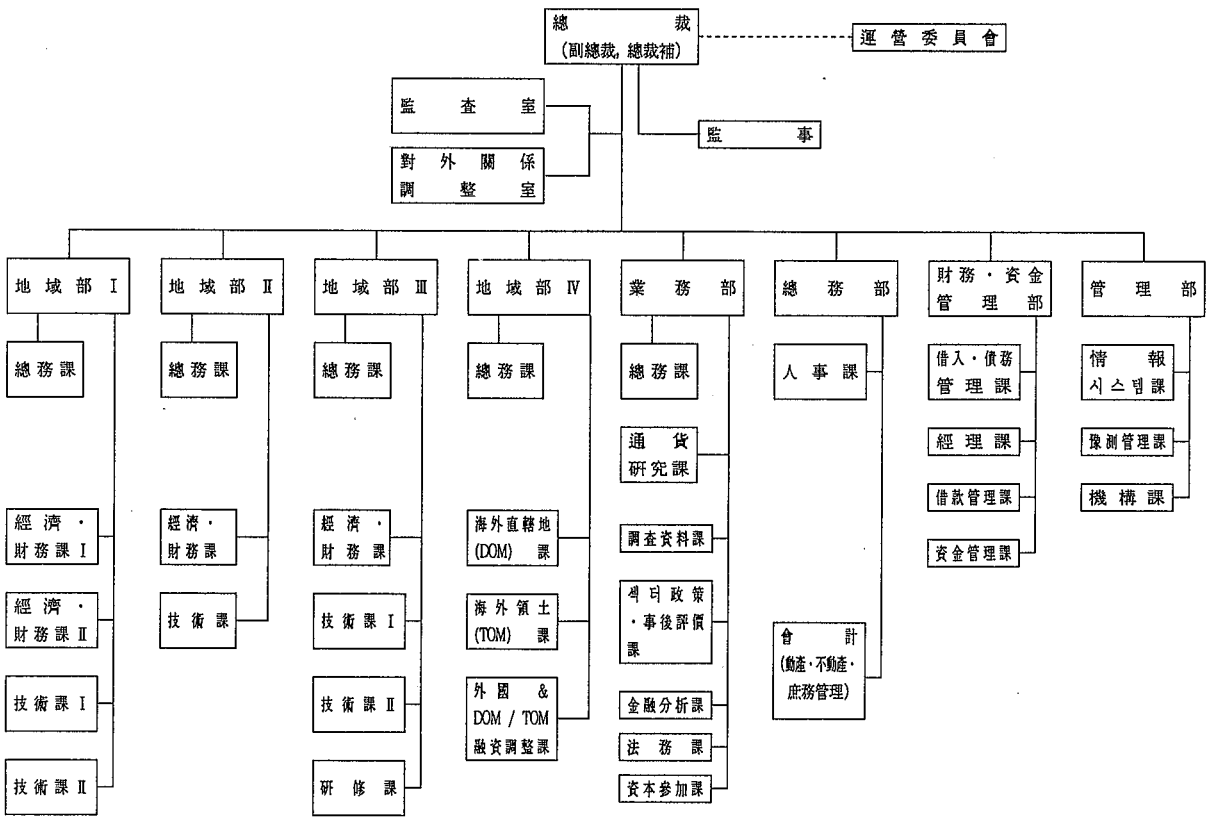
〈圖 Ⅲ-5〉 經濟協力部의 組織圖



(2) CCCE 組織圖

〈圖 Ⅲ－6〉

CCCE 組織圖



(3) 海外事務所

佛語圈아프리카	25個所
海外領土	3個所
海外直轄地	5個所
시에라리온, 카메룬	2個所
計	35個所

4. 스웨덴

가. 援助體制의 特徵

(1) 概 要

援助政策의 企劃, 立案 및 決定機能은 外務部에 一元化되어 있다. 그러나 實際의 原案作成은 스웨덴國際開發廳(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 : SIDA)에 맡겨 지고 있다.

外務部의 國際開發協力局을 總括하는 開發協力擔當長官이 任命되고 있으며 國際開發協力局은 二國間援助部와 多國間援助部로 構成되어 있다.

援助의 實施機關으로서는 二國間 ODA의 80%를 執行하는 SIDA가 있으며 同機關은 Program Country에 대한 資金協力 및 技術協力을 擔當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國際技術經濟協力事業團(Swedish Agency for Internation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BITS)은 Program Country 以外의 中低所得國에 對한 技術協力 및 資金協力을 實施하고 있으며, 스웨덴開發途上國硏究協力事業團(Swedish Agency for Research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 SAREC)은 開發途上國에서의 開發調査硏究者에 對한 支援, 國際機關 및 開發途上國과의 共同開發調査와 스웨덴 國內에서의 開發調査硏究者에 對한 支援등을 하고있다.

(2) 政策決定에 關한 協力體制

國別援助計劃, 豫算案等의 政策決定은 外務部에 一元化되고 있으나, 原案은 SIDA에 依하여 作成되고 있다. 實際로는 SIDA案이 그대로 承認, 實施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SIDA의 理事會는 政黨, 勞動組合, 業界 및 學界등의 代表로 構成되어 있다.

(3) 援助實施에 관한 協力體制

SIDA의 Program Country에 對한 技術協力과 資金協力(贈與), BITS의 Program Country以外 地域에 對한 技術協力과 資金協力 및 SAREC의 開發調査등이 有機的으로 調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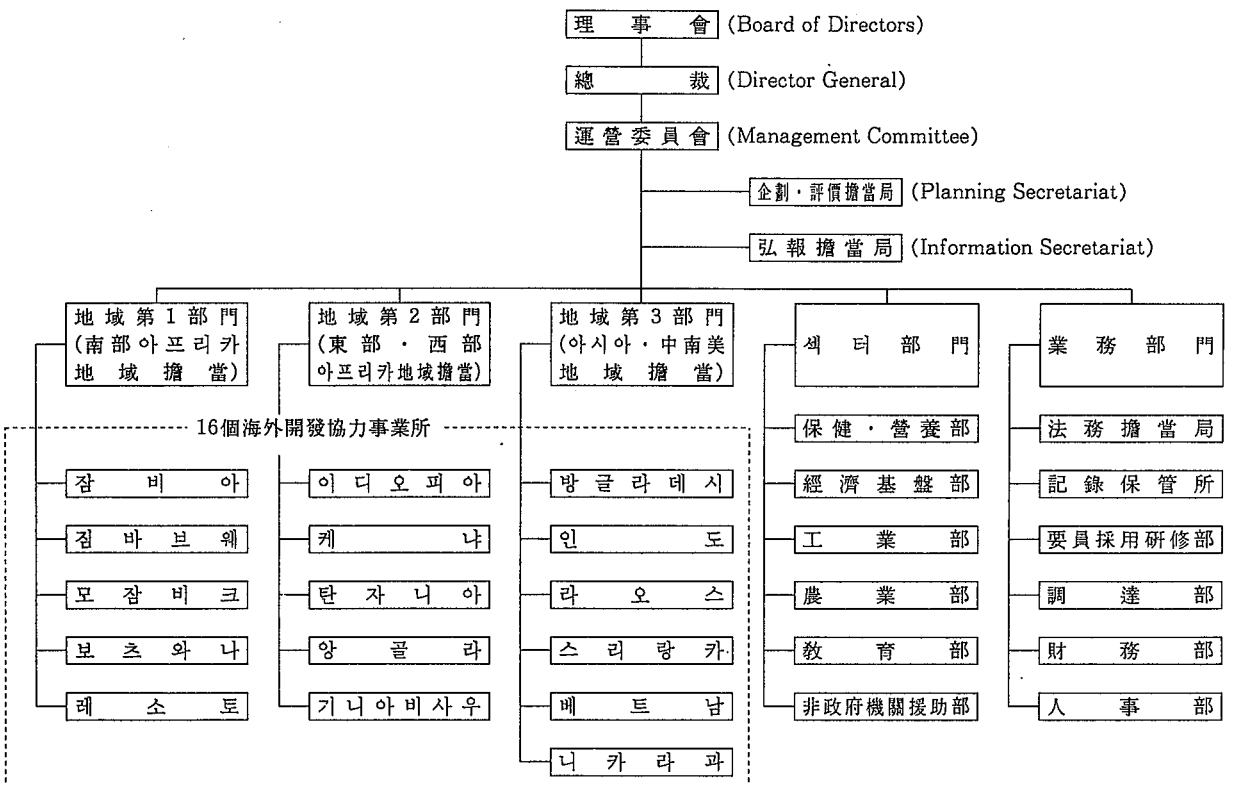
나. 組 織

SIDA의 組織을 살펴보면 3個의 地域部門과 16個의 海外開發協力事務所를 두고 있으며 이를 支援하기 爲한 分野別 專門部署들과 行政支援部署들을 갖추고 있다. SIDA의 最高議決機關으로는 理事會가 있으며 事業의 執行責任은 總裁가 진다. 總裁가 主要事業을 執行함에 있어서는 運營委員會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理事會는 總裁를 會長으로 하여 各 政黨, 學界, 業界등의 有力人士들로 構成되고 總裁外에 14名의 理事를 두고 있으며 運營委員會는 諮問機關으로서 15名의 運營委員으로 構成된다.

(1) SIDA 組織圖

〈圖 Ⅲ－7〉

SIDA 組織圖



(2) 海外事務所

海外開發協力事務所는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이디오피아, 기니비사우, 케냐,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베트남, 니카라과 등 16個國에 設置되어 있다.

海外事務所의 職員은 最大 14명(탄자니아)부터 最小 3명(스리랑카)까지 派遣되고 있는데 平均 7명정도의 規模이다. 海外事務所에는 決定權은 없으며 現地本國補完型이다.

5. 네델란드

가. 援助體制의 特徵

(1) 概 要

네델란드의 援助機關에는 美國, 카나다, 스웨덴과 같은 獨立된 實施機關은 없으며 開發協力長官(無任所)이 總括하고 있는 外務部의 國際協力總局에 의하여 資金協力, 技術協力等이 實施된다. 開發協力長官은 援助政策의 立案과 實施에 대해 總責任을 지고 있다. 또한 네델란드開發途上國投資銀行(The Netherland Investment Bank for Developing Countries : NIO)이 주로 支拂金을 取扱하고 있으며 네델란드開發金融公社(Netherland Development Finance Company : FMO)는 네델란드企業이 開發途上國으로 進出하거나 合作會社를 設立코자 하는 경우에 資本參加하는 形態로 經濟協力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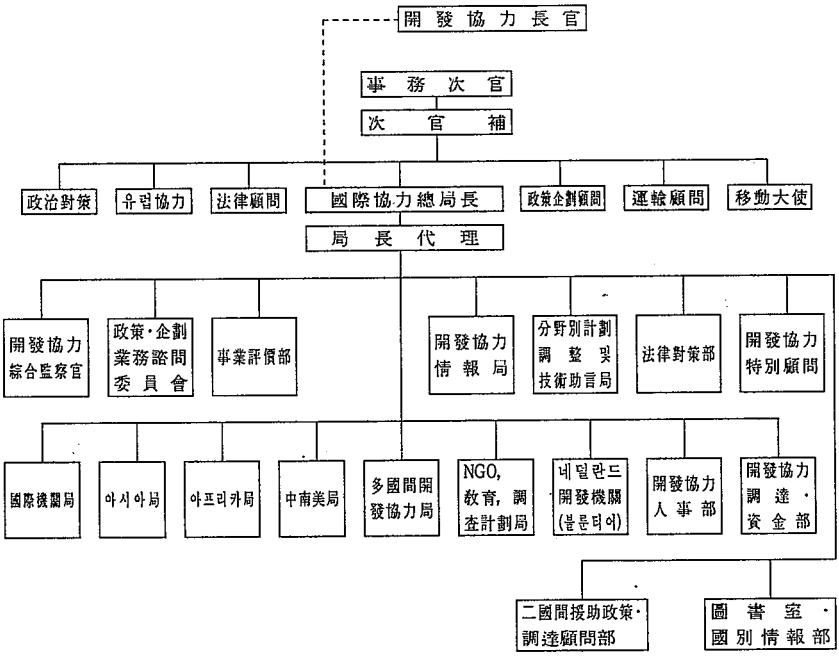
(2) 政策決定에 관한 協力體制

援助의 所管官廳인 外務部國際協力總局은 開發協力長官을 補佐하여 援助政策의 立案, 豫算案作成, 援助의 實施등을 遂行하며 各部處間의 異見을 調整한다.

나. 組 織

(1) 外務部 國際協力總局組織

〈圖 Ⅲ－8〉 國際協力總局組織圖



(2) 海外事務所

國際協力總局은 外務部의 一部이기 때문에 海外事務所는 없다. 그러나 在外公館에는 援助業務의 擔當官을 두고 있다. 同 擔當官은 一般的으로는 外交官이지만, 開發協力特別班의 技術職員으로서 外務部에 雇傭되어 國際協力總局에서 現地로 派遣되는 경우도 있다.

現地在外公館에 附與된 權限과 業務는 프로젝트發掘, 小規模 프로젝트計劃 等이다.

한편, 在外公館의 專門人力의 不足에 對處하기 爲해 當該公館에 派遣되어 있는 專門職員이 現地에서 네델란드인 專門家를 情報蒐集등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西 獨

가. 援助體制

(1) 概 要

西獨의 援助機構는 政策決定段階와 實施段階(技術協力과 資金協力)가 別途組織에 依해 實施된다.

- 經濟協力部(BMZ) : 政策의 企劃, 立案 및 決定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 BMZ)
- 復興金融公庫(KfW) : 資金協力 實施 擔當機關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KfW)
- 獨逸技術協力公社(GTZ) : 技術協力 實施 擔當機關
  (Deutsche Geser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 GTZ)

(2) 政策決定에 關한 協力體制

BMZ가 援助政策을 決定하는 경우 必要에 따라 財務部, 經濟部, 外務部등과 協議하면서 政策決定을 하고 있다. 豫算案 策定에 關해서는 年間支出計劃의 原案을 KfW가 作成하고 BMZ가 이를 補完, 調整한다.

(3) 援助實施에 관한 協力體制(相互責任)

프로젝트發掘 形成을 爲한 援助受惠國과의 年次協議等에서는 BMZ, KfW,

GTZ가 合同으로 現地協議를 實施하고 있다.

① BMZ와 KfW의 關係

聯邦政府(外務部長官, 財務部長官, 經濟部長官, 經濟協力部長官등이 代表)와 KfW間에 KfW의 權限과 責任에 對한 一般契約을 締結하고 있다.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KfW는 聯邦政府와의 協定 또는 政府의 決定에 따라 援助受惠國에 對하여 貸付를 한다.
- 聯邦政府는 KfW의 任務遂行에 必要한 權限을 附與한다.
- KfW는 聯邦政府에 對하여 프로젝트에 關한 情報 및 實施結果 等을 報告한다.

② BMZ와 GTZ의 關係

KfW와 마찬가지로 聯邦政府와 GTZ間에는 契約이 締結되고 있다.

- GTZ는 第三者로부터도 技術協力을 委任받을 수 있다.
- GTZ는 委託業務를 再委託할 수 있다.
- BMZ는 必要에 따라 GTZ의 스텝의 交替, 召還을 要求할 수 있다.
- GTZ는 委託業務의 實施狀況에 關해서 BMZ에 報告한다.

③ KfW와 GTZ의 關係

KfW와 GTZ의 業務區分의 調整, 協力體制는 BMZ의 指示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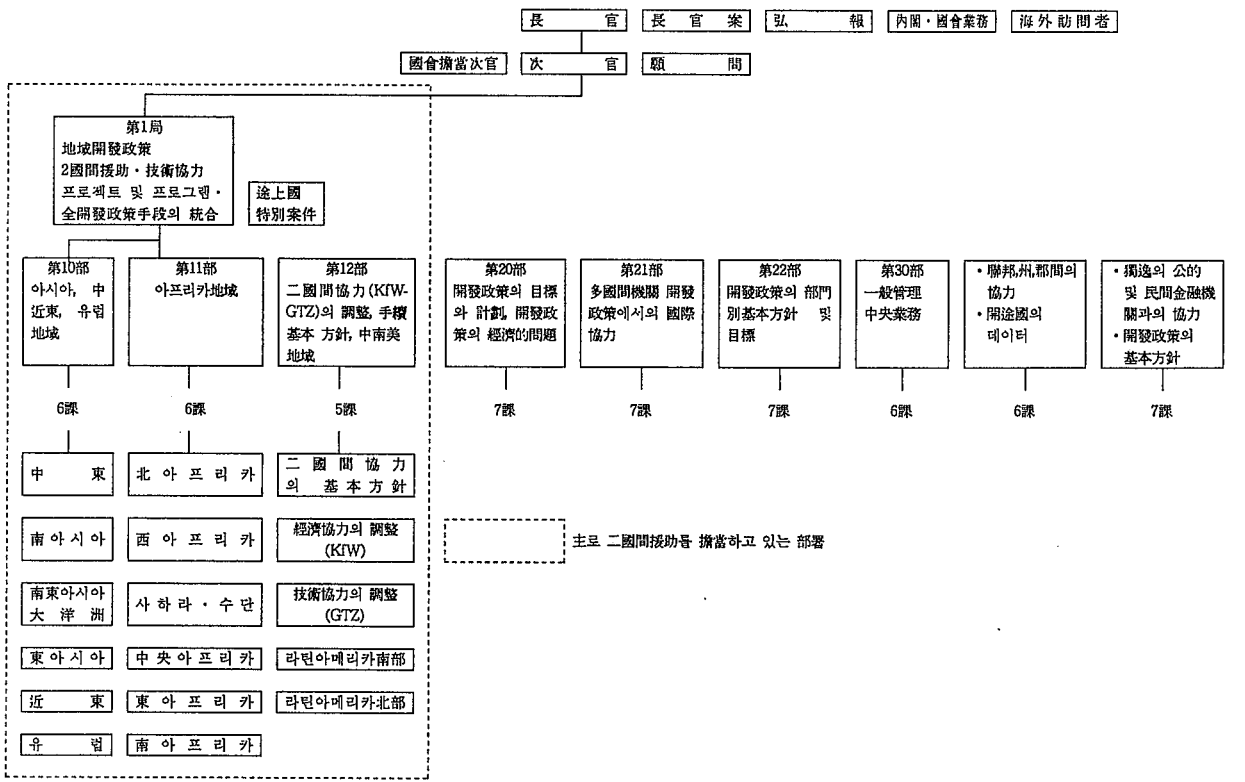
- KfW와 GTZ는 國別, 프로젝트別 資金協力의 狀態와 技術協力 프로젝트의 情報를 相互 交換한다.
- KfW와 GTZ는 프로젝트의 審査, 實施에 關하여 相互 協力한다. KfW와 GTZ의 共同프로젝트등에 對해서는 相互 緊密한 連絡을 取하면서 海外出張을 實施하거나 調査團을 派遣한다.

나. 組 織

(1) BMZ 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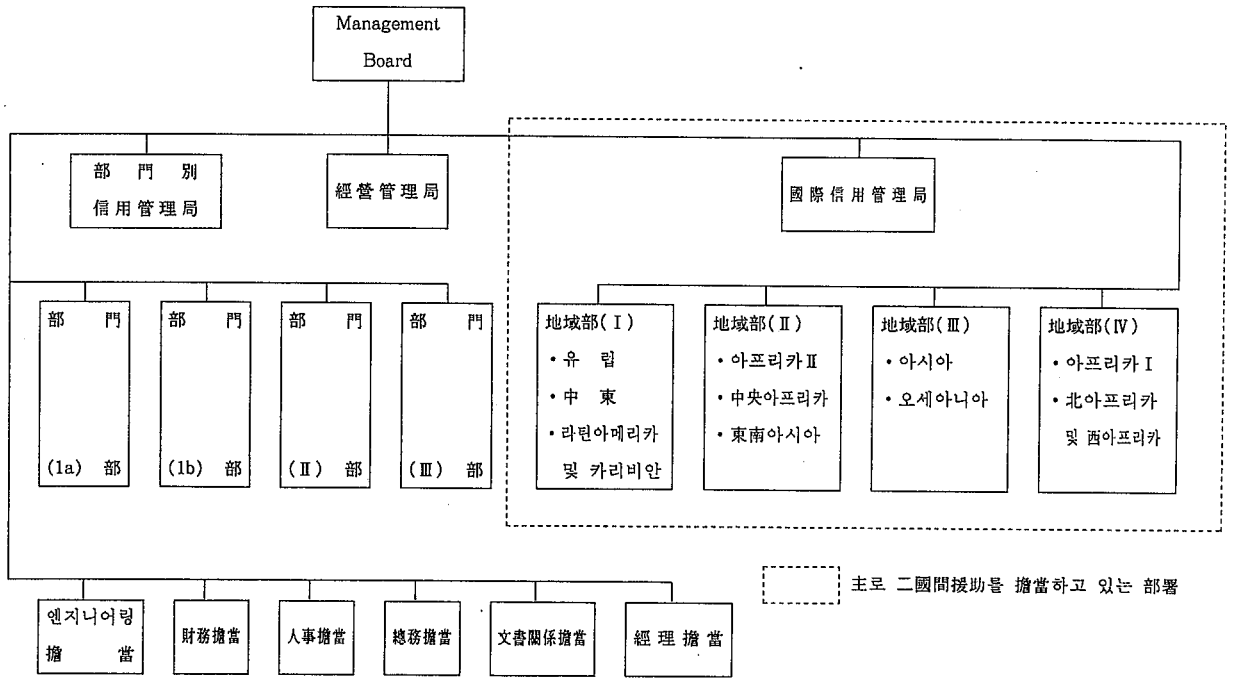
〈圖 Ⅲ－9〉

BMZ 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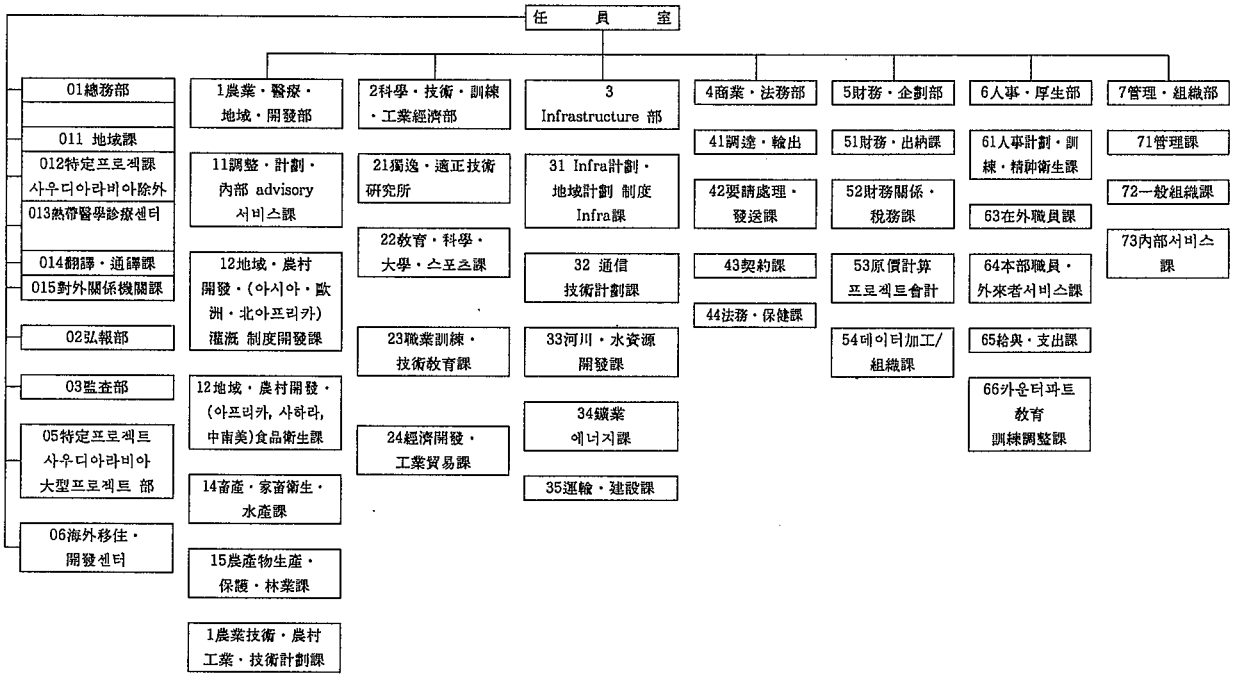
(2) KfW 組織圖

〈圖 Ⅲ－10〉 KfW 組織圖



(3) GTZ 組織圖

〈圖 Ⅲ－11〉 GTZ 組織圖



(4) 海外事務所

BMZ로부터 高位職級者 15명이 外務部에 派遣되어 在外公館에 配置되어 있으며 隨時로 經濟協力業務에 從事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150~170명이 經協에 關與하고 있다. BMZ는 中央集權型이라고 할 수 있으나 最近에는 아프리카를 中心으로 海外要員을 強化하고 있다.

7. 英 國

가. 援助體制의 特徵

(1) 槪 要

援助政策의 企劃, 立案에서 實施까지의 全過程이 海外開發廳(Overseas Development Administration : ODA)의 責任下에 實施되고 있다.

ODA는 外務·英聯邦部(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 FCA)의 外局이며 外務長官의 一般的監督下에 있다. 海外開發廳長官(ODA의 長官)이 日常業務 및 通常의 議會關係事項을 外務長官으로부터 委任받아 處理한다. 그러나, 實際의 支拂業務등은 Crown Agents(CA)에 委託되고 있다. 그밖에 英聯邦開發公社(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 : CDC)가 開途國의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에 對한 投資를, 英國文化協會(British Council : BC)가 文化, 敎育, 科學等에 關한 技術協力을 各各 實施하고 있다.

또한 英國貿易公社(United Kingdom Trade Agency : UKTA)는 最貧國 生產物의 英國 및 EEC에 對한 輸出을 促進하고 있다.

(2) 政策決定에 關한 協力體制

ODA가 援助政策(國別援助計劃, 二國間援助豫算等)을 決定할 때는 外務·英聯邦部뿐만 아니라 必要에 따라 通產部, 財務部, 잉글랜드銀行등과 協議하도록 되어있다.

特히 組織上 ODA는 外務·英聯邦部 機能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 ODA의 援助政策部(Aid Policy Department)에는 外務·英聯邦部의 職員이 常住하면서 政策立案의 段階에서부터 外交的 觀點이 反映되도록 하고 있다.

(3) 援助實施에 관한 協力體制

① ODA와 CA의 關係

CA는 物資調達 및 專門家派遣을 中心으로 業務를 遂行하고 있으며 이를 爲해 ODA와 CA는 商業베이스의 委託契約을 締結하고 있다. ODA는 CA의 上級官廳이며 CA의 豫算, 決算등의 議會提出 및 報告는 모두 ODA를 通하여 實施된다. 그러나, CA에 對한 直接 監督權이 ODA에게 附與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CA는 ODA를 代身하여 入札評價 및 契約承認부터 支拂까지를 執行하고 있으며 Management Consultant 및 Engineering Consultant로서 ODA에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② ODA와 CDC의 關係

CDC는 ODA 援助豫算과 長期·低利의 借入金에 依하여 運營되고 있으며 豫算執行에 있어서 ODA의 監督을 받는다.

③ ODA와 BC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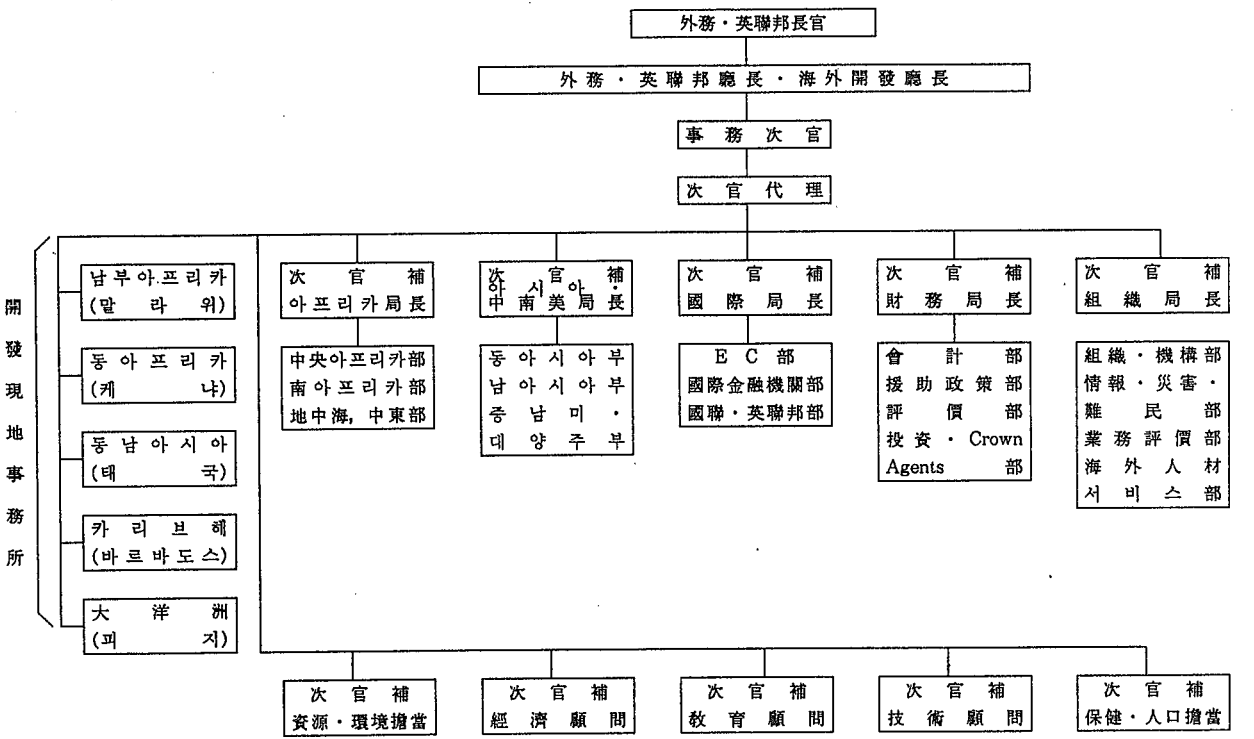
BC는 文化, 敎育, 科學分野에 關한 技術協力實施機關이며 當該 分野에 關해 ODA에 助言을 하고 있다. BC의 事業費는 ODA의 援助豫算을 使用하는 것이 아니고 外務·英聯邦部로부터 直接出資되는 政府補助金으로 充當하고 있다.

나. 組 織

(1) ODA 組織圖

〈圖 Ⅲ－12〉

ODA 組織圖



(2) ODA의 海外事務所

• ODA는 아래와 같이 5個所의 海外開發事務所(Development Divison)를 設置하고 있다.

카리브事務所 : 바베이도스(카리브諸國, 온두라스, 멕시코)

太平洋事務所 : 피지(PNG, 南太平洋)

南아프리카事務所 : 말라위

東아프리카事務所 : 케냐

東南아시아事務所 : 타이(인도, 파키스탄은 本部直轄)

• 各事務所에는 ODA의 職員 10~12명과 現地採用職員들이 活動하고 있다. 그 構成을 보면 管理擔當2명, 이코노미스트 2명, 엔지니어 2명, 事務職 2명, 管轄國家를 巡廻하는 직원 若干名과 大使館에 派遣되는 人員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ODA의 海外事務所는 現地 大使館과 항상 協議하면서 業務를 處理하도록 되어 있다.

• 大使館에서도 프로젝트 發掘을 하고 있으며 關聯 Proposal은 海外事務所를 經由해서 ODA에 傳達된다. 단, 50萬 파운드 以下의 프로젝트는 海外事務所長이 大使館과 協議하여 決定한다.

8. 日 本

가. 援助體制의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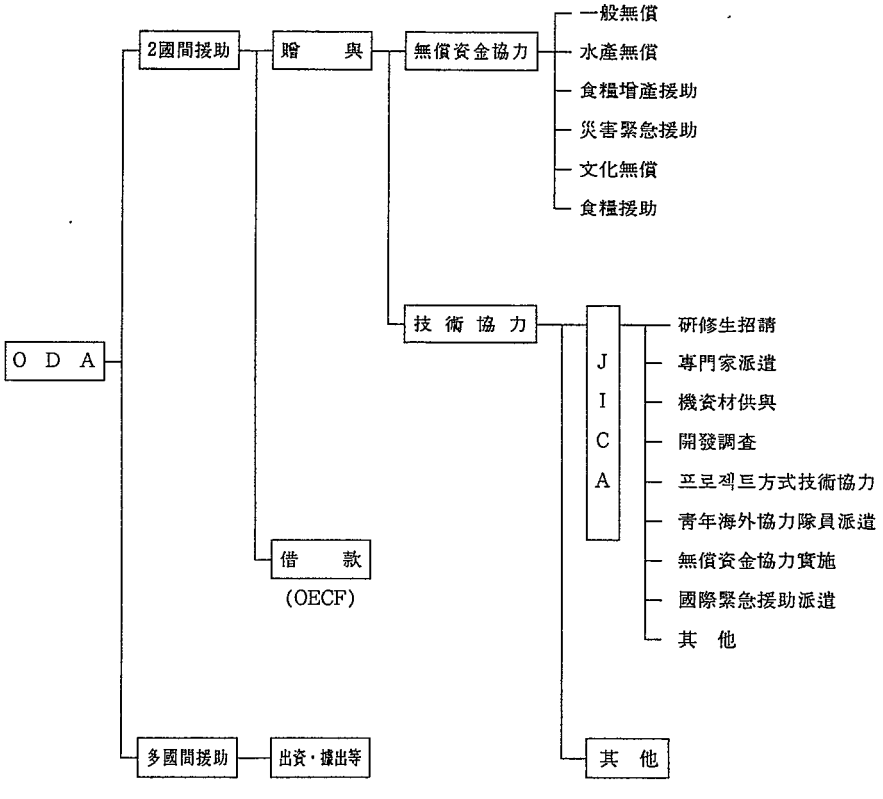
(1) 概 要

日本의 ODA는 円借款,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등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円借款은 經濟企劃廳 傘下의 國際經濟協力基金(OECF :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이 執行하며, 無償資金協力과 技術協力은 外務省이 主로 擔當하고 있는데 그 傘下에 技術協力業務의 執行과 無償資金協力의 實施促進業

務를 專擔키 위한 國際協力事業團(J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設立되어있다. 技術協力事業은 專門家 派遣, 硏修生 招請, 機資材供與, 開發調査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중 開發調査는 優先度, 緊急性등이 높은 公共開發 프로젝트의 計劃을 樹立하여 報告書 形態로 相對國政府에 提供함으로써 當該國家의 開發을 促進시키기 爲해 實施되며 이를 위해 獨立된 豫算이 編成되어 있다. 바로 이點이 餘他 國家의 開發調査事業과 크게 다른 點이다.

〈圖 Ⅲ－13〉 日本의 ODA 分野



(2) 政策決定에 관한 協力體制

• 各 省廳間의 協力體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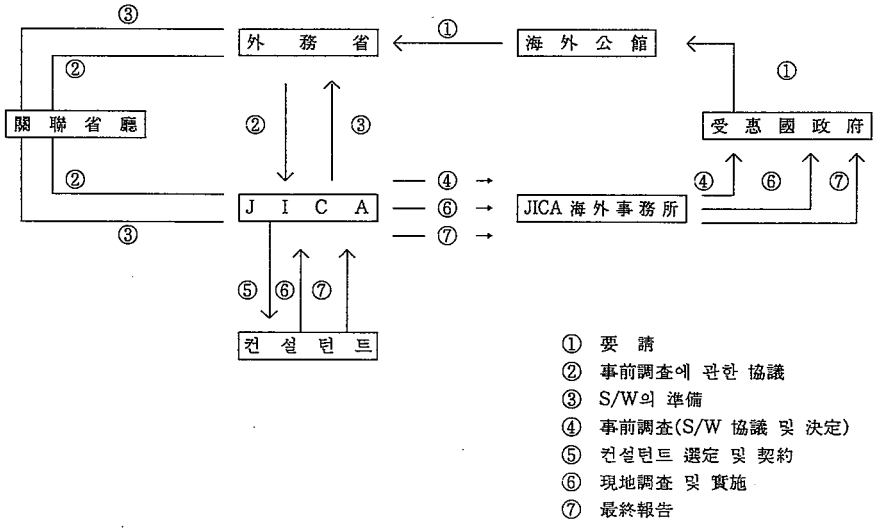
日本의 ODA 豫算은 약 90%가 外務省과 大藏省에 集中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各 關聯省廳에 配定되어 있다. 特히 技術協力을 爲한 豫算이 多數의 省廳에 分散되어 있다. 따라서 援助事業의 重複을 防止하고 이의 效率的 實施를 爲해 對外經濟協力審議會와 對外經濟協力閣僚會議를 設置하여 活用하고 있다. 對外經濟協力審議會는 日本 首相의 諮問機關으로서 1979년에 設立되었으며 外相이 委員長을 맡고 있으며 對外經濟協力 閣僚會議는 1989년에 設立되었고 外相, 官房長官을 비롯한 14명의 閣僚와 自民黨의 幹事長을 비롯해 幹事長代理, 對外經濟協力特別委員長등이 參席하고 있다.

• 開發調査 實施關聯 協力體制

開發調査의 要請은 現地의 Needs를 重視하여 반드시 外務省이나 在外公館을 通해서 接受하도록 되어 있으며 事前調査와 S/W(Scope of Work) 決定에 있어서도 外務省 및 關係省廳과 協議하도록 되어있다.

全體的인 協力體制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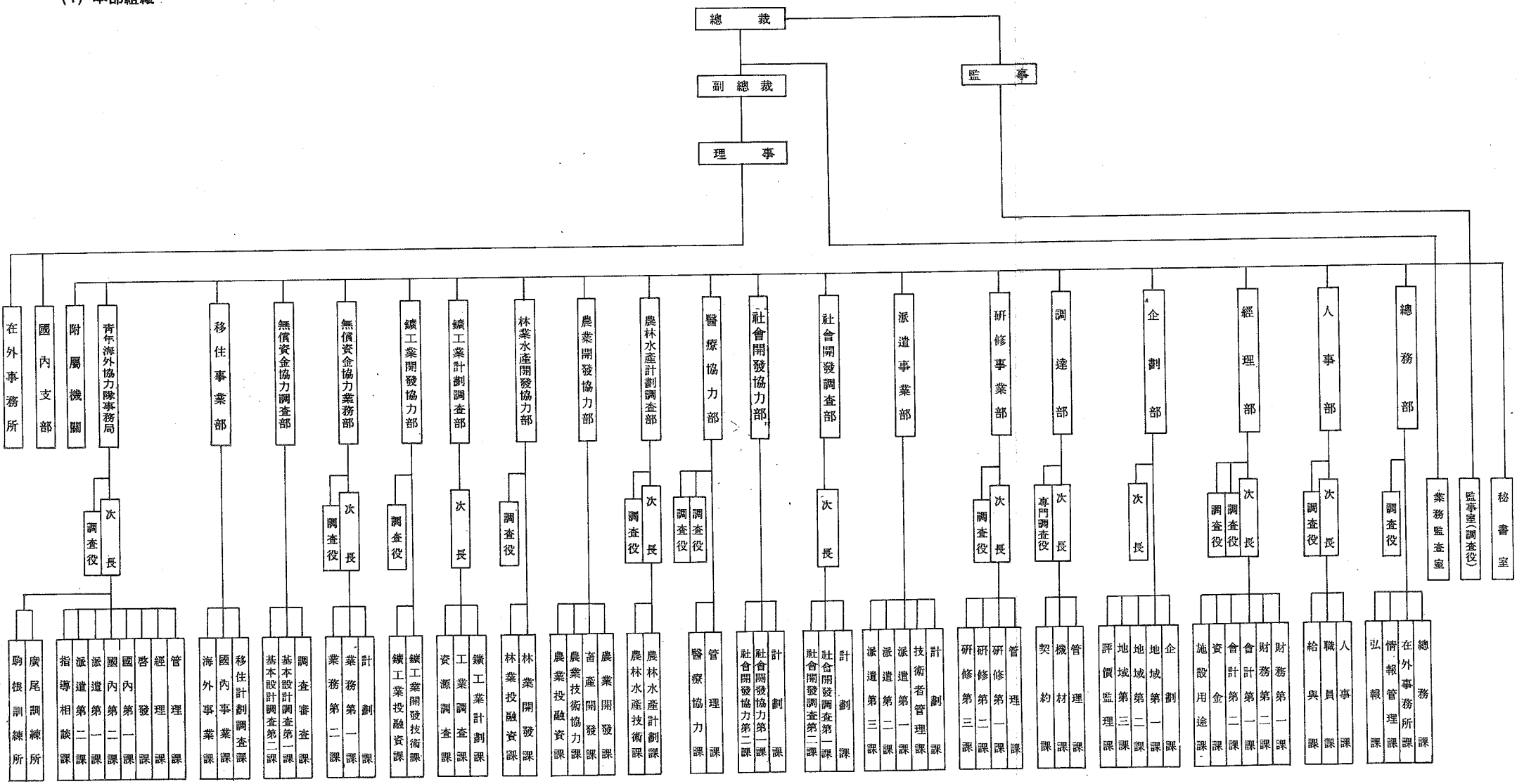
〈圖 Ⅲ－14〉 開發調査 業務의 協力體制



나. 組 織

(1) 本部組織

〈圖 Ⅲ－15〉 JICA의 本部組織圖



(2) 海外 事務所

〈圖 Ⅲ－16〉 JICA의 海外組織

區 分	事 務 所 名
아 시 아 (13個所)	印度事務所, 인도네시아事務所, 싱가폴事務所, 스리랑카事務所, 泰國事務所, 中國事務所, 네팔事務所, 파키스탄事務所, 방글라데시事務所, 미얀마事務所, 필리핀事務所, 브루나이事務所, 말레이지아事務所
北 美 (2 個 所)	美國事務所, 카나다事務所
中 南 美 (14個所)	아르헨티나事務所, 콜롬비아事務所, 칠레事務所, 도미니카事務所, 파나마事務所, 파라과이事務所, 브라질事務所, 상파울루事務所(브라질), 벨렘事務所(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事務所(브라질), 페루事務所, 볼리비아事務所, 온두라스事務所, 멕시코事務所
유 럽 (2 個 所)	프랑스事務所, 오스트리아事務所
오 세 아 니 아 (4個所)	濠洲事務所, 西사모아事務所, 파퓨아뉴기니事務所, 피지事務所
中 東 (6個所)	사우디아라비아事務所, 요르단事務所, 시리아事務所, 이집트事務所, 수단事務所, 튀니지事務所
아 프 리 카 (9個所)	이디오피아事務所, 가나事務所, 케냐事務所, 잠비아事務所, 세네갈事務所, 탄자니아事務所, 나이지리아事務所, 말라위事務所, 모잠비크事務所
合 計	48個國 50個所

(3) 日本國內 支部 및 附屬機關

○ 國內支部 : 9個 支部

北海道支部, 東北支部, 關東支部, 中部支部, 關西支部, 中國支部, 西國支部, 九州支部, Okinawa支部

○ 附屬 國際研究 센타 : 11個所

〈圖 Ⅲ－17〉 JICA國際研修센타 現況

名 稱	設立年度	宿泊施設	主要附帶施設	研修코스
東京 International Center	'64. 9.	• single : 90 • twin : 10	• 國際會議場 (170人收容) • 圖書館	• 經濟開發 세미나 • 高級國家 行政세미나 등6개코스
東京 國際研修 Center	'85. 6.	• single : 421 • twin : 20	• 體育館	• 建築技術 • 貿易振興 세미나등 77개코스
八 王子 國際 研修 Center	'76. 6	• single : 94 • twin : 3	• 테니스코트	• 職業訓練 staff • 政府會計 檢査세미나등 22개코스
筑波 International Center	'80. 3.	• single : 190 • twin : 5	• 테니스코트 • 풀장 • 體育館	• 地震工學 • 河川 및 댐 工學등 15개코스
筑波 國際農業研修 Center	'81. 4.	없음	• 實驗室	• 쌀生産 • 野菜生産등 11개코스
神奈川 國際水産研修 Center	'74. 4.	• single : 33	• 연습선 • 양식실습실 • 기관실습실	• 漁業協同 組合 • 沿岸漁撈法 등 5개코스

名　稱	設立年度	宿泊施設	主要附帶施設	研修코스
大阪國際研修 Center	'67. 4.	• single : 58 • twin : 2	—	• 微生物病 研究 • 建築施工등 21개코스
名古屋國際 Center	'71. 3.	• single : 92 • twin : 4	• 體育館 • 테니스코트	• 陶磁器技術 活用技術 • 표면개질 기술 등 20개코스
兵庫 International Center	'73. 8.	• single : 66 • twin : 6		• 輸出輸入品 檢査技術 • 貿易實踐 指導者등 9개코스
九州 國際 Center	'89. 3.	• single : 140 • twin : 5	• 技術實習室 • 體育館 • 테니스코트	• 産業環境 對策 • 海邊養殖등 32개코스
Okinawa 國際 Center	'85. 4.	• single : 90 • twin : 10	• 電算機 • 視聽覺機器 • 體育館 • 테니스코트 • 풀場	• 情報處理 要員養成 • 視聽覺技術 등 25개코스

○ 附屬研究機關

- 海外移住센타 : 海外移住情報提供, 人材育成 및 研修
- 國際綜合研修所 : 人材養成研修, 人材確保, 調査研究 및 情報整理提供

Ⅳ. 開發調査프로젝트의 發掘 및 形成

1. 開發調査 프로젝트 싸이클

가. 世界銀行

世界銀行에서는 프로젝트의 發掘에서 實施에 이르는 프로젝트 싸이클을 다음 다섯가지 段階로 分類하고 있다.

(1) Project Identification

프로젝트의 上位, 下位計劃과의 適合性을 체크하고 支援對象 프로젝트를 發掘하는 段階

(2) Project Preparation

프로젝트에 관한 妥當性 調査를 비롯하여 現實的인 Arrangement(例컨데 政府의 約束, Infrastructure Arrangement, Marketing의 Arrangement등)를 包含한 프로젝트에 現實的으로 必要한 事項을 準備하는 段階로서, 同 段階에서는 開發調査의 主要部分인 Feasibility 調査가 實施된다.

(3) Project Appraisal

앞에서의 Project Preparation의 段階에서 準備된 妥當性調査 및 諸 Arrangement를 基礎로 該當프로젝트의 實現 可能性과 經濟的 效率을 높이기 爲한 諸條件을 明示하여 世界銀行融資를 하기 爲한 審査를 하고 融資條件等에 關한 交涉을 하여 融資與否를 決定하는 段階

(4) Project Supervision

프로젝트에 대한 融資決定後 建設段階로 進入한다. 이와 關聯, 現實的인 世界銀行借款의 資金支拂이 終了될때까지(實際로는 프로젝트 完決이라고 할 수 있는 建設完了時까지) 프로젝트가 當初 豫定된 日程, 設計 및 豫算에 따라 實現되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만약 當初計劃과 實施가 乖離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原因을 把握한다. 通常 프로젝트期間中에 Project Supervision Report가 作成되고, 終了時에는 Project Completion Report가 作成된다.

(5) Evaluation

프로젝트完了後, 그 實施狀況을 檢討하고 當初의 目的을 有效適切하게 達成하였는지를 確認하며 此後의 프로젝트發掘, 形成 및 實施에 그 結果를 Feed-back 할 수 있도록 하는 作業이다.

나. 日本

開發援助 프로젝트에는 共通的인 싸이클이 있으며 基本的으로는 世界銀行, ADB等의 싸이클과 同一하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實施體制, 組織等의 差異로 인하여 發掘, 形成, 準備등의 業務는 JICA가 遂行하고 있으며 審査, 調達, 貸付, 監理, 評價, 事後監理등의 業務는 OECF에 의해서 實施되고 있다(圖表Ⅳ－1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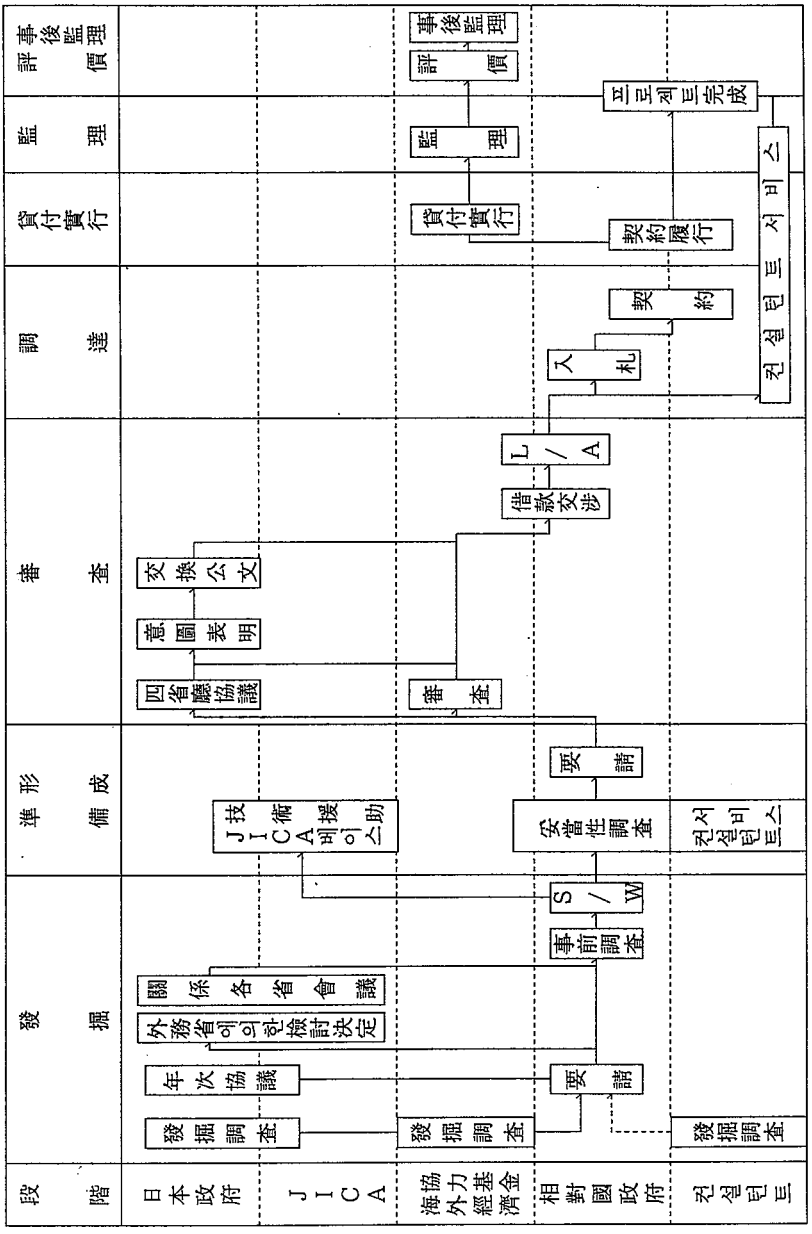
(1) 프로젝트의 發掘

○ 要請 → 調査實施의 採擇決定

相對國으로부터 外交루트를 通하여 支援要請이 있으면 外務省과 JICA는 該當案件에 대하여 關聯情報를 蒐集하고 調査의 實施可能性을 檢討한다. 要請은 通常, 口上書 및 TOR(Terms of Reference)이라는 公的文書의 提出을 通해 行해지며 實施可能性의 檢討는 同 TOR를 基礎로 行해진다. 또한 年次協議(主要援助受惠國政府와의 經濟協力에 관한 定期的會合)나 프로젝트 形成調査時에 要請案件을 檢討하는 경우도 많다. 그 結果 外務省에 依하여 該當案件의 調査實施가 決定되면 關係省廳과의 協議에 따라 調査의 基本方針이 設定된다.

○ 事前調査의 實施 → 本格調査의 國際的約束

〈圖 Ⅳ－1〉 日本의 開發援助 프로젝트 주이클



事前調査團은 通常 官베이스로 構成되어 援助受惠國의 要請內容을 確認함과 同時에 調査對象地域을 踏査하고 本格調査實施上의 問題點把握과 對應策을 檢討하는 것이다. 그리고 政府間에 本格調査의 範圍, 內容등을 提示하는 事業範圍(S/W)에 대하여 協議하고 署名·確認하며, 口上書를 交換한다.

(2) 프로젝트의 形成·準備

• 本格調査의 實施

本格調査는 通常, JICA가 컨설턴트등과 契約을 締結하여 實施한다. 이때 技術的判斷을 要하는 事項에 對하여 諮問받기 爲해 必要에 따라 프로젝트別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들로 構成되는 監理委員會가 設置된다. 現地調査는 S/W에 따라 現地 政府의 協力을 받으면서 實施되며 그 過程에서 擔當官(카운터파트)에게 技術移轉도 행해진다. 調査의 結果는 國內에서의 解析作業을 거쳐 最終報告書로서 作成되지만, 受惠國에 提出되기전에 報告書說明團의 派遣되는 경우가 많다.

• 最終報告書의 提出과 借款要請

以上과 같은 節次에 의하여 作成된 最終報告書는 JICA의 이름으로 援助受惠國에 提出되어 該當프로젝트 實施(資金協力要請)를 決定할때의 參考資料로 提供되게 된다. 同 報告書에는 事業實施者가 프로젝트를 實施하는데 必要한 모든 情報와 計劃이 包含되어 있다. 이때 實施計劃(Implementation Program : I/P)이 提出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I/P에 包含되어야 할 項目은 通常은 經濟的, 技術的, 財務的 側面의 妥當性 確認資料와 經濟性評價分析 및 實施體制등으로서 大部分 F/S에 包含되는 事項들이다.

(3) 프로젝트의 審査

日本政府 및 OECF는 借款要請을 받으면 借款供與가 適當한지 與否를 檢討한다. 이때 日本政府는 日本의 海外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政策에 따라 借款供與가 必要한지 與否를 주로 檢討하며 OECF는 要請프로젝트가 經濟的, 財務的, 技術的, 機構·經營的인 側面에서 妥當한지 與否를 檢討한다.

이러한 檢討 結果 借款供與가 適當하다고 判斷되면 먼저 日本政府는 借款供與

意思를 表明한다. 그후 兩國政府가 借款金額 및 條件등에 관하여 合意에 到達하게 되면 政府間協定(E/N : Exchange of Notes)이 署名된다.

一般的으로 E/N 署名後에 OECF와 借入者間에 借款條件, 프로젝트實施에 必要한 基本的事項, 借款協定(L/A)에 관한 基本的約款등에 對하여 借款交涉이 이루어지며 交涉結果를 바탕으로, 必要時 勸告事項도 包含하여, 借款協定이 調印된다.

(4) 調達 및 借款供與(프로젝트의 實施)

借款協定締結後 借入者는 프로젝트 實施에 必要한 財貨 및 서비스의 調達手續에 들어간다. 調達은 OECF와 借入者間에 合意하는 方法에 따라 實施되어야 하며 公開競爭入札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그 以外의 調達方法, 즉 指名競爭入札이나 隨意契約도 合當한 理由가 있으면 認定되고 있다.

貸付實施에는 몇가지 方法이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上記節次를 거쳐 締結된 契約의 支拂條件에 따라 OECF가 借入者를 代身하여 契約業者에 대하여 支拂하는 形式을 取하며 支拂과 同時에 OECF와 借入者 사이에 債權·債務關係가 發生한다.

(5) 監 理

借款實施의 責任은 借入者 또는 實施機關에 있으나 그 實施能力은 반드시 充分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OECF는 프로젝트의 圓滑한 實施 및 投資效果를 最大限發揮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實施中 技術, 實施體制, 經營, 財務等의 側面에 관해 助言 및 勸告등을 行한다.

監理를 爲하여 借入者로 하여금 프로젝트 諸側面의 進行事項에 關한 報告書(Progress Report)를 提出토록 要求하고 있으며 必要時 監理 Mission을 派遣하기도 한다.

(6) 評價·事後監理

프로젝트가 完成된 後 그 實施狀況을 評價하고 當初의 目的이 有效適切하게 達成되었는지를 確認한다. 또한 此後의 借款業務에 參考가 될 事項을 把握하기 위하여 完了案件을 評價하고 있다. 그러므로 借入에 對한 完了報告書의 提出을 要求함과 同時에 必要에 따라 借入國에 Mission을 派遣하여 調査를 하고 있다.

다. 歐美諸國

(1) 英國, 美國

國別援助計劃에 따라 2國間援助豫算을 作成하여 議會에서 當該豫算이 承認된 後에 案件을 發掘한다. 豫算이 承認되는 段階에서는 案件의 詳細한 記述은 必要하지 않으나 援助分野 및 主要援助對象에 대한 記述은 해야한다.

案件의 發掘에 對해서는 現地事務所 및 大使館等의 職員이 援助受惠國의 關係機關과 政策對話를 할때에 案件의 要請 및 協議가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發掘調査書가 作成된다. 同 프로젝트發掘調査書에 必要項目이 充分히 記述되어 審査要件을 滿足시키는 경우 現地事務所 또는 本部에서 承認레포트를 作成하여 프로젝트 實施協定을 締結한다.

프로젝트發掘調査書 作成을 爲해 종종 補完調査가 實施되고 있으며 必要에 따라 大規模의 F/S 調査등이 實施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英國에서는 技術協力의 豫算項目內에 當該調査費用을 包含시켜 調査를 實施한다.

프로젝트承認, 報告書등에 관한 責任 및 權限등은 候補프로젝트의 規模(주로 金額)에 따라 現地事務所 또는 本部등에 委任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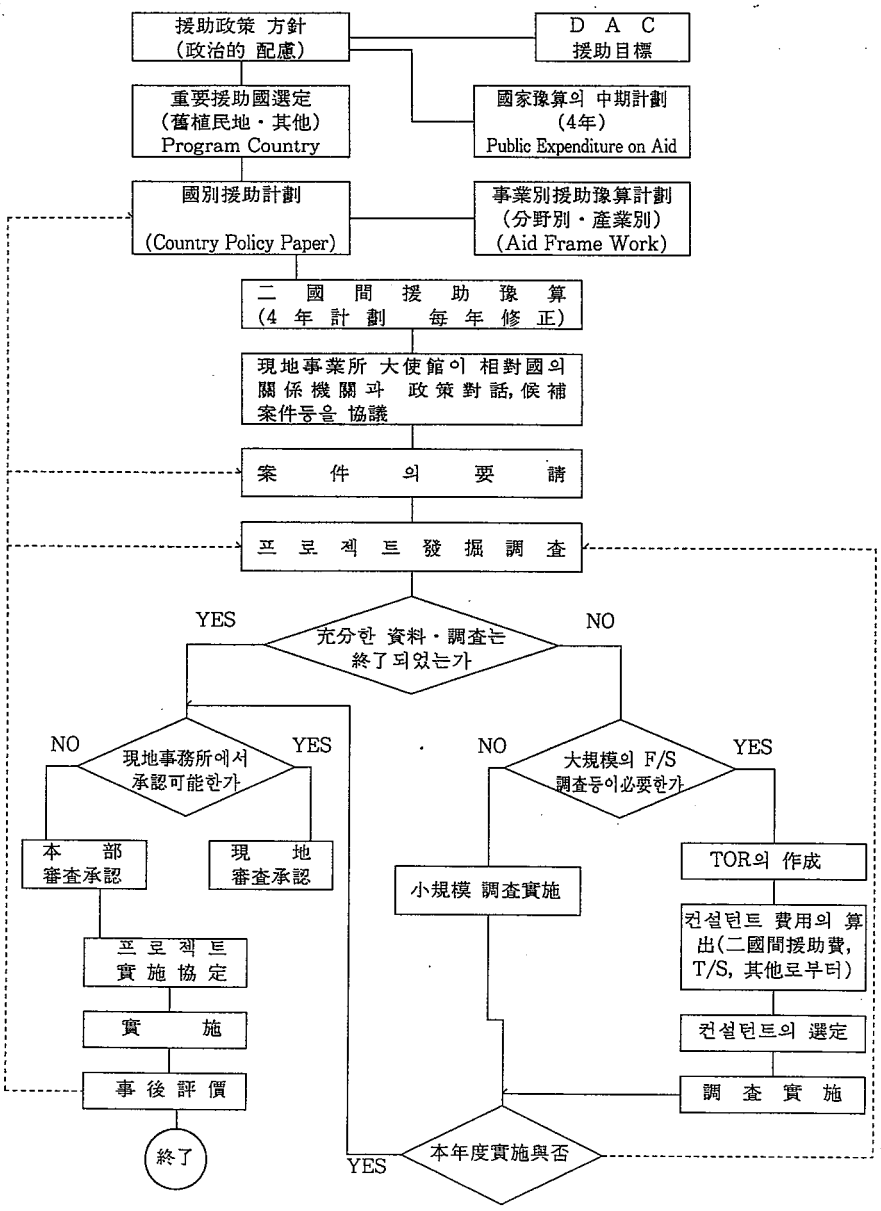
以上의 開發프로젝트 節次를 圖表로 나타내면 〈圖 Ⅳ-2〉와 같다.

(2) 네델란드, 카나다, 스웨덴

國別援助計劃에 따라 프로젝트를 發掘한다. 카나다, 네델란드, 스웨덴등은 援助受惠國에 대하여 議會가 承認한 援助豫算額을 年次協議에서 提示하지만 支援約束은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의 發掘調査書는 現地事務所 및 大使館의 職員등이 責任을 지고 作成한다. 프로젝트 發掘調査書가 承認되면 프로젝트 實施協定이 締結되어 實施段階에 들어간다.

同 國家들은 限定된 援助豫算額을 有效하게 活用키 위해 小規模의 프로젝트 爲主로 援助를 實施하며 大規模의 F/S 調査를 必要로 하는 프로젝트는 별로 取扱하지 않는다. 또한 同 國家들은 世界銀行等 國際機關과의 共同 프로젝트에도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있다.

〈圖 Ⅳ－2〉 英國, 美國의 프로젝트援助節次



한편 이들 國家에 있어서는 現地事務所에 프로젝트를 審査 및 承認할 수 있는 權限은 賦與되지 않는다.

同 國家들의 重點國(Core Country) 및 프로그램國에 대한 開發프로젝트 推進節次를 圖表로 나타내면 〈圖 Ⅳ-3〉과 같다.

(3) 西 獨

西獨의 開發프로젝트 싸이클은 美國, 英國型의 프로젝트 싸이클과 네델란드, 카나다 및 스웨덴型의 프로젝트 싸이클의 中間形態이며 日本의 프로젝트 싸이클과 類似하다. 國別援助計劃은 現段階에서는 試驗的으로 作成되고 있으나 同計劃에 따라 프로젝트가 發掘되는 것은 아니다.

案件이 要請되고 프로젝트發掘調査書가 作成되어 審査 및 承認이 이루어지고 프로젝트實施協定이 締結될 때까지는 二國間援助額은 決定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로젝트 實施協定을 締結하는데 必要한 調査를 實施할 수 있도록 調査豫算이 研究·專門家基金이라는 名稱으로 國別로 配定되어 있다.

同 資金을 使用하여 必要한 調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內容에 따라 GTZ와 KfW間에 業務分擔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資金協力 프로젝트를 主體로 한 大規模의 F/S調査는 KfW에 의해서, 또한 技術協力의 準備에 관한 調査는 主로 GTZ에 依해서 遂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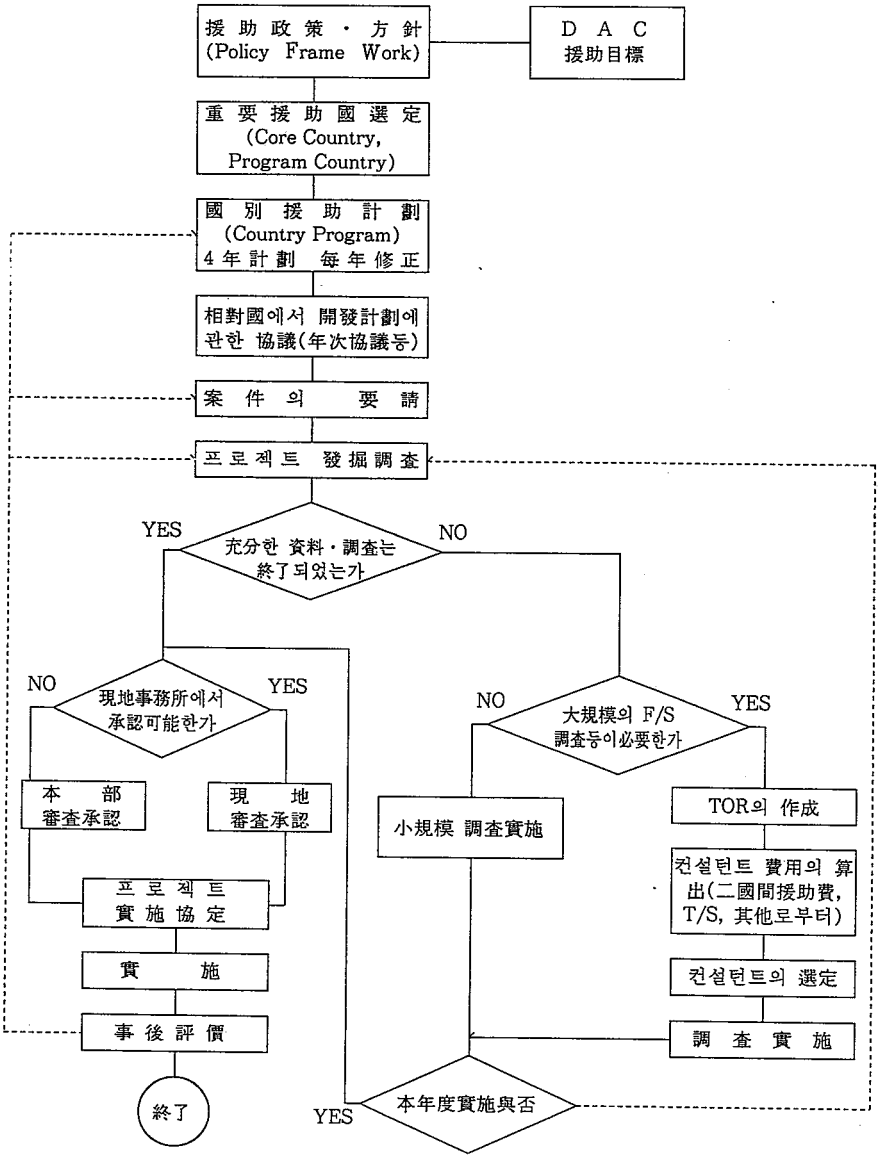
이러한 西獨의 開發프로젝트 推進節次를 圖表로 나타내면 〈圖 Ⅳ-4〉와 같다.

라. 프로젝트發掘·形成의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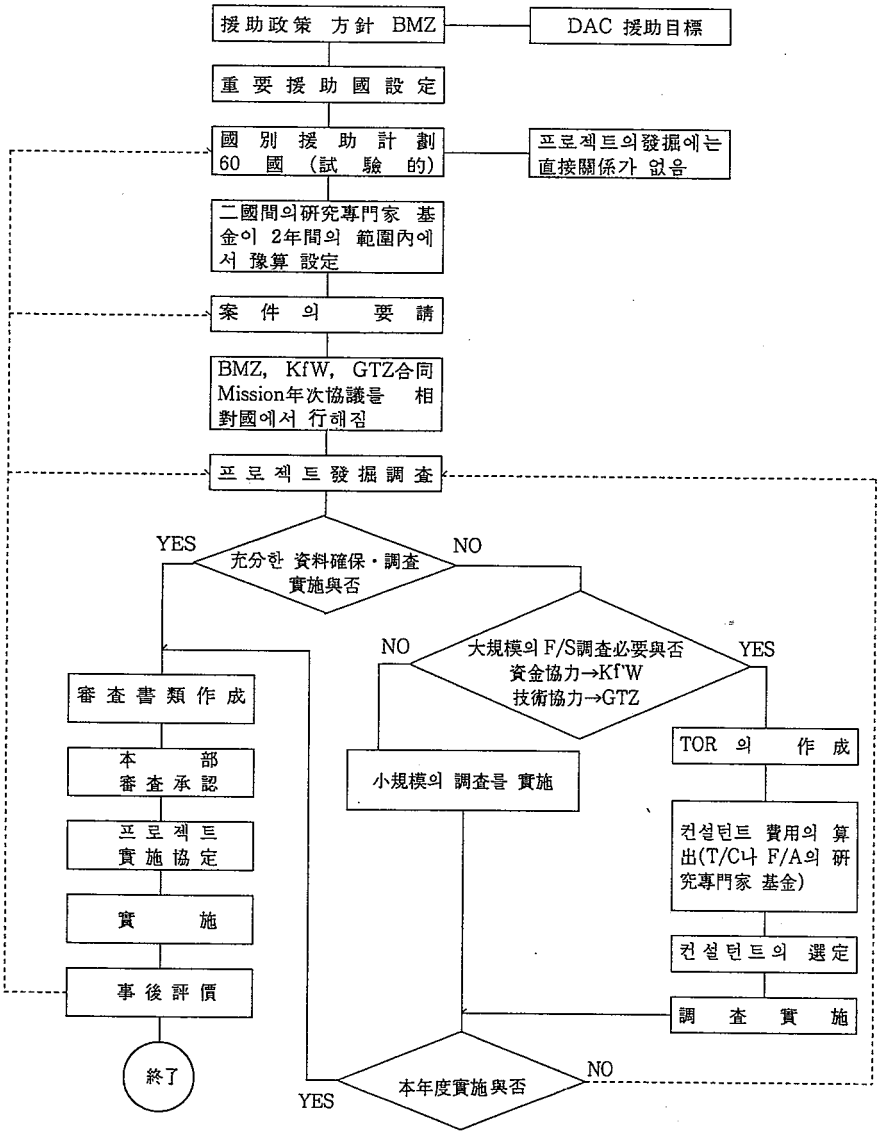
開發援助 프로젝트의 보다 效率的인 實施를 위하여 世界銀行등의 援助機關에는 優良案件의 發掘, 育成 및 形成을 爲한 節次가 定해져 있다. 同 節次는 諸調査機關의 開發援助 프로젝트 사이클에 提示되고 있는 바와 같이 「開發援助프로젝트의 計劃, 案件의 立案 및 策定」 段階에 該當된다.

이 段階는 프로젝트가 公式 要請되기 以前의 初期段階로서 必要한 作業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圖 Ⅳ-3〉 네델란드, 카나다, 스웨덴의 프로젝트援助節次



〈圖 Ⅳ-4〉 西獨의 프로젝트援助節次



① 經濟的 社會的 基礎情報의 分析과 Needs 把握

② 프로젝트 아이디어의 發掘

③ 프로젝트의 構想

④ 初期段階의 檢討

⑤ 프로젝트化(構想段階에서 具體的 內容把握 및 範圍設定段階로)

⑥ 프로젝트의 TOR 確定(內容의 確定)

이러한 作業의 結果는 다음과 같이 報告書 및 計劃등으로 나타난다.

① 國別援助計劃書의 作成

② 援助프로그램의 企劃·立案

- 4年~5年間의 長期的展望에 立脚한 計劃
- 重点支援國, 援助分野의 策定等
- 共同프로젝트의 實施計劃

③ 案件의 立案·策定을 爲한 마스터플랜 및 分野別 分析調査等의 實施 (內部資料로 하는 경우도 있다)

④ 프로젝트發掘前에 二國間 援助額의 明示等(年次協議를 通하여 提示)

JICA의 開發調査事業에서는 援助效率促進基礎調査, 大規模開發프로젝트調査, 事前調査, 林業資源調査, 資源開發協力基礎調査, 實證調査等이 이와 類似한 內容을 갖는다. 그러나 JICA에서는 技術協力의 一環으로서 開發調査事業이 實施되므로 調査의 目的, 方法等에 若干의 差異가 있다.

2. 開發프로젝트의 計劃, 案件의 立案 및 豫算策定

가. 世界銀行

世界銀行의 組織은 傳統的으로 分野別 組織이었으나 1968年에 地域局이 設立되어 農業, 工業, 運輸, 教育등의 分野를 擔當하고 있는 Central Project Staff

과 世界를 6個 地域으로 分割한 地域局의 併存體制로 되어 있다.

同 6個의 地域局에서는 各各 擔當하는 나라의 經濟調査(Basic Economic Survey)를 基礎로 該當國의 經濟의 進行方向을 把握하여 이를 基礎로 農業, 工業等 各 分野의 役割이 定해지고 이 役割期待에 副應할 수 있는 案件이 聚合된다.

그리고 이러한 案件中 向後 5年間 어떤것부터 實施할 것인지 順位를 決定한 다음 各 年度別로 配分함과 同時에 世界銀行이 各種 프로젝트에 對해 얼마만큼의 融資를 할것인지 具體的인 金額까지 算定된다.

그러나 이것은 世界銀行의 內部資料이며(Country Program Paper : CPP) 外部로 公表되지는 않는다. 또한 CPP는 當該年度부터 5年間의 計劃이기 때문에 每年 그 總額이 變更되고 있다. CPP作成을 위하여 종종 産業部門別調査(Sector Survey)作業이 實施되기도 한다. 同調査는 어떤 産業部門을 더욱 詳細히 調査함으로써 보다 具體的인 問題를 把握하고 그 問題를 解決하는데 必要한 프로젝트를 發掘, 確認할 目的으로 實施되고 있다. 이러한 作業이 綜合되어 世界銀行이 向後 5年間 該當國에 援助·融資할 案件의 리스트가 作成된다.

그러나 以上에서 敍述한 바는 世界銀行에서의 各種調査와 프로젝트 發掘의 理論的인 理想型이라할 수 있으며 實際 運用에 있어서 모두 이러한 節次를 밟는 것은 아니다.

實際로 當該國의 向後 5年間의 經濟的 進路를 豫測하는 것이 그렇게 容易한 일은 아니며 또한 그것이 어떤 모델로 導出된다고 해도 擔當者로서는 이에 對해 確信을 가질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農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等 各 部門의 經濟的 役割에 對해서도 確固不動한 指針을 作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事情으로 因하여 CPP에 包含되어 있는 案件에 있어서도 各種 上位計劃과의 關係가 明確히 定義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例컨대 그때까지 CPP에 明示되어 있지 않았던 프로젝트에 對하여 다른 援助機關으로부터 世界銀行의 協力이 要請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完全히 民間레벨에서 實施될 豫定이었던 프로젝트가 어떤 理由로 因하여 政府主導의 프로젝트로 바뀌어 世界銀行

借款을 要請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CPP에서 豫定되고 있었으나 妥當性調査結果 物理的, 經濟的으로 現實性이 없다고 判斷되는 경우도 있으며 地下資源의 推定埋藏量이 當初 生覺했던 것 보다 많다는 것이 判明되어 그 結果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實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實際의 運用에 있어서는 理論的 接近方式인 CPP가 現實要因에 의하여 修正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나 CPP를 결코 過小評價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世界銀行이 어느나라에 대한 援助를 實施함에 있어서 關係者(世界銀行 內部의 직원)間의 共通된 理解를 위한 Frame Work이 作成됨으로써 個別프로젝트에 關한 技術者일지라도 世界銀行 全體事業에 대한 感覺을 가지고 일을 推進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CPP는 多數의 프로젝트가 同時並列로 計劃, 實施되는 機關에서는 當該프로젝트群의 有用한 管理手段이 되는것이다.

나. 各國의 援助프로그램

開發途上國의 開發援助目標는 원래 先進國과의 經濟的 隔差를 縮小하기 위한 經濟成長의 極大化에 있었다. 그러나 最近에는 經濟成長뿐만 아니라 公正한 所得分配 問題도 強調되고 있다. 이와關聯, BHN이 強調되고 있으며 成長에 對한 戰略도 再檢討 되고 있다.

이러한 國際的 趨勢를 背景으로 主要援助供與國은 長期的인 計劃에 따라 重要援助受惠國의 自助努力을 補完 및 促進할 수 있도록 開發援助 프로그램을 樹立하여 基本援助方針으로 삼고 있다.

各國의 開發援助프로그램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美 國

- 特徵 : 美國의 經濟協力政策에는 自國의 安全保障上의 利益과 人道的考慮가 強調되고 있으나 레이건 執權 以來로 自國의 安全保障上의 利益에 더욱 置重하고 있다.

• 重要援助受惠國(地域) :

〈開發援助(DA)受惠國〉

인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벨리즈, 파테말라, 엘살바돌, 코스타리카, 파나마, 에쿠아돌, 페루, 볼리비아, 아이티, 자마이카, 도미니카, 東카리비안, 가이아나, 모로코, 예멘, 차드, 中央아프리카, 카메룬, 적도기니, 콩고, 수단,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말라위, 스와질랜드, 레소토, 자이르,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아, 아파볼타, 가나, 토고,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기니비사오, 감비아, 세네갈, 깝베르데

〈經濟支援基金(ESF)受惠國〉

파키스탄, 타이, 필리핀, 파테말라, 엘살바돌, 코스타리카, 아이티, 도미니카, 東카리비안, 수리남, 모로코, 포르투갈, 터어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오만, 레바논, 키프로스, 수단, 지부티, 소말리아, 케냐, 자이르, 잠비아, 보츠와나, 니제르, 세네갈, 리베리아, 세이시르, 모리셔스

• 主要援助分野 : BHN, 農業, 保健, 女性問題 中心

• 援助計劃 : 國別開發戰略書(CDSS)

(2) 카나다 :

• 特　　徵 : 二國間 援助의 39%를 아시아에, 45%를 아프리카에 나머지 16%를 美洲 地域에 實施한다.
BHN을 重視하며 카나다의 商業的利益을 考慮한다.

• 主要援助受惠國 : 카테고리를 5段階로 分類하여 Core Country(카테고리1)를 重點的으로 支援한다.
자마이카, 콜롬비아, 페루,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리워드윈드워드諸島, 카메룬, 세네갈, 자이르, 아이보리코스트, 루안다, 기니, 말리, 니제르, 아파볼타,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타이, 네팔, 中國

• 主要援助分野 : 農業·食糧, 에너지, 人的資源開發等

• 援 助 計 劃 : 國別援助計劃(CPR)

長期的이고 持續的인 開發援助를 實施키위해 巨額의 豫算이 配分되고 있으며 對象國에 관한 詳細分析과 計劃樹立을 爲해 많은 行政資源이 動員되고 있다.

(3) 프랑스

- 特　　徵 : 舊植民地諸國을 中心으로 한 援助를 實施하며 포루투갈語圈 아프리카 및 英語圈 아프리카의 一部에도 援助한다. 複雜한 援助機構와 地域別 分擔이 特徵이다.
- 重要援助受惠國 : 佛語圈 아프리카 諸國에 最優先順位를 둔다. 특히 그 中에서도 LLDCs諸國을 重視한다. 그 밖의 아프리카 諸國, 中南美諸國에도 援助를 實施한다.
- 重要援助分野 : 農村開發과 食糧戰略, 에너지, 住宅, 保健, 敎育等이며 한편,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民間主導의 開發協力을 實施한다.
- 援助計劃 : 多國間 援助의 比重을 增加시키고 있으며 計劃에 柔軟性을 附與하기 爲하여 各 國別 目標援助額은 作成하지 않는다.

(4) 스웨덴

- 特　　徵 : 長期的展望에 立脚한 最貧國 援助에 重点을 두고 있다. 南部아프리카諸國에 對한 援助가 큰 比重을 点하고 있다.
- 重要援助受惠國 : 앙골라, 보츠와나, 에디오피아, 기니비사오, 케냐, 레소토, 모잠비크,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베트남, 니카라과
- 主要援助分野 : 衛生, 敎育, 林業, 上水道
- 援助計劃 : 國別援助計劃

  스웨덴과의 歷史的關係, 人道的見地, 貧困程度等을 考慮하여 對象國家를 選定한다.

  貧困地域에서의 經濟成長, 經濟的 社會的 側面의 平等, 經濟的 政治的 自律, 民主社會의 實現이라는 스웨덴이 理想으로하는 開發 패턴의 具體化手段으로 國別援助計劃을 作

成한다.

(5) 네델란드

• 特　　徵：

持續的인 開發效果가 나타날수 있도록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生産性向上, 所得 및 雇傭의 創出活動등에 重点을 둔다. 限定된 數個國家 및 地域에서 農·工業開發을 위한 援助를 集中的으로 實施하며 네델란드와의 關係가 깊은 最貧開途國에 대해 優先的으로 援助한다.

• 重要援助受惠國：

파키스탄, 예멘,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수단, 케냐, 이집트, 방글라데시, 사하라地域, 中央아프리카地域, 南部아프리카地域

• 主要 援助分野：地域開發(農林, 生活用水), 工業開發, 教育研究等

• 援 助 計 劃：國別 援助計劃

(6) 西　獨：

• 特　　徵：아프리카諸國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크지만 아시아 中南美를 包含하여 全世界에 援助對象國을 擴大하고 있으며 食糧, 保健衛生, 教育, 住居, 環境等 開發途上國의 住民들의 BHN을 充足하여 生活條件의 改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援助를 重視하고 있다.

• 重要援助受惠國：105個國

• 主要援助分野：貧困打破를 위한 地域開發, 에너지, 環境, 保健, 教育 및 訓練等이 重点 分野이다.

• 援 助 計 劃：IMF, IBRD등 外部機關의 報告書를 參考로 하여 國別로 試驗的으로 作成되고 있다. 公式的인 援助供與指針은 作成되지 않으며 主로 BMZ의 內部資料로서 利用하기 위한 方針이 있을 뿐이다.

(7) 英　國

• 特　　徵：二國間 政府援助의 大部分이 英聯邦諸國에 配分되고 있다.

最貧國最貧層에 대한 援助를 基本方針으로 하고 있다.

無償援助가 많으며 多國間 援助의 比率도 높다. 어려운 財政事情을 反映하여 ODA實績이 減少趨勢에 있다.

- 重要援助受惠國(地域) : 사하라, 에디오피아, 가나,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地中海 및 이집트, 방글라데시, 中國,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오세아니아, 美洲地域, 칼리브地域, 라틴아메리카

(8) 日 本

- 特 徵 : 相對國의 自主性과 自助努力을 重視하여 반드시 相對國의 公式要請을 接受한 後 이를 根據로 受惠國과 對話를 通하여 援助의 內容과 方式을 定한다. 이는 日本의 政經分離外交政策의 一環으로써 日本의 經濟的 實利를 追求하는 結果를 가져온다. 援助理念으로는 人道的 配慮, 開發途上國의 安定化와 相互依存關係의 認識을 내세우고 있으며 最近에는 日本에 對한 批判의 視覺을 意識하여 貧困打破를 비롯한 BHN, WID(Woman in Development), 地球環境問題 등을 強調하고 있다.
- 重要援助受惠國 : 日本의 二國間 ODA의 推移를 살펴보면 10大 供與國이 繼續해서 60%以上을 占有하고 있으며 아시아 國家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그 中 非아시아國家들도 나이지리아를 除外하고는 '88년까지는 全部 中東地域에 限定되어 있었으나 最近들어 폴란드가 包含되고 있어서 日本이 東歐圈에서도 據點國家로서의 確保 戰略을 세우고 있음을 알수 있다.

〈表 Ⅳ－1〉 日本의 10大供與國 推移(ODA全體)

(單位：%)

順 位	1970		1975		1980	
	國 名	占有率	國 名	占有率	國 名	占有率
1	인도네시아	33.9	인도네시아	23.3	인도네시아	17.9
2	韓 國	23.4	韓 國	10.3	방글라데시	11.0
3	파키스탄	10.6	필 리 핀	8.3	泰 國	9.7
4	印 度	8.8	말레이지아	7.4	버 마	7.8
5	필 리 핀	5.2	이 집 트	5.9	이 집 트	6.3
6	泰 國	4.6	방글라데시	5.5	파키스탄	5.7
7	이 란	3.2	印 度	5.5	필 리 핀	4.8
8	버 마	3.2	泰 國	4.8	韓 國	3.9
9	中 國	2.6	이 라 크	3.5	말레지아	3.3
10	싱 가 폴	1.5	나이지리아	3.2	스리랑카	2.3
10個國 占有率合計		97.0		77.7		72.6

(單位：%)

順 位	1988		1989		1990	
	國 名	占有率	國 名	占有率	國 名	占有率
1	인도네시아	15.3	인도네시아	16.9	인도네시아	12.5
2	中 國	10.5	中 國	12.3	中 國	10.4
3	필 리 핀	8.3	泰 國	7.2	필 리 핀	9.3
4	泰 國	5.6	필 리 핀	6.0	泰 國	6.0
5	방글라데시	5.3	방글라데시	5.5	방글라데시	5.4
6	파키스탄	4.7	印 度	3.8	말레이지아	5.4
7	버 마	4.0	스리랑카	2.7	터 어 키	4.8
8	스리랑카	3.1	파키스탄	2.6	파키스탄	2.8
9	印 度	2.8	나이지리아	2.4	스리랑카	2.5
10	이 집 트	2.7	케 냐	2.2	폴 란 드	2.1
10個國 占有率合計		62.4		61.6		61.2

- 主要分野 : 社會間接資本, BHN, 農業, 保健, WID, 環境, 鑛工業등
- 援助計劃 : 地域別 方針, 國別援助研究報告書(CR)
  - 主要 援助對象國에 對해서 CR을 作成하고 있으며 地域別 研究會도 活性化시키고 있다.

다. 各國의 國別援助計劃

主要 先進諸國들의 國別援助計劃書의 概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美 國

USAID의 現地事務所는 本部의 方針에 따라 國別開發戰略書(CDSS :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를 作成한다. 同 戰略에는 受惠國의 産業分野別 5年間 援助計劃이 包含되어 있는데 重要對象國, 開發政策에 變更이 있는 國家 및 現地 事務所가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경우등에 對해서는 每年 再檢討하여 修正, 補完하고 있다.

(2) 카나다

CIDA에서는 國別援助計劃(Country Aid Programme)이 重要國家에 대해서만 作成된다. 重要國家에는 長期的, 繼續的인 開發援助가 計劃되고 있다. 이를 爲해 多額의 豫算이 配分되며 詳細한 分析 및 長期的 計劃樹立을 爲해 行政資源이 投入되고 있다. 政策가이드라인에 依하여 二國間援助의 75%가 重要國家에 配分된다.

國別援助計劃은 5年間의 援助受惠國에 對한 援助의 方針을 提示하는 것이며 그 內容에 있어서는 所要資金, 規模, 重点分野, 援助對象集團, 援助實施方式, 다른 援助機關과의 協調, 프로젝트 實施方法, 受援國內에서의 制約要因등이 包含되고 있다.

이 計劃에는 具體的인 프로젝트는 提示되지 않으며 計劃全體의 金額에 對해서도 流動的이다.

(3) 스웨덴

SIDA가 國別援助計劃(Country Programming)의 原案을 作成하고 外務部가 이를 承認하는데 SIDA의 原案이 거의 修正되지 않고 그대로 採擇되는 경우가 많다.
國別援助計劃의 作成 對象國은 프로그램國인 17個國에 限定되어 있다.

同 國別援助計劃은 議會에서 承認을 받아 向後 3年間의 援助上限額을 策定함으로써 援助受惠國의 開發戰略에 寄與하고 援助效率을 높이기 위해 同 國別援助計劃이 作成되고 있다.
同 計劃의 內容에는 一般經濟槪況, 外國援助의 動向, 스웨덴에 의한 援助의 實績, 分野別槪況, 有望프로젝트에 대한 向後 三年間의 年度別 援助上限額等이 包含된다.

(4) 네델란드

援助資金의 效率的利用과 보다 計劃的인 援助의 實施를 위해 10個의 重点援助受惠國(프로그램國)과 3個의 重要地域(프로그램地域)이 選定되고 國別援助計劃(Country Policy Plan)이 外務部國際協力總局의 地域擔當課에 依하여 作成된다.
이 計劃은 援助實施의 基礎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重視되고 있다.

그 內容은 네델란드의 援助 프로그램의 再檢討, 現在까지의 援助의 實績, 內容 및 實施上의 問題点, 向後의 援助方針, 네델란드의 重点分野인 食水開發, 農村開發, 農產物加工等에 관한 記述과 함께 敎育訓練開發과 女性의 役割(WID), 環境等에 관한 記述등으로 構成되고 있다.

(5) 西 獨

BMZ의 地域擔當課가 國別援助計劃을 作成한다. 同計劃은 1986年度에 試驗的으로 6個國을 對象으로 作成한 以來 30~40個國을 目標로 作成對象國을 擴大해 가고 있으며 政策決定을 위한 準備資料的 色彩가 짙다.

同 計劃은 內部資料이며 相對國과 이에 대한 討議는 하지 않는다. 同 計劃의 作成에 있어서는 KfW, GTZ로부터의 情報외에 世界銀行, IMF等의 報告書가 情報로 活用되고 있다.

同 計劃은 15페이지 前後의 比較的 簡單한 資料이며 經濟全般의 分析, 援助

의 實績, 今後의 協力의 可能性, 分野別 分析, 다른 援助供與國의 動向等을 包含하고 있다.

(6) 英 國

英國의 援助는 舊植民地에 對한 行政指導에 起源을 두고 있기 때문에 援助政策立案과 實施에 관한 計劃化 시스템은 매우 發達해 있으며 많은 人力과 時間을 同 計劃策定作業에 投入하고 있다. 그 結果, 個個의 프로젝트援助에 對한 約束 節次가 아주 簡素化되어 있다.

援助計劃의 主要 手段으로는 國家豫算의 中期計劃의 一環으로서의 援助豫算의 支出範圍 策定(Public Expenditure on Overseas Aid), 4年間에 걸친 事業別援助豫算支出計劃(Aid Frame Work), 國別政策(Country Policy Paper)등이 있다.

그 中에서도 特히 事業別 援助豫算支出計劃과 國別政策이 重要視되고 있다.

(가) 國家豫算의 中期計劃

英國에서는 國家豫算全體의 支出計劃의 槪要를 4年間에 걸쳐 作成하여 이것을 各種 國家事業의 指針으로 公表하는 制度를 1969年부터 導入하였다. 이 制度는 Public Expenditure Survey라고 불리며 그 內容은 Public Expenditure White Paper로서 每年 12月頃에 公表되고 그 다음해 4月부터 始作하는 新會計年度 以後의 4個年을 對象으로 한다. 이 中期計劃內에서 開發援助는 Overseas Aid로 하여 1個項目으로 集計되고 있다.

財務部는 每年 2月 外務·英聯邦部(FCA)로부터 基礎資料로서 4個年의 援助支出展望(거의 海外開發廳關係)을 提出받아 이를 參考로 하고 또한 FCA海外開發廳側과 協議하여 同年 6月에 財務當局이 原案을 作成하여 關係閣僚의 協議를 거쳐 年末에 政府의 中期計劃을 決定한다.

(나) 事業別 援助豫算計劃

海外開發廳은 上記 (가)項의 中期計劃의 範圍內에서 4年間의 詳細한 事業別援助豫算支出計劃(Aid Frame Work)을 作成하고, 이에 따라 援助를 實施한다. 同 Aid Frame Work는 每年 更新된다.

海外開發廳의 各局, 課로부터 提出되는 事業計劃案은 同廳의 主務課(Finance

Department)로 集計되고 主務課가 中心이 되어 經濟企劃스탭(EPS)의 意見을 參考로 하여 同廳의 原案을 作成하여 外務·英聯邦部本部(FCA), 財務部, 通産部(DTI) 및 Bank of England와 各各 協議한 後 正式 決定한다.

Aid Frame Work는 支出베이스로 作成되고 ① 二國間資金協力, ② 技術協力, ③ 多國間協力, ④ 英聯邦開發公社(CDC)에 대한 貸付等의 主要項目으로 構成된다. 二國間資金協力은 國別表示를 하고 있으나 다른 項目에 대해서는 事業別 表示를 한다. 또한 Aid Frame Work의 作成에 있어서 個個의 國家 내지 事業의 開發需要나 可能性을 考慮함과 同時에 政治的, 商業的 見地에서의 檢討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作成된 Aid Frame Work는 公表되지 않는다.

(나) 國別政策

海外開發廳은 上記의 Aid Frame Work와 並行하여 國別로 資金·技術協力의 需要와 이에 대한 對處方法을 集計한 國別政策(Country Policy Paper)을 作成하고 있다.

同 政策書는 一定한 樣式에 따라 作成되고 援助對象國에 대한 ① 經濟情勢, ② 援助의 歷史的, 政治的, 商業的 背景, ③ 開發關聯行政의 從來의 實情, ④ 開發計劃, ⑤ 必要한 援助의 形態, ⑥ 政治的 商業的 見地에서의 援助의 檢討, ⑦ 過去 5個年의 諸外國으로부터의 援助總量등을 記述한 다음 ⑧ 向後 5年間의 英國의 援助方針등을 記錄함과 아울러 主要 프로젝트에 대한 援助支出日程을 記載한다.

國別政策의 原案은 먼저 海外開發廳의 經濟企劃스탭(EPS)의 地域擔當 專門家가 主體가 되어 立案하고 同廳의 地域局이 最終整理한다. 또한 海外開發廳의 海外事務所도 原案作成에 關與하고 있다. 國別政策書의 原案은 在外公館으로 提出되어 그 檢討를 받은 다음 外務·英聯邦部 本部(FCA)를 비롯하여 財務部, 通産部(DTI) 및 Bank of England로 送付되어 그 檢討를 거쳐 正式 決定된다. 同 國別政策은 每年 再檢討되고 更新된다.

또한 國別政策도 Aid Frame Work와 마찬가지로 公表되지는 않는다.

(7) 日 本

日本의 援助는 分野別로 實施되고 있기 때문에 JICA의 組織도 分野別 體制

로 되어 있다. 그러나 日本의 援助는 아시아 地域 特히 그中에서도 ASEAN國家들에 集中되어 있으며 世界 各地에 據點國家들이 選定되어 現地에 JICA의 事務所가 設置되어 있다. 1988年 6月에 樹立된 「第4次 中期目標」의 骨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88~'92年(5年)間 ODA實績總額을 500억달러 以上이 되도록 努力하며 ODA의 對GNP比率의 꾸준한 改善을 꾀한다.

② LLDC援助의 無償化를 더한층 強化하고 債務救濟措置를 擴充한다.

③ 技術協力의 擴充, NGO와의 連携強化, 國際文化交流를 促進한다.

④ 國際機關에 대한 人的 貢獻強化, 國際機關을 通한 對 開途國 技術移轉을 促進한다.

⑤ 円借款의 質을 改善하고 一般 Untied化를 推進한다.

⑥ 要員의 擴充, 實施體制의 充實化 및 民間活動과의 連携를 強化한다.

이러한 脈絡에서 地域別 方針이 作成되고 있으며 日本의 重要 協力 對象國에 對해서는 國別援助研究會가 組織되어 Country Report가 作成되고 있다. 同方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地域別 援助方針 槪觀〉

• 아시아

日本은 歷史的, 地域的, 經濟的, 政治的으로 密接한 關係가 있는 아시아地域을 第一 重視한다. 正確히 말해 아시아는 NICS로부터 LLDCs國家에 이르기까지 經濟發展程度가 크게 差異가 나기 때문에 援助形態의 選擇에 있어서 이러한 狀況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 ASEAN 諸國

아시아에서는 ASEAN 各國이 政治的 經濟的 安定勢力으로서 存在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ASEAN 諸國은 NICS의 뒤를이어 經濟成長을 追求하고 있어서 資金需要가 旺盛하다. 經濟發展에 따라 民間部門 投資의 急增으로 經濟, 社會, 社會間接資本등의 擴充이 必要하게 되어 繼續 日本의 資金協力에 對한 期待가 크다. 이를 爲해 有償資金協力이 中心的 役割을 하고 있다.

• 中 國

安定된 中日關係를 維持發展 시키는것은 日本 뿐만 아니라 아시아, 太平洋의 平和와 安定을 위해 重要하다. 日本은 中國의 經濟改革, 對外開放政策을 積極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中國의 安定에 不可缺한 近代化를 위한 資金需要와 技術的 Needs는 中國의 國土 및 人口規模 等의 側面에서 볼때도 매우 重要하다. 中國의 經濟水準을 反映하여 向後에도 有償資金 協力,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 등의 各種 ODA形態를 잘 調整하여 協力할 必要가 있다.

• 西南 아시아

많은 人口를 가지고 있으며 貧困問題가 深刻하며 民族, 言語, 宗教의 多樣性에 起因하는 同地域의 不安定 要因이 社會問題化, 政治問題化될 危險性이 常存하기 때문에 同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支援이 不可缺하다. 各 國家들이 모두 非同盟穩健派에 속하고 있으나 日本과의 友好協力關係의 推進을 重視하고 있다. 이 地域은 開發需要가 높은 ODA의 役割도 크다. 西南아시아 諸國에 대해서는 B/P(Balance of Payment) 支援型의 援助를 繼續할 必要가 있으나 그 實施에 있어서는 積極的으로 世界銀行등 國際開發金融機關과 協調하면서 이들 諸國의 持續的 發展의 基盤이 되는 改革努力을 促進하는 것이 重要하다. 또한 이 地域은 아시아에서 第一 貧困한 地域이어서 無償資金協力의 役割이 크며 技術移轉 및 人才育成觀點에서 技術協力을 더한층 強化시켜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

• 中 東

石油의 安定供給確保의 觀點에서 日本에게 매우 重要할 뿐만 아니라 同地域은 世界의 安全保障上으로도 重要한 意味를 갖는 地域이다. 所得水準이 높은 國家와 낮은 國家가 混在하기 때문에 一律的인 對應은 困難하며 多樣한 域內國의 實情에 따라 細密히 對應할 必要가 있다. 産油富裕國에 대해서는 日本의 協力은 原則的으로 技術協力手段에 限定되는 國家가 많으나 限定된 手段의 有效 適切한 活用으로 아랍 諸國全體安定에 日本이 貢獻해 가는 것이 大端히 重要하다.

中東은 日本에게 比較的 낯선 地域이므로 國際機關의 노우하우 活用도 重要하

지만 同時에 二國間 ODA에 의해 日本의 支援을 널리 알리는 것도 外交的으로 重要하다.

• 中南美

傳統的으로 日本과 友好的 關係에 있는 國家가 많고 日本系 住民이 居住하는등 特殊한 關係가 있다. 많은 나라가 累積債務問題가 있지만 所得水準이 比較的 높고 發展可能性이 있다. 한편 所得水準이 높기 때문에 文化無償援助를 除外한 無償資金協力을 實施하기 困難한 國家도 많으므로 円借款을 끌어들이는 선에서 民間投資의 增大를 꾀하는 것도 重要하다. 또한 아직도 所得水準이 낮아 無償資金協力에 크게 依存하는 國家도 있으므로 留意해야 한다.

中南美諸國의 累積債務問題의 根本은 資金借款이 效果的으로 生産, 成長에 連結되지 못하는 構造的인 問題이므로 國際金融機關과의 協調아래 二國間 ODA를 機動性 있게 實施하는 것이 重要하다. 民主化의 促進 및 定着과 經濟再建에 도움이 되는 援助를 向後에도 實施하는 것이 重要하다.

• 아프리카

國際社會의 關心이 높고 日本도 基礎生活分野(BHN)에서의 援助 및 人道的 援助를 中心으로한 二國間 援助를 通해서 貢獻할 必要가 있다. 낮은 所得水準, 深刻한 累積債務問題를 勘案 多數의 國家에 대하여 無償援助協力 및 技術協力 등을 中心으로 해야 한다. 또한 經濟狀況이 比較的 良好한 國家에서는 經濟狀況을 確認해 가면서 借款을 中心으로한 援助實施가 必要하다.

또한 非效率的 經濟構造를 改善하기 위해 世界銀行, IMF의 協力下에 構造調整政策을 實施하고 있는 나라가 많으며, 이들 國家에서는 國際機關등과의 協調가 不可缺하다. 日本은 世界銀行을 中心으로 한 아프리카에 대한 國際援助協調의 큰줄기인 「사하라 以南 아프리카 責務困窮低所得國家에 대한 特別 援助 프로그램 2」 (SPA 2)에 따라 構造調整努力의 支援(円借款에 의한 協調融資 및 經濟構造 改善努力 支援 無償資金協力)을 하고 있다.

• 東 歐

日本은 二國間 ODA에서 차지하는 東歐의 比重이 매우 制限되어 있으나 東

歐의 民主化에 대해 積極支援努力을 表示할 必要가 있다. 協力의 形態로는 若干의 無償資金協力의 實績은 있으나 技術協力을 中心으로한 社會間接資本, 環境案件등을 中心으로 円借款을 機動性있게 實施하는 것이 重要하다.

• 南太平洋諸國

PNG, 피지를 除外하면 人口가 매우 적은 貧困國家가 많아서 日本의 支援은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이 中心이 된다. 이들 諸國에 있어서 日本의 援助는 매우 重要한 것이므로 域內協力의 動向도 念頭에 두고 詳細하고도 柔軟한 特別配慮에 의한 援助의 實施가 必要하다. 이들 諸國의 援助供與에 있어서는 이들 國家의 經濟規模를 일응 勘案할 必要가 있으나 自立可能한 國家에는 円借款을 包含해 積極的 協力을 해나갈 必要가 있다.

라. 年次協議

主要先進國들은 開發援助 프로젝트發掘, 要請案件의 確認, 協議, 協定等을 爲하여 援助供與國과 援助受惠國間에 充分한 論議가 이루어지고 있다. 年次協議에 관한 槪要를 國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프랑스

- 各國과 每年 1回 經協全般에 걸친 協議를 한다.
- 必要에 따라 分野別 協議를 하는 일도 있다.
- 團長은 重要한 나라인 경우는 經濟部의 局長級이 그 任務를 맡으며 나라에 따라 다르다.
- 經濟部 및 現地大使館의 經濟班(協力 Mission)外에 研究部 CIRAD(國際農業開發研究센터), ORSTOM(海外科學技術研究公社)에서 參加하는 경우도 있다.
- 本國에서 派遣된 7~8名을 包含하여 全體 10名 程度로 構成된다.
- 파리와 現地에서 번갈아 開催된다.
- 必要에 따라 分野別로 委員會를 構成하는 경우도 있다.

(2) 스웨덴

- 프로그램國에 對하여 2年에 1回의 政府베이스의 協議를 하고 있다.
  (1年에 1回인 나라도 있다)
- 2年間에 걸친 스웨덴의 援助協定의 締結(援助額, 援助條件, 援助實施節次등이 包含된다.)
- 스웨덴側에서는 外務部事務次官補, 二國間 援助部長, Country Officer, SIDA本部, 大使館, 開發協力事務所에서도 參加한다.
- 相對方 政府에서는 對外協力擔當官廳이 代表가 된다.

(3) 네델란드

- 年2回 國別經濟 調査團이 派遣된다.
- 每年初에 國際協力總局의 部長 또는 課長級을 團長으로 한 調査團(現地의 大使가 團長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派遣된다.
  ·· 派遣人員은 2~3名이며 大使館에서도 2~3名이 參加한다.
  ·· 每年初의 協議는 國別計劃에 대한 說明, 合意, 正式議事錄作成등이 主目的이다.
- 7~9月頃 小規模의 中間 評價團이 派遣된다.
  ·· 中間 評價에서는, 案件의 推進狀況의 체크가 中心이며 議事錄은 作成되지만, 正式合意를 要하는 것은 아니다.

(4) 西 獨

- 主要國에 對해서는 2年에 1回, 그밖의 나라들에 對해서는 年1回 實施된다. 본 또는 對象國에서 開催된다.
- 2年間에 配定된 金額을 提出하고 個個의 프로젝트에 對해 協議한다.
  '83年에 對象國이 長期 展望을 할 수 있도록 主要國에 對한 協議는 2年에 1回로 變更되었다.
- 西獨側에서는 BMZ, 大使館, GTZ, KfW등이 參加한다.
- 60~70個國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每年 15~20個國과의 協議를 본에서 實施하며 同一回數의 協議를 相對國에서 開催한다. 작은 나라의 경우는 大使館 및 본에서 派遣되는 政府擔當者 레벨에서 實施된다.
- 參加人數 : 印度의 境遇를 例로들면 現地派遣 人員은 地域擔當部長外에 大

使館, 職員, 通譯을 包含해 5~6名 程度이며 본에서 實施하는 경우는 西獨의 參加人員이 더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BMZ, GTZ, KfW外에 財務部, 外務部가 參與하기도 한다.

- 團長으로는 地域擔當局長 또는 部長이 任命된다.
- 實績의 評價, 協力의 豫測, 프로젝트의 提案과 承認 및 其他 一般的인 問題에 對하여 協議한다.
- 合意文書作成 : 名稱, 金額, 承認條件등에 관한 事項等을 包含하여 合意文을 作成한다.

(5) 英 國

- 인도와 파키스탄에 對해서는 次官補가 年1回 訪問하여 援助의 全體的인 範圍에 對하여 協議한다.
- 아프리카局長은 年1回程度 東部 아프리카 및 南部 아프리카를 訪問한다.
- 海外開發事務所로부터는 所長 및 事務所職員이 隨時로 管轄國을 訪問하여 協議한다.

(6) 日 本

- 每年 ASEAN國家에 技術協力 調査團을 派遣하여 相對國政府가 要請한 開發調査 案件등에 關해 協議한다.
- ASEAN 以外의 地域에는 經濟協力 調査團이 派遣된다.
- 이들 調査團에는 外務省 職員과 JICA의 職員이 包含된다.
- 한편 主要協力 對象國(48個國 50個 地域)에는 JICA海外事務所가 設置되어 開發調査 등에 대한 常時協議體制를 갖추고 있다.

마. 發掘메모

日本의 경우는 援助受惠國으로부터의 要請 또는 年次協議를 通하여 開發援助 프로젝트가 發掘되며 事前 調査團을 派遣하여 그 內容을 檢討, 確認하고 S/W을 協議 署名한 다음 本格 調査를 推進하는 것이 一般的인 開發調査의 흐름이다.

그러나 다른 先進國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發掘 메모가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이 메모가 프로젝트實施를 위한 審査에 通過되는 경우는 實施를 着手하지만 記載事項이 不充分하면 追加調査를 行한 後 實施段階에 進入하는 것이 通例이다. 따라서 프로젝트發掘메모 作成은 곧 프로젝트의 形成이라고 看做되는 경우가 많다.

發掘메모記載事項, 그리고 이를 擔當하는 技術專門要員의 活用등 프로젝트發掘에 關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發掘

가) 네델란드

프로젝트發掘은 在外公館이 責任지고 있으나 이를 支援하기 위하여 外務部로부터 公館에 産業分野別 專門家가 派遣되고 있으며 必要에 따라 本部職員, 個人 컨설턴트 및 公的研究機關의 職員등으로 構成된 事業發掘團이 派遣되어, 在外公館의 活動을 支援하고 있다. 또한 在外公館의 主導에 依한 案件發掘以外에 NGO, 民間企業, 相對國政府에 依하여 大使館에 提出되는 프로젝트 提案書등에 依한 案件發掘도 있으며 民間企業등이 國際協力總局에 直接 提案, 說明하는 경우도 있다.

네델란드의 案件 發掘의 特性은 旣存에 發掘, 實施된 事業과 關聯하여 新規案件이 發掘된다는 點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우를 例로 들면 新規案件의 80%는 現在進行中인 프로젝트에 關聯하여 發掘된 것이며 60~70%는 現在實施중인 프로젝트의 繼續事業關聯 案件이다.

案件發掘메모는 大使館의 職員이 事業의 背景, 意見等을 聚合하여 作成하며 그 分量은 2~3페이지부터 15페이지 以內로 되어 있다.

審査段階에서는 相對國의 正式要請이 必要하며 이 段階에서 相對國과 充分한 相互協議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西 獨

• 資金協力

Follow Up Mission에 依한 討議가 開催되며 BMZ, KfW, GTZ에 依한 프로젝

트發掘 調査團이 派遣된다. 同 調査團은 各 地域部의 Regional Economists가 主體가 되어 있다.

또한 短期 專門家(個人 컨설턴트, 大學敎授, 硏究機關의 職員)의 派遣에 依한 情報蒐集 補完調査도 實施된다.

• 技術協力

다른 프로젝트에서 派生되는 경우가 많으며 政府間의 協議에서 發掘되는 경우도 있다. 技術協力의 프로젝트는 實施하면서 發展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計劃은 再檢討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初期의 段階에서의 調査는 近年에는 簡略化되어 가는 傾向이다.

GTZ의 26個의 海外事務所中 12個의 大規模事務所는 技術協力案件을 發掘, 形成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다.

(2) 發掘메모 記載事項

國別 프로젝트 開發메모 記載事項을 살펴보면 〈圖 Ⅳ-5〉와 같다.

〈圖 Ⅳ-5〉 各國의 國別프로젝트 發掘메모 記載事項

美國	카나다	스웨덴	네델란드
10페이지 程度 ○ 事業名 ○ 開發프로그램의 構成要因 ○ CDSS와의 關聯事項 ○ 섹터의 目標 ○ 프로젝트의 內容 • 必要性 • 프로젝트의 目的과 目標 • 豫想되는 結果 • 實施方法 ○ 프로젝트選定과	10페이지 程度 ○ 事業名 ○ 國家 ○ 期間 ○ 見積코스트와 援助條件 ○ 實施計劃 (可能한경우) ○ 當該產業分野의 分析 ○ 背景 ○ 目的 ○ 事業의 說明과 範圍 ○ 判定을 爲한 資料	6페이지 程度 ○ 要約과 結論 ○ 背景 ○ 要請國側의 目的 ○ 產業分野 ○ 프로젝트에 대한 內容 • 過去의 類似案件 • 必要性 및 目的 • 案件의 內容 • 分析 및 評價 ○ 提案內容 (結論)	10페이지 程度 ○ 事業名 ○ 位置 ○ 期間 ○ 受惠國, 機關의 投入 ○ 네델란드側의 投入 ○ 事業의 槪要 ○ 目的 ○ 直接效果 ○ 事業內容 ○ 手段 ○ 要請者 ○ 要請日

美　　國	카　나　다	스　웨　덴	네 델 란 드
向後의 프로젝트 形成 • 社會的考察 • 對象地域 • 經濟的考察 • 類似프로젝트 經驗 • 受惠國實施機關 • 各種支援의 實現可能性 • 코스트見積 • 具體化에 對한 指針	○ 財務狀態 ○ 特記事項 ○ 프로젝트매니저		○ 情報調査, 分析 ○ 프로젝트形成段階

(3) 技術專門要員의 活用

가) 프랑스

大使館의 經協班(協力 Mission)에는 카운셀러(技術顧問)가 있는데 國家에 따라 人員數, 專門分野가 各各 다르다.

經濟協力部는 植民地時代부터의 傳統的으로 地域開發, 農業開發, 初等敎育等의 分野에 대한 人材가 豊富하다. 其他 分野에서는 他部處로부터 經濟協力部에 派遣된 專門要員에 依存(給料도 經協部에서 支拂한다)하고 있다.

나) 스웨덴

SIDA의 專門要員으로 個人 컨설턴트를 活用하여 案件發掘等에 必要한 調査를 實施하고 報告書를 作成한다.

다) 네델란드

國際協力總局 技術顧問部가 地域部에 依한 案件發掘 調査團等에 派遣될 要員에 대해 助言, 監督하며 技術情報 및 資料蒐集도 하고 있다.

技術顧問으로는 農村開發, 農業技術, 農業政策, 保健, 飮料水, 生態學, 中小企

業, 社會間接資本, 女性問題등의 專門家 10名 程度가 있는데 外務部의 職員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契約職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또한, 技術顧問部는 現在 契約職으로 10名程度의 技術專門家를 在外公館에 派遣하고 있으며 이들이 現地에서의 案件發掘에 核心役割을 遂行케 하고 있다. 技術顧問部는 同 派遣人員을 20名 水準을 目標로 增加시켜 가고 있다.

라) 西 獨

• KfW 技術部

엔지니어 50名과 컨설턴트 등이 所屬되어 있다. 프로젝트調査團 中에는 技術部要員 1名以上이 반드시 包含된다.

各部에서 하는 일의 95%는 資金協力關係事業이므로 財政的危險를 最小化하는 것을 任務로 한다.

• GTZ 國別擔當官(Country Officers)

高位級 25~30名의 國別擔當官(Country Officers)이 海外事業所들을 擔當하고 있다. 이들은 經濟學者, 社會學者등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必要時 GTZ 內外의 專門家와 協議하면서 業務를 處理하도록 되어 있다.

마) 英 國

• ODA本部

ODA本部의 專門要員에는 地域局에 所屬되어 있는 사람과 獨立된 技術部(長은 技術顧問(次官補級))에 所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엔지니어 12名, 建築家 2名등 總 14名이 있다.

• 海外開發事務所

全體 12名이 派遣되어 있으며 全員이 土木技士이다.

• 엔지니어의 役割

TOR의 作成, 接近方式의 考案, 槪念의 形成(Formulation), 進行狀況點檢, 技術問題에 관한 助言, 外部專門家와의 意見調整등을 遂行한다. 開發事務所에서는 特히 TOR의 起案, 支拂計劃의 作成, F/S의 必要性에 對한 助言등을 擔當하고 있다.

Ⅴ. 開發調査의 컨설턴트活用

開發調査 및 開發援助 프로젝트의 實施에 있어서 그 結果의 質을 左右하는 것이 컨설턴트의 活用이다. 다시 말해서 컨설턴트를 有效適切하게 活用해야만 開發調査의 目的을 達成 할 수 있는것이다. 世界銀行과 先進各國의 컨설턴트活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컨설팅業務의 內容

世界銀行과 英國은 外國의 開發프로젝트와 關聯하여 컨설팅業務를 다음 6種으로 分類하고 있다.

가. 프로젝트發掘調査(事前調査)

開發프로그램 및 産業分野別 分析에 따른 開發計劃事業을 上位, 下位計劃과의 關係下에서 適合與否를 檢討하여 支援對象프로젝트를 發掘하는 調査業務의 第一段階를 프로젝트發掘調査 또는 事前調査라 한다.

나. 豫備妥當性 調査 및 妥當性調査(Prefeasibility Study & Feasibility Study)

特定프로젝트의 推進決定에 앞서 實施되는 各種調査에서 技術的, 經濟的으로 妥當한지 與否를 決定하고 當該 開發프로그램과 投資프로젝트를 實施하거나 그 效率을 높이는데 必要한 政府의 政策 및 制度등의 變更·改善要望事項을

明確히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實施에 必要한 準備를 하기 爲한 調査業務를 妥當性調査라 하며 事業規模가 尨大하여 妥當性調査 自體만으로도 尨大한 資金과 時間을 必要로하는 경우에는 이를 略式으로 實施하는 것을 豫備妥當性調査라 한다.

다. 프로젝트準備調査(實施設計調査)

詳細計劃, 數量, 工事費集計, 施工計劃, 仕樣書 및 入札書類等의 作成등 프로젝트의 實施를 準備하기 위하여 必要한 技術的, 經濟的, 諸般業務를 프로젝트準備調査라 한다.

라. 入札의 分析, 勸告 및 契約締結業務(上記의 "다"에 包含되는 境遇도 있음)

入札을 分析·勸告하며 契約書類等을 作成하고 契約을 締結하는 業務를 말한다.

마. 施工監理業務

프로젝트에 對한 融資決定後 프로젝트의 完了라고 할 수 있는 建設完了時까지, 作業日程, 디자인, 費用等이 計劃대로 履行 및 執行 되는가를 체크하면서 事業의 完成을 推進하는 業務를 말한다.

바. 프로젝트의 運營, 管理 및 事後評價
(Project Operation & Management and Post Evaluation)

프로젝트運營, 工場等의 試運轉, 操業, 製品의 마케팅, 管理에 關한 技術的·管理的인 助言과 技術移轉等을 위한 技術訓練 또는 프로젝트의 受惠層에 對한 波及效果등을 評價, 調査 및 解釋하는 業務를 말한다.

JICA에서는 開發途上國의 經濟社會에 큰 影響을 미치는 公共的인 開發計劃의 調査를 技術協力의 一環으로 取扱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와같은 開發計劃의 推進에 寄與하기 위한 「컨설턴트業務」를 實施하는 事業이 「開發調査事業」으로 獨立되어 있다. 여기에 包含되는 調査에는 「事前調査」「마스터플랜調査」「各種資源調査等의 基礎的인 調査」「個別프로젝트의 妥當性調査」와 「實施計劃」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種類가 있다.

따라서 歐美 先進諸國이 實施하는 컨설팅 業務中 ① 프로젝트發掘調査, ② 豫備妥當性調査 및 妥當性調査, ③ 프로젝트準備調査등이 JICA의 開發調査事業의 主種을 이루고 있다.

2. 컨설팅企業, 個人컨설턴트 및 로칼컨설턴트의 業務分擔

가. 컨설팅企業

컨설팅企業이란 컨설팅業務에 從事하는 民間會社, 公社, 政府投資法人, 政府出捐機關, 民間非營利團體, 國際機關 및 大學等을 總稱하는 말이다. 컨설팅企業中에는 建設會社나 製造會社를 包含한 多數業種의 企業 또는 事業體의 一部 또는 그밖의 形態로 多數의 他業種과 關聯되는 企業도 包含되며 이러한 企業도 그 資格 및 經驗이 該當 業務에 適切한 경우에는 컨설팅業務에 參加할 수 있다. 그러나 同一프로젝트에서 他職務(Supplier, Contractor等)에 있어서는 自社 및 그 關聯會社가 不適格이라는 데에 同意하여야 한다.

또한 Turn-Key方式의 契約도 各國에서 認定되고 있다.

나. 個人컨설턴트

研究機關, 大學, 政府의 任職員이었던 經驗이 豊富한 OB 및 其他 個人이 獨立된 形態로 컨설팅業務에 從事한다.

世界銀行, 美國, 카나다, 英國, 네델란드, 西獨, FAO等에서는 中立性維持, 祕密保護등을 爲해 프로젝트發掘, 評價, 入札等의 分析業務를 個人컨설턴트가 遂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必要에 따라 컨설턴트 選定을 위한 Proposal 評價등에 參加하는 경우도 있고, F/S調査를 위해 政府技術者 및 專門家, 研究機關의 要員등과 混成팀을 構成하여 F/S調査에 參加하는 경우도 있다.

다. 로칼컨설턴트

各 援助機關 모두 原則的으로 로칼 컨설턴트의 參與를 奬勵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形態, 業務內容 및 規模등에 따라 로칼컨설턴트의 參加는 스스로 制限받지 않을 수 없다. 다만 英國, 프랑스를 비롯한 舊宗主國들은 舊植民地關係에 있던 나라의 로칼컨설턴트의 프로젝트 參與條件을 대체로 緩和하고 있다. 예를들면 英國의 開發프로젝트에 있어서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등지에서 로칼컨설턴트가 業務遂行能力이 있으면 프로젝트의 各 段階에 參與가 許容되는 境遇가 많다. 供與條件은 原則的으로 無償供與의 境遇는 Tied 條件이 많으며 借款의 境遇는 Untied 條件인 境遇가 많다.

또한 프로젝트 사이클의 段階別 活用컨설턴트를 살펴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 ○ 프로젝트發掘調査(事前調査)
  - 個人컨설턴트
- ○ Pre-F/S, F/S調査(基礎調査, F/S調査)
  - 컨설턴트企業
  - 로칼컨설턴트
  - 個人컨설턴트
- ○ 프로젝트準備調査(實施設計調査等)
  - 컨설턴트企業

- 로칼컨설턴트
- 個人컨설턴트

○ 入札分析勸告等

- 個人컨설턴트

○ 施工管理業務

- 컨설턴트企業
- 로칼컨설턴트

○ 프로젝트의 運用, 管理 및 事後評價

- 個人컨설턴트
- 로칼컨설턴트

參考로 네델란드外務部 國際協力局의 컨설턴트의 調達을 컨설턴트 種類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比率로 이루어지고 있다.

○ 關聯產業, 製造業會社等	: 10%
○ 컨설팅活動을 하는 公的機關 ,大學, 硏究所, 公團等	: 30%
○ 컨설팅會社(民間)	: 60%
• 中小企業	: 20%
• 大 企 業	: 40%

3. 登 錄

가. DACON(Data on Consulting Firms)시스템에 의한 登錄

世界銀行(IBRD), 美洲開發銀行(IDB), 유엔開發計劃(UNDP)등은 컨설팅 企業의 利用에 관하여 DACON(Data on Consulting Firms)이라 불리우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共通 登錄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그 登錄樣式에는 컨설팅企業이 提供할 수

있는 섹터別로 細分化된 各種 서비스를 記入하게 되어 있다.

이 登錄樣式은 이들 3個機關 뿐만 아니라, 아시아開發銀行(ADB), 유럽共同體(EC), 國際勞動機構(ILO), 유엔工業開發機構(UNIDO), 世界保健機構(WHO), 아프리카 開發銀行(AFDB) 등 其他 主要한 多國間 援助·金融機關에서도 받아 들이고 있으며 大部分의 컨설팅 서비스 對象分野가 總網羅되어 있다.

컨설팅 서비스의 對象分野로서는

(1) 農業 및 農業開發
(2) 建設業開發
(3) 教 育
(4) 에너지
(5) 環 境
(6) 保 健
(7) 工 業
(8) 人 口
(9) 電氣通信
(10) 觀 光
(11) 交 通
(12) 都市開發
(13) 用水供給과 公衆衛生
(14) 其他

等의 14個 分野로 區分되어 있으며 더우기 Sub-Sector로서 96個分野, Field로서 754個分野, Subfield로서 912個分野로까지 細分化되어 있다. 한편 서비스의 形態로서는 地質, 資源探査를 비롯한 各種 探査 및 市場調査, 經濟調査 等 各種 調査와 生産, 品質管理等 65種으로 分類되어 있다. 이와같이 DACON의 컨설팅 對象分野는 多方面으로 細分化되어 있는것이 特徵이며 長點이다.

一般的으로 Short List 作成의 경우 컨설팅企業의 데이터等이 登錄되어 있는 便이 有利하지만 登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競爭契約等에 參加할 資格이 없다고 할수는 없다.

世界銀行, 美國, 스웨덴, 네델란드, 西獨等에서는 調達條件으로서 登錄을 要求하지 않는다. 參考로 主要 先進國 및 援助機關의 登錄業體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世　　銀：　1,500社
美　　國：　600社
네델란드：　400～500社(世銀의 DACON System採擇)
西　　獨：　600社

나. JICA의 登錄

JICA의 경우는 原則的으로 當該分野에 對해 JICA에 登錄되어 있어야 參加資格이 주어진다.

登錄은 DACON시스템을 利用하여 分野別로 하며 登錄한 企業은 그 分野에 있어서 提供할 수 있는 技術서비스와 種類를 明確히 記載하고 또한 그에 必要한 保有技術者의 數, 특히 調査團의 團長이 될 수 있는 核心要員의 리스트를 添附해야한다.

또한 登錄 컨설턴트는 年次報告書와 變更報告書의 提出을 要求받게 되며 前者는 企業이 決算後 4個月 以內에, 變更報告書는 保有技術者의 追加와 變更 또는 登錄分野의 追加, 變更등이 있는 경우에 提出하게 된다.

參考로 JICA의 開發調査業務를 委託하는데 있어서 選定對象이 되는 컨설턴트資格要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原則的으로 當該 調査分野에 對해 JICA에 登錄이 되어 있어야한다.
(2) 當該 調査業務 遂行에 對한 強한 關心과 意慾이 認定되어야한다.
(3) 當該 調査業務에 適應하는 知識, 經驗등이 있어야한다.
(4) 相對國 또는 類似地域의 調査業務 經驗이 있어야한다.
(5) 當該 調査業務와 類似한 調査業務 經驗이 있어야한다.
(6) 資本構成에 있어 當該分野의 業者, 商社 등과 結付되어 있을 경우 他分野의 優先權을 抛棄해야한다.

4. 컨설팅의 契約方法

가. 隨意契約(特命契約)

隨意契約은 主로 契約額이 少額인 경우 및 個人컨설턴트의 서비스를 調達하는 경우등에 締結된다. 特히 프로젝트發掘, 入札分析·勸告, 事後評價등의 作業

에 있어서는 中立性, 秘密維持等을 爲해 利用되는 경우가 많다.

妥當性調査등을 어떤 企業이 瑕疵없이 完了하였을 경우, 實施段階의 컨설팅 業務는 該當企業이 隨意契約(特命)에 依하여 繼續的으로 遂行하는 경우가 많다. 業務의 性格이 特殊하고 特定의 컨설팅企業만이 當該業務를 滿足하게 遂行할 수 있는 경우도 隨意契約에 依한다. 네델란드의 경우 NEDECO그룹의 受注가 隨意契約(特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경우도 競爭契約方式을 取하고 있지만 結果的으로 1個社가 되는 경우가 있다.

나. Proposal方式에 依한 競爭契約

프로포잘方式에 依한 競爭契約은 가장 一般的인 컨설턴트選定契約方法이다. 選定節次를 選定委員會에 依하는 경우와, 組織內 擔當部署에 依하는 경우로 區分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컨설턴트選定委員會에 의한 選定節次(世界銀行, 카나다)

(가) 컨설턴트選定委員會의 設置

(나) TOR 및 컨설턴트選定方法의 決定

(다) 컨설턴트企業의 List 作成

(라) 컨설턴트企業의 Short List 作成

(Long List의 企業中에서 各企業의 諸條件檢討, Proposal提出에 관한 意思把握後 3~5社를 選定)

(마) Proposal提出要請의 通知, 또는 入札招請狀發送

(바) Proposal의 受理, 評價 및 最終評價報告書 作成(리스트)

(사) 契約條件協商 및 契約關聯 諸般 節次등의 實施承認

(2) 援助機關의 컨설턴트部 및 調達擔當部에 依한 選定節次(英國, 네델란드, 美國등)

業務의 흐름은 上記(1)項과 同一한 節次를 取하지만 컨설턴트選定委員이 擔當部에서 選定되고 있으므로 主로 擔當部에서 選出된 멤버가 中心이 되어 選

定作業이 이루어진다. 컨설턴트選定委員會의 主된 業務는 技術提案書의 評價가 中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컨설턴트가 各 段階別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컨설턴트選定委員會의 承認을 必要로 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5. 開發프로젝트에 關한 情報

世界銀行, ADB, 및 美洲開發銀行등이 發表하는 「業務要約月報」에는 프로젝트 決定에서부터 借款契約調印에 이르기까지의 各段階別 프로젝트가 紹介되고 있어서 컨설팅企業에게는 有益한 情報源이 되고 있다.

그 中에는 事業主, 프로젝트의 說明, 모든 프로젝트코스트, 컨설팅業務, Man-Month, 推進日程등의 情報가 包含되어 있다. 美國, 스웨덴, 네델란드, 西獨, 英國等의 경우 小規模의 프로젝트를 除外한 모든 프로젝트의 情報가 公開된다. 또한 日本 JICA의 경우 從來에는 調査案件을 全혀 外部에 公開하지 않았으나 1987年度부터는 新調達體制에 따라 「指名參加 意思表明制度」가 採擇됨에 따라 그 리스트가 每月 公示되고 있다.

各國의 主要 情報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美　　國 : "Commerce Business Daily"와 "AID Bulletins"
- 네델란드 : "Bestedingswijzer"와 Economic Information Service가 發行하는 諸情報
- 西　　獨 : 聯邦通報情報局이 發行하는 "Nachrichten für Aussenhandel"
- 英　　國 : 關係機關에 接觸하여 必要한 情報等을 얻을 수 있다.
- 日　　本 : JICA가 發刊하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Journal

6. 事業施行條件(TOR:Terms of Reference)

TOR는 必要한 委託業務에 關하여 컨설턴트에 對한 最初의 業務指示이며 그 後에 變更 및 修正이 加해지더라도 契約의 基本部分을 構成한다. 즉, TOR는

컨설턴트가 遂行해야 할 業務를 規定한 것이므로 最大한 明確하고 精密하게 作成해야 한다.

TOR는 用役業務의 方向과 品質을 左右하는 것이며 用役代價의 適正與否도 TOR를 根據로 判斷할 수 있을 것이다.

通常 TOR에는 다음 項目이 包含되어 있다.

(1) 委託業務의 目的에 관한 正確한 記述

(2) 要求되는 業務의 範圍와 日程

(3) 相對國政府에 의한 便宜提供

(4) 成果品의 詳細한 內容

또한 TOR의 作成上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OR는 프로젝트가 無償供與에 依한 것이든 借款에 依한 것이든지를 莫論하고 援助受惠國政府 및 貸出機關의 同意 및 承認을 必要로 한다.

(2) TOR는 實際로 先進國援助機關의 技術者, 經濟專門家등에 依해 作成되는 경우가 많다.

(3) 援助受惠國이 TOR를 作成하는 경우 先進國援助機關의 現地事務所가 充分한 指導와 檢討를 하여 作成토록하고 있다. 이를 爲해 스웨덴에서는 컨설턴트를 派遣하기도 한다.

7. 컨설팅의 代價

代價見積 또는 豫算은 所要人員의 等級과 專門分野, 現場 및 本社에서의 所要時間, 機資材投入(例컨데 車輛, 掘削機等) 및 其他 委託業務上 必要하다고 看做되는 諸品目이 算定된다. 費用見積書 作成을 爲해서는 TOR에 精通함과 同時에 委託業務의 契約方法(支拂方法等)에 對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TOR 및 契約方法등의 熟知는 또한 Short List의 作成, Proposal 評價, 契約의 交涉 및 委託業務 監督에 있어서도 基本이 된다.

價格이 컨설턴트 選定要素가 되지 않는 경우는 委託業務의 所要 Man-Month 또는 豫算中 어느하나는 入札招請狀에 記載해야 한다.

또한 價格이 考慮되는 경우는 通常, 必要 Man-Month를 記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入札招請狀를 받은 企業은 豫想되는 委託業務의 規模와 範圍에 關하여 適切한 理解를할 수 있는 것이다. F/S調査의 경우에는 特히 이러한 提示가 必要하게 된다.

見積 金額에는 一般的으로(英國을 除外) 契約總額에 約 10%의 豫備費가 包含되어 있다.

스웨덴의 SIDA에서는 精算方式을 採擇하고 있으며 週 40時間勞動을 基準으로 하여 積算하고 있는데 公休日은 基本的으로 業務를 하지 않도록 하는 勞動條件으로 契約을 하고 있다.

參考로 國別 Man-Month 單價는 아래와 같다.

1987年度 主要國家別 Man-Month 單價(上限線)

世　銀	$15,000 Man/Month
스웨덴	$ 8,500 〃
네델란드	$15,000 〃
西　獨	$15,000 〃
英　國	£ 500 Man/Day
美　國	$10,000 Man/Month

여기서 提示하는 Man-Month 單價는 直接人件費에 間接費와 技術料를 加算한 金額이다. 基本的 勞動條件으로서 週休 2日制를 基本으로 하고 있다.

8. 컨설턴트企業의 Short List

컨설턴트 企業의 登錄情報를 根據로 프로젝트에 대한 參加意慾, 資格案件, 能力, 經驗等을 考慮하여 Long List가 作成되고 여기에 프로젝트關聯 分野에서의 經驗, 會社의 類似프로젝트의 參與經驗, 語學能力, 過去의 實績, 開發途上國

에서의 經驗, 該當地域에서의 經驗, 實施機關과의 契約實績등을 考慮하여 Short List가 作成되어 Proposal의 提出을 要請하는 入札招請狀이 發送된다.

登錄되어 있지 않은 企業이라도 企業의 資格要件, 能力, 經驗등의 審査에 必要한 質問項目에 應答함으로써 事前審査(Pre-Qualification : P/Q)를 받아 當該 프로젝트의 公開競爭에 參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表 V－1〉 世銀 및 先進國의 Short List 必要企業數

國 名	下 限	上 限
世界銀行	3社	6社
美 國	3社	5社
카 나 다	3社의 Proposal을 要함	
네 델 란 드	3社	5社
스 웨 덴	2～3社(結果的으로 1社가 되는 경우도 있음)	
英 國	2社(1社 以上)	5社
西 獨	3社	5社

Short List의 下限이 3個社이면 實際의 運用에 있어서는 3個社 밖에 Short List에 包含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Short List에 包含되는 企業數가 많을 경우의 問題點으로는 우선 評價者의 業務가 過多하게 되고 評價도 매우 複雜하여 그 結果 不適切한 評價結果를 招來할 念慮가 있으며, 둘째로 오히려 Short List의 作成이 安易하게 되어 優良 컨설턴트 企業이 쇼트리스트에서 除外되고 Proposal 提出에 招請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셋째로 모든 企業이 Proposal을 提出할때 最善을 다하려는 意慾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등을 들 수 있다.

어떤 프로젝트를 契約할 수 있는 企業은 1個社 뿐이므로 Proposal이 採擇되지 못한 企業의 經濟的 負擔을 增大시키게 되므로 受注 可能性이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컨설턴트 企業의 立場에서는 經費節減에 注力하게 되어 Proposal의 作成에 投入되는 Man-Hour를 節減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多數의 컨설턴

트 企業이 入札招請狀을 받게 되는 경우 Proposal의 質的 低下를 招來하기 쉽다. Proposal招請의 目的은 良質의 Proposal을 確保하기 爲한 것이지 多數의 Proposal을 提出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事由로 因하여 모든 援助機關에서 Short List가 作成되고 있으며 Short List運用에 있어서도 可能한한 小數의 企業을 招請하는 方向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9. 컨설턴트 企業間의 合作(Joint Venture) 形成

上記한 바와 같이 Short List에 包含되는 企業이 通商 3個社 程度이므로 登錄된 會社는 基本的으로 Proposal을 提出해야 한다.(Long List 作成時 企業의 프로젝트 參加意思를 聽取한다.)

日本에 있어서는 指名된 企業(同一한 專門性, 經驗, 能力등을 가진 企業)間에 Joint Venture를 形成하여 應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餘他 國家에서는 一般的으로 Joint Venture가 별로 活用되지 않는다.

西獨, 네델란드에서 一般的으로 Joint Venture가 勸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JV를 構成하는것이 成果品(業務)의 質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業務 內容의 特性上 JV가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個社로는 調達이 不可能한 경우)등

USAID에서는 Proposal의 評價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點에 對해서도 考慮하고 있다.

- 指名된 企業에 雇傭되어 있는 社員만으로 契約을 履行하려는 意慾 또는 能力與否(Sub-Contractor를 活用하는 경우 마이너스 評價)
- 關聯 事業評價(受注量이 많을 수록 마이너스 評價)

또한 世界銀行, ADB等에서는 컨설턴트 企業에 對하여 受注의 機會均等 原則에 立脚하여 最近 1年以內에 受注한 컨설턴트 企業은 基本的으로 Short List에 包含되지 않는다. 1年에 1~2回 程度는 許容되는 경우도 있으나 3回以上은 絶對로 許容되지 않는 것이 不文律로 되어 있다.

그러나 上記와 같은 Short List 作成方式이 一般的임에도 不拘하고 世界銀行

프로젝트의 30~40%는 Short List가 作成되지 않고 있다. 卽 프로젝트의 繼續性을 重視할 경우에는 特定 單一企業을 採用하는 것이다. 또한 世界銀行은 隨意契約에 對한 明確한 定義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事例別로 處理하고 있는 實情이다.

一般的으로 世界銀行에서 隨意契約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다.

- 借入國의 同種 프로젝트에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경우
- 一般的으로 確保하기 어려운 特殊한 專門家를 保有하고 있는 경우
- 借入者를 爲하여 同種의 委託業務를 遂行한 實績이 있거나 또는 借入者와 良好한 委託業務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경우

10. 컨설턴트 選定委員會

컨설턴트 選定委員會는 隨時로 構成되어 컨설턴트의 指名, Proposal의 評價, 컨설턴트의 選定등의 業務를 遂行하거나 컨설턴트의 業務를 監理, 承認한다.

가. 選定 節次

複數의 企業에 對하여 Proposal의 提出을 要求하는 경우에는 選定節次 및 評價基準이 미리 決定되어 그것이 入札招請狀에 記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選定節次는 基本的으로 2種類가 있다.

- Technical Proposal의 評價에만 따르는 경우.
- Technical Proposal과 Financial Proposal이 考慮되는 경우

나. 選定委員會의 構成

(1) 歐美 先進國의 構成

歐美 先進國 援助機關에서는 國別·地域別 組織의 主體이므로 地域課의 擔

當者가 컨설턴트 選定의 中核이 되는 選定委員會를 構成하고 있으며 이를 類型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事例(1) 選定委員會의 標準型

地域課의 責任, 總括者	1名(委員長)
地域課의 擔當者(國別)	1名
專門家(프로젝트該當 分野)	1名(必要에 따라 最低 1名)
調達(컨설턴트部等)	1名
財務(豫算・契約・監理)	1名
計	5名 程度

事例 (2) 大規模, 多數分野 프로젝트의 選定委員會

地域課의 責任・總括者	1名(委員長)
地域課의 擔當者(國別)	1名
專門(프로젝트該當 分野)	1名(必要에 따라)
專門(開發計劃・經濟等)	1名(〃)
專門(社會間接資本, 建設, 費用)	1名(〃)
調達(컨설턴트部等)	1名
財務(豫算・契約・管理)	1名
計	7名 程度

事例(3) 小規模로 契約額이 적은 경우

地域課의 擔當者(國別)	1名
專　　門	1名
調達 또는 財務	1名
計	3名 程度

上記와 같이 프로젝트의 類型, 規模에 따라 隨時로 選定節次가 決定되고 選定委員會가 構成되고 있다.

(2) JICA의 選定委員會 構成

JICA에서는 契約과 實施業務가 分離되어 契約業務는 調達部에 一元化되어 있으나 開發調査業務를 效率的으로 推進키 爲해서는 契約段階에서 부터 調査擔當部의 判斷도 可及的 反映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JICA가 컨설턴트등에 對한 選定委員會를 構成할 경우에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構成된다.

〈表 V-2〉 컨설턴트등에 對한 選定委員會 構成事例

調 達 部	3名
事 業 部	3名
企劃部등 他部署	1~2名
計	7~8名 程度

11. 入札招請狀(Invitation Letter)

入札招請을 위해서 入札招請狀 卽 「Proposal의 招請」이 各 企業앞으로 發送 또는 通知된다. 컨설턴트의 Proposal은 通常 入札招請狀에 記載된 情報를 基礎로 作成되므로 提出되는 Proposal이 모두 比較可能 하도록 可及的 完全한 情報를 包含시키는 것이 重要하다.

여기에는 Proposal의 評價方法 및 컨설턴트 企業의 選定方法도 明示되어 있어야 한다.

- 入札招請狀에 記載되어야 할 主要項目 및 內容

(1) 委託業務에 관한 簡潔한 記述

(2) 入札招請狀에 附屬되는 書類의 目錄, 委託業務의 TOR, 契約書草案, Proposal에 記載해야 할 事項에 관한 補充 情報(樣式 等)

(3) 프로젝트의 總責任者(相對國 實施機關 責任者의 이름, 職位 및 住所)

(4) 詳細한 選定節次

여기에는 技術的 評價의 參照項目 및 各 評價項目에 賦與되는 比重등이 明示된다. 價格이 考慮의 對象이 되는 경우에는 그 考慮基準도 包含된다.

(5) 컨설턴트에 要求되는 技術者의 經驗 또는 能力水準(Man-Month로 提示), 價格이 選定要素가 아닌 경우는 委託業務의 豫算, 建築設計서비스(委託設計)의 경우에는 設計豫定의 施設工事明細

(6) 契約交涉時 必要로 하는 企業의 財務諸表 및 其他 情報의 種類

(7) 컨설턴트가 Proposal을 作成, 提出하는데 認定되는 期間(入札招請狀의 發送에서 Proposal의 提出/到着까지)

〈圖 V－1〉 Proposal 作成 提出 期間

國 名	期 間
世界銀行, ADB	通常 45日 程度
英 國	30～60日 程度
日 本	OECF : 45～60日 JICA : 2週日(프로젝트 說明會 開催日 부터)
西 獨	60日 程度 (크리스마스 休暇등의 連休가 提出期限과 겹친 경우는 컨설턴트의 要請에 따라 提出期間을 延長하는 수도 있음)
네 델 란 드	프로젝트의 規模등을 考慮하여 必要에 따라 決定함
스 웨 덴	프로젝트의 規模에 따라 다르며 世界銀行의 基準이 參考가 되고 있음

(8) Proposal의 提出方法

價格을 包含한 Proposal이 要求되는 경우에는 Technical Proposal과 Financial Proposal을 各各 別途로 封印한 다음 技術評價의 實施에 價格이 影響을 미치지 않도록 保證할 수 있는 方法에 따라 別個로 提出되어야 한다는 뜻의 指示도 包含된다.

(9) 컨설턴트의 委託業務着手豫定日

(10) 相對國 政府의 便宜供與(TOR에 記載되지 않은 경우)

12. 技術提案書의 評價

가. 評價基準

技術提案書(Technical Proposal)는 一般的으로 다음 세가지의 基準에 의해 評價된다.

(1) 當該 業務分野에서의 企業의 全般的인 經驗

(2) 提案된 委託業務計劃의 適合性 및 TOR에 대한 接近方式

(3) 提案된 委託業務擔當要員의 資格 및 能力

나. 基準適用 加重値

(1) F/S調査等에 對한 評價基準 加重値

- 企業의 一般的經驗 : 10~20%
- 作業 計劃 : 25~40%
- 核心要員 : 40~60%

(2) 實施設計에 대한 加重値

- 企業의 經驗에 賦與되는 比重이 F/S調査보다 커지며 要員의 比重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3) 施工管理業務等에 對한 加重値

- 核心 要員에 賦與되는 比重이 F/S調査보다 더 크게되는 경우도 있다.

다. 核心要員의 評價基準

核心要員의 資格 및 經驗의 査定은 特히 다음 3가지의 基準에 따라 行해진다.

(1) 一般的 資格 : 敎育 및 訓練, 經驗年數, 現在의 地位, 當該企業에서의 勤續年數等이 包含된다.

(2) 프로젝트에 對한 適否 : 當該委託業務에서의 任務遂行에 適當한지 與否

(3) 言語 및 當該地域에서의 經驗 : 委託業務의 實施地인 當該國과 類似한 開發途上國에서의 經歷 및 言語能力이 包含된다.

컨설턴트 選定을 爲한 技術評價에 있어서는 會社의 評價를 重視하는 USAID를 除外하고는 各 援助機關들이 대개 世銀方式과 類似하다.

라. 各國의 特徵

(1) 西 獨

西獨의 컨설팅産業은 後發事業으로 컨설턴트의 育成이라는 觀點에서 會社의 經驗보다도 要員쪽에 比較的 높은 配點을 附與하고 있다.

參考로 西獨 KfW의 評價配點은 다음과 같다.

- 會社의 經驗 : 10點
  - 財務 狀態 : 2
  - 地域에서의 經驗 : 3
  - 規模, 能力等 : 5
- 프로젝트 作業計劃 : 35點
  - 目的, TOR의 理解 : 20
  - 實施方法 : 15
- 要 員 : 55點
  - 支援 스텝 : 10
  - 프로젝트 매니저 : 15
  - 其他 프로젝트 스텝 : 30

計 100點

(2)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Proposal의 審査結果가 類似한 경우 核心이 되는 要員의 인터뷰가 行해지며 語學에 對해서도 SIDA에 依한 共通테스트를 實施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先進國(스웨덴)에 있어 最高의 技術經驗, 地位 및 能力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委託業務의 實施地인 當該 開發途上國에서 本人의 能力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지 與否가 重視되고 있다.

(3) 네델란드

프로젝트의 作業計劃, 會社의 經驗, 要員等은 世界銀行과 마찬가지이지만 프로젝트 發掘·形成에 對한 貢獻도 考慮되고 있다.

(4) 美 國

會社의 經驗, 過去의 評價(顧客과의 關係등), 會社의 規模와 能力等을 中心으로 評價되고 있어서 世界銀行方式과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

13. 價格考慮를 隨伴하는 技術提案書의 評價

프랑스·스웨덴·네델란드·西獨·英國·世界銀行등은 國別, 機關別 運用의 差는 있지만 委託業務의 內容에 따라 Financial Proposal을 考慮한 Technical Proposal의 評價를 하고 있다.

그러나 價格考慮의 有無에 不拘하고 選定過程에서는 언제나 컨설팅 業務의 質을 第一의 要件으로 하고 있는 點에는 變함이 없다.

價格을 選定要素로서 하는 것이 適切한지 與否는 컨설팅業務의 內容에 따라 決定된다. 또한 컨설턴트를 選定할때 價格을 어느 程度까지 考慮의 對象으로 할 것인가는 要求되는 컨설팅 서비스의 技術的 複雜性, 컨설턴트에 委託되는 業務가 最終産出物에 미치는 影響 및 技術提案書의 比較評價의 難易性등을 考慮하여 決定된다.

價格을 考慮 對象으로 할 것인가의 與否는 컨설턴트에 對한 Proposal 招請에 앞서 決定되어야 하며 入札招請狀에 그 選定 節次가 記述되어야 한다.

예컨데 技術的인 質의 10%의 差는 價格의 20%의 差와 같은 價値를 가지는지 與否는 委託業務의 性格과 發注者의 判斷에 따라 決定된다.
따라서 價格要素와 技術的 要素의 比重을 決定할 때에는 各 事案別로 愼重한 考慮를 必要로 한다.

價格이 考慮되는 경우에는 技術評價와 價格 評價는 別途로 行해지며 技術評價가 價格에 依한 影響을 받지 않도록 Technical Proposal과 Financial Proposal은 別個의 封書로서 同時에 提出되거나 Financial Proposal은 나중에 提出되는 節次를 取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技術評價는 Financial Proposal이 審査되기전에 完了되어야 한다.
典型的 方法으로는 Two Envelope System이 있다. 이 方式에서는 Technical Proposal과 Financial Proposal이 同時에 招請되고 Technical Proposal과 Financial Proposal이 別途로 封印된 봉투에 넣은 채로 提出되면 技術評價가 完了된 후 技術的으로 最優秀企業의 Financial Proposal이 開封되어 同 企業과 契約交涉에 들어간다. 그리고 契約이 成立되면 他企業의 Financial Proposal은 開封되지 아니한 채로 各 企業에 返送된다.

契約交涉이 成功的으로 妥結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技術的 評價가 第2位였던 企業의 Financial Proposal이 開封되고 契約協商을 하게 된다.

이 方式에서는 技術評價 第2位였던 企業의 Financial Proposal을 넣은 봉투는 技術評價 第1位인 企業과의 契約 不成立이 確定되기 까지는 開封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와같이 Two Envelope System은 Financial Proposal이 比較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지만 實際의 運用은 機關마다 약간씩 差異가 난다.

14. 國別 프로포잘의 評價 및 컨설턴트 選定의 特色

○ 美 國

- 公開競爭契約을 原則으로 한다.
- Technical Proposal 評價에 依한 컨설턴트의 選定을 基本으로 Financial Proposal은 最優秀 評價를 받은 企業만 提出케 하여 協商을 通해 契約을 締結한다.
- 隨意契約(特命)도 認定된다.
- 契約金額에 따라 評價, 選定, 契約 承認者가 달라진다.
- Technical Proposal 評價는 會社評價의 點數가 높으므로 컨설턴트 選定委員의 判斷(主觀)에 左右되는 경우가 많다.

○ 카나다

- 指名競爭을 原則으로 한다.
- 契約額에 따라 評價, 選定, 契約承認 節次등이 달라진다.
- 隨意契約(特命)도 認定된다.
- Technical Proposal이 어느 水準以上이라고 評價(어느 企業도 業務를 實施하는 일이 可能하다고 判斷)된 경우 政治的인 配慮등에 따라 選定한다. 카나다 特有의 政治的 配慮에 따라 Proposal을 選定한 事例로는 어떤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水力發電計劃의 F/S調査에 從事한 카나다의 컨설턴트 企業이 훌륭한 報告書를 作成 提出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다음 D/D 施工管理業務의 컨설팅의 受注에는 失敗하고 다른 카나다의 컨설팅 企業이 이를 受注한 事例가 있다.

○ 스웨덴

- 公開競爭 契約을 原則으로 한다.
- 隨意契約(特命)도 認定된다.
- Two Envelope System을 採擇한다.
- Technical Proposal 評價結果 複數의 企業이 水準級이어서 그 差가 別로 없는 경우 核心이 되는 要員을 面談하여 判斷의 基礎로 삼는 경우도 있다. 技術的으로 評價가 一定水準以上인 경우 價格이 가장 싼 컨설턴트를 選定한다.

○ 네델란드

- 競爭契約을 原則으로 한다.
- 隨意契約(特命)도 認定된다.
- 評價 基準은 다음과 같다.
  - ·· 實施計劃 및 接近方法
  - ·· 要員의 資格·能力等
  - ·· 全體 코스트
  - ·· 컨설턴트 企業의 經驗 및 專門家
  - ·· 以前부터의 프로젝트에 對한 貢獻度
- 以外에도 코스트에 對한 評價가 包含되고 있다.

○ 西 獨

- 公開競爭契約을 原則으로 한다.
- 隨意契約(特命)도 認定된다.
- Two Envelope System을 採擇한다.
- Technical Proposal 評價의 差가 10%以內인 경우 Financial Proposal을 考慮한 評價를 하여 컨설턴트 企業을 選定 한다.

○ 英 國

- 公開競爭契約을 原則으로 한다.
- Two Envelope System을 採擇한다.
- 隨意契約(特命)도 있다.
- 業務의 內容을 重要視하지만 價格도 考慮된다.

○ 世界銀行

- 앞에서 敍述한 바와 같이 프로포잘 評價 方法에는 2가지가 있다.
  ·· Technical Proposal評價
  ·· Technical Proposal과 價格을 考慮한 評價.
- 業務內容에 따라 選定基準을 設定하여 評價하고 있다.
- 特히 援助受惠國이 評價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問題가 생기지만 世界銀行은 Technical Proposal의 評價를 가장 重要視 한다.

○ 日本 JICA

— Proposal方式(Two Envelope)을 原則으로 하며 그 節次는 다음과 같다.

- 컨설턴트등 選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5個社의 Short List作成
- Short List業體에 대해 Project說明會 開催 및 Technical Proposal招請
  (招請期間 2週日)
- Technical Proposal 接受(抛棄業體로부터는 抛棄事由書 接受)
- Technical Proposal 評價
  컨설턴트등 選定委員會 委員들이 5~6日(至急의 경우 2~3)期間을 두고 Technical Proposal을 個別評價하며 컨설턴트等選定委員會는 各 委員들의 評價表를 聚合한후 審議하여 Technical Proposal을 採點하여 順位를 決定한다.

- 審議結果 最高得點業體와 交涉하여 契約 締結
- 最高得點業體와 契約이 締結되지 않을 경우 次得點業體와 契約締結

— 特命 隨意契約도 締結한다.

- 新規調査에 있어서 當該業務를 修行할 수 있는 業體가 어느 1個 業體로 限定되어 있어서 Technical Proposal競爭이 어려울 때 當該業體와 特命 隨意契約을 締結한다. 이때 5,000萬엔 以上의 大型 프로젝트는 컨설턴트等選定委員會(委員長 : 擔當部長)와 컨설턴트等選定審査委員會(委員長 : 副總裁)의 審議를 거쳐서 交涉을 推進한다.
- 繼續事業에 있어서 初年度 또는 前年度의 調査事業을 遂行한 業體에 事業을 續行시키는 것이 有利하다고 判斷될때 當該業體와 特命隨意契約을 締結한다. 이 경우도 大形프로젝트는 上記 委員會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5. 契約의 協商 및 締結

Technical Proposal 評價 後 選定된 企業과 價格交涉에 들어가는데, 選定 때에 이미 價格이 考慮된 경우에는 價格協商의 餘地는 거의 없으며 價格協商에 置重하면 一般的으로 業務의 質이 犧牲되는 結果를 招來하기 쉽다. 價格이 컨설턴트 選定에 考慮되는 경우는 必要 Man-Month를 入札招請狀에 記載함으로써 金錢側面의 交涉을 單純化할 수 있으므로 世界銀行에서는 이것을 勸奬하고 있다.
그러나 英國 ODA의 경우는 入札招請狀에 꼭 ODA는 價格協商을 할 權利를 留保한다는 것을 明記하고 있다.

컨설턴트 企業側에서 擔當者를 交替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Proposal의 受理와 現場에서의 業務開始 사이에 交替시키는 것은 特히 不適當하다. 業務開始後 健康上의 問題로 交替할 必要가 發生하는 경우나 擔當者가 不適當하다는 것이 判明된 경우 컨설턴트 企業은 다른 適切한 要員을 提案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또한 Technical Proposal은 Terms of Reference(TOR)와 마찬가지로 契約의 一部分이 된다.

○ JICA의 契約交涉 및 締結

JICA에서도 Technical Proposal 評價가 곧 契約交涉順位가 된다. 따라서 第一順位 컨설턴트에 對해서 契約交涉 相對方으로 選定하여 契約交涉의 日時, 場所등을 案內하는 通知를 하며 第二順位 以下의 컨설턴트등에 대해서는 第一順位로 指定되지 않았다는 趣旨를 通知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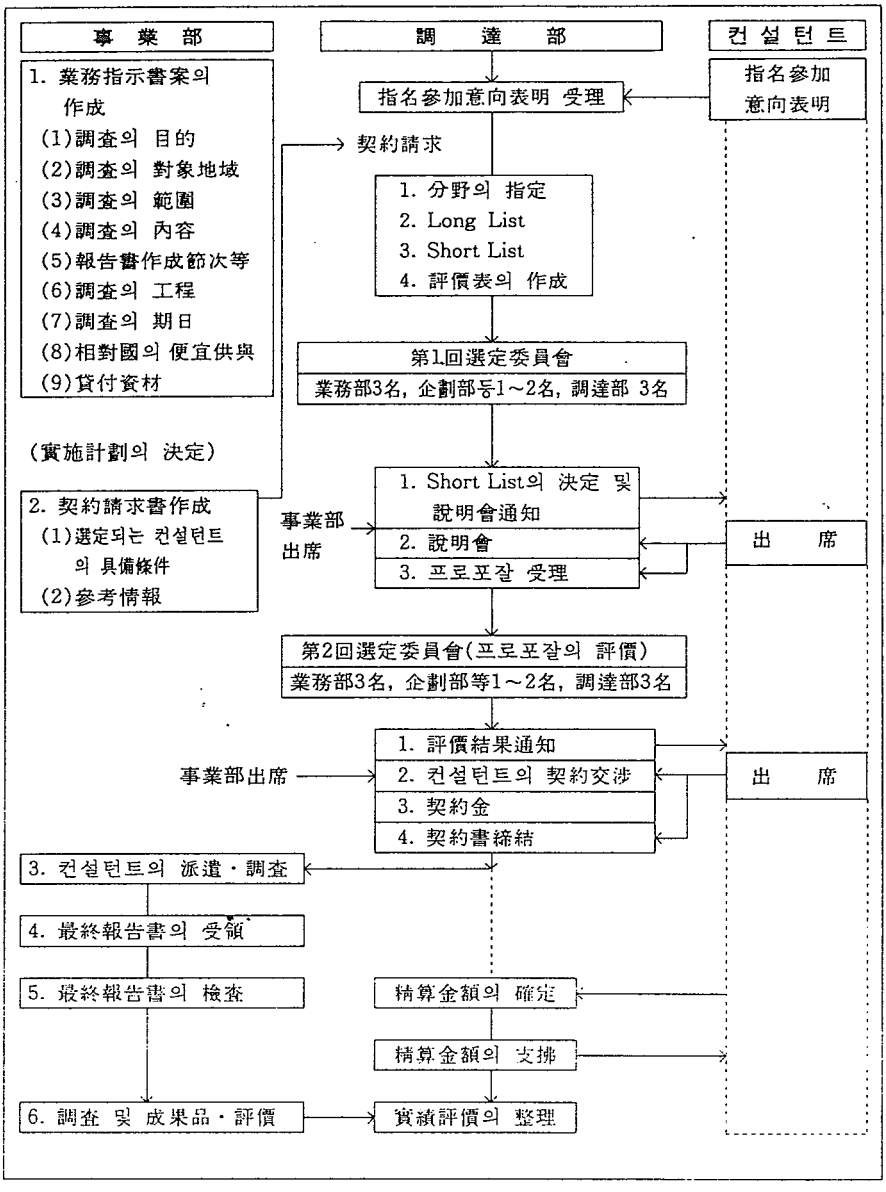
第一順位業體와 交涉時는 반드시 JICA人員이 2名 以上 參席한다.

契約交涉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契約書 및 仕樣書의 內容을 說明하고 確認한다.
- 見積價格이 JICA의 實行豫算의 範圍를 超過하는 경우 契約充當可能額으로 調整(現地調査費등의 査定)한다.
- Proposal에 記載된 要員의 等級이 適切치 않을 경우(特號부터 1號까지)는 當該分野의 査定에 必要한 資格要件에 알맞는 等級(調査實施 計劃書의 當該 要員의 等級)으로 調整한다.
- 기타 Proposal 評價時 컨설턴트등 選定委員會가 指摘한 事項에 對해 調整한다.
- 契約交涉時 見積事項도 審査한다.

以上의 交涉이 成立되면 當該年度契約分의 最終 見積書를 提出시킨다. 이때 契約書의 附屬書가 되는 仕樣書, 契約金額의 內譯 및 業務 擔當技術者名簿등을 添附케 한다음 契約을 締結한다.

〈圖 V-2〉 JICA契約業務의 흐름과 調査業務의 分擔



16. 컨설팅 業務의 監督·評價

世界銀行에서는 擔當職員이 컨설턴트 業務의 進行을 定期的으로 審査, 監督하고 現場에서의 檢討 會合에 參加하며 必要에 따라 現地調査에 參加하거나 컨설턴트의 事務室 訪問등을 하면서 業務가 TOR에 따라 豫定대로 實施되고 있는지 與否를 確認하고있다. 報告書의 內容과 컨설턴트 各 멤버의 業務實績등도 評價되어 記錄이 남겨짐과 同時에 將來의 프로젝트를 위한 Proposal 評價(예컨대 指名된 要員의 評價)의 參考資料로 提供된다.

美國, 英國, 카나다, 西獨, 네델란드, 스웨덴, 프랑스등 歐美 先進國은 一般的으로 擔當官이 現地事務所를 通하여 컨설턴트의 業務를 監督하고 있으며 必要에 따라 本部 엔지니어의 支援을 받아 TOR에 따른 業務의 遂行狀況을 체크하고 있다.

컨설턴트 代價의 支拂에 對해서도 現地事務所가 主體가되어 送狀 및 契約金額(豫算) 등을 체크하고 있다.

가. 스웨덴

(1) 報告書의 內容에 관한 체크

報告書의 內容에 대하여 援助受惠國으로부터 異議가 있더라도 TOR을 充實히 遵守하고 있다고 判斷되는 경우는 SIDA는 이를 受理하고 컨설턴트 代價의 支拂을 承認한다. 反面에 援助受惠國으로부터 特別한 異議가 없는 경우에도 TOR을 充分히 遵守하지 않았다고 SIDA가 判斷한 경우는 報告書의 再作成을 컨설턴트에 命하고 있다. 이때 報告書 再作成以上의 罰則은 賦課하지 않는다.

TOR 遵守與否의 判斷은 普通 地域擔當者, 專門家, 契約擔當者의 三者가 하는 일이 많다.

(2) 支拂에 관한 체크

現地事務所의 擔當者가 通常 1個月 마다 實費精算 項目의 送狀을 체크 하고 있다. 그리고 直接 現場經費의 支出이 豫算內에 包含되어 있는지 與否와 修正이 必要한지 與否 등에 관해 本部에 報告하고 狀況 變化에 對應하고 있다.
基本的으로 F/S등의 調査의 直接現場經費는 實費精算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나. 世界銀行과 ADB

(1) F/S再檢討등의 調査·解釋을 包含하는 調査의 경우 契約方法은 實費精算方式(Man-Month 契約)이 一般的이다.

이를爲해 擔當官은 ① 報告書 內容과 支拂에 關해 체크하고 ② 컨설팅 業務의 日程에 따라서 業務의 進行狀況을 月別로 報告한다. 同 月別報告에는 그 때까지 完成된 報告書(섹터別 草案狀態도 좋음)를 添附한다.

月別報告書로 報告된 作業의 進行狀況과 提出된 報告書內容은 當然히 一致하여야 한다. 그리고 當該 報告書 內容을 TOR과 相互 對照하여 檢討하고 그 結果가 滿足스러우면 컨설턴트 代價支拂을 承認한다. 그 結果가 滿足스럽지 못할 경우는 컨설턴트에 說明을 要求하고 TOR를 遵守하고 있지않다는 뜻을 傳하고 該當報告書의 再次提出을 要求하고 內容이 滿足스러울때까지 修正을 要求한다. 컨설턴트 代價는 報告書가 滿足스러울때까지 支拂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月別支拂과 業務內容(報告書)을 체크 하게 되면 프로젝트 完了段階에서는 대개 TOR를 滿足시키는 充實한 報告書가 作成되게 된다.

(2) 컨설팅 業務에 關한 評價 즉 報告書 作成에 關한 評價와 함께 프로젝트 매니저 및 分野別의 擔當者의 能力, 技術力, 態度, 顧客과의 關係 其他 諸評價는 컨설팅 業務의 作業管理를 通하여 自然히 確立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情報는 世界銀行, ADB등의 擔當者에 通報되어 피드백되고 컨설턴트 評價, 選定등에서 貴重한 參考資料가 된다.

다. JICA

(1) 컨설턴트의 活用

相對國의 要請內容을 明確히 하기爲해 豫備調査나 日本이 實施해야할 調査의 範圍, 內容등을 協議하여 S/W를 締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事前調査團은 原則的으로 關係機關과 JICA職員으로 編成되지만 對象分野 및 實施時期와 關聯하여 行政機關이나 JICA 職員만으로 對處하기 困難한 경우에는 컨설턴트와 用役提供契約을 締結하여 그 技術用役을 받게 된다.

本格調査는 通常 JICA와 用役提供契約을 締結한 컨설턴트가 一括的으로 實施한다.

(2) 作業監理委員會의 構成

用役提供契約을 締結한 컨설턴트에게 本格調査를 實施 시키는 경우 JICA는 發注者로서 調査業務를 監理해야 하는데 專門分野에 관한 充分한 技術的 知識, 經驗이 있는 職員이 적으므로 專門家의 技術的 指導 및 助言을 받을 必要가 있다. 따라서 當該 調査案件에 대한 作業監理委員會가 關係行政機關등의 專門家들로 構成되어 設置된다.

(3) 컨설턴트 業務의 評價

JICA는 컨설턴트 業務에 대해 嚴正, 正確한 事後評價를 하여 이를 追後 컨설턴트의 選定, 指導에 活用하여 그 質的 向上을 꾀하고 있다.

이와 關聯 JICA는 契約金額이 一定額 以上인 것을 對象으로 아래 事項에 對해 評價한다.

- 事務處理狀況등 實務實績 評價
- 完成內容의 程度등 成果品 評價
- 主要人員의 能力등 調査團의 能力評價
- 現況評價

評價結果는 理事까지 供覽한後 調達部에서 整理保管된다. 特히 評價結果에서 業務實施上의 不備點이나 事後契約에 있어서 留意點을 指摘하고 있으므로 그

蓄積은 大端히 重要한 것이다. 그러나 實際로는 JICA에서 1988年 9月 現在 全體의 25%程度의 프로젝트만 評價가 이루어지고 있다.

〈圖 V-3〉 JICA가 行하는 實績評價 結果의 例

프로젝트名	評價要旨
E國, 綜合開發 計劃 ('85.8.31-10.3 契約分)	• JICA에 대한 連絡이 緊密하지 못하고 JICA의 指示에 充分히 對應하지 않음 • 報告書의 內容에 약간 不充分한 點이 보임 • 調査團員間에 意見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調査團長의 總括能力에 약간의 疑問이 있음 • 向後의 契約에서는 業務指示를 可及的 細部的으로 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判斷됨
E國, 綜合開發 計劃 ('86.12.15-87.3.15 契約分)	• 報告書의 表現에 統一性을 缺한 部分이 있고 全體的으로 修正이 加해졌음
E國, 綜合開發計劃 (綜合評價)	• 業務處理의 計劃性이 不足함 • 主로 調査團員과 他社로부터 派遣된 專門家 사이에 意思疏通이 잘 안되는 點이 보임 • 提言 해야할 具體的인 政策案이 豫測되지 않는 段階에서 多數의 調査團員을 投入했기 때문에 各團員의 專門知識을 有效適切히 活用한 政策提言에 이르지 못함
A國, 穀物貯藏 施設 整備擴充計劃	• 新規分野의 調査 實施에 있어서는 JV結成後 圓滑하지 못한面이 많이 보이므로 配慮가 必要함

프 로 젝 트 名	評 價 要 旨
D國, 湖周邊 地域 綜合開發計劃	• JICA와의 連絡體制에 問題가 있음 • 分野別 報告書의 相互 關聯性 不足 • 關係者에게 세미나를 하였으나 團員의 語學能力의 不足으로 相對方이 充分히 理解하지 못함 • 水資源, 에너지 部門과 治水, 灌漑部門의 連繫가 不足하여 報告書案 段階에서 相對國으로부터 많은 指摘을 받음 • 主要 調査要員이 相對國에 常住하는 形態로 調査를 遂行했으나 調査團에 連絡이 疏忽한 問題도 많음. 向後의 契約에 있어서는 必要한 時期에 主要 調査要員이 國內에 있도록 工程을 構築해야 할것임

17. 世界銀行의 契約方式과 價格決定

컨설턴트 契約의 基本的인 네가지方式과 豫備費 및 價格調整 條項等의 槪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Man-Month(또는 時間基準)契約(Man-Month or Time Based Contracts)

이러한 契約은 綜合計劃 및 妥當性調査, 設計, 詳細設計 및 建設監督, 技術援助의 各委託業務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世界銀行은 直接 世界銀

行을 爲하여 遂行되는 委託業務의 大部分에 Man-Month 契約方式을 使用하고 있으며 또한 適切한 경우에는 借入者에게도 그 使用을 奬勵하고 있다.

支拂은 合意된 時間基準料金, 擔當要員(通常은 契約書에 指名되고 있다)의 生活費, 手當 및 還拂費目을 基準으로 하고 있다. 時間基準料金은 通常 Man-Month로 計算되며 給與, 交際費, 企業의 一般管理費, 手數料 또는 利潤을 包含하며 通常은 海外手當도 包含된다. 契約價格에는 豫期치 않는 業務 및 價格調整에 充當하는 目的의 豫備費가 總額의 上限範圍에 包含되는 것이 通例이다.

나. 總額契約(Lump Sum Contracts)

Lump Sum契約은 主로 工業部門에서의 詳細設計의 委託業務를 對象으로 締結되고 있다. 合意된 總額에 따라 代價를 支拂하는 同契約은 投入과 支拂이 直接的으로 連繫되어 있지 않다는 點에서 Man-Month契約이나 Cost Plus Fee 契約등과 差異가 난다. 代價는 合意된 期限 또는 進行 日程에 따라 支拂하는 것이 通例이다. Lump Sum契約은 通常 投入人員 및 其他項目 또는 當該特定業務와 關聯하여 規定되어 있는 比率에 依하여 交涉된다. 相互合意 後에 總額은 契約期間동안 有效하며 變하지 않는다.

다. 比率契約(Percentage Contracts)

比率契約은 컨설턴트의 用役費를 프로젝트의 建設經費와 直接 關聯짓는 方式이다.

比率에 對한 合意가 成立된 다음에는 Lump Sum 契約의 경우와 같이 投入과 支拂이 直接的으로 連繫되지 않는다.

契約協商은 當該委託業務나 專門職基準料金 또는 그 둘다를 基礎로 하여 行해진다.

이러한 契約은 建築設計委託業務에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몇몇의 專門的인 엔지니어링 團體는 엔지니어링 設計의 委託業務에 이 契約方式을 採擇하도록 奬勵하고 있다.

世界銀行에서는 實際의 建築經費에 對한 比率을 基準으로한 컨설턴트 契約은 避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契約에는 事實上 上限線이 없을 뿐만아니라 革新的으로 經費를 節減할 수 있는 設計를 하려는 努力을 疏忽케 하기 때문이다.

比率契約에서는 契約額(또는 그 主要部分)을 實際의 經費가 아닌 見積 經費에 대한 比率에 따라 定하고 契約을 Lump Sum契約으로 取扱하는 方法이 採擇되기 쉽다.

라. 定額契約(Cost Plus Fixed Fee Contracts)

Cost Plus Fixed Fee 契約은 工業 및 工程設計 프로젝트의 準備, 技術指導業務에 主로 採擇되는 契約方式이다.

여기서 말하는 코스트란 設計 契約者가 業務를 遂行하는데 必要하다고 看做되는 要員 및 資材의 코스트를 指稱하며 業務의 維持 및 完了時期등은 定해진 日程에 依한다.

Fee는 컨설턴트 企業과 發注者 間에 技術的 노우하우 및 運營上 投入費 等의 水準을 基礎로 하여 協商에 依해 定해진 金額이다. 同 契約方式은 Fee가 獨立된 日程表에 따라 支拂되는 點을 勘案하면 Man-Month契約과 類似하다.

그러나 Man-Month契約의 경우와 달리 컨설턴트와 發注者 사이에 所定期間內에 委託業務를 完了하기 위해 延人員의 追加가 必要하다는 合意가 成立된 경우에는 컨설턴트는 追加 코스트만 支拂을 받고 Fee

또는 利潤에 대해서는 追加로 支拂 하지 않는것이 通例이다.

마. 價格調査

컨설팅企業의 契約에는 價格調整에 관한 規定이 包含되어야 한다. 價格調整은 通常 컨설턴트의 本國 및 受惠國에서의 生活費의 變動에 따른 要員給與의 增加 (또는 減少)를 時間基準料金에 反映시키기위해 必要하게 된다.

期間이 1年을 넘는 契約에는 通常, 價格調整規定이 包含된다. 期間이 2年 以下의 契約인 경우 미리 第2次年度의 價格調整에 關해 相互合意하며 契約하는 方法이 採擇되기도 한다. 또한 期間이 2年을 超過하는 長期契約의 경우는 每年 契約코스트를 再檢討하고 改訂할 수 있는 規定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改訂은 適切한 公的 指數나 信憑性 있는 文書 및 統計등을 根據로 해야한다. Man-Month 料金의 改訂에는 通常 外貨 및 現地通貨에 依한 支拂에 대해 適切한 指數가 作成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改訂은 Man-Month 料金 全體 및 現地準備金, 그밖의 適切한 코스트에 適用되는 것이 通例이다. 契約 交涉期間中에 價格調整을 公正하게 實施하기 爲하여 使用될 指數 및 算式등을 包含한 調整方法에 對하여는 事前에 合意해 두어야 한다.

바. 豫備費

컨설턴트 契約에는 豫備費가 包含되어야 한다. 豫備費는 豫想할 수 없었던 追加的 業務 및 價格調整에 起因하는 코스트에 對備하는 것이다.

豫想할 수 없었던 業務에 關한 豫備費는 世界銀行資金借入者의 自由裁量으로 쓰이기 때문에 同 借入者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 限하여 컨설

턴트 企業에 適用된다.

同 條項을 包含시킴으로써 컨설팅 企業이 追加的 業務를 必要로 하는 事態가 생겼을 때 借入者의 資金難이 發生하는 事態를 막게 된다. 豫備費는 또한 契約上의 價格調整에 관한 規定運用에 따른 追加코스트도 커버한다.

18. 調査(Pre F/S, F/S)段階別 컨설팅報告書

日本 JICA에서는 本格調査 遂行過程에서 컨설턴트가 提出해야 하는 報告書를 着手報告書(Inception Report), 進行報告書(Progress Report), 中間報告書(Interim Report), 最終報告書 草案(Draft Final Report), 最終報告書(Final Report)等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同 報告書들의 提出時期, 內容등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圖 Ⅴ－4〉 JICA의 F/S 調査時 提出해야하는 報告書의 種類 및 內容

作業段階	報告書類의 名稱	內 容 要 旨	提出處	摘 要
國內準備	着手 報告書 (Inception Report)案	S/W에 調査의 具體的인 內容方法, 스케쥴을 追加, 調査의 着手時에 提出	JICA	
現地調査	着手 報告書 (Inception Report)	相對國政府와 協議하여 合意를 한것만 提出	相對國政府	
	進行 報告書 (Progress-Report)	現地調査의 進步狀況, 實績·問題點등에 대해 定期的(每月, 每分期 및 半期)으로 提出	相對國政府 및 JICA	
	中間 報告書 (Interim Report)	現地調査의 終了時點등에 調査의 進陟, 實績, 今後의 解釋方針, 計劃을 確認하기 위한 報告書	〃	경우에 따라서는 國內에서의 解釋을 追加해 作成
國內解釋	最終 報告書 草案(Draft Final Report)	相對國政府의 코멘트를 받아 들여 調整하고, 最終的으로 作成하기 위해 提出하는 書類	〃 〃	
提 出	最終報告書 (Final Report)	最終的으로 提出하여 相對國政府에서 受理되는 報告書	〃 〃	事業團總裁가 日本政府名義로 相對國에 提出

Ⅵ. 日本의 開發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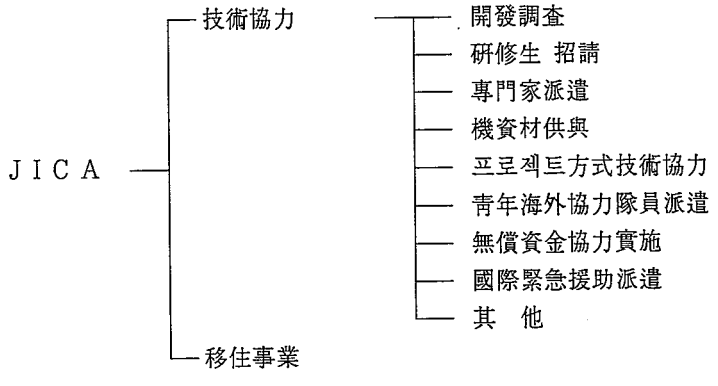
1. 開發調査의 內容

가. 開發調査의 定義

JICA에서는 開發調査事業을 「開發途上國의 社會·經濟發展에 重要한 役割을 하는 公共的인 開發計劃에 關하여 現地調査 및 國內作業을 하고 그 開發計劃의 推進에 寄與하는 컨설팅 協力을 實施하는 事業」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또한, JICA의 開發調査事業은 技術協力事業의 一環으로 社會開發協力部, 農林水產計劃調査部, 林業水產開發協力部, 鑛工業計劃調査部, 企劃部, 鑛工業開發協力部, 農業開發協力部, 醫療協力部등 8部에 걸쳐 實施되고 있으며 그 分野, 目的, 內容에 따라 그 種類가 多樣하다.

〈圖 Ⅵ－1〉 JICA事業의 分類



나. 開發調査의 業務分擔

農林水産業分野는 農林水産計劃調査部, 農業開發協力部 및 林業水産開發協力部가, 鑛工業分野는 鑛工業計劃調査部와 鑛工業開發協力部가 각각 擔當하고 있으며 그 以外의 社會, 經濟基盤分野는 모두 社會開發協力部가 擔當한다. 그리고 企劃部는 以上의 6部와는 약간 다른 綜合的인 觀點에서 프로젝트發掘調査, 評價調査와 大規模開發프로젝트調査 等을 다루고 있으며 그 對象分野에 대한 制限은 없다.

〈表 Ⅵ－1〉 開發調査事業費 豫算推移

(單位：百萬엔, %)

年度	外務省	通商産業省			合計
	交付金	委託費	海外開發計劃調査委託費	資源開發協力基礎調査委託費	
'74	2,318(62.1)	1,416(37.9)	557(14.9)	859(23.0)	3,734(100)
'75	2,856(56.9)	2,164(43.1)	955(19.0)	1,209(24.1)	5,020(100)
'76	4,081(60.6)	2,657(39.4)	1,434(21.3)	1,223(18.2)	6,738(100)
'77	5,519(63.9)	3,117(36.1)	1,709(19.8)	1,408(16.3)	8,636(100)
'78	6,683(65.3)	3,547(34.7)	2,072(20.3)	1,475(14.4)	10,230(100)
'79	8,617(68.1)	4,039(31.9)	2,479(19.6)	1,560(12.3)	12,656(100)
'80	10,285(68.4)	4,742(31.6)	3,017(20.1)	1,725(11.5)	15,027(100)
'81	11,542(68.6)	5,291(31.4)	3,411(20.3)	1,880(11.2)	16,832(100)
'82	12,308(67.9)	5,808(32.1)	3,701(20.4)	2,107(11.6)	18,116(100)
'83	13,190(68.3)	6,135(31.7)	3,893(20.1)	2,242(11.6)	19,325(100)
'84	13,958(68.8)	6,318(31.2)	4,023(19.8)	2,296(11.3)	20,277(100)
'85	13,450(66.6)	6,744(33.4)	4,207(20.8)	2,536(12.6)	20,194(100)
'86	14,388(67.7)	6,873(32.2)	4,260(20.0)	2,613(12.3)	21,261(100)
'87	15,533(69.0)	6,972(31.0)	4,490(20.0)	2,483(11.0)	22,505(100)

註：當初豫算基準

다. 開發調査의 豫算

JICA의 豫算內譯을 살펴보면 鑛工業分野의 調査豫算은 通産省으로부터의 委託費이며 餘他 分野의 豫算은 모두 外務省交付金으로 充當되고 있다. 따라서 鑛工業分野의 開發調査는 外務省 뿐만 아니라 通産省과의 緊密한 協力下에 實施되고 있다.

〈圖 Ⅵ－2〉 JICA 開發調査事業費의 財源

外務省交付金	通商産業省委託費
農業(農器具製造業 除外)	農器具製造業
水産業	
林業(家具製造等 木材利用工業 除外)	家具製造等 木材利用工業
造船, 鐵道車輛製造業	工業(造船, 鐵道車輛製造業 除外)
	鑛業
道路	
運輸	
港灣	
橋梁	
灌漑	
	電力
多目的댐(發電, 治水, 灌漑 等 目的事項의 比重에 따라 區分)	
水道(工業用水道 除外)	工業用水道
	가스
	中小企業
電氣通信(시스템을 主로하는 경우)	電氣通信(裝置를 主로하는 경우)

라. 開發調査의 段階

開發調査事業의 大部分을 占有하는 妥當性調査(F/S調査)와 마스터 플랜調査(M/P)는 本格調査로서 實施되는 것이다. 그리고 地形圖書作成調査, 農林業開發調査, 海外開發計劃調査와 같은 對象分野에 該當되는 開發調査는 프로젝트別 業務內容에 따라 事前調査부터 本格調査에 이르는 多樣한 形態를 띠고 있다. 主要 擔當部別 該當事業의 分類는 〈圖 Ⅳ－3〉와 같다.

〈圖 Ⅵ-3〉 主要 擔當部別

擔當部名	調査의 種類(豫算事項)	調査의 目的	調査의 成果品・內容
社會開發協力部	事前調査	相對國擔當者接觸	事前調査報告書
		S/W 協議	S/W,M/M,事前調査報告書
	實施調査	마스터플랜策定(M/P)	綜合的・長期的基本計劃調査報告書
	長期調査	妥當性調査(F/S)	技術的・經濟的妥當性調査報告書
	實施設計調査	實施計劃調査(D/D)	詳細設計, 積算書, 入札關係書類
	地形圖作成調査	基本圖作成	國土基本圖, 土地利用圖, 土地條件圖
	地下水開發調査	飮料水開發	地下水探査, 調査井試掘
	After Care 調査	補充,再檢討調査	After Care調査報告書

開發調査事業의 種類

實施方法	調査團의 構成	豫算區分	對象分野
自體調査	關係省廳・JICA		社會開發・綜合交通
			都市交通
〃	關係省廳・JICA		道路
			鐵道
契約	컨설턴트		橋梁
		外	港灣
			空港
契約	컨설턴트	務	海運・造船
			放送
		省	電氣通信
契約	컨설턴트		水資源開發
		交	河川・砂防
			上水道
契約	컨설턴트	付	下水道・排水
			都市計劃・市外地區開發
		金	都市廢棄物・大氣汚染
契約	컨설턴트		觀光・基盤整備
			地形圖・海圖作成
			地下水開發
契約	컨설턴트		其他

擔當部名	調査의 種類(豫算事項)	調査의 目的	調査의 成果品・內容
農林水産計劃調査部	農林業開發調査	農林業開發F/S	技術的・經濟妥當性調査報告書
	林業資源調査	森林資源調査	森林資源調査報告書
林業水産開發協力部	水産資源調査	水産資源調査	水産資源調査報告書
鑛工業計劃調査部	海外開發計劃調査	鑛工業開發F/S等	技術的・經濟妥當性調査報告書
	資源開發協力基礎調査	鑛物資源調査	鑛物資源開發調査報告書
企劃部	援助效率促進基礎調査	프로젝트形成基礎調査	年次協議結果報告書等
		援助評價調査	評價調査報告書
	大規模開發프로젝트調査	綜合開發計劃策定	總合開發計劃調査報告書
5部共同	프로젝트研究	調査手法等分析研究	各種메뉴얼
(參考)			
無償資金協力調査部	事前調査	M/M協議	事前調査報告書
	基本設計調査	基本設計調査(B/D)	基本設計報告書

實施方法	調査團의 構成	豫算區分	對象分野
契約	컨설턴트	外務省	
契約	컨설턴트	交付金	農林水産業
契約	컨설턴트		
契約	컨설턴트	通算省	鑛工業
契約	컨설턴트	委託費	
自體調査	外務省・JICA		
契約	컨설턴트	外務省	
契約	컨설턴트	交付金	制限없음
契約	컨설턴트		
			一般案件
直營	關係省廳・JICA	外務省	水産案件
契約	컨설턴트	交付金	食糧增産援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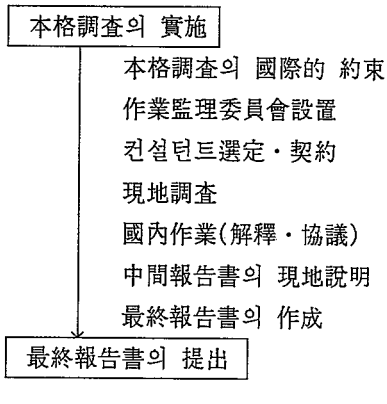
〈圖 Ⅵ－4〉 JICA開發調査 段階別 業務內容 및 豫算上의 名稱

	調 査 段 階	調 査 內 容	JICA豫算上의 名稱
(1)	• Project Finding 調査	• Project의 發掘 開發途上國이 지닌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나, 그나라의 經濟社會의 發展에 必要한 프로젝트를 選定하는 것으로 複數의 프로젝트를 經濟·技術의 現狀, 또는 旣存의 計劃에 基礎하여 判斷하고 經濟的, 財務的으로 收益性이 높은 프로젝트등을 찾아내려는 것임.	• 援助效率促進基礎調査(프로젝트 形成基礎調査)
	• Project形成調査	• 프로젝트의 策定·形成(年次協議等)	• 一般開發調査
(2)	• 事前調査	• 相對國의 意向確認, 情報蒐集 → S/W協議, 署名	• 地形圖作成調査 • 農林業開發調査
(3)	• 本格調査	• 開發計劃策定에 대한 컨설팅協力	• 水產資源調査
	① Master Plan 調査 (M/P)	• 各種 開發計劃의 基本計劃을 策定하기 위한 調査로 通常的으로는 全國이나 地域次元, 各 領域別, 또는 各各의 該當 프로젝트의 段階로 實施되는 것임. 마스터플랜 策定은 여러 種類의 프로젝트가 綜合되어 地域開發的 色彩가 濃厚한 경우 또는 어떤 프로젝트가 多目的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경우등에 最初의 段階로서 必要함. 그리고 相對國의 經濟全般에 걸친 調査, 卽 最適經濟開發計劃의 作成도 이 調査分野에 包含됨.	• 地下水開發調査 • 大規模開發 • 海外開發計劃調査 • 資源開發協力基礎調査

	調 査 段 階	調 査 內 容	JICA豫算上의 名稱
	② Feasibility 調査 (F/S)	• Feasibility調査는 廣義로는 豫備妥當性調査(Prefeasibility : 事前實現可能性調査)와 妥當性調査(Feasibility : 現實可能性 調査)로 나뉘는데, 그 差異點은 調査對象範圍와 精密度에 있음. Feasibility 調査는 프로젝트의 可能性, 妥當性, 投資效果에 대해 調査하는 것으로 普通 프로젝트가 社會的, 技術的, 經濟的, 財務的으로 實現可能한지 與否를 客觀的으로 證明하려는 것임. 그리고 最終成果品은 該當國家가 프로젝트 實施의 優先順位 및 實施 與否에 대한 爲政者의 意思決定의 判斷資料가 되며 該當國家가 資金마련을 必要로 하는 경우에 資金마련을 要請받은 國際金融機關등이 프로젝트의 借款對象으로 適切한지의 與否에 대해 判斷할 때의 基礎資料가 됨.	上 同
	③ 實施設計 調査 (D/D)	• 實施設計調査는 工事의 實施設計圖書를 作成하는 것으로 通常的으로는 工事費의 一部로 包含되는 것이지만, 이미 實施가 決定된 프로젝트의 工事着工에 必要한 圖書, 즉 具體的인 設計圖, 工事示方書 및 入札關係書類등의 作成을 目的으로 함. 이 段階의 調査는 프로젝트의 詳細設計등 細部에 걸친 調査를 必要로 하며, 一般的으로는 多額의 經費와 長期間을 必要로 함.	

	調 査 段 階	調 査 內 容	JICA豫算上의 名稱
(4)	• After Care 調査	• 위의 各 段階의 調査를 實施한 後, 相對國政府의 再要請에 따라 다시 報告書 內容의 說明을 必要로 하는 경우 또는 調査終了後에 該當 프로젝트의 工事費의 時點修正을 爲해 그 프로젝트의 費用에 대해 再調査를 必要로 하는 경우, 또는 該當 프로젝트가 實施段階에 이르렀을때 Feasibility調査의 結果에 대한 助言, 指導등을 要請받아 이를 行하는 것임.	• After Care 調査
	• 評價調査	• 프로젝트를 綜合的으로 評價하고 問題點에 對한 對應策等을 檢討 하는 것을 말함.	• 援助效率促進基礎調査(援助評價調査)

〈圖 Ⅵ－5〉 本格調査의 業務內容



(1) 開發調査 案件決定

相對國으로부터 外交루트를 通하여 要請이 있으면 外務省과 JICA는 該當案件에 對하여 關聯情報를 蒐集하고 調査의 實施可能性을 檢討한다.

要請은 通常 口上書 및 TOR이라는 公的文書의 提出에 依해서 이루어지고 實施可能性의 檢討는 이 TOR를 根據로 行해진다. 또한 年次協議(主要援助受惠國政府와의 經濟協力에 關한 定期的會合)나 프로젝트形成調査時에 要請案件을 檢討하는 경우도 많다. 그 結果 外務省에 依해서 該當案件의 調査實施가 決定되면 關係各省廳과의 協議에 依하여 調査의 基本方針이 策定된다.

〈圖 Ⅵ－6〉 開發調査프로젝트의 發掘過程

作業順序	相對國	外務部	關係部處	事業團		備考
				本部	調査團	
		(在外公館)				
相對國으로부터의 要請	○	○				公文등의 配布
實施可能性의 檢討 Project Finding		○	○	○		
• 技術協力調査團	○	○		○		ASEAN에 每年 派遣
• 經濟技術協力調査團	○	○		○		ASEAN 以外의 地域은 關係各部處 連絡, 會議 開催
調査實施의 採擇決定		○	○			
事前調査의 實施方針決定		○	○	○		

(2) 事前調査의 實施

事前調査團은 通常 官베이스로 構成되고, 援助受惠國의 要請內容을 確認함과 同時에 調査對象地域을 踏査하고, 本格調査實施上의 問題點 把握과 對應策을 檢討한다. 그리고 援助受惠國政府와 本格調査의 範圍, 內容등을 나타내는 S/W에 대하여 協議하여 確認·署名하고, 口上書를 交換한다.

〈圖 Ⅵ-7〉 事前調査 實施過程

作業順序	相對國	外務部	關係部處	事業團		備考
				本部	調査團	
事前調査團의 編成			○	○		
事前準備						
• 調査의 오리엔테이션			○	○	○	
• TOR등의 檢討				○	○	
• 國內資料·情報蒐集				○	○	
• S/W案의 作成				○	○	
• S/W案의 事前諒解		○	○	○	○	
現地調査						
• 相對國政府의 要請	○				○	
• 內容등 聽取						
• 現場踏査	○				○	
• 資料·情報蒐集	○	(在外公館)		(海外事務所)	○	
• S/W의 協議	○	○		○		
事後整理						
• 事前調査報告書作成				○	○	
• 歸國報告		○	○	○	○	

(3) 本格調査의 實施

本格調査는 通常, JICA가 컨설턴트등과 契約을 締結하여 實施한다. 이때 技術的判斷을 要하는 事項에 대하여 諮問받기 위해 必要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學識과 經驗을 兼備한 사람들로 構成되는 作業監理委員會가 設置된다.

現地調査는 S/W에 따라 政府의 協力을 받아 實施되며 이 過程에서 相對國擔當官(카운터파트)에 대한 技術移轉도 이루어진다. 調査의 結果는 國內에서의 解析作業을 거쳐, 最終報告書로 作成되지만, 同 報告書를 援助受惠國에 提出하기전에 報告書說明 Mission이 派遣되는 경우가 많다.

〈圖 Ⅵ－8〉 本格調査의 實施過程

	相對國	外務省	關係處	事業團			備考
				本部	作業監理委員會	調査團(컨설턴트)	
				(海外事務所)			
本格調査의 國際約束	○	○		○			口上書 및 S/W交換
컨설턴트의 選定				○			
作業監理委員會設置			○	○			原則的으로 關係省의 推薦
調査業務實施				○		○	原則的으로
契約締結							프로포잘 方式
(勞務提供契約締結)				○		○	特命隨契도 可能

	相對國	外務省	關係處	事業團			備考
				本部	作業監理委員會	調査團(컨설턴트)	
本格調査實施							
• 國內準備		(在外公館)		○ (現地監理)	○	○	
• 現地調査	○	○		○	○	○	現地作業監理派遣
• 歸國報告		○ (擔當官)	○	○	○	○	
• 國內解釋		○		○	○	○	外務省(擔當官)
• 中間報告書의 現地說明	○	(在外公館) ○		○	○	○	
• 最終報告書作成				○	○	○	
相對國政府에 對한 最終報告書提出	○	○		○			

(4) 最終報告書의 提出

以上과 같은 節次에 依하여 作成된 最終報告書는, JICA의 이름으로 援助受惠國에 提出되어 該當 프로젝트 實施(資金協力要請등)를 決定할 때의 參考資料로 提供되게 된다.

2. 開發調査의 實績

가. 豫算配分

(1) 日本政府 ODA豫算과 餘他 豫算의 比較

• 日本 ODA豫算은 餘他 豫算의 凍結 與否에 相關없이 繼續 增加해 왔다.

〈表 Ⅵ－2〉 日本政府 豫算의 項目別 增加率 比較

(單位：百萬엔, %)

區 分	1980	1987	1988	1989	1990	1991	構成比 (1991)
總豫算	425,888	541,010	566,997	604,142	662,368	703,474	100
增加率	10.3	0.0	4.8	6.6	9.6	6.2	
指數	100	127.0	133.1	141.9	155.5	165.2	
一般會計	307,332	325,834	329,821	340,805	353,731	372,382	52.9
增加率	5.1	0.0	1.2	3.3	3.8	5.3	
指數	100	106.0	107.3	110.9	115.1	121.2	
ODA 豫算	3,516	6,580	7,011	7,557	8,175	8,831	1.3
增加率	16.3	5.8	6.5	7.8	8.2	8.0	
指數	100	187.1	199.4	214.9	232.5	251.2	
防衛費	22,302	35,174	37,003	39,198	41,593	43,870	6.2
增加率	6.5	5.2	5.2	5.9	6.1	5.5	
指數	100	157.7	165.9	175.8	186.5	196.7	
公共事業	66,554	60,824	60,824	61,974	62,147	65,897	9.4
增加率	1.7	2.3	0.0	1.9	0.3	6.0	
指數	100	91.4	91.4	93.1	93.4	99.0	
社會保障	82,124	100,896	103,845	108,947	116,148	122,122	17.4
增加率	7.7	2.6	2.9	4.9	6.6	5.1	
指數	100	122.9	126.4	132.7	141.4	148.7	
教育및科學	45,250	48,497	48,581	49,371	51,129	53,944	7.7
增加率	5.2	0.1	0.2	1.6	3.6	5.5	
指數	100	107.2	107.4	109.1	113.0	119.2	

- 그結果 '80年에 全體豫算의 0.8%에 不過하던것이 '91年度에는 1.3%로 增加되었다.
- 또한 '80年度를 基準으로 餘他 豫算은 '91年 現在 그 指數가 全部 200未滿이나 ODA豫算만은 250을 超過하고 있다.

(2) JICA의 豫算配分 現況

- JICA의 豫算은 交付金, 出資金 및 通產省으로 부터의 受託費(海外 開發計劃 調査事業費)로 構成된다.
- 그중 交付金은 JICA 自體의 事業費로 볼 수 있는데 '91年度 豫算을 基準으로 交付金 1,310億엔中 海外技術協力事業費가 84.4%(1,106億엔)를 차지하고 있다.
- 海外技術協力事業費中 開發調査事業費가 17.9% (198億엔)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開發調査費는 通產省의 受託費 約 85億엔를 合하면 JICA總豫算(1,426億엔)中 19.8%를 占有하게 된다.
- 따라서 JICA에서는 豫算配定에 있어서도 開發調査事業에 最優先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Ⅵ-3〉 JICA의 1991年度 豫算

(單位 : 千엔)

區 分	1990(A)	1991(B)	B/A(%)
Ⅰ. 國際協力事業團交付金	121,824,168	130,964,563	7.5
1. 海外技術協力事業費	102,906,032	110,574,080	7.5
(1) 技術研修員受入事業費	17,192,821	18,306,530	6.5
(2) 靑年招請事業費	1,771,349	1,967,478	11.1
(3) 技術協力專門家派遣事業費	13,513,999	14,454,579	7.0
(4) 技術協力機材供與事業費	2,505,828	2,558,125	2.1

區　　分	1990(A)	1991(B)	B/A(%)
(5) 社會開發協力事業費	9,648,573	9,978,122	3.4
(6) 保健醫療協力事業費	5,237,585	5,891,781	12.5
(7) 人口家族計劃協力事業費	1,021,022	1,101,072	7.8
(8) 農林水產業協力事業費	9,455,836	9,956,683	5.3
(9) 產業開發協力事業費	2,347,401	2,514,065	7.1
(10) 青年開發協力事業費	11,693,859	13,195,175	2.8
(11) 技術協力專門家等 福利厚生費	659,790	719,380	9.0
(12) 技術協力專門家養成確保費	1,688,521	2,066,549	18.9
(13) 開發調査事業費	18,474,948	19,801,262	7.2
(14) 開發協力事業費	1,021,695	1,040,470	1.8
(15) 無償資金協力事業費	4,040,473	4,392,986	8.7
(16) 災害援助等 協力事業費	1,000,000	1,000,000	0
(17) 援助效率促進費	1,632,332	1,629,823	3.0
2. 海外移住事業費	2,560,233	2,618,609	2.3
3. 管　　理　　費	16,357,903	17,771,874	8.6
Ⅱ. 國際協力事業團出資金	3,191,000	3,132,000	△1.8
1. 開發投融資資金出資金	100,000	100,000	0
2. 移住投融資資金出資金	0	0	—
3. 施設取得等　出資金	3,091,000	3,032,000	△1.9
合　　計	125,015,168	134,096,563	7.3
國際協力事業團受託費(通産省)			
海外開發計劃調査事業費	8,098,694	8,481,543	4.7
總　　計	133,113,862	142,578,106	7.1

(3) 開發調査 豫算推移

- 日本의 開發調査費는 '60年代까지는 外務省의 調査團 派遣經費豫算과 通産省의 海外開發計劃經費 豫算이 編成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 '68年에 이르러서야 施設設計經費豫算이 別途로 策定되었으며 '70年度에 이르러서는 資源開發基礎調査費를 비롯한 各種 細部項目에 對한 豫算이 別途編成되기 始作하였다.
- '73年에 始作된 第1次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74年 JICA가 設立되었으며 같은해에 開發調査事業費가 大幅 擴充되었고 (前年對比 約75%增加) 事業費도 調査團派遣經費, 프로젝트硏究費, 實施設計費, 海外開發計劃調査費, 資源開發基礎調査外에도 特別調査費등이 編成되어 더욱 그 內容이 多樣하게 되었다.
- 또한 第2次 오일쇼크가 극심했던 '79年, '80年에도 開發調査 事業費가 大幅強化되었다.

나. 事業實施現況

(1) 地域別, 國別 現況

- '62~'89年間 實施件數를 살펴보면 總4,372件으로 그중 아시아 地域이 2,518件으로 57.6%를 차지하고 있다.
- 아시아 國家中에서도 인도네시아(589件), 泰國(404件), 필리핀(412件), 中國(265件), 말레이지아(185件)등 5個國에 1,855件이 實施되어 全體(4,372件)의 42.4%, 아시아 地域의 73.7%를 차지하고 있어 日本의 開發調査事業은 ASEAN地域과 中國에 集中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 以外에도 50件以上 實施된 國家로는 파키스탄(112件), 방글라데시(80件), 이집트(100件), 터어키(51件), 케냐(75件), 탄자니아(63件), 콜롬비아(82件), 파라과이(68件), 멕시코(67件), 볼리비아(63件), 아르헨티나(59件), 브라질(50件)등 12個國이다. 이는 日本의 開發調査가 20個國以內의 國家에 主

로 實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年度別 實施現況

- 開發調査가 開始된 해인 '62年度의 開發調査 實施件數는 겨우 19件에 不過했는데 JICA가 設立된후 大幅 增加되어 '75年度에는 81件을 實施하였고 第2次 오일쇼크期間에 該當하는 '80年度에는 260件을 實施하였다.
- '85年 以後에는 每年 約 290~330件 內外의 開發調査事業이 實施되었다.

〈表 Ⅵ-4〉 國別 年度別 開發調査 現況

(單位 : 件)

區 分	'62	'65	'70	'75	'80	'85	'87	'88	'89	合 計 ('62~'89)
〈아 시 아〉	13	13	24	43	140	169	210	191	163	2,518
인도네시아	1		7	19	40	35	45	36	30	589
中 國					7	31	42	44	28	265
泰 國	3	2	3	4	22	23	35	30	26	404
필 리 핀	1	1	1	9	29	27	31	27	25	412
말레이지아	1	2	3		13	13	14	13	14	185
방글라데시				1	3	4	5	8	7	80
파 키 스 탄		2	3	2	8	5	10	8	7	112
印 度	1					1	5	3	5	22
其 他	6	6	7	8	18	30	23	22	21	449

(單位：件)

區　　分	'62	'65	'70	'75	'80	'85	'87	'88	'89	合計 ('62~'89)
〈中 近 東〉	1	0	0	8	23	30	24	31	31	426
터 어 키				1	2	4	5	6	7	51
이 집 트				2	5	6	4	7	3	100
모 로 코				1	1	4	4	4	3	35
其　　他	1	0	0	4	15	16	11	14	18	240
〈아프리카〉	0	2	5	12	35	26	32	31	37	489
케　　냐				2	3	5	4	5	8	75
잠 비 아					3	5	3	1	4	35
탄 자 니 아			2	3	1	3	3	6	4	63
其　　他	0	2	3	7	28	13	22	19	21	316
〈中 南 美〉	5	4	2	17	54	59	54	55	54	792
아르헨티나	1			1	2	4	8	5	4	59
콜 롬 비 아	1	1		1	6	8	6	7	7	82
브 라 질		1		3	5	3	2	4	5	50
멕 시 코				1	8	5	6	7	4	67
파 라 과 이		1			5	4	7	5	4	68
볼 리 비 아	2			2	5	2	5	4	5	63
其　　他	1	1	2	9	23	33	20	23	25	403
〈其他地域〉	0	0	0	1	8	5	14	16	5	147
合　　計	19	19	31	81	260	289[1)]	334	324	290	4,372

註：1) 特別案件調査 6件除外

(3) 調査段階別 實施現況

- 1962年度에는 外務省에 의한 實施調査와 通産省의 海外開發調査만 實施되었다.
- 1968年에 實施設計調査가 始作되었고 1970年度에 事前調査, After-care 調査등이 始作되었으며, 1971年에 特別案件에 대한 調査가 1975年에는 綜合開發計劃調査가 1982年에는 援助効率促進 基礎調査가 各各 開始되어 오늘날의 多様한 開發調査 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4) 部門別 開發調査

- 1989年度 實績을 基準으로 하여 部門別 實施 現況을 살펴보면 交通(62件), 水資源(54件), 農林水産業(44件), 製造業(31件), 鑛物(24件), 電力(16件), 保健衛生(12件), 通信(9件), 其他(38件)등 諸分野에 걸쳐서 實施되고 있다.
- 特히 10件 以上씩 實施된 인도네시아(30件), 中國(28件), 泰國(26件), 필리핀(25件), 말레이지아(14件)등 5個國의 部門別 實施 特徵을 살펴보면 中國은 製造業 (15件)과 水資源(5件), 인도네시아는 水資源(6件), 交通(6件) 및 農林水産業(5件) 泰國은 水資源(8件)과 交通(6件), 말레이지아는 交通(7件) 分野에 각각 集中的으로 實施되었다.

(5) 開發調査 執行實績

- 1962年度에 開發調査가 始作된이래 1989年까지 外務省의 開發調査費가 約 169,827百萬엔이 執行되었고 通産省 海外開發計劃調査費가 약 44,357百萬엔, 資源開發協力 基礎調査費가 約 30,618百萬엔등이 執行되었다.
- JICA의 最近 5年(1985~1989)間 動向을 보면 1985年에 開發調査費가 12,603百萬엔에서 1989年 18,735百萬엔으로 49%가 增加하였고 海外開發 計劃調査費는 3,594百萬엔에서 3,987百萬엔으로 14.5% 資源開發協力基礎 調査費가 2,594百萬엔에서 2,630百萬엔으로 1.4%가 增加하여 主로 外務省 豫算에 依한 開發調査 活動이 強化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表 Ⅵ－5〉 調査段階別

區分＼年度	'62	'66	'68	'70	'71	'74	'75	'76	'77
〈外務省豫算〉	14	15	17	20	27	40	48	78	106
1. 事前調査				1	9	10	15	10	21
2. 綜合開發計劃調査							2	3	
3. 實施調査	14	15	13	15	14	19	17	25	27
4. 長期調査						1	1	2	2
5. After-Care 調査				1	2	2	1	2	3
6. 地形圖作成調査					1	3	3	4	4
7. 農林業開發調査							7	24	26
8. 實施設計調査			4	3	1	2	1	1	2
9. 特別案件調査						3	1	7	12
10. 地下水開發調査									
11. 大規模開發 프로젝트 調査									9
12. 援助效率促進 基礎調査									
13. 事業效率促進調査									
14. 파나마 運河 代替案 調査									
〈通商産業省 豫算〉	4	6	8	11	11	26	33	35	61
1. 海外開發	4	6	8	10	8	18	24	24	46
2. 資源開發				1	3	8	9	11	15
3. 其　　他	1	1							
合　　計	19	22	25	31	38	66	81	113	167

實施現況

(單位：件)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138	177	163	214	216	224	263	199	209	222	221
50	30	27	43	55	57	35	44	38	32	39
31	53	34	52	46	53	63	59	69	70	70
1	3	3	5	4	4	4	2			1
2	3	2	1					2	1	3
4	5	4	2	3	4	5	3	5	5	7
23	36	42	48	42	49	41	46	56	63	63
2	3	2	2	1	2	2	1	2	4	4
19	36	46	57	49	46	78	6			
	1	1	1	2		5	6	6	10	11
6	7	2	3	2	4	6	8	4	4	4
				12	5	24	23	26	32	
										18
							1	1	1	1
75	86	97	92	78	105	112	96	107	112	103
62	68	78	75	63	83	91	74	83	91	83
13	18	19	17	15	22	21	22	24	21	20
213	263	260	306	294	329	375	295	316	334	324

〈表 Ⅵ－6〉 1989年度 部門別

地域	國名	農林水産業	交通			
			道路	港灣	鐵道	其他
아시아	中國	1		1	1	1
	인도네시아	5	3	1		2
	말레이지아	1	2	2	1	2
	필리핀	6	3			2
	泰國	3	4			2
	印度	1		2	1	
	방글라데시	2		2		1
	파키스탄	1				1
	其他	2	1	2		2
中近東	터어키	1		1		
	이집트					1
	모로코					
	其他	5		1		1
아프리카	케냐	1	1			
	잠비아		1			
	탄자니아	1	1			
	其他	6	2			
中南美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1				
	브라질	1				1
	멕시코			1		
	파라과이	1				1
	볼리비아	2	1		1	
	其他	3		3		4
오세아니아	3個國		1			1
其他地域						
合計		44	20	16	4	22

國別 開發調査 現況

(單位：件)

通 信	電 力	水資源	鑛物資源	製造業	醫療保健·衛 生	其 他	合 計
1		5	1	15	2		28
2	3	6	1	1		6	30
	1	2		1	2		14
1	2	5	1	1		4	25
1		8	1	1	2	4	26
			1				5
		1				1	7
1	1		1			2	7
1	1	6		1	2	3	21
	2		2	1			7
		1				1	3
		1	1			1	3
		3		4		4	18
	1	2	1			2	8
		1	1			1	4
	1	1					4
	2	5	3	2		1	21
			2	1		1	4
	1			1	1	3	7
		1	1			1	5
			1	1	1		4
1					1		4
							5
	1	6	4	1	1	2	25
1			1				4
						1	1
9	16	54	24	31	12	38	290

〈表 Ⅵ－7〉 JICA의 開發調査費 執行推移

(單位：百萬엔)

區 分	1962-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合 計 ('62~'89)
開發調査費	93,468	12,603	13,816	15,211	15,994	18,735	169,827
海外開發計劃調査費	24,610	3,594	3,726	4,259	4,181	3,987	44,357
資源開發協力基礎調査費	18,083	2,594	2,541	2,376	2,394	2,630	30,618
合 計	136,161	18,791	20,083	21,846	22,569	25,352	244,802

3. 課 題

日本 總務廳이 1988年에 實施한 監察結果 나타난 JICA의 開發調査에 對한 勸告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開發調査의 效果的 效率的 實施을 爲한 勸告

開發調査事業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公共開發計劃에 關한 基礎的調査를 行하는 事業이다. 그 內容은 地形圖 作成이나 資源賦存狀況의 把握등 開發計劃 策定을 爲한 基礎 데이터 提共을 目的으로 하는 調査, 各分野에 걸친 大型 綜合프로젝트나 特定地域, 特定分野 全體에 걸친 開發프로젝트의 基本構想을 策定하는 마스터플랜調査, 個別프로젝트의 社會的, 經濟的, 技術的, 財政的 側面에서의 實現可能性, 妥當性을 檢證하는 妥當性調査等 여러가지가 있다.

JICA는 鑛工業 以外의 分野는 外務省의 指示에 따라, 또한 鑛工業分野는 通

商産業省의 委託을 받아 開發調査事業을 實施하고 있다. 開發調査의 結果는 相對國政府에 對한 報告書로써 最終마무리 된다.

또한 開發調査를 通해서 調査技術, 計劃樹立技術이 相對國에 移轉되기 때문에 開發調査事業은 技術協力의 一環으로써 位置가 附與된다.

監察結果 開發調査事業의 實施方法 및 效果確保에 關해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發見되었다.

(1) 開發調査事業은 相對國으로부터 要請을 받아서 採擇與否를 決定하는 것이지만, 必要한 경우 豫備調査團을 派遣하여 要請內容을 明確히 한다음 事前調査團을 派遣하여 日本이 實施 해야할 調査의 範圍, 內容등을 規定하는 文書(S/W))를 相對國과 協議하여 締結한후 本格調査에 들어가는 方式을 取하고 있다. 主要 被援助國에 있어서는 年次協議時 相對國 政府에게 調査實施意向을 밝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調査 對象이 된 案件中에는 關係 省廳과의 協議나 要請內容의 把握이 不充分한 채로 年次協議에서 調査實施를 表明하여 이 때문에 關係省廳과의 協議段階에서 調査計劃을 變更하거나, S/W의 締結까지 長時間이 所要되는 경우가 있었다.

(2) 開發調査의 實施件數를 種別로 보면 妥當性調査가 約 5割로 第一 많고 마스터플랜調査가 그 다음이다. 마스터플랜調査는 優良프로젝트의 早期發掘 選定에도 寄與하는 것이어서 最近들어 그 實施件數가 增加하고 있다.

한편 妥當性 調査는 그 調査過程에서 技術移轉效果와 더불어 그 成果品인 報告書를 基礎로 該當 프로젝트가 可能한 한 早期實現 되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나 調査終了後 相對國政府가 報告書를 어느程度 活用하고 있는지 確認이 充分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1976年부터 1984年 사이에 終了된 妥當性調査 388件에 대한 外務省의 暫定調査에 의하면 프로젝트가 實施된 것은 50%를 밑돌고 있다.

〈表 Ⅵ－8〉 Feasibility 調査結果의 事業實施 推進現況

(單位：件, %)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計
Feasibility 調査 終了件數(A)	21	32	34	48	41	52	51	49	60	388
事業實施件數(B)	11	16	15	25	23	24	23	10	15	162
實施率(B/A)	52.4	50.2	44.1	52.1	56.1	46.2	45.1	20.4	25.0	41.8

〈表 Ⅵ－9〉 JICA鑛工業關聯 Feasibility調査 關聯프로젝트 實施現況

(單位：件, %)

案件의 現況('74～'84 F/S調査 對象)	件 數 (構成比)
實施 完了 (1)	14 (13.2)
建設中 (2)	14 (13.2)
實現, 具體化 進行 (3) 入札實施, 資金調達 確定, 外國政府/國際機關의 資金協力에 의해 詳細 設計가 實施되는 것등	18 (17.0)
小計((1)＋(2)＋(3))	46 (43.4)
實現, 具體化 準備中 (4) 外國政府/國際機關에 資金 協力要請中인것, 國內 資金에 의해 詳細 設計中인것등 相對方政府가 積極的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16 (15.1)
小計((1)＋(2)＋(3)＋(4))	62 (58.5)
遲延, 中斷 相對國政府가 具體的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保留된 것등	34 (32.1)
中止, 取消 相對國政府가 公式 中止를 決定한것, JICA報告書와 顯著히 다른 形態로 進行되고 있는것	10 (9.4)
合 計	106 (100)

따라서, 外務省 및 通商産業省은 開發調査事業의 效果的, 效率的 實施를 위해 다음의 措置를 講究할 必要가 있다.

(1) 開發調査案件의 採擇與否 決定에 있어서 要請內容의 把握을 充實히 하도록 努力함과 더불어 要請內容을 事前에 關係省廳에 提供하여, 年次協議에서 協議豫定인 案件은 關係省廳과 事前協議를 더한층 充實히 할 것(外務省)

(2) 開發調査案件의 採擇與否 決定에 있어서 마스터플랜 調査案件을 重視함과 同時에 妥當性調査에 技術移轉效果 뿐만 아니라 對象프로젝트 實現을 爲한 相對國政府의 具體的方針, 日本의 資金協力 可能性 등에 더한층 留意할 것(外務省 및 通商産業省)

(3) 妥當性 調査實施에 있어서는 相對國 政府와 充分한 協議를 行하여 보다 現實的인 報告書를 作成할 수 있도록 JICA를 指導할 것(外務省 및 通商産業省)

(4) 追後의 案件發掘 및 調査實施 方向檢討에 活用할 수 있도록 妥當性 調査終了後의 對象프로젝트 具體化 狀況을 把握하여 進陟되지 않는 것은 그 原因을 分析할 것(外務省 및 通商産業省)

나. 開發調査의 適正한 監理를 爲한 勸告

開發調査事業에 있어서의 本格調査는 外部의 專門的 能力을 活用하여 調査의 效率化를 꾀하기 위해 通常 JICA와 業務實施 契約을 締結한 컨설턴트에 依해 實施된다. 開發調査 報告書는 事業團의 이름으로 相對國 政府로 提出되어 相對國 政府의 政策判斷의 基礎 資料가 되는 것이므로 컨설턴트에 의한 業務實施에 對해서 適正한 監理를 實施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번의 監察結果 다음과 같은 問題가 發見되었다.

(1) JICA가 業務實施 契約에 依據 컨설턴트에 調査業務를 實施시키는 경우 事業團을 發注者로서 調査業務를 監理하는 立場에 있으나 專門分野에 關한 充分한 技術的 知識, 經驗이 있는 職員이 적은 關係로 專門家의 技術的 指導, 助言을 받을 必要가 있는 경우는 關係 省廳등의 經驗이 있는 專門家로 構成되는

作業監理委員會가 設置되고 있다.

作業監理 委員會의 長은 該當 프로젝트의 槪要, 調査業務等에 精通할 必要가 있으므로 當該 프로젝트 관련 豫備調査團長 및 事前調査團長을 歷任한 사람에게 委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이번에 調査對象이 된 案件에 관한 委囑現況을 보면 豫備調査團長이나 事前調査團長을 歷任한 사람과는 別途로 委囑되는 경우가 많다.

(2) 開發調査의 實施件數는 每年 增加하고 있으나 JICA 및 行政機關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어서 民間의 專門能力을 活用하여 調査를 效率的으로 推進키 爲해서는 컨설턴트가 遂行하는 役割이 重要하며 또한 이의 積極的, 效果的 活用을 通해 日本의 컨설턴트의 育成, 充實을 꾀하는 것이 要望된다. 이를 爲해 컨설턴트 業務에 對한 嚴正하고 正確한 事後評價를 行함과 더불어 그 評價 結果를 事後의 契約에서의 컨설턴트 選定, 指導에 活用하여 그 質的 向上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 JICA에 있어서도 컨설턴트에 對한 業務實績 評價를 하고 있는데 이를 基礎로 作成된 實績評價表를 보면 業務實施上의 不備點이나 追後 契約에 있어서의 留意點을 指摘하고 있어서 實績評價를 累積해 가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나 JICA가 行하는 業務實績評價는 一定金額 以上의 契約만을 評價對象으로 하고 있고 또한 評價表 樣式이 너무 槪略的이기 때문에 嚴正, 正確한 評價를 하는데는 充分하지 않고, 調査對象이 된 案件에 대해서 JICA內規에 依해 評價해야 하는 24件中 6件에 對해서만 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外務省은 調査業務監理의 適正化를 꾀하기 위해 다음 事項에 대해 JICA를 指導할 必要가 있다.

① 作業監理委員會 構成員 選任條件의 明確化를 꾀하여 豫備調査團, 事前調査團과의 繼續性 確保에 努力할 것

② 컨설턴트에 對한 業務 實績 評價에 關하여

㉮ 그 履行을 確保하기 爲해 評價節次을 成果品 檢査節次로 公式化 시킬것

㉯ 모든案件을 對象으로 할 것

㉰ 評價項目을 細分, 具體化시켜 評價表 樣式 및 具體化 評價要領을 作成하는 등 評價節次를 改善함으로써 評價에 徹底를 期할것

〈附　　錄〉

1. 開發援助의 形態別 國家別 實績(1992)

2. 開發調査의 年度別 國家別 實績(1984～1992)

3. 機資材供與의 年度別 地域別 實績(1977～1991)

4. 機資材供與의 年度別 品目別 實績(1989～1991)

5. 우리나라 機資材受援國의 主要指標

1. 開發援助의 形態別 國家別 實績(1992)

가. 總括表

(單位：個國, 名, 百萬원)

區 分		計	亞細亞	中 東	아프리카	中南美	東 歐	其 他
國 家 數		126國 6機構	28	18	38	29	13	6 機 構
研 修 生	國家數	87	22	16	21	19	9	-
	人 員	461	255	36	40	52	78	-
專 門 家	國家數	31	9	8	2	9	3	-
	人 員	47	18	9	2	13	5	-
醫 療 團	國家數	13	1	1	11	-	-	-
	人 員	17	3	1	13	-	-	-
跆 拳 道	國家數	17	4	6	7	-	-	-
	人 員	19	4	7	8	-	-	-
奉 仕 團	國家數	8	8	-	-	-	-	-
	人 員	52	52	-	-	-	-	-
機 資 材	國家數	99國 6機構	21	8	35	25	10	6機構
	金 額	8,356	1,543	868	3,323	1,610	578	434
開發調査	國家數	8	7	-	-	-	1	-
	件	12	11	-	-	-	1	-
프로젝트	國家數	9	4	1	-	4	-	-
型 事業	金 額	845	335	19	-	491	-	-
EDCF	國家數	5	3		2	-	-	-
	金 額	12,260	7,700		4,560	-	-	-

註：韓國國際協力團의 無償協力, 財務部의 EDCF, 建設部의 開發調査 基準.

나. 形態別 國家別 內譯

區分	國家	事業數(件)	研修生(名)	專門家(名)	醫療團(名)	跆拳道(名)	奉仕團(名)	機資材(百萬원)	開發調査(件)	프로젝트(百萬원)	EDCF(百萬원)
總計		281	461	47	17	19	52	8,356	12	845	12,260
亞細亞(大洋洲包含)	네팔	6	6			1	4	62	*1	14	
	대만	1	*2								
	라오스	1	*1								
	마샬아일랜드	1						*30			
	마이크로네시아	1						*30			
	말레이지아	2	29	1							
	몰디브	1						37			
	몽골	4	15	1			7	154			
	미얀마	4	5	1		1		108			
	방글라데시	2	8					152			
	베트남	3	22					153	1		
	부탄	2	1					152			
	솔로몬아일랜드	2	2					*19			
	서사모아	2			*3			*22			
	스리랑카	5	8	*1			5	77			1,600
	인니	8	24	2		1	6	*16	3	202	5,500
	인도	1	15								
	중국	2	39	5							

區分	國　家	事業數(件)	硏修生(名)	專門家(名)	醫療團(名)	跆拳道(名)	奉仕團(名)	機資材(百萬원)	開發調査(件)	프로젝트(百萬원)	EDCF(百萬원)
亞細亞	쿡아일랜드	1								54	
	키리바시	2	1					*24			
	태　국	7	27	*2		1	9	80	1	65	
	통　가	2	2					*23			
	투발루	1						*12			
	P N G	4	5				6	109	1		
	파키스탄	4	10	1				78	1		
	팔라우	1	1								
	필리핀	6	29	4			8	152	3		600
	휘　지	3	3				7	54			
	小　計	80	255	18	3	4	52	1,543	11	335	7,700
中東	리비아	2	2			1					
	모로코	2	2					78			
	모리타니아	4	2	1	*1			187			
	바레인	1	2								
	사우디	1	1								
	수　단	5	2	1		1		116		19	
	시리아	1	*1								
	아프가니스탄	1						157			
	알제리	2	3	1							
	예　멘	3	1	1				78			

區分	國家	事業數(件)	研修生(名)	專門家(名)	醫療團(名)	跆拳道(名)	奉仕團(名)	機資材(百萬원)	開發調査(件)	프로젝트(百萬원)	EDCF(百萬원)
中東	오만	3	3	1		1					
	요르단	2	2			1					
	이란	1	5								
	이집트	3	4			2		175			
	지부티	1						38			
	카타르	2	1	1							
	터어키	3	2	1				*39			
	튀니지	3	2	2		1					
	小計	40	36	9	1	7		868		19	
아프리카	가나	5	4	1		2		74			1,961
	가봉	2	1					*38			
	감비아	1						39			
	기네비사오	1						39			
	나미비아	3	4		1			100			
	나이지리아	3	3			1					2,599
	니제르	3			*2	*1		76			
	라이베리아	1	1								
	루안다	1						52			
	레소토	3	1		*1			54			
	말라위	1						89			
	말리	1						77			
	모리셔스	2	2					54			

區分	國家	事業數(件)	研修生(名)	專門家(名)	醫療團(名)	跆拳道(名)	奉仕團(名)	機資材(百萬원)	開發調査(件)	프로젝트(百萬원)	EDCF(百萬원)
아프리카	베넹	2	1					221			
	모잠비크	1						76			
	부르키나파소	2				*1		51			
	부룬디	1						155			
	보츠와나	2	1					78			
	세네갈	4	2			1		70			
	스와질랜드	3	2		2			64			
	시에라레온	1						77			
	앙골라	1		1				132			
	우간다	3	3		1			76			
	이디오피아	3	1		1			302			
	자이르	3	1			1		148			
	잠비아	3	2		1			116			
	중앙아프리카	3			*1	1		77			
	짐바브웨	1	2								
	챠드	1						39			
	카메룬	3	2		1			108			
	캅베르데	1						37			
	소말리아	1						*63			
	콩고	2	2					72			
	코모로	1						34			
	코트디브아르	3	1		*1			153			

區分	國家	事業數(件)	研修生(名)	專門家(名)	醫療團(名)	跆拳道(名)	奉仕團(名)	機資材(百萬원)	開發調査(件)	프로젝트(百萬원)	EDCF(百萬원)
아	케냐	3	3		*1			155			
프	탄자니아	2	1					*275			
리	토고	1						52			
카	小計	78	40	2	13	8		3,323			4,560
	가이아나	2		1				53			
	과테말라	2	5					169			
	니카라과	2	2					75			
	도미니카(공)	2	1							154	
中	멕시코	3	11	2				*8			
	수리남	2	2					73			
	바베이도스	1						*41			
	베네수엘라	1	3								
	볼리비아	3	1	1				108			
南	벨리세	1						36			
	아르헨티나	2	*1					83			
	우루과이	1						78			
	온두라스	2	1					80			
	에쿠아돌	3	2	3				105			
美	엘살바돌	3	2	1				116			
	자메이카	2	1							*74	
	칠레	2	2					33			
	코스타리카	3	4	2				72			
	콜롬비아	4	5	1				9		112	

區分	國家	事業數(件)	研修生(名)	專門家(名)	醫療團(名)	跆拳道(名)	奉仕團(名)	機資材(百萬원)	開發調査(件)	프로젝트(百萬원)	EDCF(百萬원)
中南美	트리니다드토바고	2	3					77			
	그 레 나 다	1						21			
	도미니카(연)	1						15			
	페 루	3	3	1						151	
	파 나 마	2	1					109			
	파 라 과 이	3	2	1				165			
	카리브4개국	1						84			
	小 計	54	52	13				1,610		491	
東歐	불 가 리 아	2	7					111			
	루 마 니 아	3	7	1				108			
	리투아니아	2	*1					*39			
	C I S	2	33					49			
	알 바 니 아	2	2					54			
	키르키스스탄(공)	1						*8			
	유 고	2	1						1		
	체 코	2	6					*52			
	폴 란 드	1	13								
	헝 가 리	2	8	3							
	우크라이나(공)	2		*1				*39			
	카자흐스탄(공)	1						*38			
	우즈베키스탄(공)	1						*80			
	小 計	23	78	5				578	1		

區分	國家	事業數(件)	硏修生(名)	專門家(名)	醫療團(名)	跆拳道(名)	奉仕團(名)	機資材(百萬원)	開發調査(件)	프로젝트(百萬원)	EDCF(百萬원)
其他	ESCAP	1						31			
	비동맹아프리카 기금	1						154			
	ANC	1						91			
	ONCHO기금	1						79			
	UN중앙운영긴급기금	1						*40			
	UN남부아프리카한발기금	1						*39			
	小計	6						434			

註 : 1) 事業數란 各事業形態를 1件으로 본 數値임.

2) *表는 1992年 當初計劃에서 年度中 事業變更이나 또는 留保額執行(機資材)으로 新規로 追加된 것임.

2. 開發調査의 年度別·國家別 實績(1984~1992)

(單位 : 百萬원)

年度	部 處	開發調査事業內容			
		對象國家	事業名	所要金額	支援規模
'84	建設部	印尼	○ 부키딩키 迂廻道路	334	334
			○ 퍼말리江 用水調節	411	411
		스리랑카	○ 페리아칼라푸地區 排水改善	148	148
		중앙아프리카	○ 農業開發 妥當性調査	107	107
	合計		4 件	1,000	1,000
'85	科技處	브라질, 페루, 파나마	○ 中南美地域 技術協力調査	24	27
	建設部	방글라데쉬	○ 第3洪水調節 및 排水事業	222.5	222.5
			○ 2個橋梁建設 妥當性調査	222.5	222.5
		印尼	○ 반달람풍市 綜合都市基盤施設 妥當性 調査	154.5	154.5
			○ 파당市 迂廻道路 妥當性調査 및 實施設計	400.5	400.5
		小計	4 件	1,000	1,000
	合計		5 件	1,024	1,027
'86	科技處	네팔	○ 産業技術研究院設立 妥當性調査	34	30
	外務部	세네갈	○ 水稻作灌漑施設 實施設計	200	174
		케냐	○ 地下水開發 妥當性調査	200	174
	建設部	방글라데쉬	○ 洪水調節 및 排水改善事業	200.1	200.1
		印尼	○ 반달람풍市 施設	290.5	290.5
		파키스탄	○ 파키스탄스타디움建設計劃	34.3	34.3
		泰國	○ 中規模 灌漑基礎調査事業	67	67
		네팔	○ 地方道路 建設	137.6	137.6
		中央아프리카	○ 캠버댐 建設	61	61
		小計	6 件	790.5	790.5
	合計		9 件	1,224.5	1,168.5

(單位 : 百萬원)

年度	部 處	開發調査事業內容			
		對象國家	事業名	所要金額	支援規模
'87	科技處	인도네시아	○ 니켈, 보크사이드資源開發協力必要性 調査	36	30
	建設部	네 팔	○ 산디칼라道路 妥當性調査	209.5	209.5
			○ 2個都市 上水道施設事業 妥當性 調査	267	267
		인도네시아	○ 바릭바빤 IUIDP(1段階)	233	233
		小 計	3 件	709.5	709.5
	合 計		4 件	745.5	739.5
'88	科技處	콜롬비아	○ 技術研究所 支援事業		25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 海外農業開發 前進基地 妥當性 調査		13
	建設部	방글라데시	○ FCEⅢ(2段階)洪水調節 施設		224
			○ 부리강가橋梁建設 詳細設計	235.8	131
		인도네시아	○ 바릭바빤 IUIDP(2段階)		212
		泰 國	○ 示範農業開發事業	311	70
		파푸아 뉴기니	○ Wewak排水工事 妥當性 調査 및 詳細 設計	259	163
		小 計	5 件	570	800
	合 計		8 件	805.8	922

(單位：百萬원)

年度	部 處	開發調査事業內容			
		對象國家	事業名	所要金額	支援規模
'89	建設部	파푸아뉴기니	○ Wewak排水工事 妥當性 調査 및 詳細設計	259.0	96
		모르베이루	○ 地方道路 建設事業 詳細設計	565.0	408.0
		방글라데시	○ 부리강가 橋梁建設 詳細設計	235.8	104.8
		파키스탄	○ 래크패쓰터널建設	458.2	316.2
		泰國	○ 示範農業 開發事業	311	49
		小計	5 件	1,829	974
	科技處	印尼, 泰國, 馬聯	○ 資源開發探査	—	12.1
		코스타리카	○ 科學技術院 設立諮問事業	—	5.1
	經濟企劃院	인도네시아	○ 農業開發事業	48.7	39.6
		〃	○ 移動式 職業訓練建設事業	45.0	46.5
	遞信部	방글라데시	○ 다카地域 電話施設 長期網計劃 樹立	545.0	184.0
	合計		10 件		1,261.3
'90	建設部	파푸아뉴기니	○ Milne Bay地方道路事業示範營農事業	565	157
		인도네시아	○ 마나도 第1迂廻道路建設 ○ 마나도 第2迂廻道路建設	382.5 70.0	302.5 70.0
		泰國	○ 示範農業開發	311.0	88.0
		파키스탄	○ 래크패쓰터널建設	458.2	142.0
		필리핀	○ 마닐라－캐비테間 海岸道路	350.0	70.0
		스리랑카	○ 마타라－카타라가마間 鐵道事業	320.0	65.0
		西사모아	○ 造船所 建設	315.0	80.0
		小計	8 件	2,771.7	974.5
	遞信部	방글라데시	다카地域 通信網設計	345	345
	合計		9 件	3,116.7	1,319.5

(單位：百萬원)

年度	部 處	開發調査事業內容			
		對象國家	事業名	所要金額	支援規模
'91	建設部	泰 國	○ 示範營農事業	311	63.7
		인도네시아	○ 마나도 第1迂廻道路 妥當性 調査 設計	382.5	80
		필 리 핀	○ 마닐라－카비테間 海岸道路 妥當性 調査	350	280
		西 사 모 아	○ 造船所建設 妥當性 調査 設計事業	315	235
		스 리 랑 카	○ 마타라－카타라가마間 鐵道 事業	320	255
		파 키 스 탄	○ 라호레시 迂廻道路	360	30
		필 리 핀	○ 마닐라－카피테間 海岸高速 道路	600	30
		인도네시아	○ 토바湖水 觀光道路	700	20
		유고슬라비아	○ 스코프시迂廻道路	30	30
		小 計	9 件	3,368.5	1,023.7
	遞信部	루 마 니 아	○ 포카데트시通信網	300	300
		스 리 랑 카	○ 通信網 管理體系導入 技術 支援	200	200
	韓國國際協力團	인도네시아	○ 칼리만탄 濕地開發	576	20
		파푸아뉴기니	○ 나자브 空港 擴張	600	17
	合 計		13 件	5,044.5	1,560.7

(單位：百萬원)

年度	部 處	開發調査事業內容			
		對象國家	事業名	所要金額	支援規模
'92	建設部	泰 國	○ 示範營農事業	311	40.3
		인도네시아	○ 토바湖水 觀光道路	700	273
		필 리 핀	○ 마닐라－카피테間 海岸高速道路	600	570
		파 키 스 탄	○ 다모데시 迂廻道路	360	330
		유고슬라비아	○ 스코프시 迂廻道路	30	30
		小 計	5 件	2,001	1,243.3
	韓國國際協力團	인도네시아	○ 칼리만탄 濕地開發	251	251
		파푸아뉴기니	○ 나자브空港 擴張	294	294
		인도네시아	○ 北스마트라 戰力開發	261	261
		필 리 핀	○ 사마르섬 地質調査	112	112
		베 트 남	○ 鑛物調査	15	15
		네 팔	○ 모디江 電力開發	15	15
		필 리 핀	○ 東部비스야스工團開發	12	12
		其 他	○ 필리핀電力等 4件	81	0
		小 計	7 件	1,041	960
	合 計		12 件	3,042	2,203.3

3. 機資材供與의 年度別·

年度別 / 地域別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아 세 아	411 (4)	325 (5)	127 (4)	1,199 (8)	446 (4)	818 (10)	358 (7)	810 (11)
中 南 美	130 (3)	56 (2)	161 (3)	297 (3)	1,728 (18)	1,180 (11)	1,994 (15)	2,057 (18)
아 프 리 카	562 (7)	824 (10)	2,563 (16)	1,203 (15)	1,412 (18)	1,898 (17)	3,958 (19)	3,113 (18)
中 東	—	103 (1)	259 (3)	275 (5)	354 (3)	124 (1)	319 (3)	100 (2)
東 歐	—	42 (1)	—	—	—	—	—	—
其 他 (國 際 機 構, 基 金, 團 體)	—	—	—	—	—	—	305 (1)	220 (3)
計	1,103 (14)	1,350 (19)	3,110 (26)	2,974 (31)	3,940 (43)	4,020 (39)	6,934 (45)	6,300 (52)

註：( )內는 國家數

地域別 實績(1977～1991)

(單位：千弗)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計 ('77-'91)	
							金　額	構成比 (%)
1,800 (11)	2,089 (15)	1,625 (15)	2,006 (19)	2,266 (19)	2,620 (19)	3,919 (23)	20,819	20
2,727 (22)	3,381 (26)	2,927 (26)	3,561 (27)	3,531 (28)	3,068 (28)	3,369 (26)	30,167	29
3,262 (23)	2,532 (22)	3,345 (23)	4,087 (26)	4,403 (27)	3,647 (29)	3,471 (30)	40,280	38.8
716 (3)	464 (5)	892 (7)	876 (7)	1,096 (7)	1,150 (8)	623 (6)	7,351	7.1
—	—	—	—	114 (1)	609 (5)	545 (5)	1,310	1.3
—	30 (1)	310 (2)	911 (5)	1,149 (7)	510 (4)	479 (4)	3,914	3.8
8,505 (59)	8,496 (69)	9,099 (73)	11,441 (84)	12,559 (89)	11,604 (93)	12,406 (93)	103,841	100

4. 機資材供與의 年度別·

區分 \ 年度別·品目別		1989 金額	構成比(%)	1990 金額
輸送用機械	乘用車	2,417,281.48		2,732,758.07
	버스타	585,271.10		158,046.77
	지프	437,280.15		976,243.60
	미니버스	583,090.57		276,101.14
	特裝車	631,562.91		442,418.60
	모터싸이클	76,997.68		20,888.62
	小計	4,731,483.89	37.7	4,606,456.80
工作·産業機械	工作機械	194,225.90		—
	電氣機械	200,000.00		195,864.40
	發電機	208,263.96		35,592.00
	小計	602,489.86	4.8	231,456.40
農機械	트렉터	69,560.59		60,119.00
	耕耘機	259,421.80		345,152.72
	揚水機	97,672.00		113,300.00
	其他[1]	67,996.75		79,771.10
	小計	494,651.14	3.9	598,342.82
纖維機械	裁縫틀	515,151.91		242,543.54
	蠶絲機械	198,903.30		202,789.00
	其他[2]	66,390.14		62,366.06
	小計	780,445.35	6.2	507,698.60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워드프로세스	1,375,357.76	10.9	1,397,420.89

註：1977～1988年의 品目別 統計는 資料未備로 把握이 不可함.

品目別 實績(1989～1991)

(單位：弗)

	1991		計('89－'91)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2,590.725.92		7,740,765.47	
	435,516.83		1,178,834.70	
	1,101,063.85		2,514,587.60	
	322,897.23		1,182,088.94	
	454,421.21		1,528,402.72	
	73,945.65		171,831.95	
39.7	4,978,570.69	40.1	14,316,511.38	39.1
	106,641.38		300,867.28	
	213,732.25		609,596.65	
	44,921.90		288,777.86	
2	365,295.53	2.9	1,199,241.79	3.3
	141,846.00		271,525.59	
	32,713.00		637,287.52	
	140,000.00		350,972.00	
	25,413.30		173,181.15	
5.1	339,972.30	2.7	1,432,966.26	3.9
	221,522.86		979,218.31	
	188,739.90		590,432.20	
	25,207.69		153,963.89	
4.4	435,470.45	3.5	1,723,614.40	4.7
12.0	1,376,037.93	11.1	4,148,816.58	11.3

區分	年度別 / 品目別	1989 金額	構成比(%)	1990 金額
通信器機	워키토키	51,994.30		91,767.80
	팩시밀리	29,472.29		81,332.20
	電話機	—		10,537.10
	送·受信中繼機	—		—
	小計	81,466.59	0.6	183,637.10
事務器機	複寫機	155,121.00		133,584.94
	打字機	80,564.88		86,055.64
	TV및비디오	94,039.90		54,658.53
	카셋트라디오	47,221.33		16,764.80
	視聽覺機資材[3]	15,174.34		59,053.40
	事務用品[4]	129,768.37		251,119.40
	小計	521,889.82	4.2	601,236.71
醫療器機및醫藥品	앰블란스	692,007.32		747,000.44
	휠체어	—		22,406.00
	超音波診斷機및 X-RAY機	82,225.56		32,512.23
	醫藥品	438,601.85		647,186.96
	其他[5]	25,837.00		112,741.81
	小計	1,238,671.73	9.9	1,561,847.44
農林,水產裝備	漁撈裝備	74,684.54		89,386.42
	蠶種·其他裝備	232,988.49		2,298.46
	小計	307,673.03	2.4	91,684.88

(單位：弗)

	1991		計('89－'91)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22,723.10		166,485.20	
	89,927.66		200,732.15	
	109,891.43		120,428.53	
	9,763		9,763.00	
1.6	232,305.19	1.9	497,408.88	1.4
	152,737.03		441,442.97	
	64,842.85		231.463.37	
	－		148,698.43	
	2,500.50		66,486.63	
	84,019.16		158,246.90	
	429,790.00		810,677.77	
5.2	733,889.54	5.9	1,857,016.07	5.1
	490,257.15		1,929,264.91	
	7,064.03		29,470.03	
	75,838.30		190,576.09	
	126,624.54		1,212,413.35	
	313,556.72		452,135.53	
13.4	1,013,340.74	8.2	3,813,859.91	10.4
	81,278.37		245,349.33	
	24,116.10		259,403.05	
0.9	105,394.47	0.9	504,752.38	1.4

區分 \ 年度別 / 品目別	品目別	1989 金額	1989 構成比(%)	1990 金額
生活必需品	쌀	—		—
	설탕	—		355,506.00
	洗劑, 성냥	—		—
	其他[6]	—		19,502.00
	小計	—	—	355,008.00
軍需品	軍服, 軍靴等	521,432	4.2	300,008
其他	體育用品	85,561.63		149,086.03
	人造잔디	—		308,851.80
	照明器具	11,900.00		—
	其他[7]	201,942.30		122,398.58
	小計	299,403.93	2.4	580,336.41
現金供與		1,604,175.35	12.8	588,913.96
計		12,559,140.45	100	11,604,048.01

註 : 1) 噴霧器, 脫穀機, 撒水機, 刈草機, 리어카, 잔디깎기, 해머, 모종삽等
2) 裁斷機, 다림기等
3)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슬라이더, 마이크, 騷音測定機等
4) 空冊, 가방, 計算器, 顯微鏡, 破紙機, 望遠鏡, 組立式, 事務室세트等
5) 注射器, 心臟搏動機, 消毒器, 繃帶, 가위, 麻藥患者 再活院 施設裝備等
6) 粉乳, 담요, 食器, 糖菓 및 시럽類等
7) 뱃지, 피아노, 애드벌룬, 專門家 派遣經費, 보이스카웃用品, 行政支援費等

(單位：弗)

	1991		計('89－'91)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292,309.00		292,309.00	
	24,624.00		360,130.00	
	581,37.00		581,137.00	
	148,452.60		167,954.60	
3	1,046.522.60	8.4	1,401,530.60	3.8
2.6	483,201.90	3.9	1,304,641.90	3.6
	5,500.00		240,147.66	
	—		308,851.80	
	6,900.00		18,800.00	
	32,769.20		357,110.08	
5	45,169.20	0.4	924,909.54	2.6
5.1	1,251,017.56	10.1	3,444,106.87	9.4
100	12,406,188.10	100	36,569,376.56	100

5. 우리나라 機資材

地域名	國名	面積 (㎢)	人口 (萬名)	GNP[1] 總額 (百萬弗)	GNP[1] 1人當 (弗)	産業構造(%) 1次	2次	3次
아	방글라데시	143,918	10,421	20,032	178	45.7	13.5	40.8
	부탄	46,620	145	280	188	50	22	28
	캄보디아	181,035	639	660	114	90	5	5
	中國	9,597,000	108,000	630,323	571	41.4	48	10.6
	휘지	18,376	72	1,424	1,894	21.8	11.1	67.1
	印度	3,287,590	78,394	288,716	346	38.1	21.6	40.3
	인도네시아	2,027,087	17,676	115,436	638	23.6	29.7	46.7
세	키리바시	719	6.4	30	700	–	–	–
	말레이지아	332,556	1,582	39,659	2,273	21.2	41.9	46.9
아	몰디브	298	18	50	420	29.2	21.7	49.1
	몽골	1,564,619	194	2,393	1,123	2.5	4.0	–
	미얀마	676,552	3,765	7,332	179	36.7	12.2	51.1
	네팔	140,791	1,742	2,978	159	61.7	11.6	26.7
	파키스탄	804,943	10,070	48,319	407	25.5	24.2	50.3

資料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및 其他資料에서 作成

註 : 1) 1989, 2) 1990

本 統計는 1977~1991年의 機資材受授國(總109國)을 對象으로 함.

受授國의 主要指標

貿易[2]		經常收支[2] (百萬弗)	主要資源	우리나라와의 關係				
輸出 (百萬弗)	輸入 (百萬弗)			關係樹立日	公館設置日	僑民數 (名)	貿易[2] 輸出 (千弗)	貿易[2] 輸入 (千弗)
1,671	3,598	9,889	개 스	'73.12.18	'74. 1.28	—	276,100	2,500
15	69	△79	木材, 水資源	'87. 9.25	—	—	187.1	—
5	49		쌀, 옥수수, 고무, 原木	'70. 5.18	—	—	—	—
62,063	54,352	11,478	石炭, 石油, 各種鑛物	'92. 8.24	'92. 8.24	—	—	—
534	743	4.5	原糖, 코프라	'70.10.11	'80.12.17	—	14,280	1,245
17,975	23,642	△3,604	鐵鑛石, 石炭, 石油	'73.12.10	'73.12.10	28	435,000	283,000
25,675	21,837	△4,559	石油, 天然가스, 木材, 朱錫, 石炭	'73. 9.18	'73. 9.18	85	667,000	1,135,000
6	18	—	魚資源, 코프라, 燐鑛石, 코코낫	'80. 5. 2	—	—	173	2
29,416	29,258	△3,281	고무, 팜오일, 朱錫, 木材, 原油	'60. 2.23	'62. 5. 1	13	708,000	1,586,000
52	129	△8.8	水產物	'67.11.30	—	—	100	—
37	23	—	코스크탄, 銅鑛, 몰리브덴	'90. 3.26	'90. 6.18	—	—	—
325	270	△210	쌀, 티크, 木材, 原油, 銅, 鉛, 텅스텐	'75. 5.16	'75. 6.25	—	38,000	3,000
210	686	1,235	쌀, 黃麻, 皮革	'74. 5.15	'74. 5.18	—	10,000	1,000
5,589	7,376	△1,184	天然가스, 石炭, 銅, 大理石, 原油	'83.11 7	'83.11. 7	4	221,000	172,000

地域名	國名	面積 (㎢)	人口 (萬名)	GNP[1] 總額 (百萬弗)	GNP[1] 1人當 (弗)	産業構造 (%) 1次	2次	3次
아세아	파푸아뉴기니아	462,840	325	3,235	853	33.7	22.5	44.6
	필리핀	300,440	5,809	40,916	672	26.4	46.3	27.3
	솔로몬아일랜드	29,785	28	140	580	70	5	25
	스리랑카	65,610	1,664	5,903	347	25.5	24.9	49.6
	泰國	514,820	5,244	60,195	1,096	18.8	20.6	60.6
	통가	679	10.6	92	970	37	9	54
	투발루	26	0.8	4	450	–	–	–
	바누아투	14,673	14	151	980	19	5	61.2
	西사모아	2,831	16	108	643	60	6	34
中南美	안티구아바뷰다	280	7.9	350	5,500	–	–	–
	아르헨티나	2,766,889	3,119	53,638	1,680	14.8	27.5	57.7
	바하마	13,942	246	2,200	9,082	–	–	–
	바베이도스	431	26	1,330	5,054	–	–	–
	벨리제	22,960	22	260	1,187	–	–	–

貿易[2]		經常收支[2]	主要資源	우리나라와의 關係				
				關係	公館	僑民數	貿易[2]	
輸出 (百萬弗)	輸入 (百萬弗)	(百萬弗)		樹立日	設置日	(名)	輸出 (千弗)	輸入 (千弗)
1,133	1,291	△141	커피, 코코아, 구리, 코프라	'76. 5.19	'81.12.18	–	12,400	118,000
8,068	13,041	△462	銅, 鐵鑛石	'49. 3. 3	'54. 1.19	509	500,000	270,000
70	92	△12.9	코프라, 木材, 水產物, 椰子油	'78. .15	–	–	924	6,163
1,983	2,685	△3,393	고무, 紅茶, 코코넛	'77.11.14	'77.12.12	3	116,000	20,000
23,068	33,069	△10,635	쌀, 타피오카, 옥수수, 天然고무, 朱錫	'58.10. 1	'60. 3. 1	1,000	969,000	464,000
11	62	–	코프라,타로,바나나	'70. 9.11	–	–	304	43
1	4	–	水產物, 코코넛, 코프라	'70.11.15	–	–	–	–
19	92	△2.8	木材, 肉類, 코프라, 水產物	'80.11. 5	–	–	459	762
9	75	6.6	코코넛,타로,코프라	'72. 9.15	–	–	1,550	–
31	302	–	사탕수수, 옥수수, 觀光	'81.11. 1	–	–	344	–
12,353	4,077	4,807	石油, 天然가스	'62. 2.15	'63.12.15	30,100	75,263	86,290
270	1,050	–	觀光 및 水產資源	'85. 7. 8	–	–	65,146	1,837
187.2	698	–	觀光產業 및 설탕	'77.11.15	–	–	4,037	3
100.5	172	–	사탕수수, 바나나, 감귤	'87. 4.14	–	18	2	–

地域名	國名	面積 (㎢)	人口 (萬名)	GNP[1] 總額 (百萬弗)	GNP[1] 1人當 (弗)	産業構造(%) 1次	2次	3次
中南美	볼리비라	1,098,581	636	4,709	662	26.3	21.6	52.1
	칠레	756,945	1,226	27,360	3,111	9.8	34.7	55.5
	콜롬비아	1,138,914	2,994	44,145	1,365	21.7	21.2	57.1
	코스타리카	50,700	271	5,884	2,001	19.6	26.6	53.8
	도미니카(聯)	751	8.4	140	1,170	–	–	–
	도미니카(共)	48,734	679	8,350	1,191	16.8	17.1	66.1
	에쿠아도르	283,561	965	14,184	1,374	13.6	35.9	50.5
	엘살바도르	21,041	561	3,375	657	24.3	20.8	54.9
	그레나다	344	8.4	139.5	1,656	–	–	–
	과테말라	108,780	860	8,301	929	25.5	17.4	57.1
	가이아나	214,970	81	429	540	25.9	20.1	54
	아이티	27,749	587	1,385	217	32.4	32.8	34.8
	온두라스	112,088	465	3,055	613	24.8	17.4	57.8

貿易[2]		經常收支[2]	主要資源	우리나라와의 關係				
				關係	公館	僑民數	貿易[2]	
輸出 (百萬弗)	輸入 (百萬弗)	(百萬弗)		樹立日	設置日	(名)	輸出 (千弗)	輸入 (千弗)
926	716	△400	朱錫, 鎭, 亞鉛, 鐵, 金, 銀, 天然가스, 石油	'65. 4.25	'76. 7. 6	1,146	4,242	1,797
8,310	7,037	△507	구리, 水產物, 林產物, 石油	'62. 6.12	'66.11. 7	1,405	144,179	331,171
6,766	5,590	△450	커피, 原油, 설탕, 石炭	'62. 3.10	'71. 6.10	222	57,865	12,868
1,457	2,026	△100	커피, 바나나, 牛肉, 설탕, 카카오	'62. 8.15	'74. 9. 4	123	47,013	6,616
43.6	94.6	△71	바나나, 코코낫	'78.11. 3	—	—	2,222	30,715
928	2,057	△119	金, 銀, 니켈	'62. 6. 6	'80.12. 6	108	2,222	30,715
2,714	1,862	△287	石油, 魚資源, 農水物, 林產物	'62.10. 5	'74. 3.15	1,279	14,787	25,270
497	1,152	39	커피, 綿花, 설탕, 새우	'62. 8.30	'87.12.21	3	9,893	70
35	100.9	△276	바나나, 사탕수수	'74. 8. 1	—	—	341	—
1,211	1,626	△546	石油, 銅, 鐵, 니켈, 木材	'62.10.24	'74. 9.10	30	39,669	5,755
242	231	△116	보크사이트, 구리, 망간, 金, 木材	'68, 6.13	—	1	1,293	2,173
132	270	△70	보이사이트, 구리	'62. 9.22	—	—	8,867	102
916	1,028	△155	木材, 銅, 銀	'62. 4. 1	—	32	22,942	19,140

地域名	國名	面積 (km²)	人口 (萬名)	GNP[1] 總額 (百萬弗)	GNP[1] 1人當 (弗)	産業構造 (%) 1次	2次	3次
中南美	자메이카	10,991	229	2,887	1,189	8.8	20.8	70.4
	멕시코	1,972,547	8,171	217,876	2,512	8.8	38.9	52.3
	나카라과	130,000	334	1,389	371	24.6	25.4	50
	파나마	77,080	223	3,623	1,529	9.6	9.3	81.1
	파라과이	406,750	411	5,052	1,215	26.9	16.6	56.5
	페루	1,285,216	2,021	19,500	924	14.5	37.2	48.3
	세인트킷츠네비스	269	4.5	172	3,822	—	—	—
	세인트루시아	616	15	94	1,200	—	—	—
	세인트빈센트	388	11.3	160.5	1,413	—	—	—
	수리남	163,265	39	12,700	3,215	—	—	—
	트리니다드토바고	5,128	120	4,207	3,334	—	26	74
	우루과이	176,215	305	5,778	1,878	13.2	23.5	63.3
	베네주엘라	912,050	1,779	69,778	3,626	8.9	31.4	59.7

貿易[2]		經常收支[2]	主要資源	우리나라와의 關係				
				關係	公館	僑民數	貿易[2]	
輸出 (百萬弗)	輸入 (百萬弗)	(百萬弗)		樹立日	設置日	(名)	輸出 (千弗)	輸入 (千弗)
967	1,801	−	보크사이트, 觀光, 사탕수수, 바나나	'62.10.13	'74.10.14	10	15,607	368
27,131	29,969	△4,943	原油, 銀, 구리, 原綿, 조개패	'62. 1.26	'62. 7.11	164	449,530	264,160
300	923	△742	綿花, 커피, 木材	'62. 1.26	−	−	2,298	−
321	1,539	441	銅, 바나나, 설탕, 새우	'62. 9.30	'73. 5. 5	59	498,475	83,682
959	1,313	△359	콩, 밀, 綿花, 옥수수, 木材	'62. 6.15	'76. 3.	9,445	51,865	11,867
3,277	2,230	88	銅, 鎭, 亞鉛, 石油	'68. 4. 1	'71. 8. 1	47	10,042	93,899
25.5	101.9	△27	사탕수수, 觀光資源	'83. 9.19	−	−	434	−
110	270	△106	바나나, 觀光事業	'79. 2.23	−	−	4,216	−
100.6	135.5	△50	바나나, 觀光收入	'79.10.28	−	−	18,998	−
420	340	△35	보크사이트, 木材, 水產物, 石油	'75.11.28	−	43	3,682	2
1,718	1,121	△441	石油, 天然가스	'85. 7.23	'85. 1.28	5	5,366	−
1,693	1,318	172	農畜產物	'64.10.17	'66.12.16	25	17,248	7,770
17,498	7,070	7,653	石油, 天然가스, 鐵鑛石, 보크사이트	'65. 4.29	'73. 7. 7	267	51,039	20,385

地域名	國名	面積 (km²)	人口 (萬名)	GNP[1] 總額 (百萬弗)	GNP[1] 1人當 (弗)	産業構造(%) 1次	2次	3次
아프리카	베넹	112,622	392	1,348	300	46.9	13.4	39.7
	보츠와나	600,372	110	2,551	2,027	3.9	52.9	43.2
	부루키나파소	240,000	709	1,767	202	43.4	14.	42.6
	카메룬	475,439	1,001	8,969	784	23.2	32	44.8
	갑베르데	4,040	33	197	549	18	25	57
	中央아프리카共和國	622,984	274	1,033	350	39	11	50
	차드	1,284,640	523	1,005	181	46	16.1	37.9
	코모로	2,171	42	181	340	37	14	49
	콩고	342,000	185	2,455	1,116	13.6	24.9	61.5
	코트디브와르	322,463	1,050	9,962	862	27	29	54
	赤道기네	28,051	36	1,507	269	60	10	30
	이디오피아	1,221,900	4,388	4,847	101	41	8.6	50.4
	가봉	267,677	102	3,989	3,521	8.3	33.8	57.9

貿易[2]		經常收支[2]	主要資源	우리나라와의 關係				
				關係	公館	僑民數	貿易[2]	
輸出 (百萬弗)	輸入 (百萬弗)	(百萬弗)		樹立日	設置日	(名)	輸出 (千弗)	輸入 (千弗)
114	349	△125	코코아, 綿花, 石灰石, 椰子	'61. 8. 1	–	–	18,518	2,012
1,285	1,873	△598	다이아몬드, 肉類, 銅, 니켈	'68. 4.18	–	69	253	61
142	489	△12	망간, 金	'62. 4.20	–	–	399	4,895
927	1,273	59	石油, 가스, 코코아, 커피	'61. 8.10	'69. 1.16	–	13,054	26,604
4	200	–	커피, 生鮮, 바나나, 소금	'88.10. 3	–	–	–	–
134	150	△86	다이아몬드, 커피, 綿花, 木材	'63. 9. 5	–	–	862	1,532
141	419	△64	綿花, 家畜, 고무	'61. 8. 6	–	–	21	31
12	52	△15	바닐라,바나나,코프라, 커피,자스민,옥수수	'79. 2.19	–	–	93	50
912	524	△595	木材, 커피, 石油等鑛物資源	'61. 8.14	–	–	2,251	161
2,770	2,080	△110	코코아, 커피, 原木	'61. 7.23	'66. 2.16	56	11,830	12,362
39	50	△6.5	카카오, 커피, 木材	'79. 9.14	–	–	472	–
29.8	1,081	5	커피, 소, 銅, 金, 가스, 石油	'63.12.23	'65. 3.25	38	10,639	1,622
1,288	732	△961	石油, 木材, 망간, 우라늄, 鐵鋼	'62.10. 1	'73. 5. 5	170	4,396	21,877

地域名	國名	面積 (㎢)	人口 (萬名)	GNP[1] 總額 (百萬弗)	GNP[1] 1人當 (弗)	産業構造(%) 1次	2次	3次
아프리카	감비아	11,296	77	298	355	26	4.7	69.3
	가나	238,538	1,355	5,795	398	54.3	12	33.7
	기네	245,957	573	1,507	269	41	21	38
	기네비사오	36,260	88	318	336	59.6	3.3	37.1
	케냐	582,646	2,104	9,924	428	29.7	11.9	48.4
	레소토	30,460	155	495	287	21.1	13.5	65.4
	라이베리아	111,370	231	795	318	21	23	56
	말라위	118,484	729	1,496	177	36.8	12.1	38
	말리	1,240,000	762	2,182	244	46	11	43
	모리셔스	1,865	102	1,931	1,805	13.4	26.1	60.5
	나미비아	823,145	128.8	16,500	1,030	—	—	—
	니제르	1,266,510	672	2,580	344	52.1	14.2	33.7
	루안다	26,338	649	1,250	178	45	21	34

貿易[2]		經常收支[2] (百萬弗)	主要資源	우리나라와의 關係				
輸出 (百萬弗)	輸入 (百萬弗)			關係樹立日	公館設置日	僑民數 (名)	貿易[2] 輸出 (千弗)	貿易[2] 輸入 (千弗)
40	199	4.1	땅콩,魚族資源,椰子	'65. 4.21	—	—	3,589	—
1,014	907	△43	코코아, 보오크사이트, 金, 망간, 木材	'77.11. 4	'78. 5. 4	158	24,437	5,230
448	351	△40	보오크사이트, 金, 鐵鋼, 다이야몬드	'78. 1. 6	—	—	1,591	637
6	63	△45	땅콩, 水產資源, 椰子, 木花	'83.12.22	—	—	6	—
1,031	2,124	△572	—	'64. 2. 7	'65. 9.15	—	21,000	3,500
25	343	△9	羊毛, 毛皮, 다이아몬드	'66.12. 7	—	—	60	—
382	308	51	고무, 鐵鑛石, 木材, 金剛石, 金, 커피	'64. 3.18	—	3	550,288	235,471
417	581	△57	담배, 茶, 綿花, 石綿, 黑鉛	'65. 3. 9	'84. 7. 2	—	1,710	2
271	501	△148	燐鑛石, 金, 鐵鑛, 우라늄	'90. 9.27	—	—	337	10,498
1,186	1,618	99	사탕수수	'71. 7. 3	—	—	20,305	118
14	35	—	우라늄, 구리, 다이아몬드, 鎭, 朱錫	'90. 3.21	'90. 6.18	—	476	—
331	436	△6	우라늄, 朱錫	'61. 7.27	—	—	365	165
188	348	△69	커피, 茶, 朱錫, 텅스텐	'63. 3.21	—	—	345	—

地域名	國名	面積 (km²)	人口 (萬名)	GNP[1] 總額 (百萬弗)	GNP[1] 1人當 (弗)	産業構造 (%) 1次	2次	3次
아프리카	쌍토메프린시페	963	11	43	372	26.1	10.1	63.8
	세네갈	196,192	698	3,843	539	22	27	51
	세이셸	280	7	191	2,762	6.9	14.3	78.8
	시에라레온	71,740	399	765	189	31.5	17	51.5
	소말리아	637,657	529	3,782	519	59.7	8.7	31.6
	스와질랜드	17,364	68	743	975	25.3	26.1	48.6
	탄자니아	942,633	2,242	6,210	236	46.1	5.4	48.5
	우간다	235,885	1,546	3,236	178	40.2	5.4	54.4
	자이르	2,345,400	3,133	7,164	208	20.5	30.8	48.7
	잠비아	752,614	665	3,981	489	17.7	29	53.3
中東	지부티	22,000	36	376	944	4.5	15.7	79.8
	이집트	1,001,449	5,200	47,546	928	18.1	30.4	51.5
	이란	1,648,000	4,877	108,798	2,038	12.6	35.5	51.9
	요르단	96,089	340	4,213	1,086	8.3	28.2	63.5

貿易[2]		經常收支[2] (百萬弗)	主要資源	우리나라와의 關係				
輸出 (百萬弗)	輸入 (百萬弗)			關係 樹立日	公館 設置日	僑民數 (名)	貿易[2] 輸出 (千弗)	貿易[2] 輸入 (千弗)
6	15	△12	코코아,커피,코프라	'88. 8.20	—	—	—	—
606	1,024	△284	燐鑛石, 땅콩, 漁業資源	'62.10.19	'73. 5. 4	13	8,117	473
40	186	△31	코프라, 바닐라, 冷凍魚類	—	—	—	205	—
138	146	△36	金剛石, 鐵鑛石, 보크사이트, 커피, 코코아, 팜유	'62. 6.25	'74.11.27	—	4,054	0.5
104	132	△87	우라늄,石英,鐵鑛石	'87. 9.26	—	—	863	2
443	581	6	설탕,製紙펄프,감,귤	'68.11.19	'85.10.31	36	3,513	11,208
276	800	△514	다이아몬드,커피,綿	—	—	—	3,827	2,963
148	209	—	커피, 茶, 綿花, 담배, 구리, 朱錫	'63. 3.26	'64. 4.26	—	10,283	208
999	886	△1,130	코발트, 다이아몬드, 銅, 망간, 朱錫	'63. 4. 1	'69.12.29	—	11,540	6,010
1,292	1,242	114	銅, 코발트, 亞鉛	'90. 9. 4	'91. 3. 5	—	2,399	4,998
25	215	△60	家畜類, 皮革類	'77.12. 8	—	—	17,434	5
2,585	9,216	2,249	石油,燐鑛石,鐵鑛石	'61.12. 5	'65. 5. 1 (총영사관)	171	159,526	130,823
13,435	11,635	—	石 油	'62.10.23	'67. 4. 1	—	520,000	700,000
1,107	2,125	10,561	燐鑛石	'62. 7.26	'75. 3.31	28	33,230	27,377

地域名	國名	面積 (km²)	人口 (萬名)	GNP[1] 總額 (百萬弗)	GNP[1] 1人當 (弗)	産業構造 (%) 1次	2次	3次
中東	몰타	313	36	1,190	3,300	4.5	29.6	65.9
	모리타니아	1,030,700	194	976	495	35.5	18.9	45.6
	모로코	446,550	2,367	25,545	1,046	18.4	31.5	49.5
	오만	212,380	127	13,853	9,567	2.8	58.2	39
	수단	2,505,813	2,350	11,140	454	28.2	9.2	62.6
	튀니지	163,610	711	11,699	1,463	15.6	32.3	52.2
	예멘	527,218	962	5,270	650	27	16	57
東歐	알바니아	28,748	302	3,132	981	34.1	51.1	14.8
	불가리아	110,912	899	25,776	2,863	13	70	17
	체코	127,870	1,554	62,060	3,970	7.5	70.9	21.6
	獨立國家聯合	22,402,200	28,450	1,213,263	4,232	19.6	34.2	46.2
	헝가리	93,030	1,062	5,114	2,376	12.6	48.8	38.6
	폴란드	312,612	3,776	61,240	1,603	17.5	61.2	21.3
	루마니아	237,499	2,283	50,782	2,193	15.5	69.8	14.7
	유고	255,804	2,328	72,234	3,050	11.6	52.6	35.8

貿易[2]		經常收支[2]	主要資源	우리나라와의 關係				
				關係	公館	僑民數	貿易[2]	
輸出 (百萬弗)	輸入 (百萬弗)	(百萬弗)		樹立日	設置日	(名)	輸出 (千弗)	輸入 (千弗)
498	885	△0.3	燐鑛石	'65. 4. 2	'65. 9	—	10,100	8,728
419	363	△185	鐵鑛石, 魚類	'78.11.19	'79.11. 5	82	1,406	87
4,265	6,800	△1,295	燐鑛石, 鐵, 石炭	'62. 7. 6	'62. 9. 6	14	27,500	5,000
2,625	2,202	△966	石油, 銅, 크롬, 망간, 石鉛	'74. 3.28	'76.10.30	—	22,000	1,375,000
509	871	△430	原 油	'77. 4.13	'77. 5. 9	—	7,723	9,084
3,526	5,542	△838	燐鑛石, 石油	'69. 3.31	'69. 4.10	—	9,800	22,400
665	2,576	△316	石油,岩鹽,커피,鐵	'85. 8.22	'87. 3.24	—	28,320	3,190
192	223	—	크롬, 니켈, 구리, 褐炭, 天然가스	'91.10.22	—	—	—	—
13,348	13,656	—	鐵鑛石, 銅, 亞鉛, 石油	'90. 3.28	'90. 6.13	—	—	—
11,840	13,712	△1,677	褐炭, 石油	'90. 3.22	'90. 6.13	—	—	—
97,336	88,871	—	鐵鑛石, 石炭, 原油, 天然가스	'90. 9.30	'90.10.30	—	—	—
9,597	8,669	△616	石炭, 褐炭, 天然가스, 보오크사이트	'89. 2. 1	'89. 2. 1	—	—	—
13,627	8,413	4,639	石炭, 鐵鑛石, 石油, 天然가스	'89.11. 1	'89.11.27	—	113,121	91,359
5,870	9,843	1,489	石炭,石油,天然가스	'90. 3.30	'90. 6.13	—	—	—
14,308	18,871	△425	石炭, 石油, 鐵鑛石, 銅鑛石	'89.12.27	'90. 2. 7	—	—	—

〈參 考 文 獻〉

金學洙,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經濟協力方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10.

金學洙,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關한 政策課題와 方向,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7.

羅元燦·宋河律,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開發援助政策, 產業研究院, 1989. 11.

羅元燦,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技術協力政策方向, 產業研究院, 1991. 5.

李善煥·孫正植,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經濟協力政策方向, 1991. 8.

沈義燮, 對開途國 投資協力과 中小企業의 役割,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터, 1991. 7.

尹海鎭, 우리나라 政府開發援助의 國別差別化政策方案, 韓國國際協力團, 1992. 11.

經濟企劃院, 1991年度 開途國 經濟協力統計, 1992. 6.

科學技術處, 國際技術協力統計, 1992. 8.

韓國國際協力團, 우리나라의 國際協力事業, 1991. 5.

韓國國際協力團, 開發調査業務要領, 1992. 1.

韓國國際協力團, 日本의 海外經濟協力便覽(Ⅰ, Ⅱ, Ⅲ), 1991. 10.

韓國海外開發公社, 世界의 國際協力概要, 1990. 12.

韓國輸出入銀行,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對象事業의 效率的 選定方案, 1989. 1.

韓國輸出入銀行,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制度, 1991. 5.

韓國輸出入銀行, 日本의 對開途國 經濟協力現況과 問題點, 1990. 8.

韓國輸出入銀行, 日本의 公的開發援助, 1988. 3.

서울國際컨설팅株式會社,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對象事業의 技術的妥當性檢討를 爲한 技術部門 Consultant活用方案에 關한 研究, 1991. 5.

櫻井雅夫, 國際開發協力の 仕組みと法, 三省堂, 1985. 10.

青山利勝, 開發途上國を 考える, 勁草書房, 1991. 6.

桶口貞夫, 政府開發援助(第二版), 勁草書房, 1991. 9.

小浜裕久, ODAの 經濟學, 日本評論社, 1992. 6.

鳥山正光, 開發 プロジェクト 具體化の ための F/Sの 理論と 實踐, 1986. 2.
土井たか子外共著. 譯, ODA改革, 社會思想社, 1990. 7.
外務省 經濟協力局, Outlook of Japan's Economic Cooperation, 1991. 2.
外務省 經濟協力局, Japan's ODA, 1991. 10.
外務省 經濟協力局, 我が國の 政府開發援助(上·下), 1991. 10.
外務省 經濟協力局, 經濟協力評價報告書, 1989, 1990, 1991年版.
總務廳 行政監察局, ODA(政府開發援助)の 現狀と 課題, 1988. 9.
通商産業省, 經濟協力の 現狀と 問題點, 1992. 9.
國際協力事業團, 開發調査の しおり, 1991. 2.
國際協力事業團, プロジェクト 方式技術協力の 手引, 1989. 1.
國際協力事業團, 調査事務 コンサルタント等 契約手續, 1983. 8.
國際協力事業團, 開發途上國の 綜合開發計劃 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 1975. 3.
國際協力事業團, 開發調査團の 手引, 1981. 9.
國際協力事業團, 事前調査の 手引, 1983. 1.
國際協力事業團, 分野別(環境)援助研究, 1988. 12.
國際協力事業團, 分野別(開發と 女性)援助研究會 報告書, 1991. 2.
國際協力事業團, 先進國援助機關·國際機關 における
開發調査實施方法に關する調査報告書, 1987. 2.
國際協力事業團, 先進諸國援助機關 における コンサルタント 利用狀況等
に關する 調査報告書, 1986. 2.
國際協力事業團, 國際協力事業團年報, 1991. 10.
國際協力推進協會, 經濟協力參加への 手引き, 1991. 3.
國際協力研究會, 國際協力ハンドブック, 1983. 3.
國際開發ジヤーナル社, 主要先進國の 無償援助, 1989. 8.
國際開發ジヤーナル社, 開發 コンサルタント, 1988. 9.
國際開發センター, 類型的相違を 考慮した開發國面別 經濟協力形態に關する基礎
調査, 1988. 3.

Sooyong Kim and Wan-Soon Kim,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Performance, Prospects and Policy, Seoul,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Institute, ICEG, 1992.

Baum, W.C., and Tolbert, S.M., Investing i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Browne, Stephen, Foreign Aid in Prac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0.

Imbeau, L.M., Donor Aid-The Determinants of Development Allocations to Third World Countries : A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Pater Lang, 1989.

Meier, Gerald M.,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1991 Report等各年度), 1991. 12.

OECD,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1991.

OECD, Eval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88.

OECD, Voluntary Aid for Develpment :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1988.

OECD/DAC, Reference Articles in Assessing Development Assistance, 1989.

OECD/DAC,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 1989.

OECD/Development Centre, Mannual of Industrial Project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1972.

IBRD, Use of Consultants by World Bank Borrowers as Executing Agency, 1986.

UN, Guideline for Project Evaluation, 1972.

UN, Manual on the Use of Consultants in Developing Countries, 1972.

AID, AID Handbook2-Policy, 1987.

AID, AID Handbook3-Project Assistance, 1987.

AID, AID Handbook17-AID Organization, 1987.

AID, AID Evaluation Handbook, 1987.

ADB, Guidelines on the Use of Consultants by ADB and its Borrowers, 1986.

BMZ, Guidelines on B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BMZ, Assessment and Follow-up, 1990. 11.

KfW, Financing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1985.

CIDA, Appliction to Register with CIDA, 1985.

CIDA, Consultant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s, 1985.

CIDA, Consultant Selection : User's Guide, 1985.

CIDA, Project Management Planning, 1990.

CIDA, Bilateral Project Management Lifecycle, 1991.

CIDA, Canad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 An Overview, 1989.

CIDA, Sharing Our Future, 1987.

CIDA, Management of Bilateral Project Evaluations, 1991.

Treasury Board of Canada,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Programs by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1981.

AIDAB, Country Programs Operations Guide, Volume2, 1992.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Report of the Committee to Review the Australian Overseas Aid Program, 1984.

ODA, The British Overseas Aid Programme, Some Basic Facts, 1985.

ODA, Guide to Aid Procedures, 1991. 8.

ODA(Edited by B.E. Cracknell), The Evaluation of Aid Projects and Programmes, 1984.

ODA, Appraisal of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 A Guide For Economists, 1988.

SIDA, SIDA's Role i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Program Countries, 1987.

JICA, Development Study, 1991. 2.